

2018 정선군 안전관리계획

2018. 2.

정 선 군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I.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 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 I.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I.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 I.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목 차

I. 총 칙	1
1. 개 요	5
2. 성과 및 반성	8
3. 여건 및 전망	10
4. 추진방향	11
II.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대책	15
1. 국가안전관리체계 총괄	19
2. 정선군 재난관리체계	23
3.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44
III.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85
1. 총 괄	89
2. 자연재난	102
2-1. 풍수해(안전건설과)	102
2-2. 산사태(환경산림과)	114
2-3. 가뭄(안전건설과, 농업축산과)	122
2-4. 지진(안전건설과)	133
2-5. 황사(안전건설과)	144
2-6. 대설·한파(안전건설과)	147
2-7. 폭염(안전건설과)	160
2-8. 기타(낙뢰)-안전건설과	168
3.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171
3-1. 화재·폭발(정선소방서, 문화관광과)	171
3-2. 산불(환경산림과)	189

목 차

3-3. 시설물 재난사고(농업축산과, 안전건설과 등)	195
3-1). 댐(안전건설과)	195
3-2). 지반침하(안전건설과)	197
3-3). 체육시설(동계올림픽지원단)	200
3-4). 전통시장(지역경제과)	206
3-5). 자연휴양림시설(환경산림과)	210
3-6). 유형별 세부추진대책	214
3-4. 교통재난·사고(도시건축과, 안전건설과)	225
3-5.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환경산림과)	235
3-6. 환경(수질)오염(환경산림과)	242
3-7. 국가기반체계 마비(세무회계과,보건소,환경산림과 등)	249
7-1). 청사(세무회계과)	249
7-2). 의료서비스(보건소)	256
7-3). 폐기물(환경산림과)	261
7-4). 식용수(수질환경사업소)	267
7-5). 유형별 세부추진대책	271
3-8. 감염 병 (보건소)	276
3-9. 가축감염 병 (농업축산과)	287
3-10. 생활·레저 사고(안전건설과, 여성청소년과 등)	295
10-1). 승강기(안전건설과)	295
10-2). 전기·가스(지역경제과)	298
10-3). 물놀이(안전건설과)	305

목 차

10-4). 수상레저(동계올림픽지원단)	311
10-5). 청소년수련시설(여성청소년과)	317
10-6). 유형별 세부추진대책	319
3-11. 산업재난·사고(도시건축과, 지역경제과)	322
11-1). 건설현장(도시건축과)	322
11-2). 농공단지(지역경제과)	326
3-12. 식품사고(보건소)	330
3-13. 의료제품 사고(보건소)	339
3-14. 안전취약계층 사고(주민생활지원과, 안전건설과 등)	342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3-15. 자살(보건소)	355
3-16. 범죄·테러(여성청소년과, 자치행정과)	361
16-1). 가족·성·학교 폭력(여성청소년과)	361
16-2). CCTV(자치행정과)	366
4. 재난안전일반	370
4-1. 재난·사고 예방(안전건설과)	370
1-1). 교부세(안전건설과)	370
1-2). 지역축제(안전건설과)	373
1-3). 시특법(안전건설과)	379
4-2. 재난·사고 대비·대응(정선소방서)	383
4-3. 재난·사고 복구(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386

목 차

IV.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	389
1. 정선경찰서	393
2. 정선소방서	403
3. 정선교육지원청	439
4. 정선국토관리사무소	537
5. KT 원주지사 태백지점	585
6. 한국전력 정선지사	599
7. 정선국유림관리소	629
V. 재정투자계획	805
VI. 행정사항	815
■ 부 록 (재난유형별 담당자 현황 등)	821



2018 안전관리계획

JEONGSEON COUNTY

I 총 칙

제1장

총

칙

1. 개요
2. 성과 및 반성
3. 여건 및 전망
4. 추진방향

I

총 칙

1. 개 요

가.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

나. 수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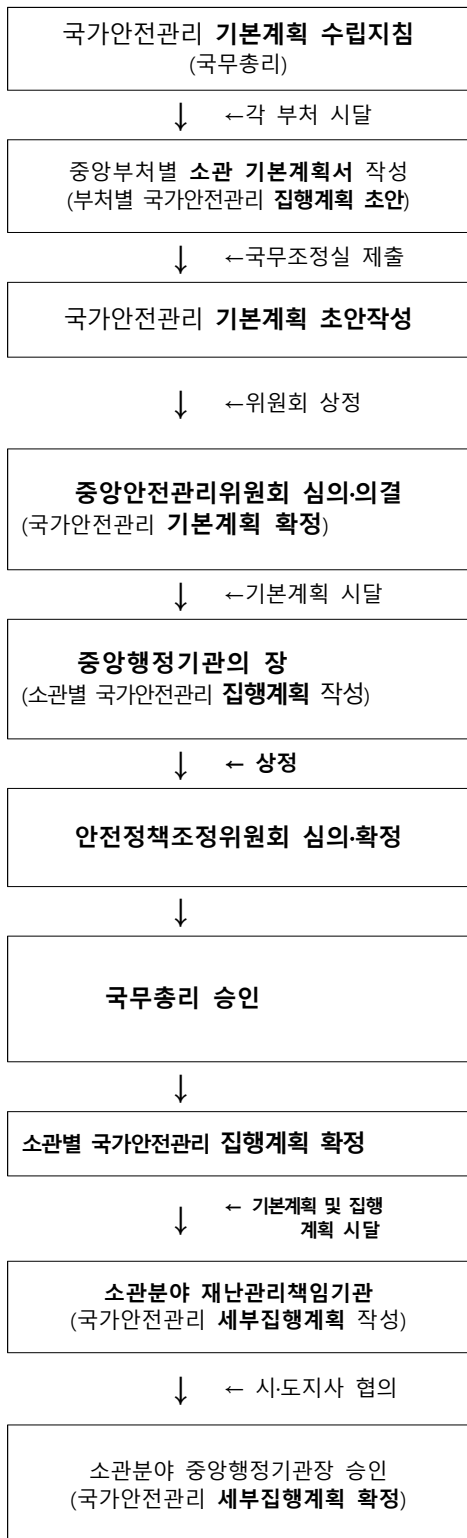
- 재난·사고 유형별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을 통한 피해저감 목표설정과 재난관리 특성에 맞는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재난관련부서 및 기관간의 협업 기능 강화로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
- 재난안전 주요정책과 연계한 안전관리대책 강화로 재난사고 피해 저감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다. 수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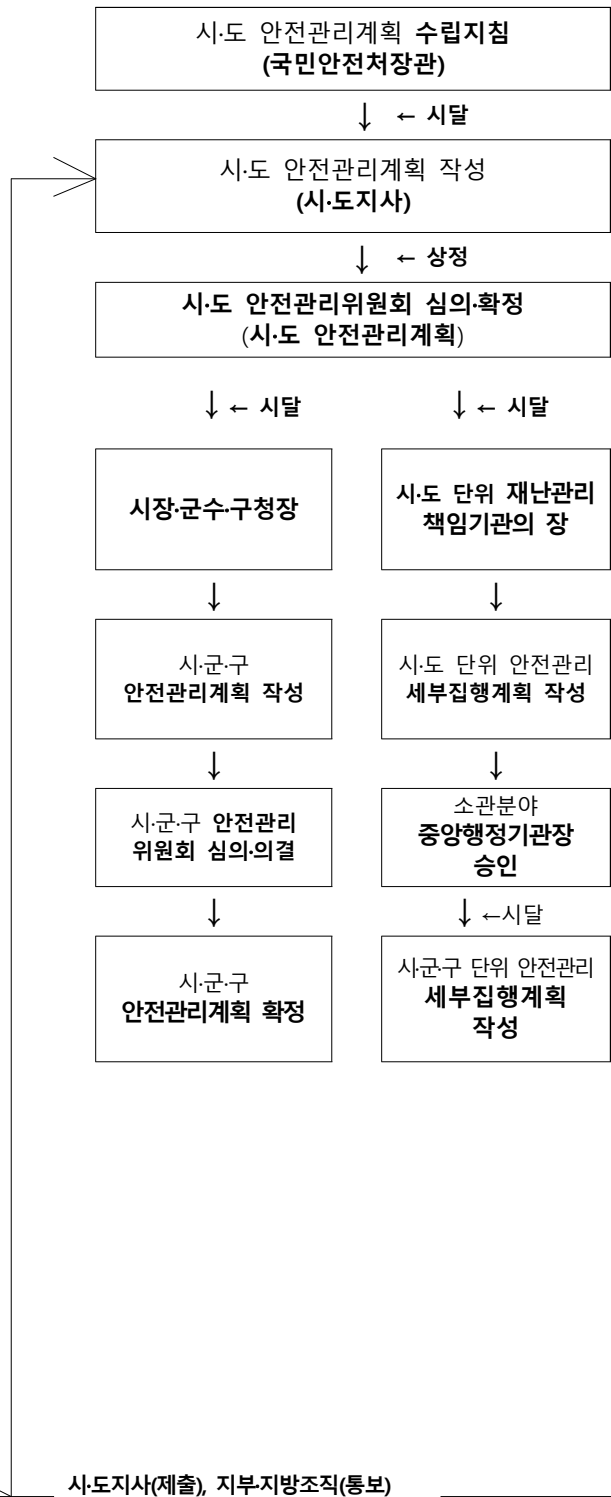
-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 － 국무총리(시행 행정안전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시달
 - － 중앙행정기관은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작성, 국무총리에게 제출
 - － 국무총리는 제출된 기본계획을 종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 (중앙위원회의 심의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시달)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에 의거 연도별 집행계획 작성
-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 － 행정안전부,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근거 계획 작성
 - －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확정 후 행정안전부 제출
 - － 시·군 계획 작성 수립지침 시달, 시·군 단위 안전관리계획 작성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도

〈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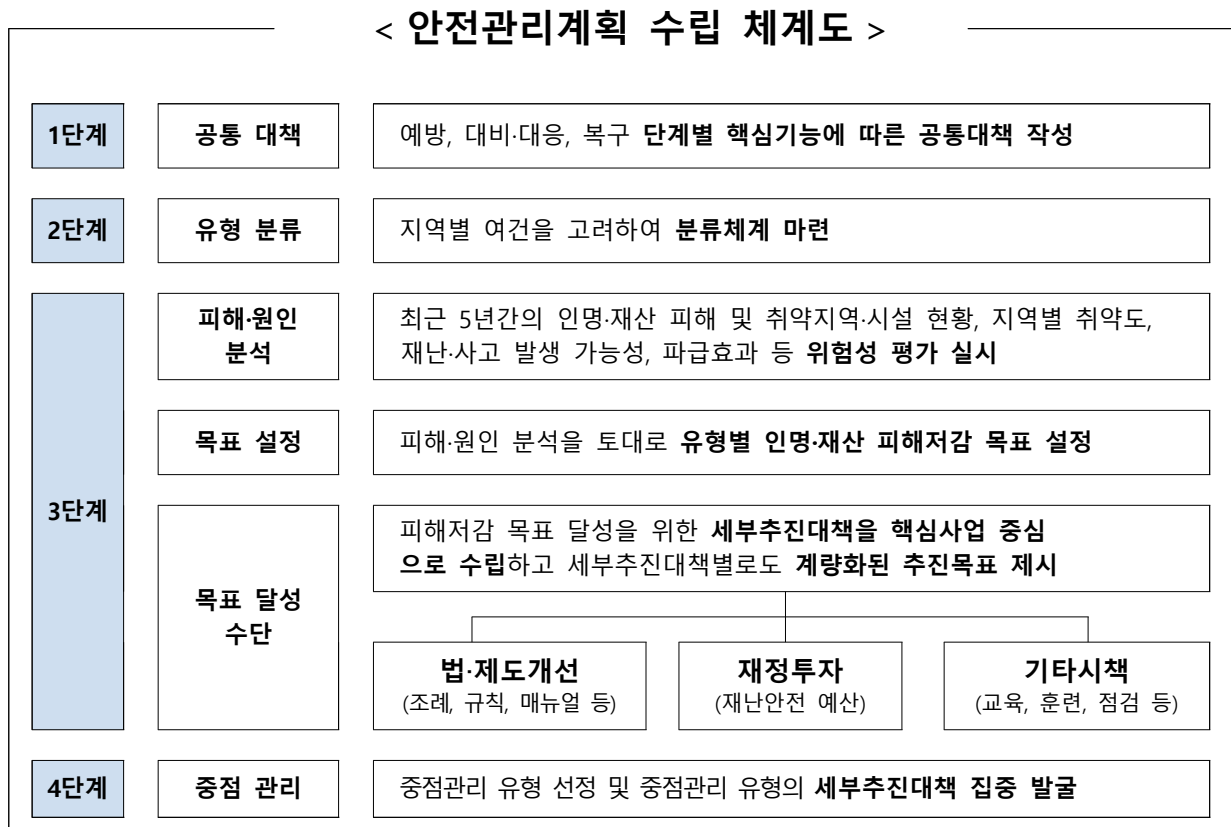
〈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



라. 수립분야

- (자연재난) 풍수해, 가뭄, 산사태 등 8개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화재·폭발, 산불, 감염병 등 17개
- (재난안전 일반) 교부세, 지역축제 등 5개

마. 수립체계



< 전년도와 달라진 점 >



2. 성과 및 반성

가. 추진성과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안전 대비태세 확립

- 동계올림픽 대비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 실시(2회), 재난분야 특별안전점검을 통한 안전한 올림픽 개최 기반 마련
- * 올림픽 대회 기간 안전운영단 운영('18.1~3월)

○ 안전한 정선 만들기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17.2.6.~3.31.) : 6개 분야 / 691건
-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 6회 / 10개 행사
- 소방·방재활동 지원(소방서, 의소대) : 306백만원
-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 1,314가구 / 95백만원

○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강화

- 다중 집합 장소 안전관리 강화
 - * 물놀이 위험지역(25개소) 안전 시설·장비 점검 및 안전요원 배치
 - * 캠핑장(20개소)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연 3회)
 - * 어린이 놀이시설(42개소) 일제점검 및 정기검사, 안전교육 실시
- 생활 주변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로 군민 안전도모, 재해 예방
 - * 건축물, 축대, 포트홀 등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처리 : 15건/100백만원

○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도로 조성

- 노후 교량 보수·보강 공사 : 2개소 / 300백만원
- 군도1호 여량 급경사지 정비사업 : 1개소 / 800백만원
- 무릉3리 자뫓골 인도교 설치 : 1개소 / 300백만원
- 2018 동계올림픽 대비 제설대책 추진 : 7개분야 / 3,115백만원

○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 : 6개소 / 5,278백만원

- 지방하천(지장천) : 2개소 / 2,506백만원
- 소하천(3개소, 정비종합계획 용역) : 4개소 / 2,772백만원

○ 재해 예방 사업 추진 및 방재 종합계획·시스템 구축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1개소 / 1,135백만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3개소 / 3,600백만원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변경) : 1식 / 350백만원
- 홍수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1식 / 400백만원
- 정선군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 1식 / 100백만원

< 주요성과 >

- 물놀이 안전관리 전국 우수기관 선정 → 기관 표창 : 국무총리
-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평가 기관 표창 → 우수
- 재난관리평가 기관 표창(우수) : 15백만원
- 2017년 자연재해 예방사업 우수 기관 표창 : 행정안전부

나. 반 성

- 전체 시·도(17개) 대비 지역안전지수(범죄) 저등급
 - 안전지수는 7개 분야 중 화재 분야(2등급)는 높은 수준이나 나머지 5개 분야(교통,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는 3등급에 머물렀으며 범죄 분야는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지역안전지수 향상 대책 필요
- * 2018년도는 지역안전지수(범죄) 3등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

3. 2018년 여건 및 전망

□ 국·내외 여건 및 전망

○ 기상이변에 따른 국부적인 피해양상 변화 추세

- 최근 5년간('13~'17) 풍수해로 90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총 8회의 재해로 2,033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도로교량 및 하천 피해가 801건, 기타(농경지, 군사시설 등) 1,232건, 이재민 36명 발생
- 풍수해 피해는 집중호우·대설 등으로 인한 수해관련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재해예방사업 및 예찰활동으로 차츰 감소하는 추세임
 - * 재해원인별(피해규모) : 집중호우>대설>태풍>강풍 순으로 발생
- 내진설계 의무 기준이 1988년 제정되었으나 6층이상 연면적 100,000㎡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으로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건축물이 다수 존재
- 활성단층의 지각변동이 잦아지면서 2016년 경주 지진, 울산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을 통해 내진설계 부족에 따른 피해 가중, 현행 법령상 내진설계 적용 건물은 20%로 미치지 못함.

○ 신종유형의 감염병 발병 및 패턴 변화

- 최근 증가하는 감염병은 기후 온난화, 해외여행객 증가, 신종감염병 출현, 식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연중 증가
- 교통의 발달, 여행객의 증가로 인해 해외 발생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 가능성이 높고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여러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에 따른 면역 취약계층의 비중이 확대로 결핵환자 관리대책 중요성 강조

○ 복합적 요인에 의한 안전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관리 소홀

- 사회·경제적 문제' 및 '건강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하여 도내 자살율 전국상위(3위)
 - * 고독, 빈곤, 자살예방 인프라 부족, 신체질환 등이 원인

4 추진방향

비전

재난·재해 ZERO화로 군민 행복지수 제고



목표

재난에 안전한 사회조성, SOC기반 확충 및 균형 유지



분야별 목표	주요 과제 (핵심업무)
군민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재해·재난의 선제적 대응	▶ 군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사회재난의 선제적 예방 ▶ 자연재난 위험 지역 방재 시스템 구축
재난현장 대비체계 확립	▶ 재난대비 안전기반 구축 ▶ 스마트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 신속대응 기반 구축 ▶ 재난대응 역량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유지	▶ 재난관리 역량 강화 ▶ 협업부서·기관별 유기적 대응체계 확립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 신속한 조사 및 복구 실시 ▶ 이재민 보호 및 생활안정
군·관 상생발전, 통합방위태세 확립	▶ 군·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 ▶ 통합방위, 위기 대응역량 강화

가. 군민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재해·재난의 선제적 대응

(1) 군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재난유형별(자연·사회재난, 안전관리)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을 통한 피해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피해저감 대책 마련
- 군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등 각종 홍보 등으로 생활 속의 군민 안전문화 운동 전개
 - * 「안전신문고 앱」 이용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 신고 활성화 유도
-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 운영 등 군민의 자발적인 위험요인 신고를 통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2) 사회재난의 선제적 예방

- 사회재난 상시모니터링과 신속대응체계 유지 및 예방활동 전개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통한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진단,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개선
- 안전 점검 생활화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 * 해빙기 안전점검, 여름철 물놀이 안전 여건조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등
- 저소득층(수급자 등)과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화재 취약요인 제거로 대형재난 사전예방

(3) 자연재난 위험 지역 방재 시스템 구축

- 지역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및 풍수해 관련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종합적인 풍수해 종합계획(변경) 수립
-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 선제적 예방
-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피해 최소화
 -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추진 등
- 도로변의 위험요인 선제적 정비로 사고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체계적인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로 군민 안전 도모

나. 재난현장 대비체계 확립

(1) 재난대비 안전기반 구축

- 재난대비훈련을 통한 신속한 초기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업기능 적극 가동
- 재난대응 프로세스 단계별 행정절차 위주의 작성체계 전면 개선을 통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운용

(2) 스마트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노후 재난 감시 시스템 개선

(3)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대응 기반 마련

- 계측기관별 홍수 예·경보시설 정보 공유 및 중·소하천에 대한 홍수 도달(유량·시간) 사전 예측으로 신속대응 기반 마련

(4) 신속한 재난대응을 교육·훈련 강화

- 재난책임기관 담당자와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 실시로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등 현장중심훈련을 통하여 실전 대응 역량 강화

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유지

(1)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태세 유지를 통한 재난상황 관리역량 강화

- 상황전파시스템(Safe-On) 활용, 재난상황 보고·전파훈련 지속 실시를 통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확립
- 신속한 신고접수·출동지령 및 상황전파 실시
 - * 긴급재난문자(CBS) 효율적 운영

(2) 협업 부서·기관별 유기적 대응체계 확립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상황판단 및 협업 부서·기관별 유기적 대응체계 확립
- 민·관·군의 긴밀한 관계유지 및 협업을 통한 유기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조기 수습체계 확립

라.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1) 신속한 조사 및 복구 실시

-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항구적인 복구계획 수립으로 신속한 복구

(2) 응급구호와 기금을 활용한 이재민 보호 및 생활안정

-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응급구호와 기반 조성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재난경험자 심리 회복 지원활동

마. 군·관 상생발전 통합방위태세 확립

(1) 군·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

-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 군부대 환경개선 사업 등
- 제대 예정 군장병 상품권 지급, 관내 주요 관광지 견학 지원 등

(2) 통합방위, 위기대응 역량 강화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4회/연)
- 중점관리자원확인연 행사(4회/연), 을지연습(8월), 충무훈련(10월) 실시 등



2018 안전관리계획

JEONGSEON COUNTY

Ⅱ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대책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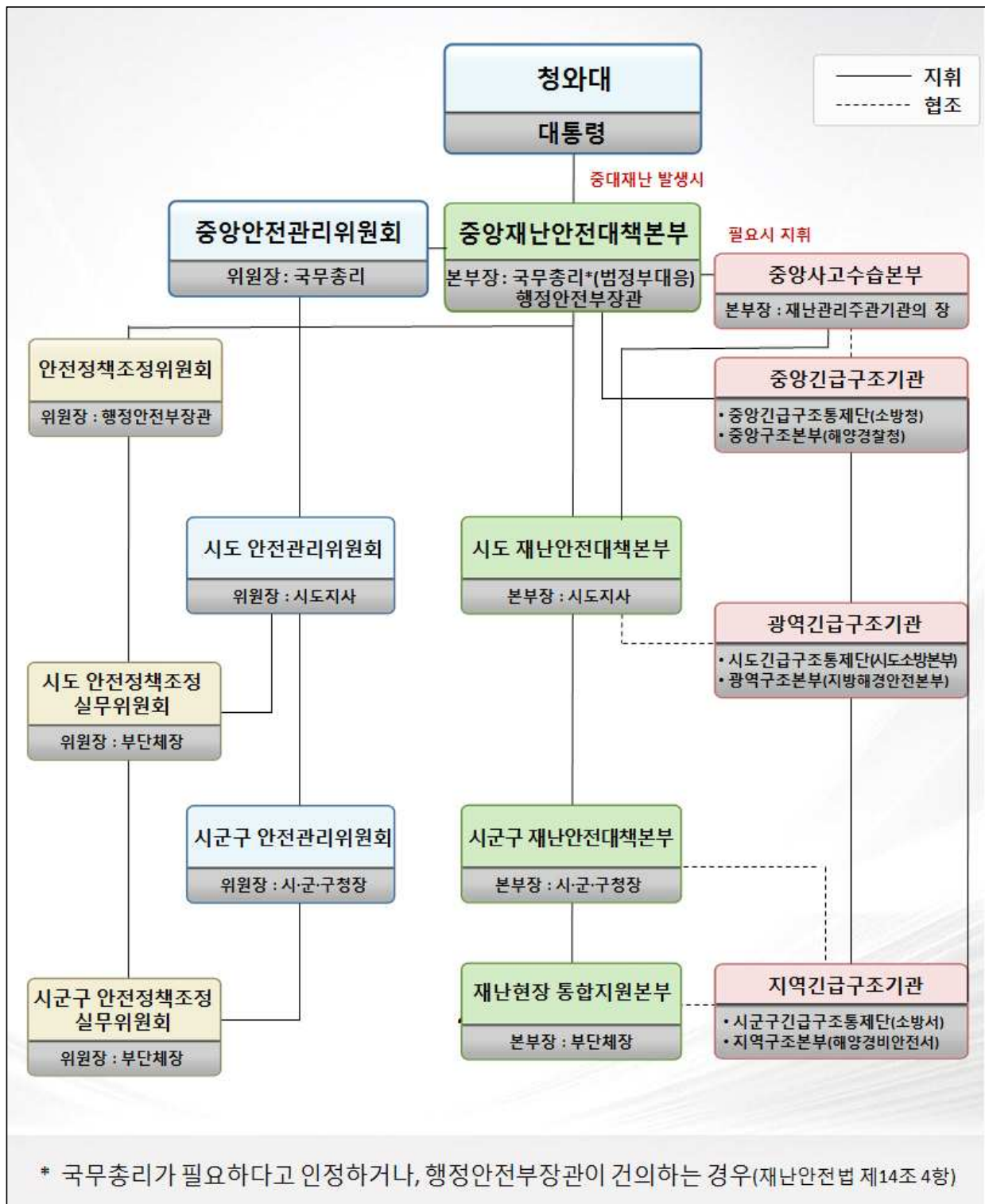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대책

1. 국가안전관리체계 총괄
2. 정선군 재난관리체계
3.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대책

1. 국가안전관리체계 총괄

가. 체계도



나. 주요 기구별 기능

구 분	기 능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 분야별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 분야별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심의 ○ 중앙행정기관간 재난·안전관리업무 협의·조정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건의사항 심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 중앙위원회 부의안건 검토,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협의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 장관)	○ 대규모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 ○ 재난 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및 필요시 현장 파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장)	○ 관할지역내 재난·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총괄, 지휘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대응활동 총괄 지휘 ○ 긴급구조 활동 지휘 및 통제 ○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명령 등 주민 보호조치 이행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시·군·구 부단체장)	○ 재난 현장에서 재난상황 수습 - 재난현장 상황전파, 출동, 조치, 긴급복구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 위기징후 목록 작성·운영 ○ 소관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 대규모 재난발생시 소관분야 기술제공 등 수습활동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미설치시 재난수습 현황 종합·조정 ○ 산하기관 등 재난책임기관 활동 종합 및 조정
지역사고수습본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등)	○ 관할지역내 소관분야 재난대비 예방활동 ○ 자체 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직원 파견 등 지원 ○ 사고 대응정보 제공 및 수습활동 지원 ○ 사고 원인조사 및 피해 평가
중앙긴급구조통제단/본부 (소방/해경청장)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지원 - 긴급구조활동 지휘, 통제, 긴급구조, 지원기관간 역할 분담
지역긴급구조통제단/본부 (소방·해경본부장, 소방·해경서장)	○ 지역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긴급구조, 지원기관 지휘·통제

다. 주요 중앙행정기관별 기능

부 처	기 능
행정안전부	- 주관 : 공동구, 위험물 사고, 풍수해·지진·화산·낙뢰·가뭄, 정부중요시설 사고 - 재난상황관리 총괄 - 상황판단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 - 사고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지방세 감면 지원 - 재난안전통신망(LTE, TRS) 재난현장 지원 - 자원 응원 요청 및 조정,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등
소방청	- 주관 : 화재 - 인명 구조·구급활동 -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해경청	- 주관 : 수난 - 인명 구조·구급활동 - 중앙(지역) 구조본부 운영
기획재정부	피해에 대한 예산 및 세제지원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 주관 : 공동구 재난, 고속철도 사고, 댐 사고, 도로터널 사고, 광역상수도 사고, 육상화물운송 사고, 지하철·항공기 사고, 항공 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피해시설 응급복구 * 하천, 철도,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등 - 하천 및 댐 홍수량 조절·관리(홍수예보발령 등) - 교통두절시 응급복구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실시 - 긴급복구물자 운송지원 등 특별수송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 가축 질병, 저수지 사고 - 피해시설 응급복구 *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등
해양수산부	- 주관 : 적조, 조수, 해양 환경오염 사고, 해양 선박 사고 - 피해시설 응급복구 * 어항시설, 어선, 항만시설,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양식시설 등 - 항만하역 및 선박 입·출항 통제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실시
교육부	- 주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피해시설 응급복구 * 국립·공립·사립 학교시설 등 - 이재민 수용시설(학교 강당, 체육관 등) 지원 등
산림청	- 주관 : 산불, 산사태 - 피해시설 응급복구 * 산사태,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산림작물 등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 - 휴양객 대피, 등산로 통제 및 휴양시설물 순찰강화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주관 : 우주전파 재난, 정보통신 사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혼신,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 피해시설 응급복구 * 정보통신시설 등 - 재난발생 피해지역 방송통신시설 긴급 지원

부 처	주 요 임 무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원유수급 사고, 원전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 전력 사고,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에너지 긴급 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 재난현장 및 에너지 공급 고립지역 긴급 지원 요청 -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 지원 - 이재민 임시 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보건복지부	- 주관 : 감염병 재난, 보건의료 사고 - 현장 응급의료소 의료진 및 의료물자 등 확보·지원 - 응급진료 비상체계 운영 및 지원 - 재해지역 방역대책 활동 강화
환경부	- 주관 : 수질오염 사고, 식용수 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녹조, 황사 - 먹는 물 공급대책 및 상하수도 시설 응급 복구 - 재해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외교부	- 주관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재난관리상황 모니터링 - 외국인 사상자 발생 현황 등 국내 외국 대사관에 사고 상황 통보 - 외국의 구조지원 협조에 대한 정부 대응 통합창구 운영
국방부	- 주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지원 요청 상황 접수 및 출동지원 - 전문 재난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구조 활동 간 2차 재난방지를 위한 경계구역 설정·통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방송, 언론활동 지원
기상청	태풍진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전파
경찰청	- 비상연락망 유지, 순찰 및 지원인력 출동태세 점검·정비 - 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 사망자 신원 확인,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 재해지역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법무부	주관 :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부	주관 :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방송통신위원회	- 재난방송 홍보 지원체계 점검 - 재난상황 대국민 홍보방송, 재난방송 실시 지원
금융위원회	주관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 주관 : 원자력안전 사고,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방사능 유출에 따른 폐기물처리
문화재청	주관 : 문화재 시설 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사고 위기대응 주관 - 상황접수 및 전파, 대응·복구

2. 정선군 재난관리체계

가. 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1)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 「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2) 구성 : 11명

구 분	소속 · 직위	비고
위 원 장	정선군수	
위 원	정선부군수	
“	정선경찰서장	
“	정선소방서장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장	
“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	정선국유림관리소장	
“	KT 원주지사 태백지점장	
“	한국전력 정선지사장	
“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장	

(3) 기 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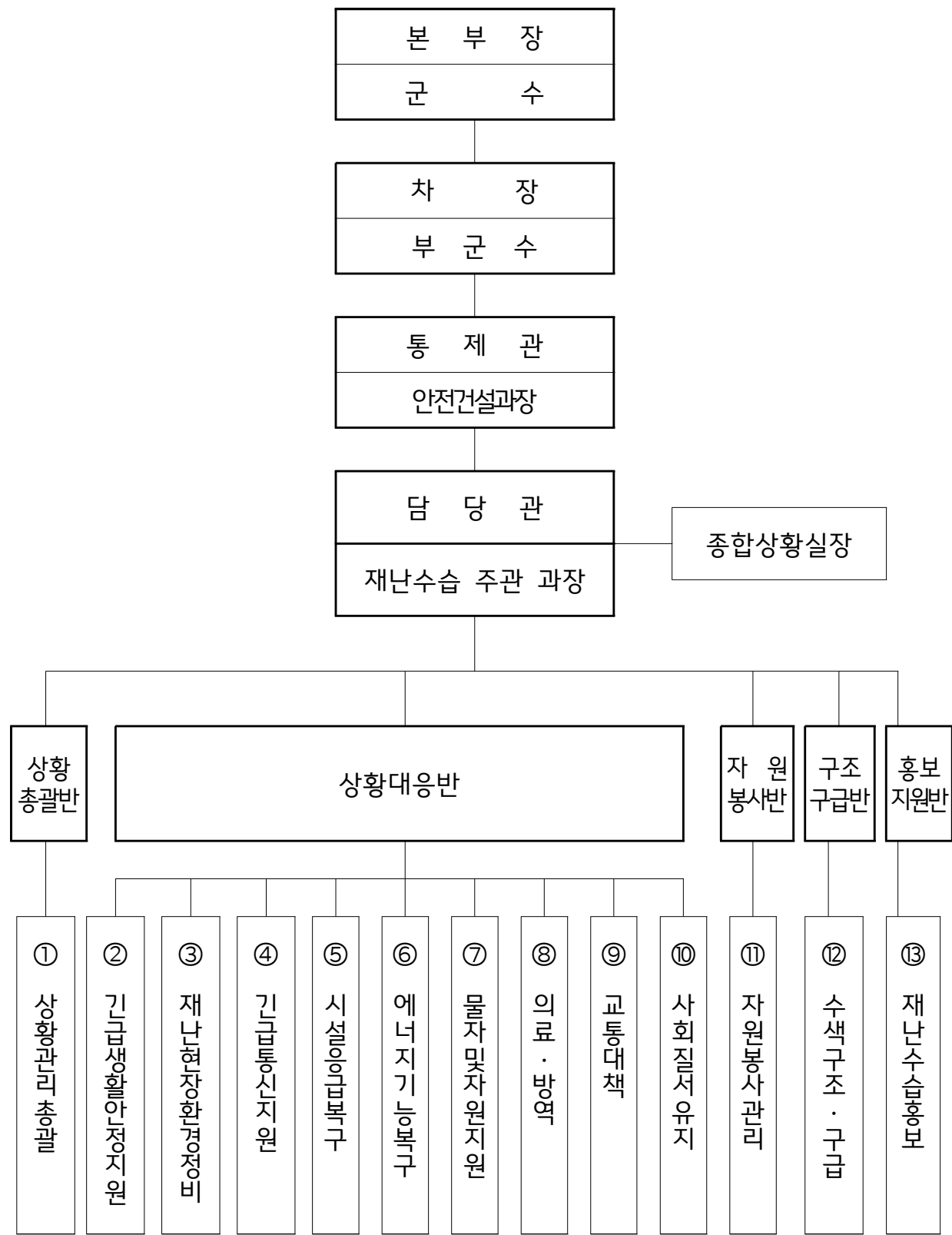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4) 운 영

- 정기회(상·하반기), 임시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나.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1) 체계도



※ 협업기능 및 실무반은 재난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2)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3) 기능

-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 그 밖에 군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운영

- 본부장(군수) : 대책본부 업무 총괄
- 차장(부군수) : 본부장 보좌
- 통제관(안전건설과장) : 본부장, 차장 보좌, 재난수습 전반 통제
- 담당관(재난수습주관 부서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 실무반 : 13개 협업기능별로 운영되며, 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파견자 등으로 편성

(5) 주요임무

구 분		주 요 업 무	비고
통제관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TV 방송 모니터링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재난수습주관 및 총괄 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인명피해 상황관리 6. 재산피해 상황관리 7.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8.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9. TV 방송 모니터링 10. 민심동향, 미당사례 등 확인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3. 비상근무 단계 결정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5.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7.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8.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9.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0.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행정지원	자원봉사자, 상황근무자 등 행정지원	자 치 행 정 과
긴급생활 안전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주민 생활 지원과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재난현장 환경정비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환경 산림과
긴급 통신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자 치 행정과
시설 응급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해당 부서
에너지 기능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지 역 경제과
재난수습 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기 획 감사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2.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 전 건설과
교통대책	1.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육상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수송차량 지원 3. 긴급수송 지원	도 시 건축과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및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관리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자 치 행정과
사회질서유지	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4.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자 치 행정과
구조·구급	1. 재난지역 구조, 구급 지원 2.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보건소
유관기관	자연재난 관리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6) 사회재난 실무반 기능과 역할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총괄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황관리팀 1. 재난상황관리 기능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행정지원팀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 자원봉사자 등 지원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업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3. 긴급통신 지원기능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4.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7.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도로) 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12. 재난수습 홍보 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13. 재난지역 수색, 구조, 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7)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가) 비상 1단계

○ 가동기준

- 호우·대설 : 호우·대설주의보 발령시
- 태풍 : 예비특보 발효시

○ 실무반 편성 : 6명 + α

통 제 관 (재난업무담당과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6명+α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 재난상황관리반(5) 재난상황실(1) : 상황근무자 자연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영월기상대 자체상황근무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기획감사실(α), 자치행정과(α), 세무회계과(α) 여성청소년과(α), 주민생활지원과(α), 환경산림과(α), 문화관광과(α), 지역경제과(α) 안전건설과(α), 도시건축과(α), 농업기술센터(α) 동계올림픽지원단(α), 보건소(α), 수질환경사업소(α)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 2단계

○ 가동기준

-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발령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시
-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시

○ 실무반 편성: 14명+ α + 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재난업무담당과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4명+ α + β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 α)	- 재난상황관리반(6+ α) 재난상황실(1) 재난 주관부서(2) 정선경찰서(1), 정선소방서(1), 영월기상대(1)
	상황보고서 작성 (3+ α)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 α)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지역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반 (1+ α)	- 자치행정과 직원(1+ α) ※ 자원봉사자, 상황근무자 등 행정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기획감사실(α), 자치행정과(α), 세무회계과(α) 여성청소년과(α), 주민생활지원과(α), 환경산림과(α), 문화관광과(α), 지역경제과(α) 안전건설과(α), 도시건축과(α), 농업기술센터(α) 동계올림픽지원단(α), 보건소(α), 수질환경사업소(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정선 국토관리사무소, 한국 전력공사 정선지사, KT 정선지사, 정선 국유림관리소)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 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 3단계

○ 가동기준

-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발령시, 대규모 피해 예상(발생)시
- 태풍 : 태풍경보 발령시, 대규모 피해 예상(발생)시

○ 실무반 편성: 19명+ α + 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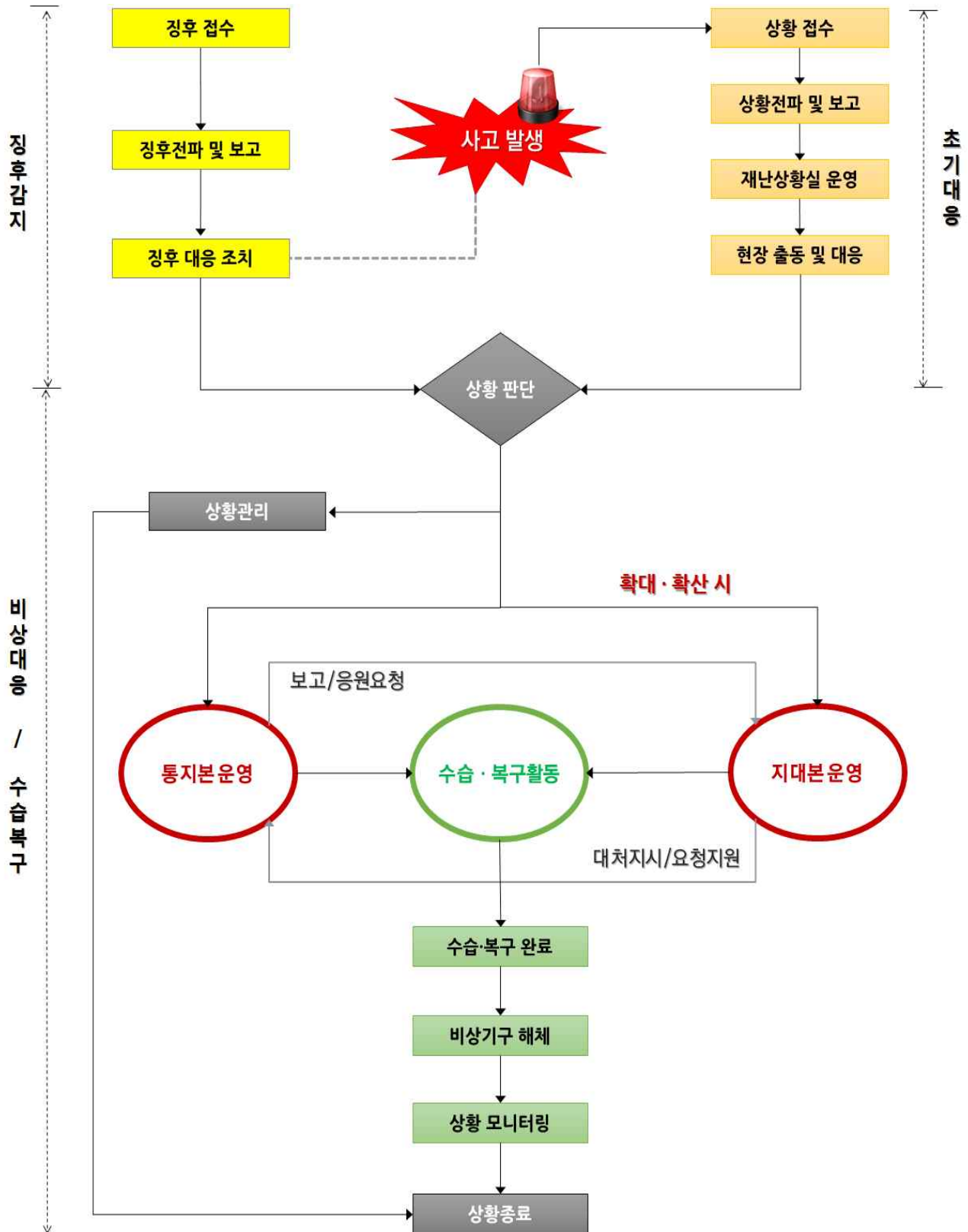
통 제 관 (재난업무담당과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9명+ α + β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 α)	- 재난상황관리반(7+ α) 재난상황실(2) 재난 주관부서(2) 정선경찰서(1), 정선소방서(1), 영월기상대(1)	
	상황보고서 작성 (3+ α)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 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 α)	- 재난 총괄부서(2), 주관부서(5)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지역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 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반 (1+ α)	- 자치행정과 직원(1+ α) ※ 자원봉사자, 상황근무자 등 행정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기획감사실(α), 자치행정과(α), 세무회계과(α) 여성청소년과(α), 주민생활지원과(α), 환경산림과(α), 문화관광과(α), 지역경제과(α) 안전건설과(α), 도시건축과(α), 농업기술센터(α) 동계올림픽지원단(α), 보건소(α), 수질환경사업소(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정선 국토관리사무소, 한국전력 공사 정선지사, KT 정선지사, 정선 국유림관리소)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중앙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8)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대응 절차도



○ 가동 기준

-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재난업무담당과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1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	- 재난상황관리반(6+α) 재난상황실 (2) : 상황근무자 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 (3+α)	-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 정보 모니터링
	행정지원반 (1+α)	- 자치행정과 직원(1+α) ※ 자원봉사자, 상황근무자 등 행정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기획감사실(α), 자치행정과(α), 세무회계과(α) 여성청소년과(α), 주민생활지원과(α), 환경산림과(α), 문화관광과(α), 지역경제과(α) 안전건설과(α), 도시건축과(α), 농업기술센터(α) 동계올림픽지원단(α), 보건소(α), 수질환경사업소(α)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국토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 KT 정선지사),

(9) 자연재난 단계별 비상근무체계

- (비상근무) 보강단계·비상단계(3단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운영으로 재난 대응 ⇨ 본청(실과소) 및 읍면

【기상 예보별 비상근무 체계】

구 분			준비단계	비 상 단 계			비고
			기상예측 정보접수	1단계 (예비특보)	2단계 (주의·경보)	3단계 경보(심각)	
군 청	총괄 (지휘)		상황실장 (재해예방담당)	담당관 (안전건설과장)	차장 (부군수)	본부장 (군수)	
	근무 조	재대본	5명 재해예방팀	6명+ α (상황·협업반)	14명+ α (해당협업반)	19+ α + β 명 (협업반)	
		실과소 (협업반)	비상근무 사전예고	비상동원 대기	1/2 또는 전직원 비상근무	전직원 비상근무	
	유관기관		비상근무 사전예고	비상동원 대기	비상근무	재대본 파견근무	
읍 면	총괄 (지휘)		재해담당자	산업개발담당	읍면장	읍면장	
	근무 인원		2명	5명	전직원	전직원	
	유관기관 및 단체		비상근무 사전예고	비상동원 대기	자율방재단, 중장비 협회, 청년회, 이반장, 자원봉사단 등 총동원령		

【기상특보 발령기준】

구 분		내 용
호 우	주의보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경보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강 풍	주의보	육상에서 평균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경보	육상에서 평균풍속 21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태 풍	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호우·강풍·풍랑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폭 염	주의보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10) 사회재난 단계별 비상근무체계

○ (비상근무) 보강단계·비상단계(3단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운영으로 재난 대응 ⇨ 본청(실과소) 및 읍면

구 분		준비단계	비 상 단 계			비고
		예측 정보접수	1단계 (예비)	2단계 (주의·경보)	3단계 경보(심각)	
군 청	총괄 (지휘)	상황실장 (안전관리담당)	담당관 (안전건설과장)	차장 (부군수)	본부장 (군수)	
	근무조 재대본	3명 안전관리팀	6명+ α (상황·협업반)	14명+ α (해당협업반)	19+ α + β 명 (협업반)	
	실과소 (협업반)	비상근무 사전예고	비상동원 대기	1/2 또는 전직원 비상근무	전직원 비상근무	
	유관기관	비상근무 사전예고	비상동원 대기	비상근무	재대본 파견근무	
읍 면	총괄 (지휘)	재해담당자	산업개발담 당	읍면장	읍면장	
	근무원	2명	5명	전직원	전직원	
	유관기관 및 단체	비상근무 사전예고	비상동원 대기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부녀회, 리반장, 자원봉사단 등 총동원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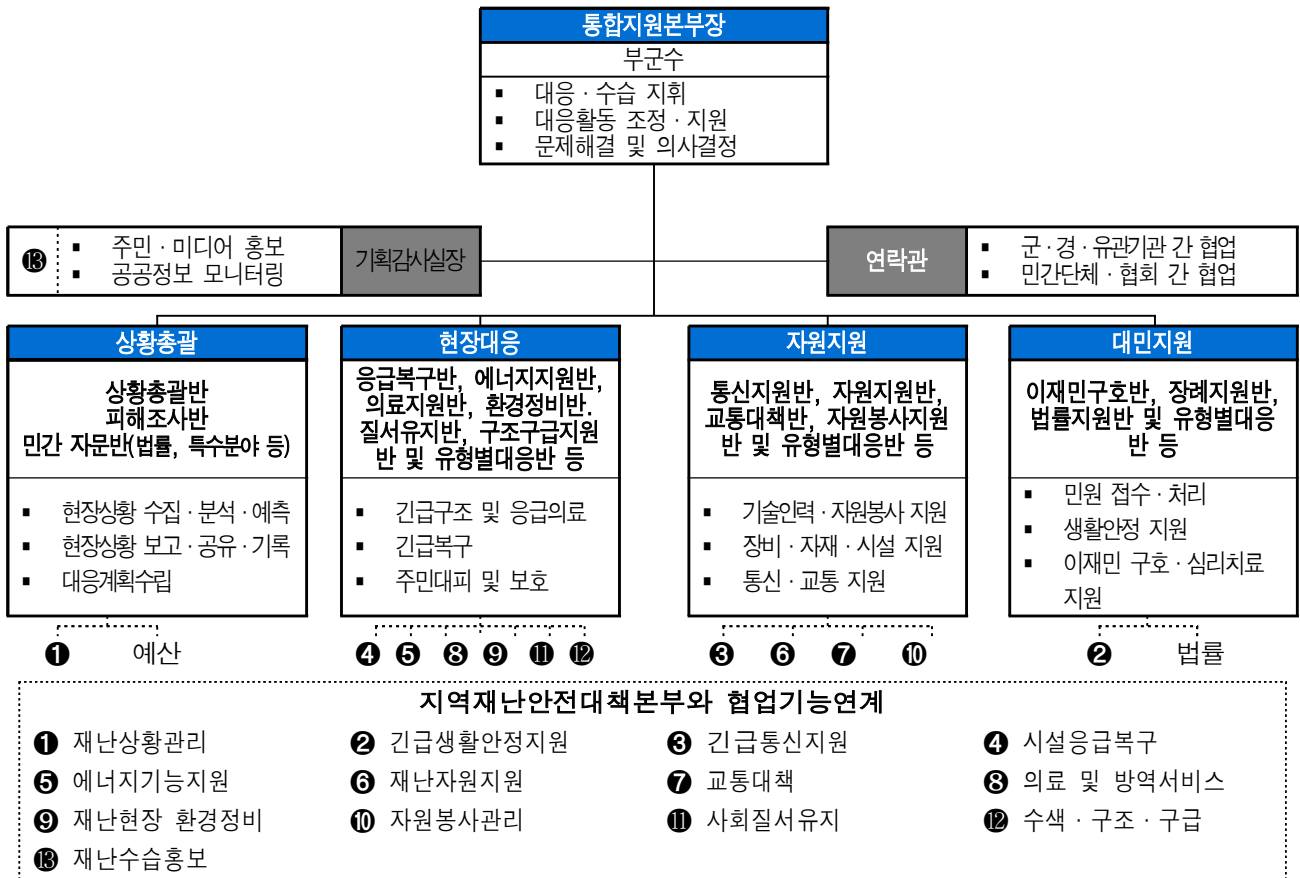
(11) 재난 수습 주관부서

분야	위기유형	주관기관		담당부서
		중앙부처	강원도	
자연재난	풍수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안전건설과
	지진	행정안전부		
	대형화산폭발	행정안전부		
	적조	해양수산부	환동해본부	—
사회재난	산불	산림청	녹색국	환경산림과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환동해본부	—
	댐붕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건설교통국	안전건설과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정선소방서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난안전실	자치행정과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환동해본부	—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노동부	경제진흥국	지역경제과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지역경제과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국	농업축산과
	감염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소
	정보통신	미래창조과학부	경제진흥국	자치행정과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실	—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진흥국	지역경제과
	원유수급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소
	식용수	환경부/국토교통부	녹색국	수질환경사업소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도시건축과
	성폭력	여성가족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과
주요상황 매뉴얼	도로터널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안전건설과
	가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진흥국	지역경제과
	내수면유도선사고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실	안전건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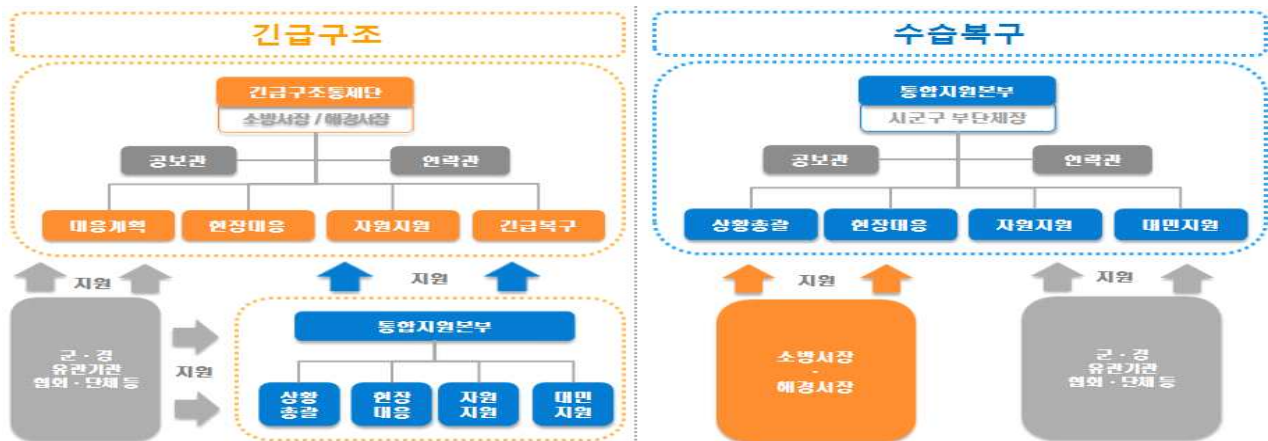
※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1) 체계도



<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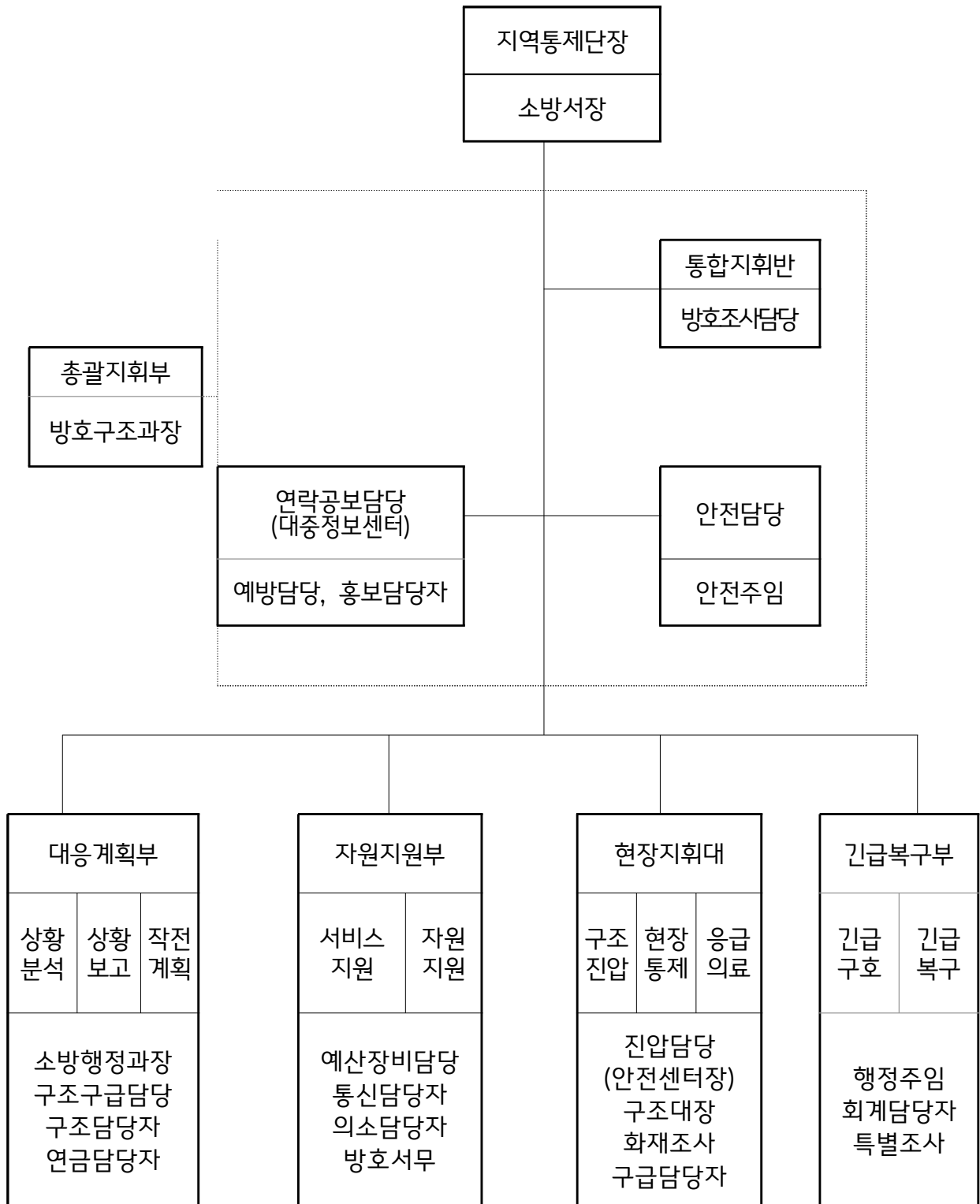
2) 통합지원본부의 기능 및 임무

구 분	실 무 반		주 요 임 무	소관 부서장	지대본 연계
지휘부	본부장		- 통합지원본부 운영 총괄·조정 - 통합지원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부군수 (필요시 단체장)	① 재난상황관리
	기획감사실장		- 주민·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지상파 방송, 지역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 언론브리핑 - 취재지원	기획감사실장	
	연락관		- 각 기관 대표자들의 의견 조율 - 통합지원본부장의 연락창구 역할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 및 협회, 전문가 간 협업	자치행정과장	
상황총괄반	상황총괄반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 현장대응계획수립 - 현장상황관리관 및 전문대응팀 파견 - 예산 확보 및 집행 - 현장보고서 작성 -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브리핑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 -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 예산 확보 및 집행	안전건설과장 종합상황실장	① 재난상황관리
	피해조사반		피해현황 조사 및 기록		
	전문자문단		- 현장상황 분석 및 예측 자문 - 현장대응계획수립 자문	민간전문가	
현장대응반	응급복구반		- 공공·사유시설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 복구추진 소요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및 협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도시건축과장 안전건설과장	④ 시설응급복구
	에너지지원반		-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 구조구급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지원	지역경제과장	⑤ 에너지기능지원
	의료지원반		-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 피해자 심리지원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보건소장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환경정비반		- 생활쓰레기 처리 -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 재난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환경산림과장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질서유지반		- 교통혼잡 완화 조치 -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지원 - 응급환자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동선 확보 -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	생활안전교통과장 (정선경찰서)	⑪ 사회질서유지
	구조구급지원반		- 재난발생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 환자 발생 시 응급치료 및 긴급후송 지원	방호구조과장	⑫ 수색·구조·구급
	이동지원반	산불진화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	환경산림과장	① 재난상황관리

구 분	실 무 반		주 요 임 무	소관 부서장	지대본 연계
	대응반	건물 안전진단	▪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	도시건축과장	④ 시설응급복구
		제설 지원	▪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 리조트 붕괴 사고)	안전건설과장	⑥ 재난자원지원
		오염 처리	▪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 불산 누출 사고)	환경산림과장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농·축산 지원	▪ 축산피해농가 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 농작물 정밀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농업축산과장	① 재난상황관리
자원지원	통신지원반	▪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 통신시설 파손에 따른 통신두절 상황관리 ▪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 긴급통신장비 보급	자치행정과장	③ 긴급통신지원	
	교통대책반	▪ 피해현장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관리 ▪ 피해현장 주변 차량 우회대책 마련 ▪ 대중교통 운행 중단시 대체수단 투입 ▪ 통행 해소시기 예측 관리	도시건축과장	⑦ 교통대책	
	자원지원반	▪ 자원지원 요청사항 처리 ▪ 현장 자원상태 기록 관리 ▪ 재난현장의 자원수요 예측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 ▪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동원 ▪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	안전건설장	⑥ 재난자원지원	
	자원봉사 지원반	▪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자 재난현장 배치 및 안내 ▪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자원봉사 활동시 소요되는 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 등 지원 ▪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및 안전관리	자치행정과장	⑩ 자원봉사관리	
대민지원	이재민 구호반	▪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지원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 피해자 생계지원 등 ▪ 재난지원금 지원 ▪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장례지원반	▪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법률지원반	▪ 민간법률자문	기획감사실장		
유관기관	유관기관	▪ 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 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 ▪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업무 수행	유관기관 파견자	-	

라. 긴급구조통제단

(가)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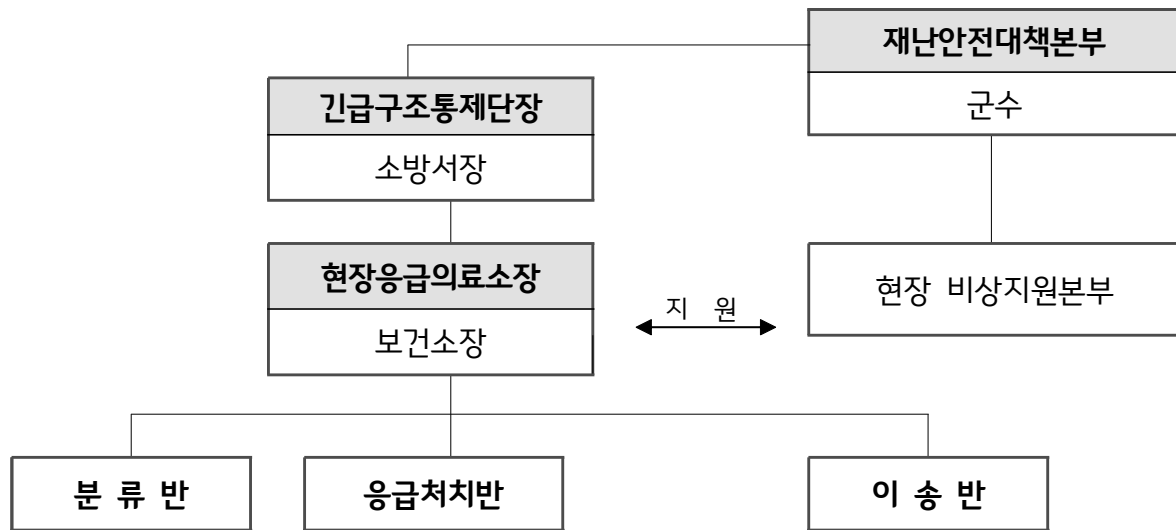


(나) 주요임무(괄호 업무대행자)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지역통제단장 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총괄지휘부 방호구조과장 (방호조사담당)	통합지휘반 방호조사담당 (방호구조과장)	1. 현장 필요사항의 행정적, 물질적 지원 2. 지원기관 협력, 기관별 임무분담 3. 기타 통제단장 활동의 지원
	연락공보 예방담당(홍보담당자) 홍보담당자(예방담당)	1. 대중정보제공 및 언론관리 2. 비상경고계획 이행 3. 긴급구조활동 영상기록
	안전담당 안전주임(방호조사담당)	1.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2. 대원 안전관리 (휴식, 교대 등)
대응계획부 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담당)	상황분석반 구조구급담당(구조담당자)	1.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2.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상황보고반 연금담당자(구조담당자)	1. 통제단 운영일지, 보고서 작성 2. 시·도지사, 의회 등 요청자료 작성 3. VIP방문 대응 (방문계획 파악, 보고자료 준비 등)
	작전계획반 구조담당자(연금담당자)	1.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2. 자원관리 및 배분
자원지원부 예산장비담당 (통신담당자)	서비스지원반 통신담당자(방호서무) 방호서무(통신담당자)	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2. 긴급구조자원 수송 지원 3. 통신, 전기, 조명 등 현장 활동 필요 설비 설치
	자원지원반 예산장비담당(의소담당자) 의소담당자(예산장비담당)	1. 현장 동원자원의 파악, 관리 2. 자원대기소 운영 3. 자원집결지 운영 및 관리 4. 항공운항통제

마. 긴급구조현장지휘소

1). 조 직



2). 기 능

- 의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물품 확보·관리
- 의료기관 현황 파악·관리 및 연락체계유지
- 재난현장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3).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긴급구조통제단장	- 재난발생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출동 요청 -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현장응급의료소장	- 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 관할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파악·관리
분 류 반	- 사상자 중증도 분류(사망, 긴급, 응급, 비응급) - 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및 응급처치표 작성
응 급 처 치 반	-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소장에게 지원요청
이 송 반	-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송

바. 주요 유관기관별 역할

기 관		임 무
정선경찰서		신고접수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현장도착시 현장지휘관에게 신고 긴급구조통제단과 공동통신망 통신체계 구축 공동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상황인지 현장지휘관에게 현장 활동상황 수시보고 재난현장의 방법 및 경비 긴급수송을 위한 교통대책 수립 및 교통통제, 일제신호 조치 교통정보를 공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유관기관에 전파 주민고립 및 인명 구조활동 재해사상자 발생시 신원확인 지원 의료기관 및 영안실 주변 현장통제 대응단계에 따른 인원 및 장비 추가 투입 현장지휘관이 요청한 동원자원 보고 동원인력 철수 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
유 관 기 관	공동사항	현장상황 주시, 출동대기, 준비 등 대응태세 확립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 현장도착시 현장지휘관에게 신고 현장지휘관과 공동통신망 통신체계 구축 공동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상황인지 현장지휘관에게 현장 활동상황 수시보고 대응단계에 따른 인원 및 장비 추가 투입 현장지휘관이 요청한 동원자원 보고 동원인력 철수 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
	8087부대 1대대	병력지원, 장비동원 및 대민지원 활동 수난 구조활동 지원 현장지휘관 요청시 헬기 지원
	정선국유림 관리소	사고발생 신고 접수 조난사고 발생시 헬기 및 기타 신속한 운송체제 확립 응급구조 장비 및 인원 신속동원 등 구난체제 가동 현장지휘관 요청시 헬기 지원 양수기, 포대, 비닐 등 수방자재 지원 대응단계에 따른 응급복구반 및 가용장비 자재 등 지원 피해확대 방지 및 탐방객 접근 통제
	KT 원주지사 태백지점	긴급통신 수단 및 이동용 긴급복구장비 지원 긴급전화 및 인터넷 설치 재난대책용 통신 지원 긴급복구 및 임시조치
	한국전력 정선지사	전력 등 위험 및 재난대응활동 장애요인의 제거 지원 긴급 전력 공급 및 설비 설치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전력공급
	정선가스	가스 등 위험 및 재난대응활동 장애요인의 제거 지원

3.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가. 총 괄

단계	주요 임무와 역할	
예방 단계	정 의	재난예방은 재난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재난발생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예방(Prevention)활동 + 경감(Mitigation)활동
		○ 통합상황실 운영 ○ 재난위험요소 조사 분석 ○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유지관리·점검 등 ○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 교육·훈련·홍보
대비 단계	정 의	재난대비는 실제 재난이 발생한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는 활동
		○ 예·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점검 등 ○ 장비, 물자, 시설, 인력 확충 ○ 교육·훈련
대응 단계	정 의	재난대응은 재난발생 또는 재난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재난상황관리 ○ 긴급통신 지원 ○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교통대책 운영 ○ 재난현장 환경 정비 ○ 사회질서 유지 ○ 재난 수습 홍보 등 ○ 긴급생활안정 지원 ○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 재난관리자원 관리 ○ 의료 및 방역서비스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수색, 구조·구급
복구 단계	정 의	재난복구는 도로, 항만, 시설물 등 물리적 피해를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또는 회복시키는 활동
		○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시설복구 ○ 특별재난지역 선포 ○ 복구계획 수립 ○ 피해주민 지원, 구호대책, 사상자 치료 ○ 평가 및 사고재발대책 마련 등

【 단계별 재난관리 단계별 재난안전기본법 관련 규정 】

1. 예방단계 법 제25조의2 내지 제33조의3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제25조의2) ○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제26조)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관리(제27조) ○ 재난방지시설의 관리(제28조) ○ 재난분야 종사자 교육(제29조)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제30조)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31조) ○ 정부합동 안전점검(제32조) ○ 사법경찰권(제32조의2)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제33조) ○ 재난관리체계 평가(제33조의2) ○ 재난관리실태 공시(제33조의3)	2. 대비단계 법 제34조 내지 제35조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제34조) ○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 마련(제34조의2) ○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등(제34조의3) ▶ 재난 용어정의, 표준체계, 대응체계 원칙 등 기준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제34조의4) ▶ 13개 공동협업기능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제34조의5)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31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54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5,017개) ○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제34조의6) ○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제34조의7) ○ 재난대비 훈련(제35조)
3. 대응단계 법 제36조 내지 제57조 <응급조치> ○ 재난사태 선포(제36조) ▶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 ○ 응급조치(제37조) ▶ 구청장·군수, 지역통제단장 조치 ○ 재난예보·경보의 발령(제38조) ▶ 관심·주요·경계·심각 ○ 재난예보·경보체계구축 종합계획수립(제38조의2) ○ 동원명령(제39조) ▶ 중대본부장, 지대본부장 ○ 대피명령(제40조) ▶ 구청장·군수, 지역통제단장 ○ 위험구역의 설정(제41조) ▶ 상동 ○ 강제대피조치(제42조) ▶ 상동 ○ 통행제한(제43조) ▶ 경찰관서장에게 요청 ○ 응원(제44조) ▶ 구청장·군수가 군부대 등에 요청 ○ 응급부담(제45조) ▶ 구청장·군수, 지역통제단장 실시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제46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제47조) ○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제48조) <긴급구조>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제49조)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제50조) ○ 긴급구조(제51조) ○ 긴급구조 현장지휘(제52조) ○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제53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제54조) ○ 재난대비능력 보강(제55조)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55조의2) ○ 해상에서의 긴급구조(제56조) ○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제57조)	4. 복구단계 법 제58조 내지 제66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제58조) ※피해주민신고→사·군·구 보고→중앙대책본부장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제59조) ※자체 복구계획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수립 ※중앙재난 복구계획 ▶ 중앙대책본부장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제60조) ▶ 선포권자 :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영 제69조) ○ 특별재난지역 지원(제61조) <재정 및 보상> ○ 재난관리 비용부담 원칙(제62조, 제63조) ○ 손실보상(제64조) ○ 치료 및 보상(제65조)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제6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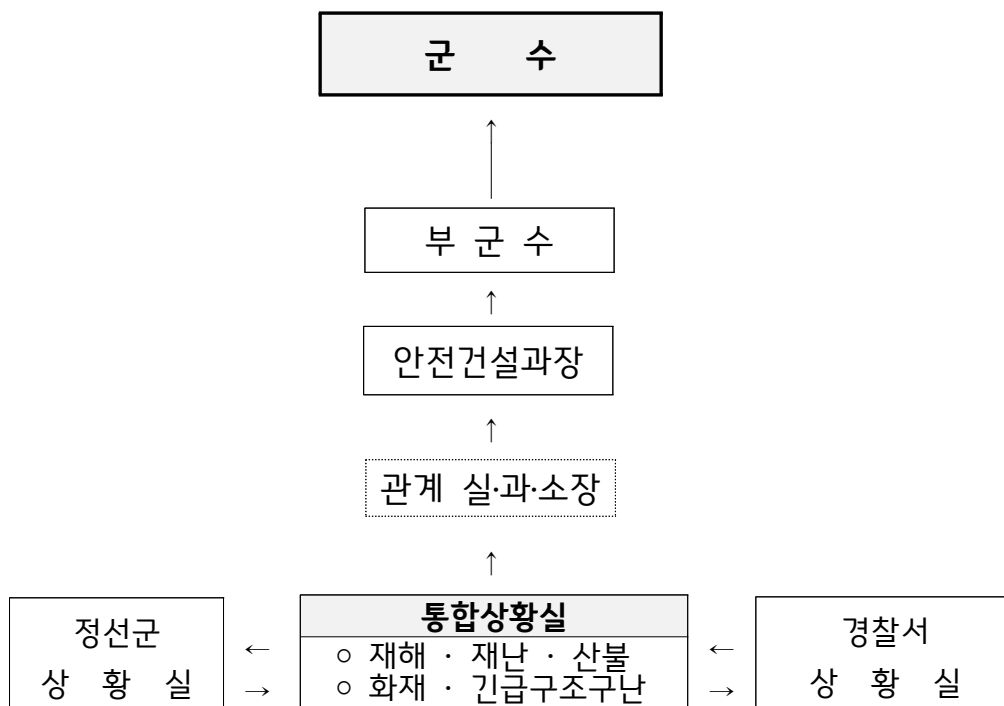
나. 예방

1) 통합상황실 운영

○ 근무 수칙

- 지정근무일 08:30까지 도착하여 상황인수 · 인계
 - 전일 상황반장이 소속 과장에게 상황보고
 - 당일 상황반장은 전일 상황반장 보고서 배석
- 상황발생시는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보고
 - 대형사고 또는 긴급사항인 경우 상황접수즉시 지휘계통에 따라 전화 보고 후 별도 보고서 작성
 - 행정자치부상황실, 경찰청상황실, 도 상황실, 관련부서 등에 구체적인 상황확인, 필요조치 강구
- 인명구조, 응급복구등 긴급조치 필요시 유관기관등에 통보
- 상황진행 내용을 일정 시간대별로 계속파악, 보고 및 기록유지
- 상황접수누락 및 보고 · 조치지연 사례가 없도록 확인 철저
- 대형사고 발생등으로 비상근무 필요시 계통보고후 지시에 따라 직원 비상소집 조치

○ 상황보고 체계도



2) 규정 및 제도개선·정비

○ 군민 안전분야 컨트롤 타워 운영

- 안전관리계획 재난안전 위험 분야의 정형화된 유형 외에 군민의 생명·건강·재산과 관련된 모든 유형(비정형*) 관리 운영
 - * 지반침하, 살충제 계란, 햄버거 병 등 비정형 유형 포함
- 군민안전 상황 공유 SNS망 운영을 통한 상황 공유체계 구축
- 군민안전 위험 상황보고 체계 확립

안전건설과(상황실) 최초 인지시	▶ 안전건설과(상황실) ↗ 지휘부(군수, 부군수 등) ↘ 관련부서 전파
재난 관리 부서 최초 인지시	▶ 재난관리 부서 ↗ 지휘부(군수, 부군수 등) ↘ 안전건설과(상황실)

※ 중요사항 : 군수, 부군수, 안전건설과장에게 동시 보고

경미사항 : 안전건설과장에게 보고 → 상황 판단 후 지휘부 보고

○ 안전올림픽 지원 종합계획 실행

- 목표와 방향

목 표	◆ 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 전 세계에 강원도 위상 각인
추진방향	◆ 붐 조성과 대회 열기 확산 ⇨ 강원도의 가치 극대화 ◆ 숙박 교통 등 관광객 수용태세 완비 ⇨ 고품격 대회 지원 ◆ 경기장 등 기반시설 완벽한 마무리 ⇨ 대회 성공개최 견인 ◆ 올림픽 이후 지속가능한 유산 창출 ⇨ 개최도시 문화관광 허브화

- 추진체계

추진기관	주요 기능과 역할
조직위원회	⇨ ★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 운영 ★ 개폐막식, 배뉴 내 문화올림픽, 성화봉송 등 운영 ★ 입장권 및 관중서비스, 자원봉사 운영, 올림픽 마케팅 등
정 부 (문체부·행자부)	⇨ ★ 조직위원회 지휘·감독, 올림픽 예산 조정 승인 ★ 올림픽 총괄 헤드역할 ★ 국내외 올림픽 홍보 및 참여 분위기 조성 등
강원도	⇨ ★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 올림픽 손님맞이 수용태세 마련 및 기반조성 ★ 올림픽 붐업 및 배뉴 밖 문화 관광올림픽 추진 등
개최도시 (평창·강릉·정선)	⇨ ★ 지역단위 관광객 수용태세 정비 및 주민 동참 ★ 지역 경관조성 및 쓰레기 처리 대책 추진 ★ 지역 자원봉사 운영 및 친절서비스 제공 등

- 2018 동계올림픽 준비 및 지역발전 기반 마련 -

정선군 종합실행계획

□ 추진배경

- 2018 동계올림픽 대회의 빈틈없는 준비와 대회 개최 이후 올림픽 문화 유산 창출,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추진으로 지속적인 지역발전 성장 동력 확보

□ 사업현황

- 총 사업수 : 78개 사업(실행 60, 특수 9, 준비 9)
- 총 사업비 : 814,156.5백만원
- 부서별 사업현황

부 서 명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현 황				비 고
		계	실행계획	특수시책	준비대책	
총 계	814,156.5	78	60	9	9	
기획감사실	186	3	3	—	—	
자치행정과	845.8	6	6	—	—	
세무회계과	70	2	1	1	—	
여성청소년과	25	2	1	1	—	
주민생활지원과	5	2	1	1	—	
민원봉사과	5	1	—	1	—	
환경산림과	3,366	6	3	—	3	
농업축산과	9,358	4	3	1	—	
문화관광과	19,348	17	16	—	1	
지역경제과	7,480	2	2	—	—	
안전건설과	518,764	8	6	1	1	
도시건축과	7,493.7	6	4	—	2	
동계올림픽지원단	244,843	11	11	—	—	
농업기술센터	1,713	2	1	1	—	
보 건 소	654	4	2	1	1	
수질환경사업소	—	2	—	1	1	

○ 사업구분

- 실행계획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비 정선군 종합실행계획 및 추진실적
- 특수시책 : 올림픽 붐 조성 및 참여 열기 확산을 위한 부서별 시책
- 준비대책 : 동계올림픽 대회준비와 운영을 위한 부서별·분야별 대책

○ 올림픽 안전관리체계 확립

－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구 분	운영기간	근무인원		비고
		평일·주간	주말·야간	
상황근무	‘18.2.1~ ‘18.3.18	안전건설과 5명	안전건설과 2명	
보고체계	(평상시) 안전건설과 → 지휘부 (올림픽 기간) 안전건설과→올림픽 종합상황실(안전FA) → 지휘부			

- 주요임무 : 각종 재난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신속·정확한 보고·전파
- 보고내용 : 상황개요, 조치사항, 향후 처리계획 등

－ 사회재난 신속대응을 위한 「올림픽 안전운영단」 운영

- 운영기간 : 2018. 1. 8.(화) ~ 3. 18(화) / 62일간
- 운영내용 : 재난 상황관리, 초동 대처, 상황지원 등
- 구 성 : 9개반 13명(8개 협업부서 합동 구성)
- 근무방법 : 9명/일(각 반별 1명 상황대기)

구 분	평 시				비상 시	
	평 일		토·일·공휴일			
상황총괄반(1)	09~21시	안전건설과	09~18시	안전건설과	24시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현장대응반(8)	자체 사무실 근무 (09~18시) ⇒ 퇴근시 착신전환				24시	

※ 안전운영단 구성현황, 협업부서 임무, 운영 매뉴얼 : 붙임

－ 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 운영목적 : 대형 재난 시 통신망 마비에 대비, 별도 재난통신망 운영
- 운영기간 : 2018. 2. 1.~ 3. 31
- 운영인원 : 정선군 3개 채널 14명(안전건설과 9, 동계올림픽지원단 5)
- 운영내용 : 전용회선·전용단말기를 통한 신속한 상황관리 추진

－ 정선군민 대상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 (재난정보) 재난발생 우려 및 심각성, 피해확산 등을 고려 송출
- (기상특보) 기상청 미발표 정선지역 국지성 집중 폭설 등 피해예상 시 송출

○ 동계올림픽 대비, 다중이용시설 긴급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7. 12. 27. ~ 2018. 1. 8.(13일간)
- 점검대상 : 11개소(대형목욕장 6, 전통시장 3, 버스터미널 2)
- 점검인원 : 민관합동점검단 15명(정선군6, 소방7, 민간전문가2)
- 점검결과 : 미흡사항 총37개 지적(소방26, 전기3, 가스5, 시설3)
- 조치사항 : 지적사항 조치명령 시행 → 이행 여부 지속 관리

○ 올림픽 부대시설 민관합동 특별 안전점검

- 점검일시 : 2018. 1. 30.(화) 14:00
- 점검대상 : 2개소(중봉경기장 내 정선군 홍보관, 환승주차장 관중대기소)
- 점검인원 : 민관합동점검단 10명(도2, 군4, 소방2, 민간전문가2)
- 점검내용 : 가설건축물(오버레이시설, 천막) 고정상태, 위치 적정성, 전기배선, 안전·소화시설 설치여부, 화재취약 요인 점검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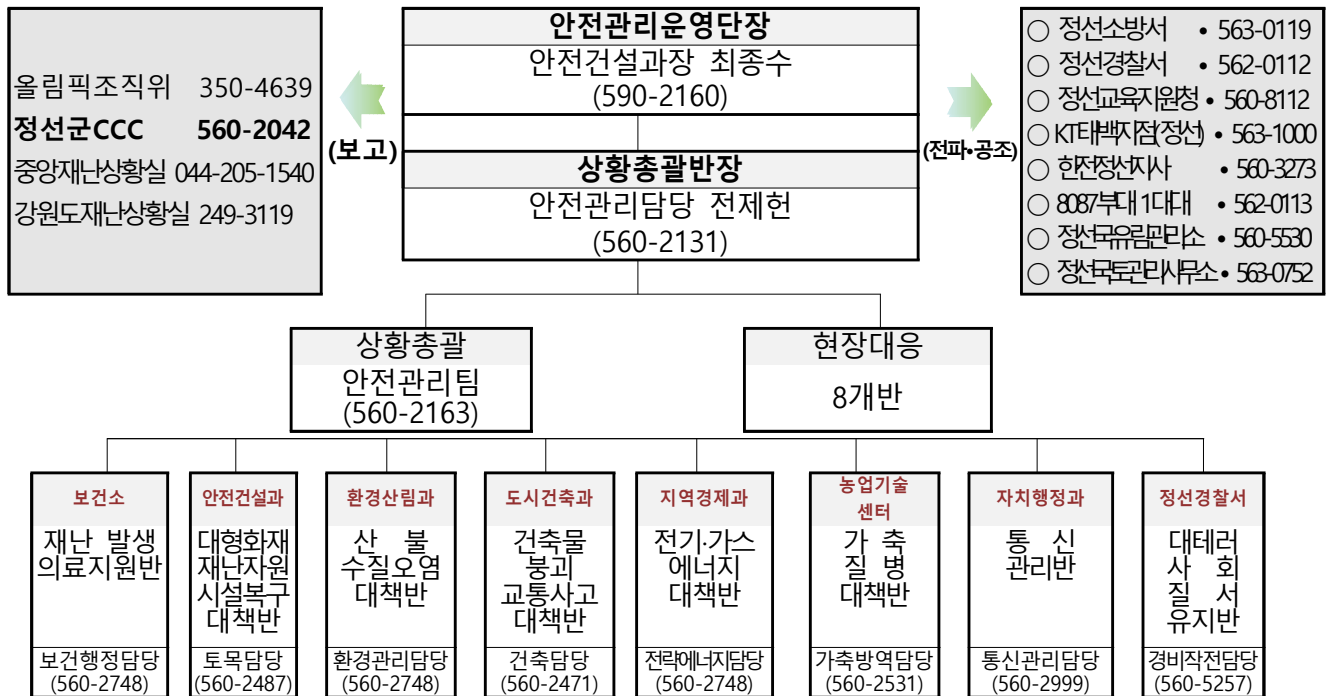
- 진단기간 : 2018. 2. 5. ~ 3. 30(54일간)
- 진단대상 : 관내 급경사지·교량 등 28개 분야 728개소
- 진단방법 : 민관합동 표본점검, 관리 주체별 자체점검
- 후속조치 : 진단 결과에 따른 관리주체별 보수·보강 등 이행 조치

○ 지역축제 안전점검

- 점검대상 : 2개 축제(사북 석탄문화제, 정선 고드름축제)
-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심의['18. 1.25(목)] → 현장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석탄문화제['18. 2. 1(목)], 고드름축제['18. 2. 5(월)],
- 점검인원 : 민관합동점검단 7명(정선군3, 소방2, 민간전문가2)
- 점검내용 : 안전관리심의 내용 반영 여부, AI방역시설 설치, 안전 위험요소 점검
- 후속조치 : 경미사항 현지시정 및 축제 개최 전 보완 조치

[별첨] 동계올림픽 안전운영단 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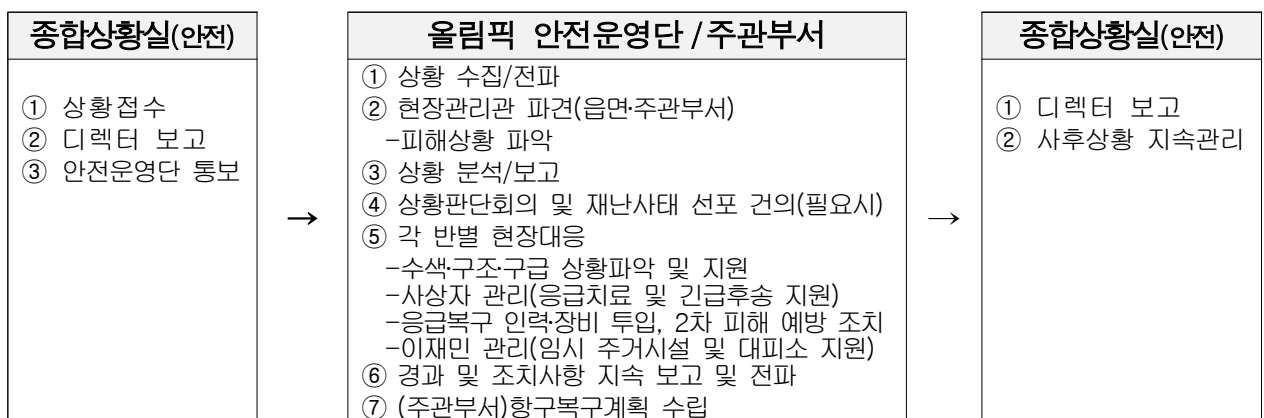
○ 안전운영단 구성 체계도



○ 안전운영단 협업부서별 임무

분 야	주 요 임 무	담당부서	비 고
상황관리총괄	• 재난상황 총괄관리 및 상황 전파·보고(올림픽상황실)	안전건설과	
재난 대응 의료지원	•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현장 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소	
재난자원시설응급복구	• 시설물 응급복구, 재난 자원 관리 및 지원	안전건설과	
산불수질오염	• 산불 관리, 재난현장 환경 및 폐기물 대책 추진	환경산림과	
건축물붕괴대형교통사고	• 피해건물 안전진단 및 긴급조치, 주변지역 차량 우회	도시건축과	
전가가스에너지	• 에너지 긴급지원, 이재민 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지역경제과	
가축질병	• 가축질병 발생 상황관리 및 방역대책	농업기술센터	
통신관리	•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피해시설 긴급복구	자치행정과	
대테러·사회질서유지	• 올림픽 주변시설 대테러 대책 수립 및 사회질서 유지	정선경찰서	

○ 안전운영단 운영 매뉴얼



3) 재난위험요소 조사 분석

- 군 전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

< 주요 추진사업 >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기 간 : '16. 1. 29. ~ ' 18. 12. 31.(35개월)
 - 용 역 비 : 960백만원(도 재난관리기금)
 - 용역범위 : 정선군 전역(A=1,220km²)
 - 용역업체 : (주) 이산 외 3개사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인가·허가 하기 전에 재해관련 사전협의를 통하여 재해위험 저감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행정계획 36개 법령, 개발사업 46개 법령)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 시스템 확충

4) 교육·훈련·홍보

- 재해예방 방재 전문인력 양성

* 재난대비 CPX 훈련 정례화(합동훈련 연1회, 자체훈련 수시)

** 현장예방단(산불, 지진 등) 직무교육 실시

- 중앙부처·도·유관기관 간 비상소집 체계 및 정보 수집 전달 확보, 응급대응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강화, 정기적 훈련 등 정비

*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대응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 등 정례화

다. 대비

1) 예·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예·경보 시스템 작동상태 점검, 자연재난 취약지역 예·경보 시스템 운영 강화
- 재난 방송 온라인 시스템(EDMS) 상시 운용 태세 구축
- 신속한 통신 재난 관리 시스템(TDMS) 운용

2) 장비, 물자, 시설, 인력 확충

- 수방자재 확보 및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 민간보유 장비 관리자 협의하에 신속 동원 가능 조치
 - 단계별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 체계 확립

3)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 풍수해 등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비상연락망 등)
- 신속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상황관리
- 방재 행동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4) 교육·홍보

- 지역여건에 맞는 국민행동요령 등 교육·홍보용 자료 배포
- 재난체험관 활용, 민방위훈련 등 민간 대비활동 지원
- 홈페이지,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국민 예방의식 고취

라. 대응

1) 재난대응 프로세스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 복구
재난발생 전(前) 단계	재난발생 단계		재난수습 단계
① 재난징후 접수, 전파 및 보고(상황실) ②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③ 징후 평가/대응 조치(주관부서)	① 상황접수 및 전파(상황실) ② 초기대응반 (주관부서장 등) 현장출동 ③ 모든 가용조직과 수단을 동원하여 현장상황 신속파악 및 상황공유(상황실) ④ 상황판단회의 개최(주관부서)	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주관부서) 신속 가동 (본부장 : 부군수) ②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본부장 : 군수) ③ 대 국민 재난정보 제공(언론브리핑) 및 국민 행동요령 등 안내(공보담당) ④ 유관부서는 실과소장 책임 하에 협업 기능별 조치목록(임무) 수행	① 재난 및 사고 수습·복구 ② 언론 대응 ③ 유관부서·기관 수습·복구단계 협업 기능별 임무와 역할 수행

2) 단계별 대응체계

징후감지

- **재난징후 접수, 전파 및 보고(상황실)**
 - 징후 전파·보고, 상황실, 주관부서, 단체장/부단체장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 **징후 평가/대응 조치(주관부서)**
 - 현장 확인, 징후 평가 및 대응 조치

초기대응

- **상황접수 및 전파(상황실)**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시·도 상황실, 관계부처 상황실, 관계부서에 사고 초기상황 전파
- **초기대응반(주관부서장 등) 현장출동**
 - 유선, SNS 등으로 지휘부, 상황실에 재난상황 수시 보고
 - 주민대피 및 현장통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요청 등 긴급현장 지원요청
- **모든 가용조직과 수단을 동원하여 현장상황 신속파악 및 상황공유(상황실)**
 - 초기대응반, 동 주민센터 및 인근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정확히 파악
- **상황판단회의 개최(주관부서)**
 - 비상기구* 운영여부 결정, 유관기관·상급기관 지원요청 사항 등

* 통합지원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 필요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주관부서) 신속 가동(본부장 : 부군수)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보고/공유/기록
 - 현장대응계획 수립, 대응 조치활동 총괄
 - 의료지원, 장례지원, 이재민 구호, 언론대응, 재난유형별 대응 등 통합지원본부 조치목록(임무) 수행
- 필요시, 재난안전대책본부(유형별주관부서) 가동(본부장 : 군수)
 - 사고 대응 및 수습대책 협의
 - 중수본, 중대본 응원요청 및 업무 지원
 - 피해상황,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 상황 종합
 - 협업기능별 조치목록(임무) 총괄 등 수행

〈 군수 임무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 현장방문 및 피해자 위로, 이재민 구호소 방문 면담
- 피해확산방지 및 조기 수습을 위한 특별지시
- 군 병력, 경찰, 의용소방대 등 추가 진화인력 투입 여부 판단
- 필요시, 군민 담화문 발표 및 재난사태 선포(중앙위원회) 건의

- 대국민 재난정보 제공(언론브리핑) 및 국민 행동요령 등 안내(공보담당)
- 유관부서는 실과소장 책임 하에 협업 기능별 조치목록(임무) 수행
 - (주민생활지원과) 이재민 관리, 임시주거시설 확보 등
 - (도시교통과) 교통상황과악, 대체 교통수단 마련 등
 - (보건소) 의료·방역지원, 환자이송 및 관리 등
 - (정선경찰서) 질서유지, 주민보호 활동, 현장주민대피 지원 등

수습 · 복구

· 재난 및 사고 복구

-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신속한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교부금 지원 등 계획수립이행
- 사망·실종자 유족 보호 조치(장례비, 위로금 지급 등)
- 피해원인 분석, 재난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

〈 군수 임무 〉

-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지시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필요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등의 지원 건의

· 언론 대응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수습·복구상황 언론 브리핑

· 유관부서·기관 수습 · 복구단계 협업 기능별 임무와 역할 수행

-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비, 법률 자문, 세제 및 금융지원 등 이재민 경제적 지원
- (보건소) 이재민,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등 의료·방역지원 등
- (정선경찰서) 재난현장 순찰강화, 폴리스라인 유지 등 현장보존 및 범죄 예방활동 등
- (안전건설과) 응급복구 추진상황 관리, 장기 수습복구 방안 마련, 재발방지대책 등
- (파출소/치안센터) 복구현장 차량통제, 재난현장 주변 순찰 및 위법행위 단속
- (8087부대 1대대) 군 인력 및 장비 복구지원

3) 재난대응 단계별 주요임무

구 분	상 황	대응지침	위기경보
징후 감지	○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등에 따른 감시활동 동 강화	○ 주민 대피계획 검토 ○ 유관기관 등 대·내외 비상 연락체제 구축 ○ 긴급구호 비축자재 확인	관심
초기 대응	○ 유관기관 공조하에 비상연락체제 및 정보공유를 통한 주민대피 준비	○ 신속한 주민대피 준비 ○ 긴급 구호활동, 치안유지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 이재민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	주의
비상 대응	○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신속한 주민대피 및 지역안정대책 시행	○ 주민대피 및 재난정보방송 실시 ○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 전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경계 심각
수습 복구	○ 피해에 따른 주민대피, 구호활동 (지속), 피해현황 파악 및 항구 지원대책 강구, 시행	○ 주민대피 및 재난정보방송 (계속) ○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계속) ○ 피해현황 파악, 항구지원 대책 검토	심각

4) 재난대응 추진절차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2단계	초기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초기 대응 부서	상황실 안전건설과	[1] 징후접수 [1-1] 징후파악(강수현황, 기상특보, 태풍진로 등) [1-2] 재해발생 가능성 판단 - 상황판단회의 : 안전건설과장 주재(필요시 부군수 주재) - 비상근무 사전예고(문자메세지 및 SNS(밴드, 카카오톡)) [2] 징후전파 및 보고 [2-1] 소관부서 징후전파 - 농업축산과, 보건소 등 관련부서 및 읍면 [2-2] 유관기관 징후전파 - 소방서, 경찰서, 8087부대1대대, 한국전력 정선지사, 정선국도관리소, KT 태백지점, 정선국유림관리소 등 [2-3] 지휘부 및 상급기관 징후보고 - 군수, 부군수 - (필요시) 강원도 [3] 징후 대응조치 [3-1] 징후확인 및 분석 - 기상청 관련자료 모니터링(주의보, 경보 등 기상특보) [3-2] 감시활동 강화 - 과거 유사(태풍)사례 및 피해사례 분석 [3-3] 안전실태 점검지시 - 읍면 - 재해취약지역 예찰(재해위험지구, 인명피해우려지역 등) - 대형공사장, 산간계곡, 침수 및 고립 우려지역 등 - 관내 읍·면·동 상황관리 실태 확인 - 재난 예경보 시설 점검						[3] 징후 대응조치 지시 [3-4] 읍면 긴급대응 조치 - 상습침수 도로 및 교량, 하천둔치 주차장 교통통제 등 (정선경찰서 협조) [4] 상황접수 [4-1] 재해상황 파악(강수현황, 기상특보, 태풍진로, 피해 상황, 현장조치 사항) [4-2] 피해확대 가능성 판단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재난확대가능성 판단 [5] 상황전파 및 보고 [5-1] 소관부서 상황전파(도시교통과, 농업축산과, 주민생활지원과 읍·면 등) [5-2] 유관기관 상황전파(공문 및 문자발송) [5-3] 군수/부군수 유선보고(초동보고) [5-4] 상급기관 상황전파(강원도) [7] 재난상황실 운영 [7-1] 재난상황실 가동 [7-3] 피해상황 파악 [7-6] 상황판단회의 준비 및 개최 [7-8]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7-9] 피해 및 대처상황 모니터링 [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1] 지대본 설치 [9-2] 지대본 실무반 편성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재난상황관리 총괄 • 재역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 총괄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보고 및 전파 • 정선소방서, 정선경찰서와 공조체제 유지 [필요시] [7-7] 관계기관 대책 회의 준비 및 개최					
		[태풍·호우 상황 확인] - 태풍·호우대응 추진상황확인(보고:안전건설과장) -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결과 - 피해현황 및 현장 조치사항 - 주요 시설 안전조치 및 통제현황 - 태풍·호우대비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조치 [조치사항 지시] 기상특보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지시 - 인명 및 재산 피해최소화 등 총력 대응						[상황판단회의 주재] - 현재까지 상황진단 및 대처상황 점검 -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판단 - 현장 관리관 파견 검토 - 취약시설·지역 사전점검 지시 - 긴급구조기관 대응상황 확인 -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판단 [관계기관 대책회의 주재(필요시)] - 유관기관 및 읍면 대처상황 점검 - 현장대응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확인 - 재난지원(인력·장비) 및 행정·재정적 지원					
안전건설과장		• 초기상황 확인 • 재난대응부서에 긴급조치 지시(필요시 상황판단회의 주재) • 호우 등 피해지역 대피 및 재산피해 최소화 지시 • 호우, 태풍등으로 인한 침수 및 고립 우려지역 파악 • 행정지원 총괄						-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확립 (안전건설과, 농업축산과,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교통과, 공보담당, 읍면장 등) - 통합지원본부 설치 검토(현장지원소 또는 응급의료소 설치 시 즉시 가동) - 지대본 운영 필요사항 확인(설치장소, 근무반별 임무, 근무인원 등) - 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 주재 - 상황판단회의 후속조치 이행(지대본 운영) [필요시] - 군수, 부군수 대행, 회의 주재					
		- 보도자료 작성 및 릴리스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재난발생 및 대응 상황 명확히 파악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보도자료 작성 및 브리핑 - 주민대피 및 군민 행동요령 홍보					
기획 감사실장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2단계	초기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안전건설과 주민생활 지원과	- (필요시) 비상근무						[11] 생활안정지원 [11-1]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관리 [11-2]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임시주거시설 확보 - 재해구호물자 지원 요청					
주민생활 지원과 안전건설과	- (필요시) 비상근무						[11] 생활안정지원 [11-1]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관리 [11-2]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임시주거시설 확보 - 재해구호물자 지원 요청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 사업소 안전건설과 문화관광과	- (필요시) 비상근무						[15] 시설응급복구 [15-1]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도로시설, 저수지, 관계시설 등 - 공사장 가설물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 - 주택 및 건축물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 - 상·하수도 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 - 산사태 등 산림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 - 가축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 - 문화재 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 [15-2]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					
지역경제과	- (필요시) 비상근무						[16] 에너지기능 복구 [16-1] 인명구조현장 및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16-2] 에너지 시설 피해상황 파악 [16-4] 전기 가스 조기복구 협조체계 가동 - 한전 정선지사, 정선가스 등 협조 [16-5]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지원 [16-9] 2차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가스 및 전기 차단					
안전건설과	- (필요시) 비상근무						[17] 방재자원 관리 및 지원 [17-1] 재난대응 유관기관 비상근무체계 유지 [17-2]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물자, 장비 등) 동원대책 수립					
안전건설과 정선경찰서	- (필요시) 비상근무						[18]교통대책] [18-1] 도로 교통상황 파악 관리 - 교통통제 구간(교량 상습침수, 하천둔치 주차장) 주변 교통상황 파악 [18-2] 교통두절 지역 우회교통 수단 마련 - 교통통제 안내방송 -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협의 [18-3] 교통두절 지역 출입통제 - 인명피해 발생 구간 주변 교통통제 요청 → 정선경찰서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2단계	초기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보건소	- (필요시) 비상근무						[19] 의료활동 [19-1]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처치반 및 분류반 가동 [19-2]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활동지원 - 사상자 및 부상자 관내 지정병원 분산 배치 - 정선군립병원, 정선병원 [19-3] 사상자 현황 파악 및 보고 [19-4] 응급의료기관 확인 [19-5] 응급의료물자 관리					
환경산림과	- (필요시) 비상근무						- 비상근무 - 재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확인					
자치행정과	- (필요시) 비상근무						- 비상근무					
정선경찰서	- (필요시) 비상근무						[24] 재난현장관리 및 통제 [24-1] 주민긴급대피 지원 - 정선경찰서 협조 및 연락체계 확인 [24-3]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					
정선소방서							- 재난발생 현장 긴급 구조·구급 - 재난발생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대피 - 출동대별 추가임무지시, 상황전파 및 임무재지정 - 구체적인 통제범위를 지정하여 현장통제선 설치 - 추가붕괴 가능성 판단, 비상상황 발령(대응1,2단계)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여부 판단					
정선경찰서							-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주민 대피 지원 - 재난관리부대 등 긴급지원 우선 배치 - 경찰통제선 범위설정, police line 설치 - 사고발생 현장 통제 및 비상로 확보 - 현장 응급구조 및 안전관리 지원 - 주·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의 신속출입을 위한 교통관리					
8087부대 1대대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가능 자원 파악 -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시 지원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2단계	초기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정선교육청												
KT 태백지점												
한국전력 정선지사												
현대전기												
정선가스												
정선가스												
정선가스												
대한 적십자												
정선국유림 관리소												
정선군 자율방재단												

구 분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 · 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초기 대응 부서	상황실 안전건설과	[7] 재난상황실 운영 [7-3] 추가피해상황 파악 [7-5] 대처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7-9] 피해 및 대처상황 모니터링 [7-11] 단계별 상황전파 [필요시] [7-7] 관계기관 대책 회의 준비 및 개최 [8] 읍면 재난현장 지휘소 운영 지원 및 현장 관리관 파견 [8-1] 재난현장 통지문 설치 [8-2] 재난현장 통지문 실무반 편성 [8-3] 재난현장 통지문 운영 및 지원 - 통지문 상황충돌반 • 현장상황 수습/분석/예측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 현장대응계획 수립 • 현장보고서 작성 • 주요인사 방문시 브리핑 - 통지문 현장대응 • 인명피해 발생 시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 환자 발생 시 응급치료 및 긴급후송 지원 • 정선군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인명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등) 요청(군→강원도긴급구조통제단)				[7] 재난상황실 운영 [7-5] 대처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계속) [7-10]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 [27] 재난 및 사고복구 [27-1] 각종 민원상황 접수 및 소관부서 통보 [27-2] 복구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27-3]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27-4] 지대본 결정사항 이행계획 수립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 군수 현장방문 및 피해자 위로 - 부군수 이재민 구호소 방문 면담 -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본부장 특별지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피해 상황 파악(재산피해, 인명피해 여부 등) • 이재민 구호소 운영 - 군 병력(제8087부대1대대) 추가 인력 투입 여부 판단 [필요시] - 재난사태 선포(중앙안전관리위원회) 건의 • 절차 : 시군→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지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전 조치 지시 - 특별교부금 등 지원 요청 - 피해현장 방문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 수행 [필요시]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등의 지원 건의 • 절차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군) → 강원도→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 대통령(선포 및 공고)					
안전 건설과		- 지대본 운영, 통합지원본부 운영 - 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 - 피해자 지원 및 복구범위 검토/보고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 시 재난대응상황 브리핑 - 행정지원				- 군수, 부군수 붕괴현장 방문 시 수행 - 응급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점검·지원 조치 - 부족자원 등 파악·지원 - 행정지원					
기획 감사실		[27] 언론대응 [26-1] 현장 브리핑 - 재난현장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 통지문 및 지대본 언론대응 지원 [필요시] -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27] 언론대응 [26-2]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필요시] -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구 분	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수습 · 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	■
안전건설과 주민생활 지원과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지원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대민지원 •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및 보고 • 임시 주거지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이재민 구호 및 재해구호 활동 • 이재민 구호 상황 파악 • 재난지원금 지원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긴급생활안전지원반 총괄 [11] 생활안전지원 [11-1]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관리(계속) [11-2]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계속) [11-3] 재해구호지원예산 투입 [11-4] 이재민 구호상황 파악 [12] 장례지원(사망자 발생시) [12-1] 사망자 및 실종자 인적사항 파악 [12-2] 정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12-3] 유가족 지원대책 [12-4]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11] 생활안전지원 [11-5] 이재민 심리치료 지원 [11-6] 의견금품 모집 승인 및 관리/배분 [11-7] 장기수용대상자 거주대책 마련 [11-9] 세제 및 금융지원					
자치행정과 안전건설과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자원지원 •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 긴급통신장비 보급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긴급통신지원 총괄 [14] 통신시설 지원 및 긴급복구 [14-2] 긴급통신장비 지원 - 제1군 사령부 통신특공조 지원 요청 [14-4] 통신두절지역 통신망 긴급복구 - KT 태백지점 협조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도시건설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 사업소 문화관광과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지원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2차피해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위험요소 안전조치 및 긴급 안전점검 실시 등) - 통지본 자원지원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시설응급복구 총괄 [15] 시설응급복구 [15-1]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추가피해) [15-2]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계속) [15-3] 소관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 [15-4]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15] 시설응급복구 [15-2]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계속) [15-3] 소관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계속) [15-4]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계속) [15-6] (필요시) 시설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에 대한 재난 수습홍보 요청 [15-7] 장기 수습복구 방안 수립					
지역경제과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지원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 구조구급현장 에너지(전기, 통신) 지원 - 통지본 자원지원 •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동원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에너지기능복구 총괄 [16] 에너지기능복구 (한전 등 유관기관 협조) [16-2] 에너지 시설 피해상황 파악(추가피해) [16-4] Life-Line 조기 복구 협조체계가동 [16-5]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지원						[16] 에너지기능복구 [16-4] Life-Line 조기 복구 협조체계가동(계속) [16-5]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지원(계속)					

구 분	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수습 · 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	■
안전건설과 자치행정과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자원지원 • 자원지원 요청사항 처리 • 현장 자원상태 기록 관리 • 재난현장의 자원수요 예측 [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재난자원지원 총괄 [17] 재난자원지원 [17-3] 대규모 재난시 민방위대, 군·경 동원 [17-4]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동원 [17-5] 긴급 구매물품 조달 협조 [17-6] 인력, 장비, 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 [17-7] 방재자원관리, 지원실적 정리 및 보고						[17] 재난자원지원 [17-6] 인력, 장비, 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계속) [17-7] 방재자원관리, 지원실적 정리 및 보고(계속)					
도시건축과 정선경찰서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지원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정선경찰서 협조)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교통대책 총괄 [18] 교통대책 [18-4] 통행방해 주차차량 견인 및 피해조사 - 지정 견인업체를 통한 견인 [18-5] 수송로 확보 [18-6] 대체교통수단 마련 - 관내 전세버스 사전 협약 체결 [18-7] 인력 및 자원 수송 지원 [18-8] 임시주차장 마련											
보건소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자원지원 •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의료 및 방역서비스 총괄 [19] 의료활동 [19-2] 현장응급의료소 활동지원 [19-3] 사상자 현황 파악 및 보고(계속) [19-5] 응급의료물자 관리(계속) [19-6] 응급환자 이송 지원 - 정선소방서 앰블런스 지원 요청 [19-7] 피해자 심리회복 치료 지원 [19-8] 군의관 등 의료지원 요청						[19] 의료활동 [19-7] 피해자 심리회복 치료 지원(계속)					
환경산림과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지원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 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재난현장 환경정비 총괄 [21] 재난폐기물 처리 [21-1] 폐기물 발생상황 파악 [21-2] 폐기물 처리 지원기관 협조 요청 [21-3] 재난폐기물 수거 및 운반 [21-8] 임시적환장 확보 [21-9] 임시적환장 가동, 설치 [21-10] 임시적환장에 보관된 폐기물 처리 지원 -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정선산업, 미래환경) 지원 요청						[21] 재난폐기물 처리 [21-3] 재난폐기물 수거 및 운반(계속) [21-4] 폐기물 최종 처리 확인 [2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결과 보고 [21-7] 폐기물처리비 및 복구비 지급요청					

구 분	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수습 · 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안전건설과 자치행정과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지원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자원지원 •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자원봉사관리 총괄 [23] 자원봉사관리 [23-1] 자원봉사자 모집 - 재난발생에 따른 자원봉사자 수요 파악 [23-2]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 및 배치 [23-4] 민간자원봉사 인력, 장비 지원 요청 [23-5]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23-6]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23] 자원봉사관리 [23-7]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정선경찰서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지원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지원 • 응급환자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동선 확보 [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사회질서유지 총괄 [24] 재난현장관리 및 통제 [24-2]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24-3]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계속) [24-4] 사상자 신원파악						[24] 재난현장관리 및 통제 [24-2]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계속) [24-3]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계속) [24-4] 사상자 신원파악					
정선소방서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피해 및 구호상황 보고 및 브리핑 - 재난현장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및 사상자 파악 - 민간인력 및 장비동원 - 대한적십자사 등에 비상급식 요청 - 대규모 피해 발생시 정선군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강원도 긴급구조통제단 으로 응원요청 - 긴급구조 완료 시 현장지휘권 이양(긴급구조통제단→지대본)											
정선소방서	- 현장주변 순찰 강화로 범죄예방활동 강화 - 주민대피·긴급 구조 활동 지원 및 사상자 후송 지원 - 우회도로 확보 및 인근 교통 정리 - SNS를 통한 재난 관련 유언비어 등 사이버범죄 수사						- 수용시설 및 피해복구지역 치안유지 - 상황종료시까지 긴급상황유지					
8087부대 1대대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계속)					
정선 교육청	-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 - 재난대응자원 집결지(학교운동장 등) 지원						-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계속)					

구 분	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수습 · 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KT 태백지점		- 피해 통신시설 긴급소통대책 수립시행			■	■		- 통신시설 응급복구 총괄(KT태백지점)			■	■
한국전력 정선지사		- 원격개폐기 조작으로 전원분리(배전센터) 설비피해 상태 확인 - 직원(배전운영실) 및 협력사 인원, 장비 등 지원요청 - 비상발전차 지원 : 당사보유 및 위탁계약 업체 동원을 통한 비상전원 공급 - 비상상황실 구성 : 당사 직원 및 협력사 비상대기근무 시행(현장상황보고 및 복구지원 등)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및 응급복구 시행						- 복구계획수립 시행				
한국전력 정선지사		-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 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에 보고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및 응급복구 시행						- 피해복구지역 전기안전점검 시행				
정선가스		- 가스설비 피해 상태 확인 - 가스공급지역 최소화 및 복구 시행 - 피해 가스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및 복구 시행 - 안전점검 및 안정적 가스 공급				
한국전력 정선지사 정선가스		- 이재민 임시주거지 및 통지본 전기공급 - 피해 가스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 가스시설 안전점검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협조/지원				
정선가스		- 추가 재난발생 가능 지역에 대한 밸브 차단 - 가스공급 중단 홍보 - 복구반 복구 시행 및 우회공급 작업 시행 - 사고조사반 현장 조사						- 복구반 복구 시행(계속) - 추가 재난발생 가능 지역에 대한 밸브 차단				
한국 수자원공사 강원지역 본부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및 응급복구 시행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식용수 공급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식용수 공급(계속) - 복구계획수립 시행				
대한적십자 (강원 도지사)		- 이재민 대피소 설치 시 구호물품 지급 - 구호급식활동 실시 - 재난피해 심리상담반 운영 - 긴급구호 대책본부 및 현장 재난구호봉사단설치 · 운영						- 재난피해 심리상담반 운영(계속)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 이재민 대피소 설치 시 구호물품 지급 - 구호급식활동 실시 - 제한된 심리상담반 운영(지사) - 긴급구호 대책본부 및 현장 재난구호봉사단설치 · 운영						- 소관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정선군 자율 방재단		- 위험지역 순찰 및 상황보고 - 지 역 주민 긴급대피유도 - 재난발생지역 합동조사 참여						- 거주지역 피해조사 지원 -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활동 및 노력 봉사				

5)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① 재난상황관리

가. 목 적

- 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다수기관 수행 전반적 재난관리 활동을 지원·조정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부서)와 합동대응 계획을 수립

나.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정선군 안전건설과, 재난소관 담당부서
- 지원기관 :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기상청 등

다.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수자원공사	대리	손호열	260-3774	
농어촌공사	과장	이상용	240-9667	
수력원자력	차장	김성완	245-2240	
춘천기상대	담당자	류시찬	242-9131	

라. 관련 대응업무

- 재난대책에 관한 부서 및 유관기관 총괄조정
- 기상, 댐, 저수지 관리자료, 하천 홍수관리상황 등 파악정리
- 재난진행상황 등 모니터링결과 보고·전파
- 대처상황보고서 등 상황보고서 관리
- 학교휴업, 도로·공항·선박 통제, 예찰 등 권고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가. 목 적

- 재난 발생 시 이재민과 임시 대피자에 대한 수용 및 구호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대응계획 수립

나.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정선군 안전건설과
- 지원기관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강원본부, 8087부대 1대대,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다.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	박영진	02-3272-0125	
대한적십자사 강원본부	담당	곽창신	255-9596	
8087부대1대대	군수과장	이정환	010-****-2133	
정선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임종혁	560-5256	
정선소방서	구조구급계장	박건용	560-6430	

라. 관련 대응업무

- 대피와 대피소 수용에 대한 지역의 계획 및 절차 수립
- 구호를 위한 조직체계 가동·운영
- 피해지역의 구호물자, 장비, 인력 등 지원상황 및 수요량을 파악, 민간구호단체, 지역 군부대 등에 지원 조정
- 응급구호를 위한 복권기금, 재해구호를 위한 조직체계 가동·운영
- 구호물자의 접수·배분 등 응급구호상황 홍보, 인터뷰 및 언론대응, 기탁자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 제공
- 고립지역 이재민의 구호물자 공급을 위한 헬기동원 긴급 구호
- 집단급식소 및 이재민 수용시설 위생지도·운영과 안전관리

③ 재난현장 환경 정비

가. 목 적

-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
 - 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및 신속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유관 기관과 합동 대응계획 수립

나.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정선군 환경산림과(9개 읍면 환경 담당)
- 지원기관 :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한국자원재활용협회 강원지부, 한국건설자원협회 강원지회 등

다.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팀 장	장진용	240-9530	
한국자원재활용 협회 강원지부	지부장	권명진	747-8484	
한국건설자원협회 강원지회	사무국장	이용모	743-8580	

라. 관련 대응업무

- 재난폐기물 발생량 추정 및 장비·인력 동원체계 구축·지원
-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폐기물 수거 및 처리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 2차 오염원 차단 및 재난폐기물 투기방지 감시활동 전개
- 매립지를 포함한 잠재적인 쓰레기 집하와 임시저장소 사전 파악

④ 긴급 통신 지원

가. 목 적

- 유·무선망 등 피해 통신시설의 신속한 복구 체계 마련
-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지휘를 위한 긴급통신체계 운영

나.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정선군 자치행정과(통신관리팀), 안전건설과(재해예방팀)
- 지원기관 : (주)KT 원주지사 태백지점

다.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자치행정과	방송통신7급	정호식	560-2299	
안전건설과	공업8급	주창수	560-2499	
KT 원주지사 태백지점	-	콜센터	553-0328	
	CM팀장	길덕수	552-0060	

라. 관련 대응업무

[자치행정과]

-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접수 및 피해상황 전파
-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지원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안전건설과]

- 위성전화기 등 긴급통신수단 재난현장 지원
- 긴급통신 지원을 위한 타기관 통신 공동활용자원 파악

⑤ 시설피해 응급복구

가. 목 적

-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 원활한 응급복구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대응계획을 수립

나.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정선군 안전건설과, 방재과, 재난소관 담당부서
- 지원기관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 정선가스, KT 원주지사 태백지점등

다.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 (직위)	성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과장	김시은	560-0741	
정선국유림관리소	팀장	정희문	560-5520	
한국전력 정선지사	팀장	김성원	560-3271	
정선가스	대표	심재복	562-2222	
KT 원주지사 태백지점	CM팀장	길덕수	552-0060	

라. 관련 대응업무

1)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안전건설과)

- 피해지역의 응급조치 등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군수는 전문인력과 기타 인력으로 구분하여
 - 기술이 필요한 전문인력은 노동부에 지원 요청
 - 기타 인력은 군인, 민방위대, 수방단 등 동원이 가능한 인력 지원 요청
- 장비는 민수, 관수, 기관보유 등으로 피해규모에 따라 단계별 동원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 요청
- 대규모 재난발생에 따른 각종 방재물자·장비·인력 등이 부족할 경우 인접 자치단체와 상호 응원체계 구축
- 관내 군부대,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을 위한 민·관·군 공동 협력

2) 공공시설물 응급복구

○ 도로·교량(안전건설과)

-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 조치
-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 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수시로 점검
- 피해발생시에는 복구반을 즉시 현장에 파견하고 점검 및 복구 실시
- 복구순서는 긴급도로를 최우선으로 하고 일반도로 및 장애물 반출 등 순서로 복구

○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환경산림과)

- 응급복구계획 수립
- 재난발생시 제방·호안 등의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 시설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시설 순찰 강화
- 피해 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확보한 자재와 장비를 동원하여 즉시 응급복구 실시

○ 철도시설(안전건설과)

-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송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시행 등

3) 기타시설물 응급복구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환경산림과)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 등

○ 국민생활 필수시설(지역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산림과, 자치행정과 등)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 관리 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긴급 복구반을 편성하는 등 긴급 복구방안 강구

-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에 따라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성
- 사고 발생 시 주요 지원기관에 긴급 복구 요청
- 이재민 임시거처 수용, 숙식편의 제공, 응급환자조치 지원, 월동 대책, 방역관리, 식수 확보 등 구호대책 추진

⑥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복구

가. 목 적

- 에너지 공급 시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및 긴급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임

나.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지역경제과
- 지원기관 : 한국전력 정선지사, 정선가스

다.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 관 명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정선군 지역경제과	박노홍	560-2437	전력,가스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	조성현	560-3271	전력공급팀장
“	박세리	560-3272	실무자
정선가스	심재복	562-2222	

라. 관련 대응업무

-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에 따라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성
- 사고 발생 시 주요 지원기관에 긴급 복구 요청
- 이재민 임시거처 수용, 숙식편의 제공, 응급환자조치 지원, 월동대책, 방역관리, 식수 확보 등 구호대책 추진

⑦ 재난 수습 홍보

가. 목 적

- 재난발생시 피해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발령사항 및 재난상황별 주민행동요령 홍보 등의 전파, 복구지원을 위한 시민 동참 유도를 위한 홍보에 관한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

나.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정선군 기획감사실
- 지원기관 : 재난관련부서,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케이블방송 등

다.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 (직위)	성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이 메 일
강릉KBS	부장	정창환	010-****-0088	
MBC강원영동	부장	박준기	010-****-0085	
G1강원민방	부장	김기태	010-****-0283	
강원일보	부장	이명우	010-****-3543	
강원도민일보	부장	윤수용	010-****-1984	

라. 관련 대응업무

- 재난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사 브리핑 중비 및 실시, 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 SNS 및 외부전광판,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 언론사 인터뷰 실시
- 위성중계차량 재난피해 예상지역 파견 등

⑧ 재난관리자원 지원

가. 목 적

- 방재자원 공동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 배분
 - 재난발생에 대비 재난유형별 필요한 물자 및 자원의 확보 관리와 재난발생시 보유 물자 및 자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으로 피해발생 최소화

나.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정선군 안전건설과
- 지원기관 : 군 및 읍·면

다.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안전건설과	청원경찰	김민수	560-2498
정선읍	시설7급	신석하	560-2703
고한읍	시설7급	전영남	560-2712
사북읍	시설7급	서건식	560-2722
신동읍	시설7급	백진열	560-2733
화암면	시설7급	권오현	560-2742
여량면	시설8급	이정근	560-2762
북평면	시설9급	신관중	560-2772
임계면	시설7급	유수근	560-2784

라. 관련 대응업무

- 군부대, 공공,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정체결을 통한 비상시 긴급 투입 가능한 응급복구장비 물자 보유현황 파악
- 재난특성에 맞는 방재자재, 비축조치, 상호협력 기능별로 확보
- 장비동원 준비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 사전협약
- 재난발생시 재난대응 유관기관 비상근무체제 유지
- 재난발생시 피해 예상지역 부족자원 동원계획 수립 등

⑨ 교통대책

가. 목 적

○ 교통수단 지원

-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다수의 사상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신속, 원활한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정선군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 지원기관 : 강원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교통안전공단강원지사, 도로공단 강원도지부,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20개 사업조합, 협회 등

다.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 (직위)	담당자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정선경찰서	경위	임종혁	560-5381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과장	강 민	730-9267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과장	한중섭	261-1580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과장	김영훈	250-9152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과장	윤영상	238-4325	
버스운송 사업조합	전무	이경환	254-2619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상무	이경운	241-6290	
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	김진수	253-4244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무	유형재	252-6339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부장	최종칠	254-2769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무	황광오	253-0449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과장	최성규	254-32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과장	유수연	653-1800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과장	허창영	254-4825	
모범운전자연합회	간사	방상미	766-1196	

라. 관련 대응업무

- 재난지역 지휘체계를 가동하고 인명·재산 피해현황 조사
- 재난사고에 따른 자동차 손해보험 협조 및 업무지원
- 재난원인 파악 및 향후 개선대책 수립
- 교통사고 지도 구축을 통한 안전정보 제공
- 교통시설물 응급복구 인력, 장비 동원태세 점검
- 유관기관 및 지자체 비상연락체계 가동

⑩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가. 목 적

- 재해·재난 지역 및 이재민 수용시설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실시로 주민 건강보호

나.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다.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정선보건소	간호주사	심정미	560-2478	
고한사북지소	의료기술주사	김경화	560-2026	
신동읍지소	간호주사보	이상희	560-2027	
화암면지소	보건주사보	고미정	560-2028	
남면지소	보건주사	이은주	560-2029	
여량면지소	보건주사	김영희	560-2030	
북평면지소	보건주사	도미선	560-2893	
임계면지소	보건주사	김순희	560-2032	

라. 관련 대응업무

- 긴급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
- 방역활동 및 방역장비, 약품 지원

⑪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가. 목 적

-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지원·협조체계 구축
 - 자원봉사 상황실 운영, 구호품 전달, 급식지원 등
-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나.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정선군 자치행정과
- 지원기관 : 강원도 및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다.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 (직위)	담당자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강원도	주무관	함엄석	249-2225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경영기획부장	박순용	253-2500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간사	최금순	560-2033	

라. 관련 대응업무

- 자원봉사 인력을 등록 및 배치
- 자원봉사 인력의 보험 관리를 수행
- 신규투입 인력의 교육훈련
- 지역별 자원봉사 단체 및 개인의 특성별 현황 파악

⑫ 사회질서 유지

가. 목 적

- 재난발생시 현장 통제, 교통 통제, 치안 등 신속 수행
- 재난 대응 유관기관 합동 대응계획 수립

나.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정선경찰서
- 지원기관 : 정선소방서

다.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정선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임종혁	560-5256	
정선소방서	구조구급계장	박건용	560-6430	

라. 관련 대응업무

-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요사태 방지 및 사회질서 유지
- 피해지역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를 위한 순찰강화
- 실시간 기상예보 수집으로 재난상황 예측·대비
- 지원기관과 연락체제 구축하여 지원 및 협조
- 수용시설에 대한 치안 담당 및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협조

⑬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가. 목 적

- 재난현장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으로 귀중한 생명보호
- 신속한 출동과 대응으로 고품질의 119구조구급서비스 제공
- 재난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구조구급활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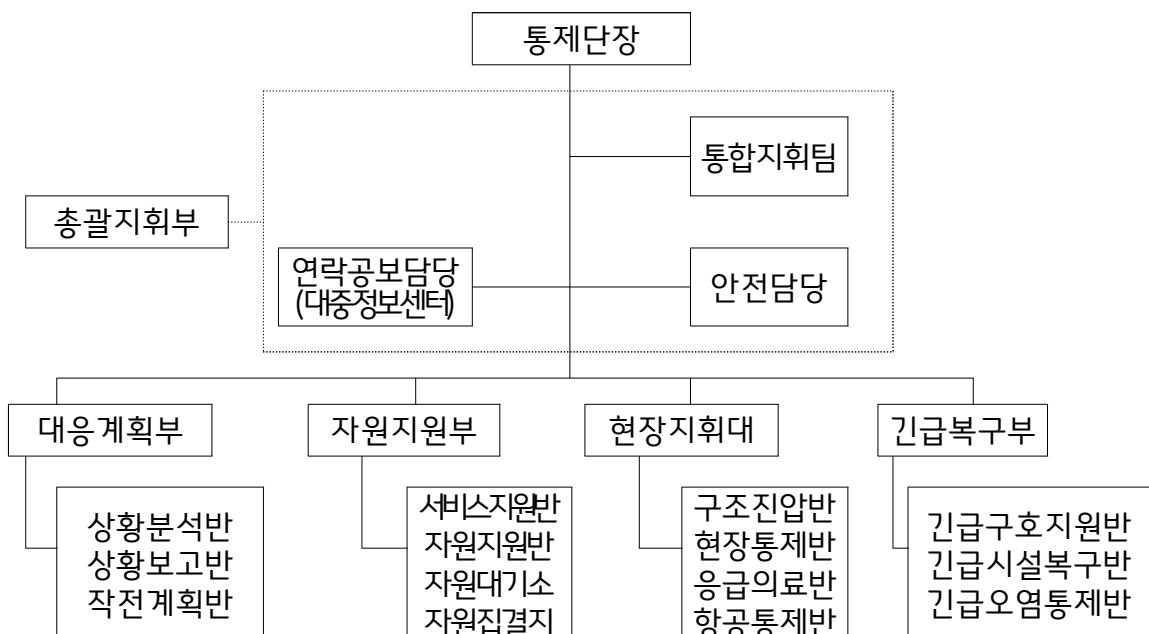
나. 관련 대응업무

- 재난규모별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단계별 운영

1) 대비단계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2) 긴급구조통제단 : 대응 2 ~ 3 단계



- 발생 초기 소방력 집중투입을 통한 인명 구조 활동 만전
 - 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비상연락체계 유지
 - 소방서장 직접 현장 지휘체계 확립
 - 출동가능 전 차량 이상 유무 사전 점검 철저히 100% 가동
 - 현장 활동대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효율적인 구조구급활동 전개
 - 신속한 피난유도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최우선 실시
 - 응급의료전문기관 상호 협조체제 구축 및 신속 가동
 - 관내 종합병원·응급의료센터 등 핫라인 설치·운영
 - 정확한 상황보고·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민간 구조단체와 합동으로 긴급 구조·구급활동 전개
 - 긴급구조지원기관·자원봉사자에 대한 임무부여 및 관리

나. 복구

1)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피해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편성·운영
 - * 필요시 중앙 합동복구지원단 편성·운영
- 주거시설, 농수산업 및 소규모 상공업 분야 피해 등 조사
- 피해원인과 양상에 대한 조사 및 자료 관리

< 피해상황보고 체계 >

- 공공시설 : 시·군 → 도/중앙(7일 이내)
- 사유시설 : 피해자 → 시·군(10일 이내), 시·군 → 도/중앙(14일 이내)
 - 피해조사 및 확정보고 : 17일 이내
- 국고지원 대상일 경우 5천만 원 이상 공공시설은 중앙합동 조사 실시

2) 복구계획 수립

- 재해 상습지역은 주민이주 등 근원적 대책 마련, 시행
- 개량복구 위주의 사업으로 반복 피해의 사전 예방
- 장기간 소요되는 복구사업은 계획수립 시 방재계획 포함을 의무화

3) 시설복구

- 예비비 형태의 복구 예산제도의 개선 추진
- 복구사업 발주, 입찰 등 예산 집행의 탄력적 운용
- 기관 간 신속한 협의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민·관 합동 조정 협의회 구성, 운영

4) 피해주민 지원, 구호대책, 사상자 치료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
- 재해구호기금을 통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이재민 수용, 급식, 생필품 및 구급약품 공급
- 예비군, 민방위대 및 군 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복구 활동
- 피해가옥, 가축 등의 잔해 처리
- 방역소독, 전기·통신시설 복구 등

5)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가동

- 복구지원반 운영 및 복구 지원계획 수립·시행
 - 피해경감, 2차사고 예방조치, 사고현장 복구 지원
 - 인명구조 및 구호지원, 사상자 후송 및 응급조치 지원
 - 사고수습 관련 자원봉사 활동 지원

6)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발생으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요청(지역대책본부장 → 중앙재해대책본부장)

7) 평가 및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

- 사고원인 분석 및 평가
- 사고조치 및 복구단계 문제점 및 보완사항 개선
- 동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제도의 정비



2018 안전관리계획

JEONGSEON COUNTY

Ⅲ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제3장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1. 총괄
2. 자연재난
3.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4. 재난안전일반

Ⅲ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1. 총괄

□ 주요 추진대책

* '18년 대책 수 : 86건

○ (총괄) 대책 수는 전년대비(60건) 26건 증가

- 자연재난 20건,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61건, 재난안전일반* 5건

* 재난안전분야 중 목표설정이 곤란한 농업재해 복구비 제외(1건)

○ (자연재난) 풍수해(태풍·호우), 산사태, 가뭄 등 8개 분야에서, 제도 개선(3건), 재정사업(10건), 기타시책(7건) 포함 총 20개 대책 수립

* (제도개선) 풍수해 행동매뉴얼 정비,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재난대응 협업체계구축 및 매뉴얼 정비(3건)

* (재정사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재해예방 정비, 산림녹화사업, 사방사업, 암반관정 개발 등 가뭄상승지 해소, 농업기반시설 확충 지원, 발작물 시들음 방지시설 확충, 지진 방재종합계획 수립(10건)

* (기타시책) 재난 대비 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사방시설 안전점검, 가뭄 대응 현장점검 및 홍보, 지진대응체계 구축,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및 예방활동,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7건)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화재·폭발, 시설물재난(문화재, 댐, 지반침하 등), 교통재난(도로교통), 국가기반체계마비(청사, 의료서비스, 운송), 감염병 등 16개 분야에서, 제도개선(13건)·재정사업(30건) 및 기타시책(18개) 포함 총 61건 대책 수립

* (제도개선) 문화재 화재 대비 매뉴얼 정비 댐붕괴 매뉴얼 재정비, 지하안전위원회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 산림휴양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교통안전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로터널사고 행동조치 매뉴얼 정비, 유해화학물질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보건의료분야 매뉴얼 정비, 재난폐기물 매뉴얼 정비, 식용수 분야 매뉴얼 정비, 가축전염병 매뉴얼 정비, 청소년수련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13건)

* (재정사업) * 대책 30건

- ① 화재·폭발 :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목조문화재 정밀실측 및 방재시스템 유지보수(3건)
- ② 산 불 : 산불방지대책(1건)
- ③ 시설물 재난·사고 : 공공체육시설 개선·확충 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안전관리 배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5건)
- ④ 교통재난·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1건)
- ⑤ 국가기반체계 마비 : 청사시설 개선사업, 청사 안전관리 대행, 상수도 재난관리 체계 구축(3건)
- ⑥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감염병 예방관리, 모기 방제사업,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6건)
- ⑦ 생활·레저 사고 :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청소년수련시설 확충(2건)
- ⑧ 산업재난·사고 :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1건)
- ⑨ 식품사고 : 식품위생업소 단속, 유통식품 수거 검사(2건)
- ⑩ 안전취약계층 사고 : 노인요양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요양복지시설 기능보강,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 어린이집 기능보강(4건)
- ⑪ 자살 : 자살예방관리사업(1건)
- ⑫ 범죄·테러 : 성폭력 상담소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지원(2건)

* (기타시책) 문화재화재 대응 교육훈련, 산불방지 교육·훈련,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 활성화, 자연휴양림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 교통 안전점검, 동절기 수질관리 대책 추진, 수도시설 안전점검 훈련, 해외유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태세 확립, 전기,가스 안전관리 추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수상레저 현지 지도점검,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 대규모 공사 안전체계 강화, 식중독 예방 강화,의료기관 점검 및 교육, 어린이집 안전관리,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18건)

- (재난안전 일반) 재난·사고 예방(교부세, 시특법 등), 재난·사고 대비·대응(구급·구조) 등 3개 분야에서, 재정사업(3건) 및 기타시책(2건) 포함 총 5건 대책 수립

* 재해의 시기, 규모, 피해 등 예측이 불가능한 복구비 지원에 대한 세부추진 대책 제외

- * (재정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사업 지원, 풍수해 보험 가입지원(3건)
- * (기타시책)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강화, 모든 축제장 보험가입 정례화, 농업재해 복구지원(2건)

- (예산) 전년대비 1,781백만원 증가(증5.36%)된 34,969백만원

- 자연재난 전년대비 5,440백만원 증가(△44.8%)된 17,565백만원

* 풍수해(자연재해, 급경사지, 하천정비 등) 예방사업의 예산증액이 주 증가 사유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전년대비 4,375백만원 감액(△23.7%)된 14,040백만원

* 생활레저 사고 및 안전취약계층 사업비 감액이 주 감소 사유

- 재난안전일반 전년대비 716백만원 증가(증27%)된 3,364백만원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증가에 따른 감액

□ 주요 성과지표

- (목표) 피해 유형별 재난·사고 예방대책 중점추진으로 피해최소화 실현

- 대책 수 86건, 제도개선 16, 재정사업 43, 기타시책 27

분야	유형	사업명	성과목표	'18년 목표	주관 부서
자연재난 (20)	풍수해 (6)	풍수해 매뉴얼 개정	협력기관, 비상연락망 등 정비실적	100%	안전 건설과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	수립 용역 공정율	88%	안전 건설과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정비	정비 누계실적(개소)	3개소	안전 건설과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연장 정비율(%)	100%	안전 건설과
		지방하천 재해예방 정비	계획연장 정비율(%)	100%	안전 건설과
		방재 훈련·홍보	방재훈련 개최실적	1회	안전 건설과
	산사태 (5)	산사태 매뉴얼 정비	정비율(%)	100%	환경 산림과
		산림녹화사업	전년도 벌채지 조림비율(%)	80%	환경 산림과
		사방사업	우기전 사방사업 시행율(%)	80%	환경 산림과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점검 실적(횟수)	2회	환경 산림과
		사방시설 안전점검	점검 실적(%)	100%	환경 산림과
	가뭄 (4)	가뭄상습지 해소사업	사업추진진도	100%	농업 축산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지원	“	100%	농업 축산과
		발작물 시들음 방지 시설 확충	“	100%	농업 축산과
		가뭄대응 현장점검	현장점검 실적(횟수)	3회	안전 건설과
	지진 (3)	지진대응 매뉴얼 정비	현행화 횟수	1회	안전 건설과
		내진성능평가 시행	시설물 수(건)	10개소	안전 건설과
		지진대응체계 구축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발급 실적(건)	10건	안전 건설과
	대설· 한파 (2)	겨울철 사전대비 예방활동	대외 홍보실적(건)	2건	안전 건설과
		겨울철 폭설대응 현장훈련	훈련실시(개최 건수)	1건	안전 건설과
사회 재난 안전 사고 (61 건)	화재· 폭발 (4)	문화재 화재 대비 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문화 관광과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대비 지원실적(%)	100%	안전 건설과
		목조문화재 정밀실 측 및 유지보수	보고서 작성	완료	문화 관광과
		문화재화재 대응 훈련 및 교육	훈련 민 교육 횟수	2회	문화 관광과
	산불 (2)	산불방지 대책	(‘18년 산불발생건수/최근 3년간 산불피해 건수)×100	97%이하	환경 산림과
		산불방지 교육·훈련	예방교육, 경연대회	8회(교육), 1회(경연)	환경 산림과

분야	유형	사업명	성과목표	'18년 목표	주관 부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61)	시설물 재난·사고 (11)	댐 붕괴 매뉴얼 정비	정비율(%)	100%	안전 건설과
		지반침하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제정 및 위원회 구성(건)	1건	안전 건설과
		산림휴양시설 매뉴얼 정비	정비율(%)	100%	환경 산림과
		체육시설 개선확충	준공목표 달성(율)	100%	동계올림픽지원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8년 지원대상 시장(개소)	3개소	지역 경제과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요원 배치인원(명)	12명	지역 경제과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	화재보험 가입 시장(개소)	4개소	지역 경제과
		자연휴양림 시설	자연휴양림 조성·보완(개소)	1개소	환경 산림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법상 수립여부 준수도(%)	100%	안전 건설과
		체육시설 정보관리 시스템 활용	정보관리시스템 등록율(%)	95%	동계올림픽지원단
		자연휴양림 시설 점검	점검결과(횟수)	2회	환경 산림과
	교통 재난·사고 (4)	교통안전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100%	도시 건축과
		도로터널사고 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안전 건설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사업 개소수	1개소	안전 건설과
		운수업체 교통안전 관리점검	점검 횟수	4회	안전 건설과
	유해화학물질사고 (1)	유해화학물질 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환경 산림과
	환경 오염 (2)	대규모 수질오염 행동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환경 산림과
		동절기·해빙기 수질 관리대책 추진	(실적/목표)*100	100%	환경 산림과
	국가기반 체계 마비 (7)	청사시설 개선사업	사업 실적(개소)	4개소	세무 회계과
		청사 안전관리대행	사업 실적(분야)	4개 분야	세무 회계과
		보건의료 대응 매뉴얼 개선	매뉴얼 정비율(%)	100%	보건소
		재난폐기물 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환경 산림과
		식용수 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수질환경 사업소
		상수도 재난관리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개소수	5개소	수질환경 사업소
		수도시설 안전점검 및 훈련	(점검갯수/취·정수장갯수)*100	94%	수질환경 사업소

분야	유형	사업명	성과목표	'18년 목표	주관 부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61)	감염병 (5)	감염병 예방 관리	(신고기한 준수건/전수감시 감염병신고건)×100	99%	보건소
		매개모기 방제사업	환자발생 수(명)	50명	보건소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치료완치 또는 완료율(%)	95%	보건소
		에이즈 및 성병예방	상담소 운영실적(개소)	1개소	보건소
		해외유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태세 확립	훈련참여율(%)	100%	보건소
	가축전염병 (3)	가축전염병 매뉴얼 제·개정	제·개정 반영(횟수)	2회	농업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 지원	지원 규모	4억원	농업 축산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13종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의합/사용농가수)×100	0.4%	농업 축산과
	생활·레저 사고 (7)	취약계층 가스시설 지원	가스시설 사전점검(%)	100%	지역 경제과
		전기·가스시설 안전 관리 추진	안전점검 추진(%)	100%	지역 경제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5년평균 사망자수/저감 사망자수)×100	0명	안전 건설과
		수상레저 안전점검	안전점검 횟수	2회	동계올림픽지원단
		청소년수련시설 매뉴얼 정비	자체 매뉴얼 정비율(%)	50%	여성 청소년과
		청소년수련 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확충 지원(개소)	4개소	여성 청소년과
		청소년수련 시설 점검	점검결과(횟수)	2회	여성 청소년과
	산업재난·사고 (2)	대규모(50억이상) 공사 안전체계 강화	시공실태 점검(횟수)	2회	안전 건설과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완료공정×총 계획공정)×100	100%	지역 경제과
	식품사고 (3)	식품위생소 합동 기획·단속	연간 지도점검 횟수	1,200건	보건소
		유통식품 수거·검사	연간 수거·검사 건수	100건	보건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건수)	100건	보건소
	의료제품 사고 (1)	의료기관 점검 및 교육	(점검·교육/의료기관 수)×100	10%	보건소
	안전취약계층 사고 (5)	노인요양복지시설 기능강화	기능보강사업 추진 개소수	1개소	주민생활 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강화	기능보강 완료 개소수	1개소	주민생활 지원과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정상 가동율(%)	95.5%	주민생활 지원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시설 결정수	6개소	여성 청소년과
		어린이집 안전관리	안전점검 실시(개소)	13개소	여성 청소년과
	자살 (1)	자살예방관리사업	매뉴얼 구비율(%)	100%	보건소
	범죄·테러 (3)	성폭력 상담소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 평균(점)	92점	여성 청소년과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	폭력예방교육 참여 이수율(%)	100%	여성 청소년과

분야	유형	사업명	성과목표	'18년 목표	주관 부서
	범죄·테러 (3)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목표대비 설치대수	25대	자치 행정과
재난 안전 일반 (5)	재난·사고 예방 (3)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전년대비 6% 상향	17억원	안전 건설과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함동안전점검 추진(횟수)	11회	안전 건설과
		축제장 보험가입 정례화	보험 가입 건수	11건	안전 건설과
	재난·사고 대비·대응 (유관기관)	구조·구급장비 구매	노후부족장비 확보율(%)	100%	정선 소방서
		긴급구조 훈련	관서별 연간 훈련 횟수	5회	정선 소방서
	재난·사고 예방 (2)	재난관리기금 재해 예방사업 지원	(기금확보율/기금집행율)×100	95%	안전 건설과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보험가입실적(건)	900(주택) 90천㎡(온실)	안전 건설과
		농업재해 복구지원	지원절차 준수	대책 제외 (지표 모호)	농업 축산과

□ 재정투자 현황

- 전체예산은 '17년 33,188백만원 대비 5.36% 증가한 34,969백만원
 - (자연재난) '17년(12,125) 대비 44.8%(증5,440) 증가한 17,565백만원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17년(18,415) 대비 △23.7%(△4,375) 감소한 14,040백만원
 - (재난안전일반) '17년(2,648) 대비 27%(증716) 증가한 3,364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분야	유형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20개	199,701	37,723	33,188	34,969	47,275	46,546
자연재난 (4)	소 계	103,415	19,068	12,125	17,565	27,541	27,116
	풍수해	74,432	15,409	6,927	12,408	20,058	19,630
	산사태	16,575	3,103	3,554	3,306	3,306	3,306
	가뭄	9,650	0	1,092	1,301	3,627	3,630
	지진	2,758	556	552	550	550	550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13)	소계	82,042	15,965	18,415	14,040	16,963	16,659
	화재·폭발	1,021	130	284	227	205	175
	산불	12,156	2,175	2,442	2,513	2,513	2,513
	시설물 재난·사고	20,001	5,373	5,761	2,895	2,986	2,986
	교통 재난·사고	1,209	377	0	232	300	300
	국가기반 체계마비	26,317	3,424	3,403	4,270	7,610	7,610
	감염병	3,369	550	629	730	730	730
	가축 감염병	2,224	400	498	476	425	425
	생활 레저·사고	4,225	262	2,016	649	649	649
	산업 재난·사고	6,357	2,745	1,342	1,270	500	500
	식품사고	60	12	12	12	12	12
	안전취약 계층사고	3,161	161	1,669	299	654	378
	자살	634	104	122	136	136	136
	범죄·테러	1,308	252	237	331	243	245

분야	유형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재난안전 일반 (3)	소계	14,244	2,690	2,648	3,364	2,771	2,771
	재난예방	7,551	1,586	1,300	1,665	1,500	1,500
	재난 대비·대응	0	0	0	0	0	0
	재난 사고·복구	6,693	1,104	1,348	1,699	1,271	1,271

□ 관계규정 현황

분야	유형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주관 부서
자연 재난	풍수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행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등을 하기 전 재해관련 사항 사전 협의 제도	안전 건설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전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예방 및 저감대책	안전 건설과
		재해위험정비	침수, 취약방재 등 정비	안전 건설과
		하천법, 소하천법	치수안정성 확보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하천 정비	안전 건설과
	산사태	산림보호법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환경 산림과
		사방사업법	사방사업 시행 및 사방 유지·관리 등	환경 산림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방법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환경 산림과
		사방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 등	환경 산림과
	가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예방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농업 축산과
	지진	시설물 내진설계 기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행안부, '17.4)」 제정, 지진 안전성 확보	안전 건설과
	황사	대기환경보전법	황사 위기대응 체계 정비	환경 산림과
	대설·한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도로제설대책	방재과

분야	유형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주관 부서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화재·폭발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행동매뉴얼	재난관리체계,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소방서
		문화재보호법	화재 및 재난방지 등	문화 관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문화 관광과
	산불	산림보호법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산불의 예방과 진화 등	환경 산림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 규정	환경 산림과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불예방, 감시시설 운영, 산불진화, 무선통신 등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한 규정	환경 산림과
		산불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산불재난 발생에 따른 강원도 세부 대응절차 및 행동조치 사항	환경 산림과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시설물 재난·사고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농업 축산과
		하천법	시설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안전 건설과
		지하안전법	지하개발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 절차 등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제도화	안전 건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	동계 올림픽 지원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 균형	지역 경제과
		자연휴양림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	자연휴양림 유형별·시기별 안전관리	환경 산림과
	교통 재난·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중장기 계획, 제5차 교통사고잘은곳개선계획	안전 건설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관리	안전 건설과
		제3차 강원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시 건축과
		유도선 및 도선 안전법	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 건설과
	방사능 재난·사고	국가위기관리기본 지침, 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분야 위기 관리요령	자치 행정과
	유해화학 물질 재난·사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환경 산림과
	환경오염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유류, 유해물질 등의 유출로 인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피해 최소화	환경 산림과

분야	유형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주관 부서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국가기반 체계마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유지관리(청사)	세무 회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의료서비스 분야)	보건소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주요 조치사항	환경 산립과
		식용수분야 위기대 응 실무매뉴얼	수질오염, 자연재해, 재난 및 테러,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식·용수 공급시스템의 파괴 및 마비, 식수전용저수지 손상 등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시 체계적 대응	수질환경 사업소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보건소
		결핵예방법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보건소
	가축 전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규정	농업 축산과
		축산법	가축의 개량, 증식,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 등 축산업 발전 및 축산농가 소득 증대	농업 축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에 의한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보호, 대응을 위한 관리체제 확립	안전 건설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	농업 축산과
		재해구호 및 재난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호구호 및 재해복 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 규정	안전 건설과
		구제역방역실시요령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제역 예방활 동과 발생시 방역조치사항 등 구체적 규정	농업 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활동과 발생시 방역조치사항 등 구체적 규정	농업 축산과
		구제역긴급행동지침	구제역 발생상황별 긴급 조치사항, 부처별 협조사항, 표준행동요령 등 세부사항 지정	농업 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별 긴급 조치사항, 부처별 협조사항, 표준행동요령 등 세부 사항 지정	농업 축산과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 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의무화 사항 지정	농업 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위기대응 표준/실무 매뉴얼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농식품부, 지자체의 대응절 차와 조치사항을 규정	농업 축산과

분야	유형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주관 부서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생활 레저·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안전 건설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안전 건설과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 안전관리, 등록 및 검사, 면허, 사고대응 및 조치	동계 올림픽 지원단
		청소년 활동 진흥법	안전점검 계획 등의 수립·시행	여성 청소년과
	산업 재난·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계약 규정	도시 건축과
		건축법	착공신고시 120억미만 공사 기술지도계약 사본 첨부하도록 규정	도시 건축과
		건설기술진흥법, 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에 관한 조례	건설공사 현장 점검시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및 전문기관에 위탁 점검 가능	도시 도시과
	식품사고	식품안전기본법	긴급대응	보건소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	보건소
	의료 제품사고	의료법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상황, 관계서류를 검 사, 관계인에게 진술을 들어 사실 확인	보건소
	안전취약 계층사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여성 청소년과
		보육사업 안내 지침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어린이집 지도· 점검, 안전관리	여성 청소년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들의 재활·자립 및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	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 사업법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	주민생활 지원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 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주민생활 지원과
	자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유해정보 유포에 따른 처벌기준 등	보건소
	범죄· 테러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프로그램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 청소년과
		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프로그램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 청소년과
		학교폭력 예방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여성 청소년과
		“지자체 CCTV통합 관제센터 사업 추진 계획”, 아동복지법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아동보호구역 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자치 행정과

분야	유형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주관 부서
재난 안전 일반	재난 사고·예방	지방교부세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 (소방안전교부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안전 건설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하여 조치	안전 건설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기본계획	안전 건설과
	재난·사고 대비·대응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119 구급차 응급처치 기자재, 전문구급 장비 등구매	소방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	소방서
	재난 사고·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기금의 확보 및 활용	안전 건설과
		풍수해보험법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 대처	안전 건설과
		농어업 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복구지원	농업 축산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난 발생시 피해자의 긴급 생활안전 도모를 위하여 신속한 복구비 지원체계 구축	안전 건설과
		재해구호법,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이재민의 구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구호물자 구입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지원	안전 건설과

IV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2. 자연재난

1). 풍수해

가. 현 황

- 최근 5년간 풍수해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연간 평균 496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 풍수해의 유형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2,254백만원으로 전체 풍수해 피해의 88.2%를 나타냄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115	28	11	1	512	25
재산피해		496	385	35	2	2016	46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 통계 출처 : 재난관리 업무 포털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13~'17) 풍수해로 2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기상온난화로 인한 기상기후 발생 빈도 증가 및 홍수, 태풍 등에 취약하거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제방, 교량, 비닐하우스, 온실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풍수해 피해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관련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재해예방사업 및 예찰활동으로 차츰 감소하는 추세임

* 재해원인별(피해규모) : 집중호우>대설>태풍>강풍 순으로 발생

** 주요 재해유발 요인으로 기온상승과 강수 변동폭 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중기계획의 수립)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74,432	15,409	6,927	12,408	20,058	19,630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변경)	950	600	350	0	0	-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	2,468	1,310	1,158	0	0	-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32,282	8,922	3,600	5,700	7,030	7,030
소하천 정비사업	13,430	1,204	1,652	2,208	4,366	4,000
지방하천 정비사업	25,302	3,373	167	4,500	8,662	8,600

마. 목 표

구분	2017년 피해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명피해(명)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46	43	40	37	34

* 목표설정 : 재산피해 전년대비 5% 저감, 인명피해 제로 목표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재해취약성 사전조사, 재해 위험도 평가 후 재해 위험지구 정비 계획 수립·시행 및 재해위험지구별 행동매뉴얼 마련 등 재해위험지구 관리
 - 자연재해위험지구 : 3지구(붕괴위험 3)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 4지구(D급이상 4)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관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정비 등 재난취약시설의 점검·정비 강화
-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전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
 - 시장·군수는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도 검토→행정안전부 승인)
 - 정선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변경) 추진중(행정안전부 승인 후 확정)
 - * 정선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변경) : 2016년~2018년 / 950백만원

2) 대비단계

- 협업부서·유관기관 간 비상소집체제 및 정보 수집·전달수단 확보, 응급대응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정기적 훈련 등 응급대응체계 정비
 - 안전한국훈련실시('17. 5월), 반복적인 훈련으로 재난대비역량 강화
 - 재난대응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 등 정례화(상시훈련 추진)
- 예·경보 시스템 작동상태 점검, 자연재난 취약지역 예·경보 시스템 운영 강화
 - 예·경보시설 : 7종 89개소
 - 우기 전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정비
 - 마을정보방송시설 대피방송 실시를 위한 책임자 지정
 - * '17년 실적 : 기상관측장비 등 유지보수(55백만원), 시설 설치 및 보수(260백만원)
- 방재물자 및 동원장비 등 확보·관리 실태 점검
 - 수방자재 확보 및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 수방자재 : PP마대(모래), 톤백(모래), 로프, 말뚝, 삽, 해머 등
 - 비축장소 : 읍면동 창고 등
 - 관용장비,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하도록 조치
 - 지정대상장비 : 덤프, 굴삭기, 페이로다, 크레인, 청소차, 집게차 등
 -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 체계 확립

▶ 1단계 : 군 보유장비

▶ 2단계 : 유관기관 보유장비

▶ 3단계 : 군부대 장비

▶ 4단계 : 민간장비

○ 방역물자 및 침수방지용 장비 확보

- 방역물자 확보

- 대상물자 : 살충제, 살균제, 손씻기용 위생비누, 예방접종약품 등
- 비축기준 : 국립보건원의 전염병관리사업지침에 의거 비축 관리
- 보관장소 : 보건소에 비축 관리

- 침수방지용 장비 확보

- 종 류 : 양수기, 수중펌프, 비상발전기 등
- 확보기준 : 침수피해상황 및 침수위험지역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침수되었던 과거 사례를 조사하여 적정한 소요량 확보
- 보관장소 : 배수펌프장 및 읍면 창고

○ 이재민 수용 및 구호물자 지정

- 지정기준

- 지역별 최근 10년간의 이재민 발생 수, 과거 재해발생빈도, 침수흔적,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시설의 규모와 장소 지정
- 수용면적은 1인 3.3㎡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구호물자확보

- ‘피해액’, ‘연평균 강우량’,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재해구호물자비축기준에 따라 비축
- 생수, 쌀, 부식, 즉석식품, 부탄가스 등 유통기간이 짧거나 화재위험 등으로 장기 보관이 어려울 경우 사전구매선을 확보, 재해발생시 즉시 조달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피체계 구축

- (예방단계) 기상특보가 발표되고 많은 비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출입차단
- (사태발생) 직접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을 출입하는 도로 차단 등 직접 통제 실시
- (복구·수습) 피해지역 중 복구 작업이 지연되거나 복구·수습 중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떠 등 위험 지역에 안전한 복구를 위한 통제

3) 대응단계

- (재난발생 직전) 비상근무 및 재난대책본부 운영 등 대응체제, 기상·재난상황 홍보, 침수·고립·산사태·저수지붕괴위험 등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홍수 예상 시 댐, 배수펌프장 등의 사전조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현장 상황파악, 도와 시·군간 상황 공동관리
- (재난정보) 통신수단 확보, 피해상황 조치파악 활동
- (교통소통) 도로침수·낙석·토사유실 등 교통두절지역 응급복구, 도로관련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및 대규모 재난 시 지원요청, 우회도로 지정

4) 복구단계

- 읍·면 및 주민의(시설물 관리자)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복구 방안 강구, 주택복구는 최단 기간 내에 완료, 주민생활 밀접시설 응급복구 우선실시, 공공시설 복구 시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여 피해재발이 없도록 시공
- 피해조사, 피해원인분석 등 피해상황 보고
 -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과장없이 사실조사하여 정확한 피해량 산정
 - 피해상황보고
 - 공공시설 : 시·군 → 도/중앙(7일 이내)
 - 사유시설 : 피해자 → 시·군(10일 이내), 시·군 → 도/중앙(14일 이내)
 - 피해조사 및 확정보고 : 17일 이내
 - 국고지원 대상일 경우 5천만 원 이상 공공시설은 중앙합동 조사 실시
- 재난발생으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재난 지역의 선포 요청(지역대책본부장 → 중앙재해대책본부장)
-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사업 등 복구비 지원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
 - 재해구호기금을 통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 자금 지원
- 군민 스스로가 개인이 소유한 보험가입 대상시설에 대해 위험관리를 실천하는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 활성화
 - 시기별/ 시설별 위험시설에 대한 가입촉진대책 추진
 - 여름철/겨울철 풍수해집중 시기 도래 이전 보험가입 적극 추진
 - 상습침수지역, 재해이력 시설 등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가입촉진 추진
 - 현실성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 추진
 - 행정안전부 제작 CF영상 적극 활용(IPTV, 전광판 등)
 - 각종 교육·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 추진(홍보물 제작·배부)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매뉴얼 개정 보완

작성 부서	안전 건설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명호 담당	033-560-2497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창수 주무관	033-560-2499	예방

◇ 풍수해로 인한 재난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협업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정비

□ 목 표

목 표 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매뉴얼 개정 및 보완	2회	2회	2회	협력기관, 연락처 임무, 변동사항 등	보통

□ 주요내용

- 풍수해 대비 대응 대책 수립 및 시행
 - 비상연락망 수정 및 임무카드 미비점 수정
 - 행동매뉴얼 표준작성 지침에 맞게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및 현행화
- * 행동매뉴얼 주기적 수정 및 보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정·보완 비상연락망, 상황판 수정	3월
하반기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정·보완 비상연락망, 상황판 수정	10월

2) 재정사업

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변경)

작성 부서	안전건설 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명호 담당 고승구 주무관	033-560-2497 033-560-2496	재난안전관리 단계 예방
-------	--------	-----------	-------------------	------------------------------	-----------------

◇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하여, 군 전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81	100	-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공정률(%)	높음

□ 주요내용

- 용역기간 : '16. 1. 29. ~ '18. 12.
- 용역비 : 960백만원
- 용역범위 : 정선군 전역(A=1,220km²)
- 용역업체 : (주) 이산 외 3개사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후보지 분석	3월
2/4분기	위험지구 선정(저가대책 수립 등)	4월~8월
3/4분기	주민공청회, 의회 등 의견 청취	9월
4/4분기	전문가 사전검토 및 승인신청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안	'19	비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용역	2,265	-	600	350	-	-	'18년 완료

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작성 부서	안전건설 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명호 담당	033-560-2497	재난안전관리 단계
			고승구 주무관	033-560-2496	예방

◇ 지역생활권 내 분포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위험요인 조기해소로 피해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 비실적	62	85	100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실적(누계)	높음

□ 주요내용

- 정비대상 : 3지구
- 사업비 : 234억원(국비112, 특교 6, 도비 24, 시군비 91)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사업내용 : 주택 및 도로 사면 보강, 피암 터널 등
- * 2018년 추진계획 : 3지구(계속3)/ 57억원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 지속 추진	3월
2/4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4월~5월
3/4분기	우기대비 시설물 점검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6월~9월
4/4분기	19년 사업계획 조정확정, 이월방지 추진단 운영	10~12월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예산	'18 예산안	'19	비고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5,834	3,600	5,700	7,030	

다. 소하천 정비사업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동인 담당	033-560-2492	재난안전관리 단계
			전홍식 주무관	033-560-2493	예방

◇ 미정비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

*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 제13조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 0.31km	3개소 1.12km	3개소 0.79km	계획연장 정비율	높음

☐ 주요내용

○ 제방 축조, 호안 정비, 시설물 정비 등

* 재해빈도율 산정한 계획하폭, 홍수위 및 홍수량을 고려한 재해예방사업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공사계약 및 착공	2월
하반기	공사추진 지도 및 완공	3~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소하천 정비사업	1,204	1,652	2,208	4,366	4,000	

라). 지방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동인 담당	033-560-2492	재난안전관리 단계
			전홍식 주무관	033-560-2493	예방

◇ 상습 침수지역이나 수해발생 우려지역 등에 제방을 신설하거나 보강하여 치수 안전도 확보를 위해 시행

* 하천법 제27조, 하천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16~2025년) (국토교통부, 2016.11.)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지방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1개소 0.4km	1개소 0.1km	1개소 1.49km	계획연장 정비율	높음

□ 주요내용

○ 상습 침수지역이나 수해 우려지역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 재해빈도를 산정한 계획하폭, 홍수위 및 홍수량을 고려한 재해예방사업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공사계약 및 착공	1월
하반기	공사추진 지도 및 완공	2~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지방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3,373	167	4,500	8,662	-	

3) 기타시책

가. 방재 훈련·홍보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명호 담당	033-5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창수 주무관	033-560-2499	대비,대응

◇ 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재 전문인력 양성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방재훈련	1회	1회	1회	방재훈련 개최실적	보통

□ 주요내용

- 재난 대비 훈련(CPX 훈련의 정례화)
 - 주 관 : 정선군 및 정선소방서
 - 방 법 : 관계기관과 합동 훈련
 -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 회 수 : 합동 훈련(연 1회), 자체 훈련(수시)
 - 훈련 평가
 - 분야별 전문 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실태 및 지휘통신 체계
 -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수준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교육, 훈련, 홍보 계획 수립	1~3월
2/4분기	교육, 훈련, 홍보 실시	연중
3/4분기	교육, 훈련, 홍보 실시	연중
4/4분기	결과 보고 및 성과분석	12월

2). 산사태

가. 현 황

○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		-	-	-	-	-	-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나. 원인분석

-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 증가
- 지형적 요인(산림 82%)에 따른 산사태 피해 위험 상존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및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산사태 피해 점차 감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산사태 예방 장기 대책(산림보호법 제45조의2)
-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산림보호법 제45조의3)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16,575	3,103	3,554	3,306	3,306	3,306
산림녹화사업	7,633	1,325	2,024	1,428	1,428	1,428
사방사업	8,942	1,778	1,530	1,878	1,878	1,878

마. 목 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 산사태방지 장·단기 대책 수립 및 시행
 - 산사태방지 추진목표와 전략,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등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강화
 - 집중관리대상(A,B 급)과 관심대상(C급)으로 구분
 - 집중관리대상에 대하여 현장 확인후 우기전(6월말) 지정고시 완료
 - 재해피해 저감을 위하여 사방댐·계류보전 등 사방사업 우선시행
 - 연2회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및 응급조치 실시
 -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지정등 대피체계 구축
- ☐ 산사태방지 담당자 등 교육실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법 등
 -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 실시(응급조치, 주민대피 등)
- ☐ 산사태 위기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실시(연 2회)
 - 산사태 예·경보 발령 및 상황전파, 주민대피, 평가·환류 등
- ☐ 산사태 예방·대응 추진실태 점검실시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예방대책 추진실태,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숙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숙지 등

2) 대비단계

- ☐ 산사태방지 담당자 등 교육실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법 등
 -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 실시
 - 산사태취약지역의 점검·응급조치, 유사시 주민대피 등 교육
- ☐ 산사태 위기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실시
 - 산사태 예·경보 발령 및 상황전파, 주민대피, 평가·환류 등

☐ **산사태 예방·대응 추진실태 점검실시**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예방대책 추진실태,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숙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숙지 등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및 협업체계 사전구축**

☐ **산사태 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운영기간 : 여름철 산림재해대책기간(5.15~10.15)
 - 설치장소 : 정선군 환경산림과 (4개팀/8명)
-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마련 등 산사태 대응상황 총괄 지휘
 - (기상정보 모니터링)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신속한 수집·전파
 - (위기경보 전파) 중대본의 위기경보 발령사항을 신속히 전파
 - (산사태예측정보 관리) 예측정보 제공에 따른 상황전파 체계 점검
 - (현장 지도점검)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예방·대응체계 점검

3) 대응단계

☐ **위기경보 수준별 운영강화**

- 위기경보 수준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 (관심)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유관기관 협업체계 정비 등
 - (주의) 기상정보 모니터링, 취약지역 및 대피체계 점검·정비 등
 - (경계) 인명피해예방조치, 호우지역 주민대피, 휴양림입장통제 등
 - (심각) 호우지역 주민대피, 인명피해 예방강화, 피해지 응급조치 등

4) 복구단계

☐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추진**

- 피해조사 시 누락·중복 또는 물량의 과대·과소치가 없도록 정확히 조사
- 피해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원인조사·분석 및 복구방안 제시

☐ **산사태 발생지의 체계적 복구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 산사태 발생지의 계획적·체계적인 복구 추진으로 적기 완료
- 복구지의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실시로 피드백을 통한 품질향상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환경산림과	작성자 및 연락처	지형규 담당	033-560-2422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기정 주무관	033-560-2445	대비

◇ 여름철 자연재난 기간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100%	100%	100%	행동매뉴얼 현행화 (정선군 및 9개 읍·면)	높음

□ 주요내용

- 강원도 행동매뉴얼에 따라 정선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산사태 예방 대응 절차 및 업무,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 여름철자연재난기간(5.15~10.15.) 전 정선군 및 9개 읍·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현행화
 - 담당자 및 유관기관 연락처 ,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조직도 등 현행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	산림청 실무매뉴얼(도 행동매뉴얼)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1~2월
2/4	여름철자연재해대책기간 전 정선군 현장조치행동매뉴얼 현행화	5월

2) 재정사업

가. 산림녹화사업

작성 부서	환경산림과	작성자 및 연락처	지형규 담당	033-560-2422	재난안전관리 단계
			배연표 주무관	033-560-2421	대비

- ◇ 우량 목재 자급기반 구축 및 건전한 산림생태 유지(산사태 예방)를 위하여 산림녹화사업 실행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전년도 벌채지 조림비율	85%	80%	80%	전년도 벌채지 조림비율 (시행량/계획량)	높음

□ 주요내용

- 산사태 재해 저감을 위한 산림녹화사업 실행
 - 전년도 벌채 지역 조림사업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분기	봄철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 및 설계	
2분기	사업착공 및 봄철 조림사업 완료	
3분기	가을철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 및 설계	
4분기	사업착공 및 가을철 조림사업 완료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계	1,325	2,024	1,428	1,428	1,428	
산림녹화사업	1,325	2,024	1,428	1,428	1,428	

나. 사방사업

작성 부서	환경산림과	작성자 및 연락처	지형규 담당	033-560-2422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기정 주무관	033-560-2445	대비

◇ 산사태(토석류 포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실행

*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우기전 사방사업 시행율	83%	80%	80%	우기전 사방사업 시행율 (시행량/계획량)	높음

□ 주요내용

- 산사태 재해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및 정비
 - 사방댐 신설, 사방댐 준설 등 사업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우기전 완료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사방사업(사방댐 신설, 사방댐 준설, 사방댐 안전조치)	1~6월
하반기	사업추진 및 준공	7~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계	1,778	1,530	1,878	1,878	1,878	
사방사업	1,778	1,530	1,878	1,878	1,878	

3) 기타시책

가.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작성 부서	환경산림과	작성자 및 연락처	지형규 담당	033-560-2422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기정 주무관	033-560-2445	대비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지정, 점검 등)를 통한 산사태재해 안전망 구축 및 피해 최소화

*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2회	2회	2회	상반기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보통

□ 주요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 실시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상·하반기 현지 점검 실시
 -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 집중관리 대상지 현장 확인후 지정 심의 하여 우기전(6월말까지) 지정·고시 완료
 -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산사태취약지역 상반기 점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완료	2~6월
하반기	산사태취약지역 하반기 점검	7~11월

나. 사방시설 안전점검

작성 부서	환경산림과	작성자 및 연락처	지형규 담당	033-560-2422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기정 주무관	033-560-2445	대비

◇ 체계적인 사방시설 점검 및 구조개량 등 유지·관리 강화

* 사방사업법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사방시설 점검	100%	100%	100%	우기전 사방시설 점검 실적율 (점검량/계획량)	보통

□ 주요내용

-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조치는 우기전(6월말까지) 완료
- 균열·누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사방댐은 안전조치 시행
- 사방댐 준설 대상지는 우기전(6월말까지) 실행완료, 준설이 불필요한 사방댐은 현장에 미실행 사유 표지판 설치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하반기	사방시설 점검·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2~11월

3). 가뭄

가. 현 황

- 최근 2년간 평년 대비 누적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16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논 물마름 등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음

나. 원인분석

- 가뭄 특성상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들음 등은 빈번히 발생하나, 장마 등 강우와 용수개발을 통해 대부분 해소됨
- 간이상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산간지역 마을의 경우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간 강우량 부족 시 생활용수 부족 발생
-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우패턴 변화(강우강도 증가, 강수빈도 감소)로 국지적 가뭄 및 가뭄주기가 짧아지져 가뭄발생 가능성 증가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제1항제5호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재해대책)

라. 투자현황

-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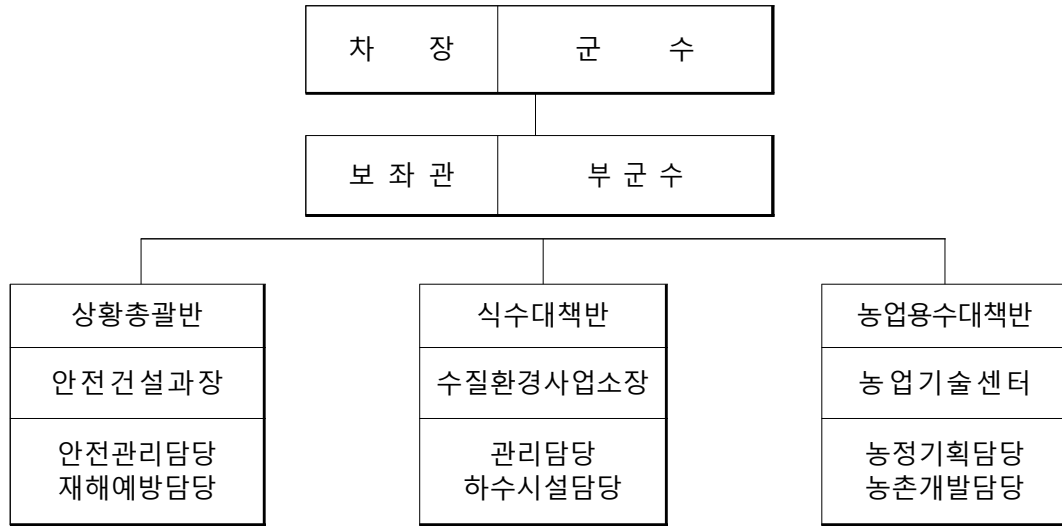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9,650	0	1,092	1,301	3,627	3,630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1359	-	-	500	429	430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	791	-	164	129	248	250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2600	-	-	200	1,200	1,200
밭기반 정비사업	4900	-	928	472	1,750	1,750

라. 목 표

-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선량한 시설관리를 통하여 재해·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업인의 편익과 안전 영농에 기여

마. 체계도

- 가뭄종합대책 상황실 설치 ⇨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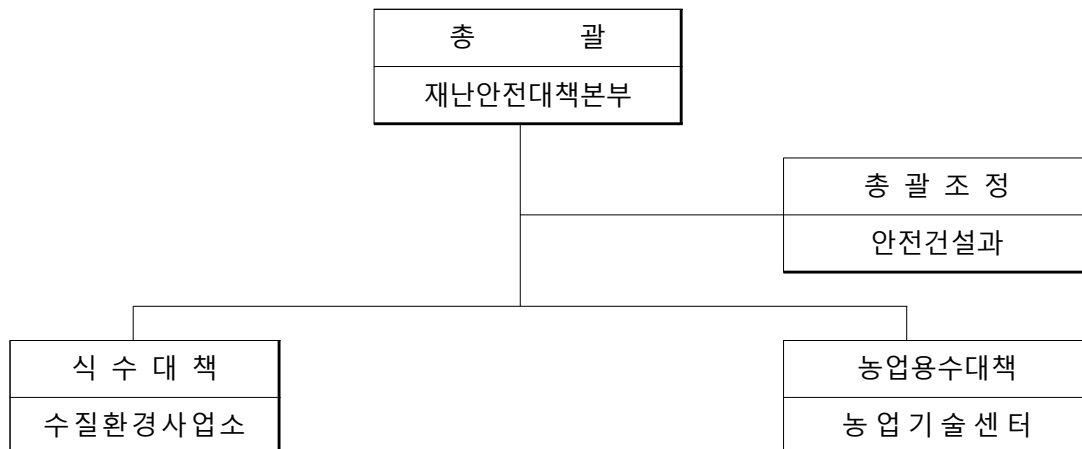
- 근무체계

- 평 시 : 소관부서별 근무체계 유지
- 비 상 시 :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 구 분

- 평 시 : 가뭄이 지속되기는 하나 식수난지역 및 한해 지역이 일부 국한되어 피해 발생이 우려될 때
- 비 상 시 : 가뭄이 극심하여 도내 대부분이 식수난으로 주민생활 피해가 막대하고, 한해지역의 확산으로 영농에 큰 지장이 우려될 때

- 가뭄대책 추진체계



바.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계획

1) 예방단계

□ 상습 가뭄 대책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추진

- 기존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 가뭄 등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과 광역상수도의 연계 운영
- 다양한 수자원 확보
 -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이용 등 다양한 수자원 확보 추진
- 한해 장비 점검·정비, 농업용 관정 등 기존 시설의 최대 활용 및 타 수리시설의 일시 전용 대책 수립

□ 관정 및 양수기 등 가뭄대책 장비 점검·정비 추진

- 관정 및 양수장비는 영농기에 적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읍.면에서 점검·정비하고, 군에서 확인 점검

□ 가뭄발생 우려 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용수대책 상황실 운영 준비

- 이양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논, 용·배수로 물가두기, 간이양수장·송수호스 설치 등 급수대책 강구
 - * 가뭄발생 상황에 따라 읍.면에 상황실 설치 운영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지원단 현지 파견 및 인력·장비 동원 계획수립

□ 영농기 전 대 농업인에 대한 물절약 홍보계획 수립·시행

- 농업용수 부족 우려지역 들녘별, 지역별 집단못자리, 이양방법 등 영농급수계획 수립 및 농업인 협조방안 강구
 - 물 부족상황 홍보, 물 절약 주민설명회 및 마을에 현수막 게시
- 농업인 스스로 논물 가두기 등 절수 영농계획 수립토록 홍보
 - 급수 사전예고 실시(문자, 마을방송, 안내문발송 등), 절수예고

2) 대비단계

□ 가뭄 대책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조사 활성화

-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개발
- 가뭄 대책에 관한 기초 자료 집적 및 연구시설 확충 등
- 가뭄 발생 예상 지역 중점 관리

□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대책본부 회의 운영
 - 가뭄 시기별 회의 주기 : 단계 상황별 실시
 - 각 분야별 가뭄 회의 시기 판단기준

구분	강수량	농업용수	생활용수
징후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 평년대비 70% 미만	• 1개 시·군에서 평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70%정도거나 • 밭 토양 유효수분율 61~80% • 전국 저수율 평년보다 20% 적음	1개 시군에서 1개 마을상수도 급수제한
발생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 평년대비 60% 미만	• 1개 시·군에서 평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51~70%정도거나 • 밭 토양 유효수분율 41~60% • 전국 저수율 평년보다 20~40% 적음	1개 시군에서 전체 지방상수도 공급이 30~50%감량공급
극심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 평년대비 50% 이하	• 1개 시·군에서 평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50% 이하이거나 • 밭 토양 유효수분율 40% 이하 • 전국 저수율 평년보다 40%이상 적음	1개 시군에서 전체 지방상수도 공급이 50%이상 감량공급

○ 대책본부 구성·운영

- 운영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 비상근무기간 : 합동근무 필요 시 ~ 해갈 시까지

※ 합동근무 : 가뭄 상황에 따라 재대본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실시

- 관련부서 : 3개 부서(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질환경사업소)
- 주요임무 : 가뭄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 및 상황관리
- 구 성 : 호우·대설 등 자연재난 비상 I, II단계 구성기준을 준용 하되, 가뭄대책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

☐ **위기장후 감시 및 내용전파 체계 구축**

- 이상징후 감시 활동 및 비상연락망 확인
 - 최근2개월 누적강수량 , 농업용수 등 가뭄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 한국농어촌공사, 읍.면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확인
 - 상습가뭄재해지역 상황 지속 관리

☐ **가뭄대응체제 준비·점검**

- 가뭄상황에 따라 관계부서 및 기관회의 준비
- 관련부서 및 기관 준비태세 점검
 - 가뭄대책장비 점검·정비 재정비 등
- 추진중인 용수공급 사업 조기 완료

3) 대응단계

☐ **가뭄 발생 직전의 대책**

- 가뭄 대응 활동 체계의 확립
 - 비상근무 체계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 재난정보 수집 및 상황관리
 - 재난관리 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및 재난상황 신속 전파

☐ **단계별 제한 급수 대책 추진**

- 지역 실정에 따라 1단계(10~30%)~4단계(급수 중단)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 대책 수립·실시

☐ **긴급 생활 용수 공급**

- 유희 우물 또는 농업용 관정 등 기존 시설 최대 활용
-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 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마을상수도, 전용 상수도 등 활용

- 농업·공업·발전용수 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 비상 급수 시설 장비 및 인력 확보

□ 가뭄 발생 지역 긴급 용수원 개발 추진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 부족 예상지역은 지하수, 간이 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 부족 지역은 양수 공급 실시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소형관정, 집수정 등

□ 영농 가뭄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 한해장비 점검·정비 및 관정개발 추진
- 저수지 준설, 소류지 신규 설치 등 담수량 확보
- 농업용 저수지 물가두기를 통한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

□ 가뭄위기 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 최근 2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80% 미만이고, 다음 분야별 기준에 1개 이상 해당시 - 생활용수 : 해당지역 지방상수도 공급량의 10~30% 미만 감량 공급 - 농업용수 : 해당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80~71%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 80~61% ○ 댐용수 : 용수 실수요량으로 감축 공급	○ 징후 감시활동
주의 (Yellow)	○ 최근 2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70% 미만이고, 다음 분야별 기준에 1개 이상 해당시 - 생활용수 : 해당지역 지방상수도 공급량의 30~50% 미만 감량 공급 - 농업용수 : 해당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61%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 60~41% ○ 댐용수 : 하천유지용수 추가감량 공급	○ 협조체계 가동 대비태세 점검
경계 (Orange)	○ 최근 2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60% 미만이고, 다음 분야별 기준에 1개 이상 해당시 - 생활용수 : 해당지역 지방상수도 공급량의 50% 이상 감량 공급 - 농업용수 : 해당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 4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댐용수 : 농업용수, 생·공용수 추가감량 공급	○ 대응태세 돌입
심각 (Red)	○ 전국적인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대응조치 강화

□ 긴급지 및 신속한 대응

- 가뭄대책 추진상황 관리
 - 제한(운반)급수 실태, 농작물 가뭄 상황 등
- 물절약 홍보 지속 추진
- 관련부서 간 상호 업무분담 및 협조체제 유지
- 가뭄상황에 따라 해당읍면동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필요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회의 개최
- 가뭄대책관련 예산 조기집행 및 관정개발, 폐공 원상복구 지시

□ 비상급수 지원

- 유관기관, 기업체 및 군부대 등에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 농업용수 비상공급을 위한 소방차 활용 지시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용 조치

4) 복구단계

- 재난복구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중앙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뭄피해에 대한 복구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가뭄피해대책비 지원
- 상수도시설의 정상화 방안 추진
- 관정 등 지하수 개발구간 오염 방지 추진
-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 긴급 수원 개발
- 가뭄 피해 원인조사, 기록, 평가 및 사후활용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암반관정 개발 등 가뭄상습지 해소

작성 부서	농업축산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유경식 담당 김진석 주무관	033-560-2373 033-560-2444	재난안전관리 단계 예방
-------	-------	--------------	-------------------	------------------------------	-----------------

◇ 한발대비용수개발 등 농업용수로 개발을 통한 가뭄상습지 해소로 가뭄예방 및 피해 최소화

□ 주요내용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 위 치 : 정선군 화암면 백전지구
 - 사 업 량 : 1개 지구
 - 사업내용 :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설치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현지 점검 및 설계용역	3월
2/4분기	공사 착공 및 준공	6월
3/4분기	시설물 유지관리	9월
4/4분기	시설물 유지관리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	'18	'19 중기	'20 장기	비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	164	129	248	2,022	

나. 농업기반시설 확충 지원

작성 부서	농업축산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유경식 담당	033-560-2373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진석 주무관	033-560-2444	예방

◇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수원공시설 확장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 주요내용

○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도전지구
- 사 업 량 : 1개 지구
-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수원공시설 확장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현지 점검 및 기본계획용역	3월
2/4분기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6월
3/4분기	공사착공	9월
4/4분기	공사준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18	'19 중기	'20 장기	비 고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	500	429	2,857	

다. 발작물 시들음 방지시설 확충

작성 부서	농업축산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유경식 담당	033-560-2373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진석 주무관	033-560-2444	예방

- ◇ 발작물 시들음 현상 방지를 위한 가뭄대책 사업을 실시하여 농작물 생육안정 등 기반시설 확충

□ 주요내용

○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외도전지구
- 사 업 량 : 1개 지구, 45ha
- 사업내용 : 수혜면적 50ha미만의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용배수로 등 설치

○ 발기반정비사업

-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기곡지구, 임계면 독토고지 지구
- 사 업 량 : 2개 지구, 90ha
- 사업내용 : 농업용수개발, 용배수로정비, 농로 포장 등 기반구축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3월
2/4분기	공사계약 및 착공	6월
3/4분기	사업추진	9월
4/4분기	공사준공 및 유지관리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18	'19 중기	'20 장기	비 고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	200	1,200	3,400	
발기반정비사업	928	472	1,750	2,517	

2) 기타시책

가) 가뭄 대응 현장점검 및 홍보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명호 담당	033-560-2497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창수 주무관	033-560-2499	대응

◇ 가뭄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장비 확보 현황 등 점검 및 홍보 활동을 통한 가뭄 선제적 극복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 목표 달성 기여도
가뭄 대응상황 점검	2회	2회	3회	분야별 가뭄대책 현장점검 횟수	보통
절수홍보 활동	2회	2회	3회	가뭄대비 절수운동 캠페인 횟수	보통

□ 주요내용

- 가뭄 ‘주의’ 단계 격상시 ⇒ 단계별 「가뭄대책 실무회의」 개최



- 가뭄 종합상황실 운영 : 3개 과(안전건설과, 농업축산과, 수질환경사업소)
- 유관기관 급수지원, 긴급 용수개발 등 가뭄극복 협력대응
 - 군부대, 소방,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급수자원 지원체계 구축
- 비상 취수시설 가동점검 및 수계조정 배관망 사전점검 실시
- 가뭄 취약지역 대응상황 현지점검 → 비상 대응상황 확인
- 제한급수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전홍보 강화
 - 물절약 캠페인, 주민행동요령 홍보, 단계적 제한급수 내용 사전 안내 등
 - 홍보방안 : 지역방송, 마을방송, 현수막, SNS, 리플렛, 전광판 등
- 가뭄피해 확산시 상습가뭄지역 재난관리기금 지원
- 피해 확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인력·장비·물자 총력지원

4). 지진

가. 현 황

- 과거 5년간 피해발생 현황 : 없음

나. 원인분석

- 내진설계 의무 기준이 1988년 제정되었으나 6층이상 연면적 100,0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건축물이 상존
- 활성단층의 지각변동이 잦아지면서 2016년 경주 지진, 울산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을 통해 내진설계 부족에 따른 피해 가중
 - * 내진설계 적용 건물은 20%로 미치지 못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및 같은 법 제16조(지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지진방재종합계획수립사업 (내진성능평가 포함)	2,758	5,56	552	550	550	550

마. 목표

구분	2017년 피해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명피해(명)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시설물의 보강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관리
 -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 상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관리
 - 내진설계 적용실태 확인 및 내진성능 확보율 제고
- 내진설계기준 제정 전 완공 기존시설물 및 신축 저층건축물 내진대책 추진
 - 공공건축물 : 연차적 내진보강사업 추진
 - 민간건축물 : 인센티브(세 감면) 제공을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 시스템 확충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 계획 수립·운영
- 지진 정보 통보 체계 고도화
- 주요 시설물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통합 관리 추진

☐ 피해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 민·관 협력 조기경보체계 운영(예·경보 활용)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정·관리
- 교육 및 훈련
 - 지진 방재 관련 대 국민 교육·홍보 강화 추진
 - 지진 방재 종합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실시

☐ 재난 발생 시 피해경감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국민행동요령 등 교육·홍보용 자료 배포
- 재난체험관 활용, 민방위훈련 등 민간 대비활동 지원

2) 대비단계

☐ 지진 재난 각종 매뉴얼 보완 추진

- 지진재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등 각종 지진 관련 매뉴얼 보완

☐ 임시 위원구성 운영

- 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 재난 감시체계 운영

- 기상청 및 유관기관 관측망의 공유체계 활용
 - 기상청 및 유관기관 지진관측망의 공유체계 활용
 -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시스템 활용
- 재난예·경보 및 정보 수집·전달
 -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한 사전 대응체계구축
 - 예·경보 발령사항, 재해발생, 응급조치, 복구상황 전파
- 연계 피해 대비 각급 기관 위기관리 협조 체계 구축
 - 정보통신, 전력, 식·용수 등 위기 징후 감시 및 상황 전파 공유 체계 구축

☐ 긴급대피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한 체계 정비
 - 대피장소 및 대피로 사전 지정 및 홍보
 - 발생 초기 긴급수송 가능한 교통 및 운수루트 확보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정·관리

☐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대비 태세 구축 및 점검

- 관련 특보의 통보 시스템 구축 및 보강
- 유·무선, FAX, 모바일,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상황 전파 시 재난 방송 온라인 시스템, CBS, 재해 문자 전광판 등 활용

3) 대응단계

□ 재난발생 특보의 전파 및 보고

○ 신속한 상황 파악·전파

-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한 지진정보 사전 통보
- 관련 특보의 통보시스템 활용
- 인터넷, SNS, 유·무선, FAX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신속한 상황 보고

- 소방, 경찰, 군 동원,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활용 피해범위 및 규모 예측

□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인명피해 등 피해 최소화

○ 주관·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가동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협업기능별, 유관기관 간 공조로 신속한 대처 시행
 - 현장지휘소의 신속 설치 및 각 기능별 활동 전개
 - 복합재난으로 인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 도로 등 대규모 주요 시설물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 긴급구조 및 상황별 공동관리체 운영

- 소방·군·경 출동 재난 초동대응
- 라이프라인 응급복구 및 안전점검
 - 전기, 가스 공급시설의 피해발생시 응급복구·공급 차단 요청
 - 통신, 상수도 시설의 피해발생시 응급복구 요청
- 긴급지원체계의 실행
 - 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전염병 예방 등 지역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지진피해 규모에 따른 대응조치 시행

○ 2차 재난 방지대책 강구 지시 및 확인

- 폭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위험물·유독물 취급시설 등의 방재활동 확인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 지자체 피해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및 계속 사용 여부 판단
- 여진에 의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추가 붕괴에 대비, 시설물 안전도 검사 및 응급조치 방안 수립

○ 시설물 응급복구대책

- 건축·토목기술자 등 전문 인력은 관련 전문기관에 요청
- 제8087부대에 군 인력 지원 요청

○ 긴급수송방안 마련

- 긴급수송로의 지정 운영
 - 긴급 운송로의 확보(철도, 도로)
 - 육해공으로 다중교통 네트워크 수단 확보
- 피해지역내 도로상에 낙하된 장애물 제거 등 긴급도로 개설 계획 수립
- 수송차량 등의 확보
 - 공공기관으로 소속차량은 1차 동원 차량으로 지정
 - 부족할 경우에 대비 민간소유 차량으로 추가 지정 확보

○ 청소, 방역, 사체 처리

- 쓰레기처리
 - 건물의 붕괴, 화재 등으로 발생한 다량의 폐기물 신속 처리
 - 이재민 수용소 등 집단수용 시설에 간이화장실 등 설치
 - 유해물질 회수계획 수립

- 방역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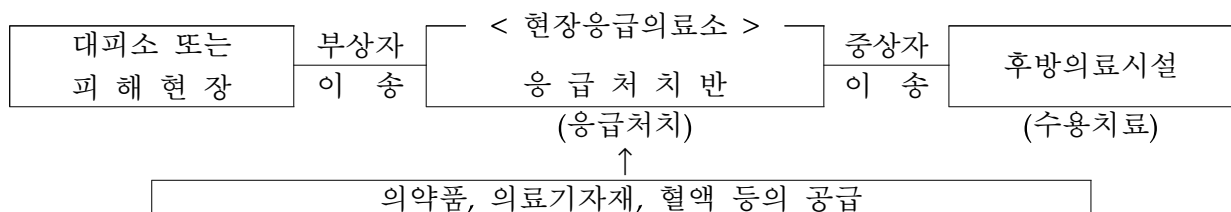
- 지진발생지역 및 집단수용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방역반 편성 운영

- 실종자 수색처리

- 실종자 수색은 긴급구조통제단 주관으로 실시하되 실종자를 사망 처리할 경우에는 행방불명 상태에 있는 자로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거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 사체 운구시 운구한 사체는 피해지역 인근의 병원에 안치하고 관계기관의 검안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인계하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화장

○ 구조·구급 및 의료대책

- 구호·구급체제의 정비
- 현장 응급의료소의 설치



<재해 시 의료구호체계 흐름도>

○ 자원봉사자 운영 대책

- 재해발생지역 피해상황 및 지원 요구내용 파악, 자원봉사센터 피해복구 상황실 운영
- 봉사활동 내용 결정, 상황별 필요물품, 후원업체 모집, 자원봉사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활동 분야별 봉사자 모집

○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 비상급수 추진
 - 대피소로부터 2km이내의 지역에 응급 급수조 또는 정수조를 설치

- 일시적 단수에 대비 통상 식용으로 사용하는 우물에 대한 수질관리
- 개인우물, 비상급수시설, 담수된 배수지 등을 활용 음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
- 생필품 공급
 - 수송로가 개설되어 식료·생필품의 수송 가능 시까지 피해자에게 3일 이상 공급할 식료·생필품 비축
 - 식료 등 긴급물자의 수송시스템의 확립
 - 이재민 수용생활의 장기화에 따른 필요물자의 추가 확보
-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 피해지역 실상 보도 및 복구를 위한 전 도민 동참 유도

4) 복구단계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 피해 규모·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운영
 - 건축물, 주요 사회기반시설 피해 조사
- 소관 부서 및 기관 별 체계적인 복구계획의 수립·추진
 - 개선복구 위주의 사업으로 반복피해의 사전 예방
- 필요시“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이재민 수용, 급식, 생필품 및 구급약품 보급
 - 예비군, 민방위대 및 군 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복구 활동
 - 피해가옥, 가축 등의 잔해 처리
 - 방역소독, 가스·전력·통신·상수도 등 라이프라인 시설 복구

□ **지진피해 원인분석 조사**

- 지역 지진피해조사단 편성·운영
 - 지진재해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
 - 지진재해 경감대책 마련

□ **피해 기록 및 평가**

-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의 보관
 - 지진 발생시부터 대응까지의 실제 대응일지 기록
 - 사진·동영상 등으로 재해흔적 기록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재난대응 협업체계구축 및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안전건설 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명호 담당	033-560-2497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창수 주무관	033-560-2499	대비, 대응

◇ 현장의 대응기관을 통합 지원·조정(Support & Coordination)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정비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여도
매뉴얼 현행화	1회	1회	2회	매뉴얼 현행화 횟수측정	보통

□ 주요내용

- 재난현장 통합 지원·조정을 위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13개 기능별 협업체계를 통한 대응체계 확립
 - * 종합적인위기관리는 본 대책을 기반으로 하되, 연계피해에 대해서는
해당재난에 대한 대책 및 매뉴얼을 적용하여 대처
- 내진설계기준 적용 및 내진보강 등 피해저감 대책 시행
 - 시설물별 내진보강 대책 수립 (1월)
- 지진방재 종합시행계획 수립 (2월)
 - * 2단계 내진보강기본계획('16~'20)에 부합되는 대책 수립
- 지진안전성표시제 시행을 통한 대국민 홍보 실시(연중)
- 지진매뉴얼 현행화 (1,2분기)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2018년 내진보강 대책 수립	1월
2/4분기	지진 매뉴얼 정비, 협업체계 구축	4월
연 중	지진안전성표시제 시행을 통한 대국민 홍보	연중

2) 재정사업

가. 지진 방재종합계획 수립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명호 담당	033-560-2497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창수 주무관	033-560-2499	대비, 대응

- ◇ '16. 9. 12.(20:32)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응 및 대비체계 등 종합 진단을 통하여 지진재해 대응역량 강화
- ◇ 정부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 ('15~'19년)” 수립('15.12.29)에 따른 자체 계획 수립

□ 목 표

(단위 : 개소)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내진성능평가지행	0	0	15개소	성능평가 시설물 수	높음

□ 주요내용

- 내진성능평가 및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 위 치 : 정선군 전역 A=1,219km²
 - 사 업 량 :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내진성능평가 포함) 1식
 - 사 업 비 : 450백만원('17년 100, '18년 이후 350)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2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연중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용역추진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16예산	'17예산	'18예산안	'19	'20	비 고
내진성능평가 용역	556	552	550	550	550	

3) 기타시책

가). 지진대응체계 구축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명호 담당	033-560-2497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창수 주무관	033-560-2499	예방

- ◇ 지진 재난에 대한 교육·훈련 참여
-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 ◇ 내진보강 대국민 홍보 및 지진안전성표시제 활성화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지진 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발급 실적	3건	0건	3건	- 지진 안전표시제 확인서 발급(건)	높음

□ 주요내용

- 교육·훈련 참여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전문교육 참석
 -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통한 대응 훈련 참여
 -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참여 독려
-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 대 상 : 정선군청
 - 지진가속도계측 통합시스템 관리를 통한 상황 준비
 - * 유지관리 용역 수행으로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운영 관리
- 지진안전성표시제 활성화
 - 내진성능 확보 공공건축물에 대해 명판 등을 부착하여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연 중	지진 재난에 대한 교육 참석	1월~12월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내진보강 대국민 홍보 및 지진안전성표시제 운영	

5. 황사

가. 현 황

- 과거 5년간 피해발생 현황 : 없음

나. 원인분석

- 황사는 주로 5월경 중국·몽골의 고원 및 사막지역 등에서 발원되어 북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6~8일에 전국적으로 황사가 관측됨.

다. 목 표

구분	2017년 피해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명피해(명)	0	0	0	0	0

라.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황사 종합 대책

- 매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 회의를 통해 소관 업무별로 황사 피해 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 도 및 시·군은 관련 부처의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대책 수립

2) 대비단계

☐ 정선군 안전대책본부 및 관련 실과소별 황사 대책 추진

-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점검
- 황사 대응 매뉴얼 정비

☐ 황사대비 국민 행동요령 홍보

- 지역 여건에 맞는 황사 대비 국민 행동요령 적극 홍보
 - TV·케이블방송 인터넷 등 영상 매체와 리플릿·소책자·전광판 등 홍보

□ 황사 대비 단계별 국민 행동 요령

○ 황사 발생 전

가정 및 식품 취급 장소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 외 활동 자제 • 황사가 실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 외출 시 필요한 보호 안경, 마스크, 긴 소매 의복, 위생 용기 등을 준비 • 과일, 채소류 등 포장하지 않은 식품의 야적 자제
학교 등 교육 기관	• 기상 예보를 청취, 지역 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 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 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 학습 대책 등 수립 • 황사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시설 원예 등 농가	•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벧집 등에 비닐 씌우기 • 동력분무기 등 황사 세척용 장비 점검·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황사 발생 중

가정 및 식품 취급 장소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 금지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되, 외출 시 보호 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을 행구어 주고, 양치질 등으로 입안 청결 유지 •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 제조·가공, 조리 전 철저한 손씻기 및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 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 기관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 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
축산·시설 원예 등 농가	• 방목장의 가축을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 방지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피할 것. • 야적된 사료용 건조, 벧집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황사 발생 후

가정 및 식품 취급 장소	• 실내 공기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 기관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축산·시설 원예 등 농가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 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

○ 황사 특보 발령 단계별 행동 요령

구 분	발령기준치	행 동 요 령
주의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4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 활동 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 활동(운동, 실외 학습 등) 금지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 운동 금지 및 실외 활동 자제 권고
경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 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 활동(운동, 실외 학습 등) 금지 및 수업 단축, 휴교 등의 학생 보호 조치 강구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 외 활동 금지 - 실 외 운동 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3) 대응단계

☐ 황사 피해 선제적 대응

- 황사 상황 파악 및 피해 감시시스템 운영
- 재난 발생 시 부서별 초동 대응
- 황사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중점 홍보
- 황사 예보·특보 문자서비스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황사 피해 확인 및 피해지 대청소
- 황사 청소로 2차적 피해 발생 최소화

6. 대설·한파

가. 현 황

- '17년도 중 발생한 폭설 피해는 없으며, 13-14년도 폭설 피해는 북쪽 만주지역의 고기압과 만나 형성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동해안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강한 동풍으로 유입되어 눈이 내림.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2.4	7	2	-	-	-
재산피해	169	135	34	-	-	-
인명피해		피	해	없	음	

나. 원인분석

- 겨울철 평균 강수량은 증가추세 적설일수는 감소 경향
 - (기온) 최근 5년 겨울철 평균 기온 0.84℃ 평년(0.6℃)대비 0.24℃증가
 - (강수량) 최근 5년 겨울철 평균 강수량 96.8mm 평년(88.5mm)의 111%
 - * 겨울철 평균 강수량은 연 평균 강수량(1,307mm)의 약 6.8%의 비중
 - 적설량 최근 5년 평균 적설일수는 17.9일 평년(20.8일)의 85.7%
 - * 최근 5년 적설일수 : '16년 15.1일, '15년 9.7일, '14년 15.9일, '13년 23.2일, '12년 25.5일
 - ⇒ 최근 5년간 많은 눈이 오지 않아 피해가 적었음
-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설·한파 등 기상이변 발생
 - 출·퇴근 시간 때 차량고립·통제 등에 따른 교통대란 및 도민불편
- 농업시설물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설로 피해 발생
 -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의 설계 강도 적설심이 대부분 40~60cm이나 적설량이 이를 초과하면서 피해 발생
- 축사 및 축산 부대시설 내설설계기준 미달로 인한 붕괴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현지확인 점검을 통하여 기능복원사업 또는 개선복구사업 추진
-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사전대비 결과 반영)
- 17년~18년 시즌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종합계획(올림픽 연계)

라. 목 표

- 주요 거점지역 제설자재 및 장비 배치
-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른 신속·정확한 대비태세 확립
- 올림픽 대비 폭설안전대책 마련
 - 예비특보단계부터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운영
 - 올림픽 조직위↔강원도↔정선군연계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도로별 제설 및 교통 대책

1) 도로 제설 대책 일반 사항

- 제설 장비의 확보 및 사전 점검·정비
 - 제설차, 덤프트럭, 모래(염화칼슘) 살포기, 제설 삽날(덤프트럭용), 염화칼슘 용액 살포기, 그레이더, 로우더, 굴삭기, 카고트럭 등
- 제설 작업 요원의 제설 취약구간 현장 적정 배치
 - 조종원, 도로 보수원, 일용 제설원, 미화원 등 기타 제설 요원
- 제설 자재의 확보·비축 및 적사함 설치 관리
 -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제설 자재의 적정량 확보
 - 교량 또는 노건이 협소하여 적사함 설치가 곤란한 어려운 지점은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으로 현장 비축

- 적사함은 응달부, 고갯길, 곡선부, 터널 입·출구 등 제설 취약지점에 설치하고 염화칼슘, 모래, 삽 등 비치
- 도로 등급별 제설 작업 우선 순위 선정 및 집중 제설 관리
 - 국도, 지방도, 군도(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정선군)
 - 고속도로 IC 및 연결도로 인접 구간(도로공사와 협의체제 구축)
 - 국도 및 대로와 타 시군간 연결도로
 - 지방도 및 군도로로서 읍·면간 연결 도로
 - 농어촌도로 등 기타도로로서 마을 간 연결 도로

3) 시가지 및 도로 경계구간의 광역 제설대책

- 강설 초기단계부터 염화칼슘 살포 등 초동단계에서 교통 소통 대책을 강구 사전 제설작업
- 폭설 시 출·퇴근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등 제설 취약구간 우선 제설실시
- 도로 경계구간의 동시 소통을 위하여 도로 경계인접 자치단체 및 제설 기관 간의 광역 제설작업 실시
- 야간 강설예보 시 사전 조치
 - 제설 필수요원 교통 취약 지점 인근 사무실, 여관 등 합숙 대기
 - 제설차 및 염화칼슘 현장 비치
 - 교통방송 등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 홍보강화
- 대설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 대책
 - 개인택시 부제 해제
 - 자가용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계도(교통방송 등)
 - 교통 통제 및 흐름 조정(경찰청)
- 대설경보 발령 시 대중교통 대책
 - 개인택시 부제 해제
 - 자가용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계도(교통방송 등)
 - 교통 통제 및 흐름 조정(경찰청)

□ 농림시설 피해경감 대책

1) 비닐하우스 시설

○ 단기대책

- 폭설 시 비닐하우스시설의 눈 쓸어내리기 등 사전대비 철저
- 하우스밴드 등 느슨해진 것은 팽팽하게 당겨 매기
- 보조 지지대를 활용하여 폭설에 의한 피해 대비
 - 새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반드시 내재형 표준규격 및 그 이상의 설계 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설치하도록 지도강화
 - 대 농업인 홍보 및 교육 실시
 - 연동식 비닐하우스는 적설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설 초기부터 적극 가운을 실시

○ 장기대책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지역별 내재형 규격 시설 체계로 전환
 - 내재해 기준 조기 정착을 위해 내재형 중심으로 재해 복구비 상향 지원
 - 비 규격시설은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재해복구비, 농업 종자금 지원사업, 시설원에 품질 개선사업 등 각종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설강도 및 품질개선을 위한 KS구조용 강관 사용 및 접속자재 사용강화
 - 재해 시 피해를 입은 자재는 재해복구 시 재활용 금지
 - 10ha이상의 시설에 대한 전문시공업체 시공강화
- 기존시설 보강사업 확대추진
 - '07년부터 비닐하우스 재해경감사업에 적극 참여
 -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 주요 재해별 대응요령 및 풍수해 보험 등 가입 지도·홍보
 - 지역별 기상특보에 대한 농가 단위 전파체계 구축

2) 대비단계

□ 대국민 홍보강화

- 겨울철 재해 대비 국민행동요령과 설해 대책 협조사항을 각 언론, 통·반행정조직, 회보 등 모든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 실시
- 홍보기간 : '17년 12월 ~ '18년 3월말까지
- 홍보내용
 - 설해 발생 시 대 국민행동요령
 - 설해 상황 및 교통통제 등 교통정보사항
 - 적설 대비 차량 안전장구 휴대 운행
 -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 홍보매체
 - TV, 신문, 통·반 행정 안내문, 문자전광판, 아파트 구내방송 등
- 홍보방법
 - 민방위 훈련 시간을 이용한 대 국민 설해대비 요령 홍보
 - 설해 대책 상황을 방송, TV, 신문 등에 보도
 - KBS 등을 통한 지속적인 자막 및 안내방송 실시

□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등의 제설 책임 홍보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내용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 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임

□ 행동 매뉴얼 활용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

- 개인별 행동매뉴얼 적극 활용
 - 재난 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재난의 유형별 상황 단계별로 유기적·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작성된 행동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대처

- 국민행동요령 홍보
 - 차량 운전자, 보행자 홍보
 - 가정 · 직장 · 농촌 · 해안에서 홍보

□ 정선군, 유관기관의 대비대책 총괄 조정 및 지원

1) 홍보강화

- 리 · 반 행정 홍보문에 설해 대비 협조 사항게재
- 설해 대책 사전 조치사항을 지방 보도기관에 제공
- 기타 실정에 맞게 수립한 홍보계획을 능동적으로 홍보 실시

2) 제설책임범위 등 조례 제정

- 건축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에 대한 조례 홍보 실시

3) 행동 매뉴얼 적극 활용

- 재난 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 상황단계 별로 유기적 ·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 하도록 작성된 행동 매뉴얼의 적극 활용으로 신속한 재난상황에 대처

4) 설해예방을 위한 기상예보 시스템 강화

- 기습폭설 등의 예보능력 강화를 위한 기상관측 기술의 고도화

5) 설해정보의 수집 · 전파 및 통신수단의 확보

- 저기압 및 전선의 활동 등에 의한 강설량, 적설량, 기온 등의 기상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 · 전파하기 위한 체계 확립
- 비상통신체계의 정비, 유 · 무선 통신 시스템의 역할 분담을 통한 운용 및 응급대책 등 중요 통신 확보 대책 수립추진

☐ 홍보대책 추진

1) 내집 및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추진

- 도로 기능별 제설·제빙작업 역할분담 홍보
 - 차도는 행정청, 내 집앞 보도 및 이면도로는 주민책임 홍보
- 강설 시 자발적으로 눈을 치워 스스로의 안전 확보
 - 홍보물 배부 및 공공기관, 대형건물 주변 눈 치우기 적극 협조

2) 도로교통대책 홍보

- 실시간 강설상황 및 통제구간, 우회 도로 등 교통상황 전파
- 적설 시 자가용 이용자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 적설대비 차량은 체인 등 안전장구 휴대 운행 등
- 실시간 강설상황 및 교통통제구간 적극 홍보

3) 농·수산 시설 피해예방 홍보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사전에 점검 및 받침대 등 보강
- 비닐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을 통해 눈 내리는 시점부터 녹여 흘러내리기

3) 대응단계

☐ 설해 발생 직전의 단계

1)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근무체계 : 연중 무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구축
 - 평상 시 : 24시간 자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강설 시 : 적설량에 따라 초동, 1·2·3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비상근무 실시

구분	내 용	근무 형태
대설 주의보	24시간 내 신 적설 5cm 이상 예상 시 ※ 지역 구분 없음	사전 대비 체계 가동
대설 경보	24시간 내 신 적설 20cm 이상 예상 시 - 단, 산지는 30cm	비상 근무 체계 유지

※ 풍수해 대책에 준한 근무 체계 구축

▶ 필요 시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 근무

- 재난 대비 체계 및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직원의 실무반 편성 운영
- 상시 대비 체계, 사전 대비 체계 및 비상 단계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

2) 재난상황보고

○ 보고단계

- 최초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발생시 지체 없이 보고
- 중간보고 : 상황전파시스템 등을 활용 수시 보고
- 최종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된 후 종합보고

○ 보고체계

- 정선군수 ⇨ 도강원지사 ⇨ 행정안전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정선군수, 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3)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 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KBS 등 방송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파체계 확립
- 문자(스크롤)방송 또는 생방송 체제로 긴급 뉴스 방송 요청

4)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 정보를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 교육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업여부 검토 등 학생보호대책 강구

5)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 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근무
 - 지역대책본부는 재난 대비 체계 및 재난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 직원을 실무반에 편성 운영
 - 지역대책본부는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직원 파견 요청
 -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 민간용역위탁 제설작업 활성화
 - 행정력 부족으로 초동제설을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지역은 협약된 민간업체에 일정구간 제설 책임제 실시
 - 민간지원 제설장비 및 민간단체 봉사인력 등을 강설 초기단계 부터 즉시 투입(협회 등)
- 폭설 시 응급복구 및 제설 지원
 - 군부대, 경찰, 민간 봉사단체, 민방위대원 등을 활용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력·장비 동원
 -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민간 Outsourcing : 마을 트랙터 등을 활용한 마을 제설단 운영 등

6) 민간모니터위원 운영

- 재난상황 관련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처하고 재난 취약 시설 점검 등 재난의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 위원으로 활성화
- 지역 실정에 밝은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민간단체 대표, NGO 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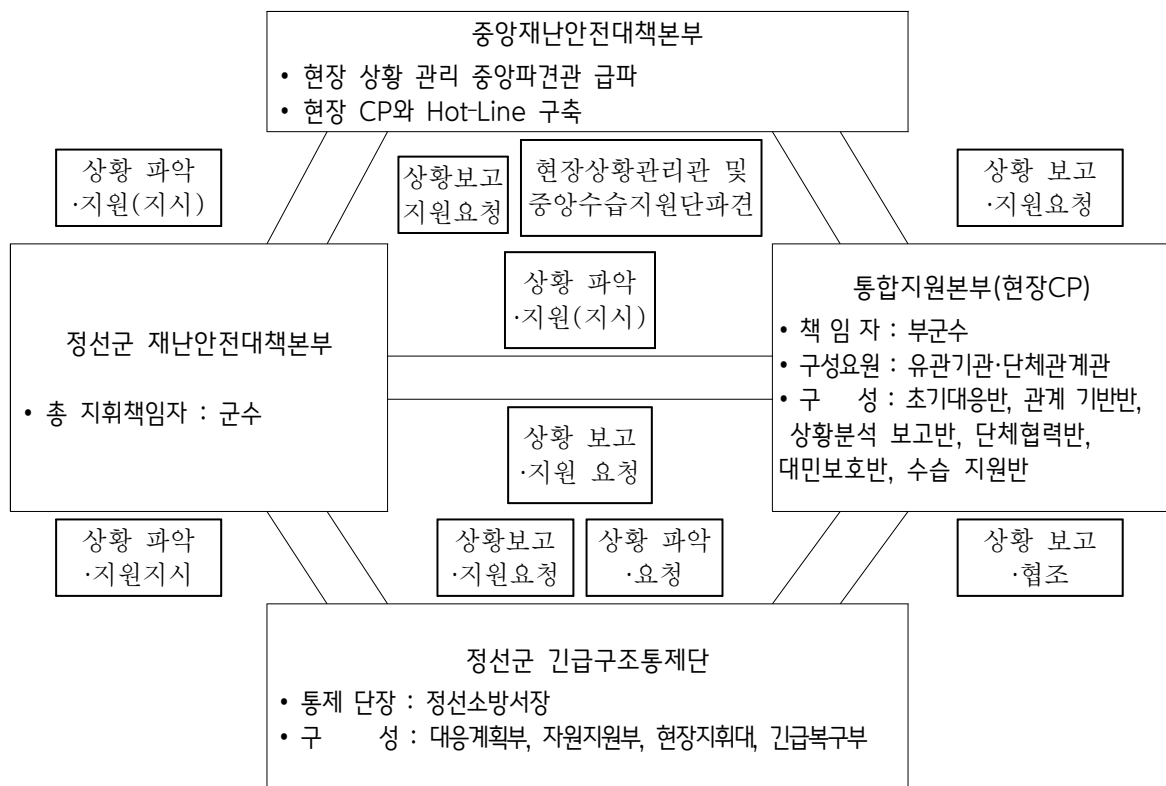
7) 상황판단회의제 도입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 진행 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실무반 운영 및 파견 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결정 등

☐ 재난 발생 직후

1) 현장 비상지원본부 설치

- 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군CP개념의 비상 지원본부 설치
-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로 구성, 지역본부장이 지휘 책임을 가지되 재난 주관기관 책임자를 실무 책임자로 지정·운영



2) 도로별 제설현황 파악

- 도로별 제설작업 파악
 - 도로관리청이 주관하여 위험구간 우선 실시
 - 교통량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 제설자재, 장비 집중배치 및 제설실시
 - 제설작업은 가능한 정상 운행되도록 하되, 필요 시 제설차량 통행에 필요한 교통은 통제
 - 국도와 지방도의 연결 구간, 시·군 경계 구간 등 제설 취약지구는 합동 제설작업

3) 고립예상지역 현황 파악 및 지원

- 동원인력 및 장비동원 지원
 - 사태발생시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고립 예상 지역별로 동원인력 및 장비동원 협조
 - 동원 우선순위는 인력은 공무원, 주민 순으로, 장비는 관 보유, 민간보유 순으로 동원
 - 설해 취약지역은 기 지정된 모니터 위원 등을 활용하여 설해 상황을 수시 파악 즉시 대처
-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 동원
 - 군·경찰·산림청·소방 등과 인명 구조용 헬기지원 협조
 - 영서권, 영동권, 남부권 권역별로 상호지원 협조
 - 긴급상황에 대비 비상출동 대기조 편성 운영 지원

4) 복구단계

- 풍수해 대책에 준함

바.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및 예방활동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명호 담당	033-560-2497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민수 주무관	033-560-2498	예방

◇ 취약구간 전면 재조사·정비 및 예방시설 확대

◇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대책 마련 등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한파관련 홍보	2	2	2	대외 홍보실적	보통

□ 주요내용

-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홍보 실시
- 재난 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 상황단계별 작성된 행동매뉴얼의 적극 활용으로 재난상황에 대처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4/4분기	한파관련 대외 홍보	10~11월

나)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현장훈련 추진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명호 담당	033-560-2497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민수 주무관	033-560-2498	예방

◇ 대규모 폭설에 의한 통행 불통 등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신속한 공조를 통한 조기 교통소통대책 마련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폭설대응 교통대책 훈련	1	1	1	훈련 실시(개최 건수)	높음

□ 주요내용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 유 형 : 폭설 대응 현장 종합 훈련(통제, 제설, 홍보, 회차, 구호 등)
- 일 자 : 11월경(연례반복), 수시
- 주 관 : 정선군
 - * 유관기관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중점 추진사항》

- ◆ (도로통제) 적설량에 따른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
- ◆ (도로제설) 제설장비·인력의 신속한 현장 도착 및 제설작업
- ◆ (재난홍보) 차량정체에 따른 통제상황 및 우회도로 홍보
- ◆ (차량회차) 비상회차로 개방 및 차량 회차·견인 실시
- ◆ (물자동원) 장비·자재 응원 및 민·관·군 협조를 통한 물자동원
- ◆ (구조구호) 운전자·승객 대피유도 및 구호물품 보급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4/4분기	폭설대응훈련 기본계획 수립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현장훈련 추진 - 토론훈련 1, 현장훈련 1회	11월

7. 폭 염

가.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		-	-	-	-	-	-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	-	-	-	-	-
	온열질환	-	-	-	-	-	-

* 온열질환 : 열사병, 열 탈진, 열 경련, 열 실신, 열 부종 등

나. 원인분석

-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열대 태평양 해안이 따뜻해지고,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와 인도지역에 뜨겁고 건조한 상태를 유도 하였으며,
- 지구 온난화도 폭염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

다. 목표

구분	2017년 피해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명피해(명)	0	0	0	0	0

* 목표설정 : 전년대비 5% 저감

라.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

- 폭염 피해 현황 및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한 무더위 전망 분석
- 폭염 특보에 따른 국민 행동 요령 홍보 등 한발 앞선 강원도 차원의 효율적 대응 체계 확립
- 관계 기관·부서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공동 대응 협력 체계 구축 등 합동 지침 마련
- 폭염 대비 취약 계층 특별 보호 대책의 도, 시·군 관련 부서 간 연계 운영 강화로 현장 중심의 폭염 대책 추진

□ 합동 T/F팀 구성 · 운영

○ 팀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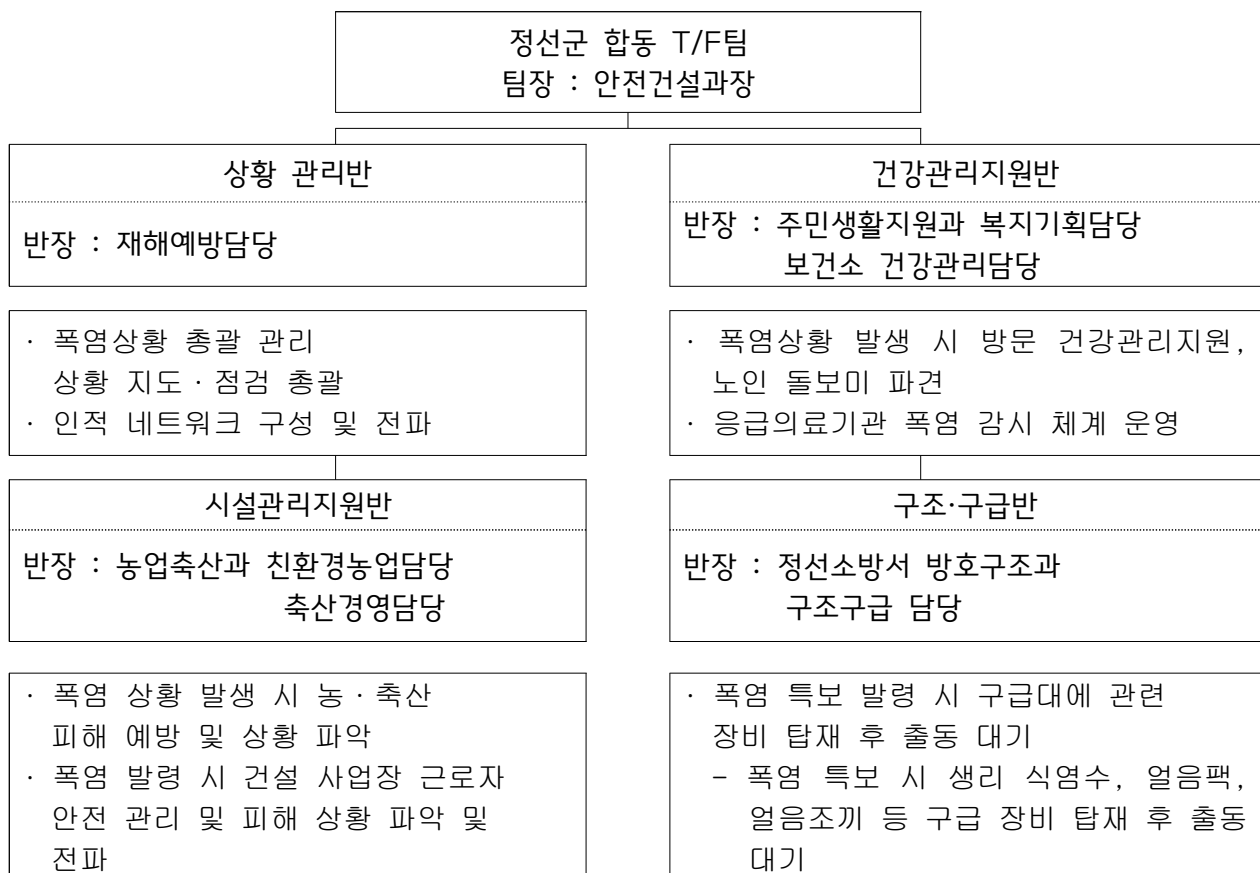
- 총괄 상황 관리반(3인) : 정선군 재해예방담당, 반원 2명
- 건강 관리 지원반(4인) :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주민생활지원과 경로 복지담당 및 반원 2명
- 시설관리지원반(4명) :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축산경영담당 및 반원 2명
- 구조구급반(2명) : 정선소방서 구조구급담당 및 반원 1명

○ 추진업무

- 폭염 상황 관리 총괄, 관련 부서 간 비상연락망 구축
-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사, 노인 돌보미 지정 및 폭염 정보 전달 체계 구축
-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전화, 건강 체크 등의 행정 서비스 지원

2) 정선군 T/F팀 구성 · 운영

○ 구성 ·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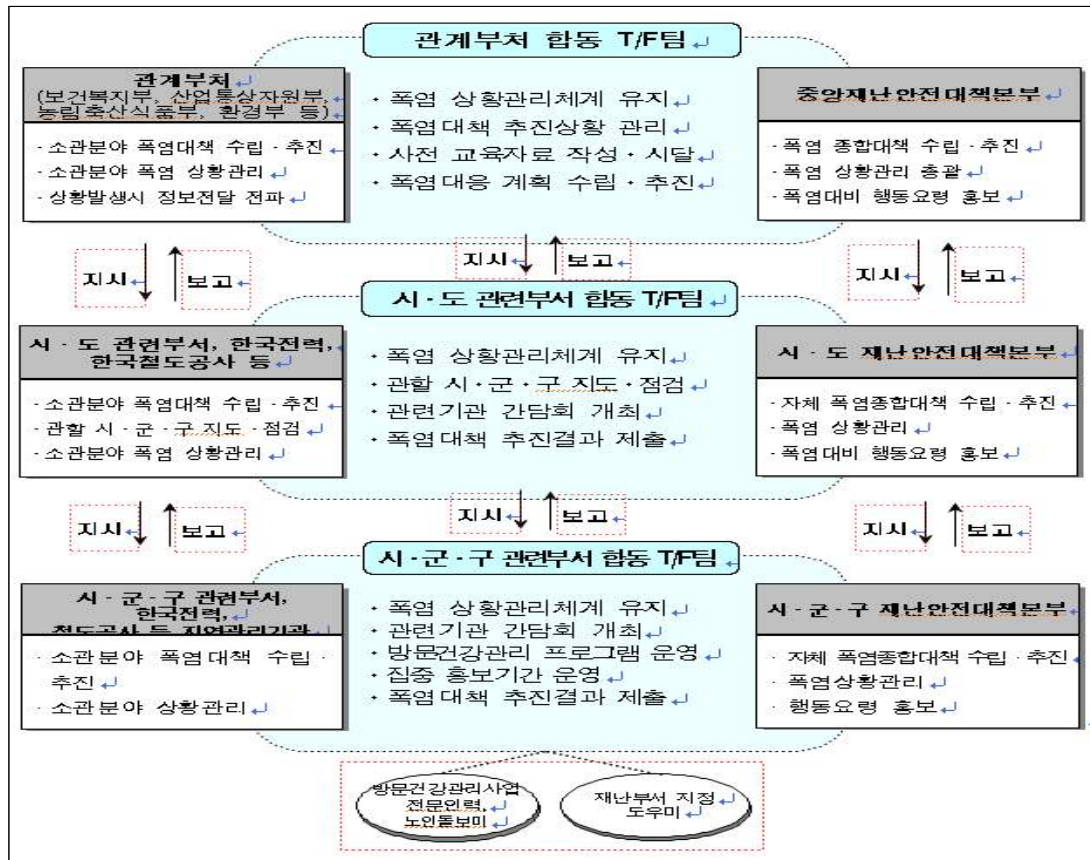


2) 대비단계

□ 폭염 상황 관리 체계 구축 · 운영

-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관계 부서별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폭염 분야 상황 관리 및 협조 체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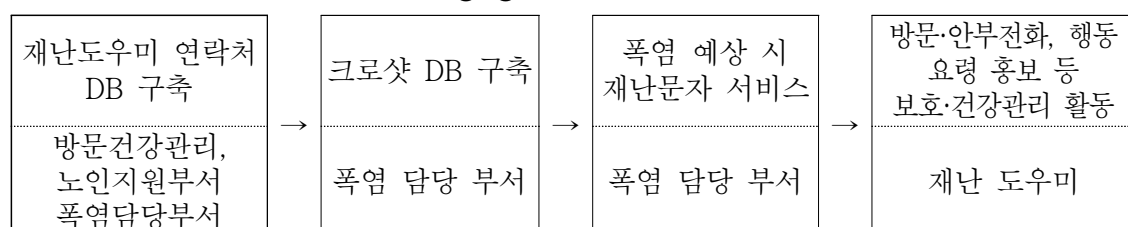
【 폭염 상황 관리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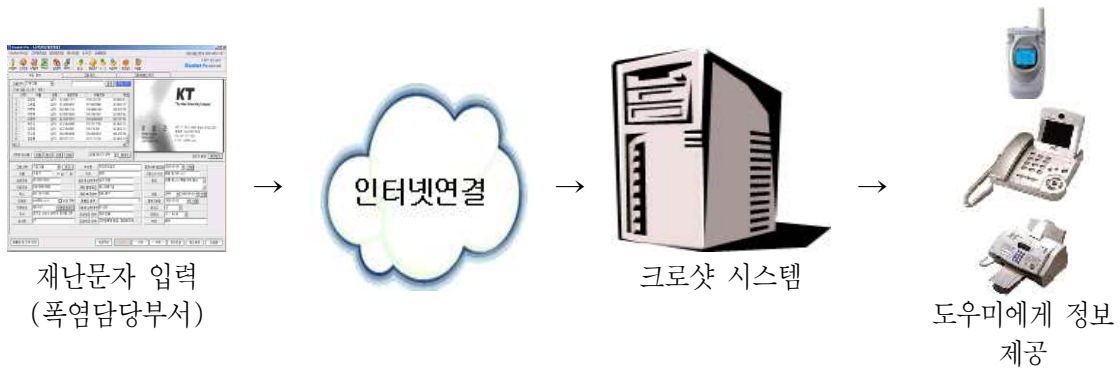
□ 폭염 정보 전달 체계 구축

- 폭염 특보가 발령되었거나 무더위가 예상될 경우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사전 DB구축
 - 폭염 특보 문자 서비스(SMS) 제공(강원지방기상청)
 - 크로샷을 활용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 DB화(안전건설과)

【 폭염 상황 관리 체계도 】



【 폭염 예상 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체계도 】



□ 폭염 대비 대 국민 홍보

1)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집중 홍보

- 폭염 대비 분야별 준비 요령을 담은 홍보용 동영상을 학교에 배부
- 재해문자전광판 등에 폭염 예상 시 폭염 준비 요령 표출
- 정선군 홈페이지 및 관계 기관 등에 국민 행동 요령 게재 등

2) 여름철 건강 지키기 집중 홍보 기간 운영

- 집중 홍보 기간 : 2016년 7월 ~ 8월말
- 홍보방법
 - 폭염특보와 관계 없는 무더위가 예상될 경우 재난 도우미를 활용, 마을 단위 또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 전개
- 홍보내용
 - 폭염 및 열대야 발생 대비 행동 요령,
 - 폭염에 의한 장애 및 응급 처치 요령

□ 폭염 취약 계층 재난 도우미 간담회 개최(사전교육)

-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 지원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 교육시기 : 2018년 5월 ~ 7월 중
- 교육대상 : 방문 건강관리사업 전담 인력, 노인 돌보미, 재난 부서 지정 도우미

○ 교육내용

- 폭염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폭염에 의한 장애 및 응급 처치 요령

3) 대응단계

□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폭염 대비 관계 부서 합동지침 추진 상황 총괄 관리 및 T/F팀 구성·운영
- 폭염 관련 대응 및 복구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운영
- 폭염 특별 발령 시 상황 전파(NDMS) 및 관계 부서 및 시·군 추진 상황 관리
- 국민 행동 요령 등 폭염 관련 대 국민 홍보 추진 및 지원
- 유사시 대비 상황 관리 체계 구축
 -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사 시 「재난 안전 상황실」 운영
 - 폭염으로 인한 통신장비 피해발생 시 신속한 상황과악 및 복구 지원
 - 유사 시 대비 시스템 확인·점검 및 비상연락 체계 현황 정비
 - 재난방송 요청 시 신속하게 방송될 수 있도록 방송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재택 모니터링을 통한 24시간 상비 재난 방송 요청 상황 모니터링 체계 유지

□ 관련기관

1) 강원지방기상청

- 폭염 특보 운영
 - 기간 : 매년 6월 ~ 9월(4개월)
 - 발표내용
 - 지 역 : 육상 예보 구역별
 - 내 용 : 대상 구역(시·군 단위), 발표 시각, 발효 시각

○ 특보 발표 기준

폭염 주의보	6월~9월 일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폭염 경보	6월~9월 일 최고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2) 교육지원청

○ 학교 수업 조치 관련 비상 대책반 구성·운영

- 교육청 비상 대책반 구성·운영

- 구 성 : 교육청 계획에 의함(반장-담당 과장)
- 도 교육청 연락 담당관과 상시 연락 체계 구축
-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고등학교 간 Hot-Line을 구축하여 대응 조치 상황 신속 전파 및 대응(SMS 문자·메일·팩스)

○ 발생 단계별 조치

- 특보 단령 단계 :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로 구분

【 단계별 교육청 조치 사항 】

발령 단계		발표 기준	조치 사항
폭염 예보		· 비상 대책반 설치·운영 (행정안전부 발표 상황 수시 파악)	· 비상 연락망 가동 준비
폭염 특보	폭염 주의보	· 6월~9월 일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비상 연락망 가동 · 단축 수업 검토 · 체육 활동 등 실외·야외 활동 자제 · 학교 급식 식중독 주의
	폭염 경보	· 6월~9월 일 최고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휴업 조치 검토 · 체육 활동 등 실외·야외 활동 금지 ·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재 점검 · 대응 조치 발령(교육감) : 지역 및 적용 학교 결정 -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업 등 상황에 따른 조치

- 교육청별 폭염 특보 발령 시 적용 범위 유형에 따라 조치

- 학생·학부모에게 조치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 혼란 예방

●●시·도 교육청별 적용 범위 유형

- A형 : 교육감이 해당 시·도 전역에 통일된 대응 조치 발령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8개 시·도)
- B형: 교육감이 지정된 권역별로 통일된 대응조치 발령
 - 경기
 - 1권역 : 의정부 외 7개 지역 ■ 2권역 : 수원 외 4개 지역
 - 3권역 : 부천 외 4개 지역 ■ 4권역 : 성남 외 5개 지역
- C형(지역교육청별) : 교육감이 교육지원청별로 통일된 대응조치 발령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7개도)
- D형(학교장 조치)

3) 제8087부대

- 전 부대/기관은 폭염특보 발령시 부대 활동 및 행동 지침을 기존의 온도 지수 행동 기준에 준용하여 추가 적용
 - 폭염 대비 부대 행동 지침

구 분	행 동 지 침
사전 준비사항	• 폭염 관련 상황 파악 및 전파 체계 구축 • 정전·단수 대비, 직사광선 회피 및 적절한 온도 유지 등
폭염 주의보	• 무더운 시간대의 훈련 시간 조정 • 야외 훈련 시 충분한 식수 준비, 식염 섭취·통제
폭염 경보	• 막사 시설물 저온 대책 강구 •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 대책 추진 • 열 손상 환자 발생 시 응급 조치 교육 실시

-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적극 운영
 - 폭염 특보 발표 시 무더운 오후 시간대(14:00~17:00)일과표 및 훈련시간 조정, 각종 행사 등 자체, 시원한 곳에서 휴식 권고
- 야외 훈련(활동) 통제로 비 전투 손실 방지
 - 온도 지수를 2시간 단위로 파악, 각 훈련 부대 전파
 - 온도 지수 29.5℃ 이상 또는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일과표 및 훈련 시간 조정 가능
 - ※ 주간 훈련을 야간 훈련(행군)으로 조정 시행 등)
 - 야외 훈련 시 충분한 식수 준비, 식염 섭취·통제
 - 훈련 시 군의관 및 위생병 상시 대기 등

- 막사 시설물 저온 대책 강구
 - 시설 옥상에 스프링클러, 그늘막 설치·활용
 - 생활관 창문 방충망 설치, 입구·복도에 대형 선풍기 추가 설치
 - 생활관 복도 물 뿌리기, 야외 점호 실시, 취침 전 샤워 실시 등
-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
 - 부식 수납 시 철저한 식품 검사로 변질품, 저급품 반입 미리 차단
 - 생선·육류는 냉동보관, 채소류는 냉장 보관 등 식품 관리 철저
 - 개인 및 취사장 위생 관리(세척·소독 등), 손씻기 습관화 등
- 온열 손상 환자 발생 시 응급 처치 교육
 - 일사병, 열사병, 열 경련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 질환의 특성, 주요 증상, 대처 방법 숙달 등
- 기 타
 - 초소 안 아이스박스를 비치하여 근무자 식염수, 얼음물 준비·활용
 - 초소 근무자 아이스 재킷 착용
 - 운전병 줄음 운전 방지를 위한 껌, 사탕, 얼음, 물수건 등 활용

●● 폭염특보 발령 기준

- » 주의보 : 6~9월 일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경 보 : 6~9월 일최고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8. 기타

가. 현 황(낙뢰)

○ 재산피해

(단위 : 백만원)

연평균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0	0	0	0	0	0	0

○ 인명피해 : 해당 없음

나. 원인분석

- 낙뢰피해는 그 규모가 다른 자연재난에 대해 현저히 적음
- 낙뢰는 다른 자연재난(폭염, 태풍, 호우)보다 일시성, 휘발성이 강하여 정식으로 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아 상황전파 지난

다. 목 표

구분	최근 5년 평균 피해현황 ('11~'15)	'16년 피해현황	'17년 목표	'18년 목표	증감
인명피해(명)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라.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낙뢰정보 제공(기상청)

○ 낙뢰 예측정보 제공

- 기상정보·속보 : 낙뢰 예상 또는 발생시 이동방향 등의 상세정보
- 초단기예보 : 실황 및 4시간까지의 낙뢰 정보를 동네 예보로 제공
- 단기예보 : 기상개황을 통해 낙뢰 예상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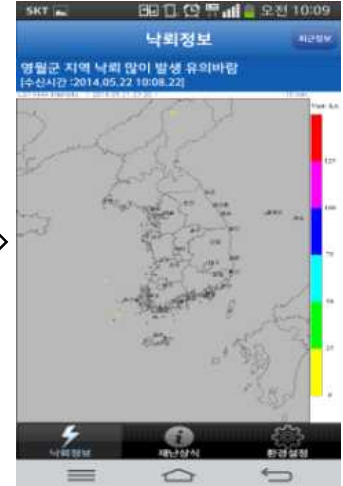
- 매년 낙뢰연보 발간
 - 시간별, 지역별 낙뢰 발생 횟수 및 분포도 제공(기상레이더센터)
- 낙뢰 정보 전용 모바일 앱 서비스



○ 플레이스토어에서 “낙뢰정보 알리미” 다운·설치



○ 관심지역(영월군) 낙뢰정보 알림
- 환경설정에서 관심지역 설정



○ 관심지역 낙뢰정보 확인
- 수신된 최신정보 확인
- 문자발송 외 낙뢰이미지 전송

- 낙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법령 등 제도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각각의 소관 시설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 낙뢰 피해 예방 추진
- 유관 기관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낙뢰 사고 상황 관리 및 정보 공유
- 낙뢰 피해 예방 대책 기간 설정·운영 (추진 기간 : 매년 6. 15. ~ 10. 15.)
- 낙뢰 안전 사고 예보제 운영(행정안전부)
 - 낙뢰 피해 예방을 위해 주간 안전사고 위험 지수 발표시 낙뢰 주의 및 예방 요령 게시
- 대 국민 홍보 및 교육 실시
 - 낙뢰 발생 시 행동 요령과 대처법 등을 홍보·교육 및 지자체에 낙뢰 발생 시 대응 대책 등 전파
 - 반상회 홍보 등의 주민홍보를 통한 행동요령 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
 -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대처법 교육 등
 - 홈페이지 등에 낙뢰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게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낙뢰에 대한 예방 의식 고취
 - 재해문자전광판을 통해 낙뢰 예방에 대한 안내문자 및 동영상 표출

2.3) 대비 및 대응단계

□ 기상 알람 서비스 제공 및 각종 매체를 통한 낙뢰 피해 주의

- 사상자 구조·구급 및 의료 대책
 -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국가 기관 및 다른 지자체에 지원 요청
 - 다른 기관의 요청 또는 상호 협력 등에 의하여 구조·구급 활동 등 지원
 - 의료 구호 요청 시 구조대 파견 조치 및 의약품 등 비축·보관
 - 응급 조치가 완료된 부상자의 병원 후송을 위한 119, 경찰, 의료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등

4) 복구단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낙뢰피해 보상
- 피해 시설물 화재 진압 및 응급 복구
 - 낙뢰로 인한 건축물 등 시설물 화재 진압
 - 화재로 인한 폭발 등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제거
 - 폭발 가스 누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 조치
 - 파손된 건축물 등 시설 잔존물 정리
 - 피해 복구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생활 필수 시설(전기, 가스, 상수도 등)의 신속한 응급 복구 실시
- 사고 현장 조사
 -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 사고 현장을 조사하여 지역적 특색, 계절·기후, 시설물 특성 등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 사고 사례 강원도에 보고.

3.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1). 화재 · 폭발

가. 현 황

○ 피해현황

1) 재산피해

(단위 : 백만원)

구분	연평균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화재	555	2,773	93	314	1,045	576	745

2) 인명피해

(단위 : 명)

구분	연평균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3.4	17	1	6	3	6	1
사망 실종	소계	0.2	1	0	0	1	0
	사망	0.2	1	0	0	1	0
	실종	0	0	0	0	0	0
부상	3.2	16	1	6	2	6	1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13~'17)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소는 주로 주택에서 발생 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 및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등)이 비치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화재 피해는 부주의(62.5%)에 의한 원인이 가장 크며, 전기화재(16.1%), 기계적인 원인(10.8%), 등 순임

다. 총괄목표

구분	최근 5년 평균 피해현황('13~'17)	'16년 피해현황	'17년 피해현황	'18년 목표	증감
인명피해(명)	3.4	6	1	3	2
재산피해(백만원)	555	576	745	600	△145

라. 관련 계획 및 규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연간계획)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1,021	130	284	227	205	175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	637	0	202	145	145	145
문화재 정밀 실측조사 및 유지보수	384	130	82	82	60	30

바. 목 표

- 소방안전교육 기반확충,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공간 조성
-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안정화
- 화재피해 저감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안정화
-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발생 상황 분석
- 화재원인감식 객관성 및 과학화를 위한 재현실험, 학술대회 개최
- 방재능력 확보를 통한 문화유산 보고·보존
- 중요 목조문화재 상시 방재능력 확보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여 화재·도난 등 재해예방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1)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경계활동 강화

○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 지정 · 운영
 - 국민 공감형 예방홍보 활동 추진
 - 범국민 생활안전 교육 강화
 - 국민이 안전한 나라 119이벤트

○ 특정 시기별 · 계절별 화재예방대책 추진

- 봄철 · 가을철 · 겨울철 및 엽말연시, 명절연휴 소방안전대책 추진
 - 수시 합동소방안전점검, 합동훈련 및 책임 담당제 운영(연2회)
 - 대국민 119안전운동
 - 국민체감 화재예방 인프라 구축
 - 대형화재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등

○ 민 · 관 협력 대응시스템 구축 지원(시민안전관리협의회)

- 시민들의 자율적인 소방안전을 통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화재예방캠페인, 합동훈련 참여 등으로 안전관리 마인드 향상

○ 의용소방대 운영(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 재난현장에서 소방업무 보조
 - 매월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으로 안전의식 고취
 - 대형화재 대비 소방훈련 및 화재예방 캠페인 등 실시

○ 화재재난 대비 문화재 보호 종합계획 수립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방재 종합계획 수립
 - 시기별, 원인별, 등 맞춤형 문화재 화재 대책 수립
 - 화재대응 매뉴얼 마련 및 시행

○ 문화재 화재예방 안전교육

- 문화재소유자 및 관리자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 소방학교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방재·방범시설의 기본 작동요령 및 설치 위치 숙지

○ 문화재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 소방시설관리 실태 점검 실시
- 연 4회(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동절기) 정기점검 실시
- 문화재 관리자 및 소유자 자체 수시점검

○ 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 전문기관 및 전문가 위탁점검 의뢰
- 전문기관 및 전문가 위탁점검 의뢰

2) 화재취약대상 등 주요 시기별 화재예방 대책 추진

○ 취약시기, 명절 등 화재취약대상 선제적 예방활동 전개

- 관계자 소방안전 지도,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화재예방 등 사고예방 홍보 등
- 피난안내도 비치 등 이용자 대피계획 수립 지도, 종사자 소방안전 교육

3) 특정소방대상을 자체점검 내실화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민간위탁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표본조사 확행

- 소방관서 주관 광역 합동소방특별조사반 운영 정례화(분기 1회)
- 자체점검 소홀 등 법령위반 소방시설관리업체 의법 조치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의한 작동기능점검 이행기반 조성

- 소방관서 보유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제도 운영 확대
- 소방안전관리자 점검기구 사용요령 및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작성 등 교육

4)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

- (유아)소방동요, (초등)불조심 어린이마당 등, (중등)미래소방관 체험, (성인)아파트 안전매뉴얼, (노인)요양원 방문 피난교육 등 ⇒ 연령별 대상별 주제선정

- 지역행사장 등 「찾아가는 119안전체험장」 상설 운영
 - 다문화센터, 지역행사장, 여름철 119안전체험 캠프, 어린이날 행사 등
 - 소소심 중심 일상생활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 프로그램 · 체험부스 운영
- 어린이 안전의식 고양을 위한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
 - 119소방동요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119안전뉴스 등

5) 대국민 안전문화 제고를 위한 소방홍보활동 지속 전개

- 각종 방송 · 언론매체 활용,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책자 보급 등

2) 대비단계

1) 중점관리대상 지정 운영

- 관내 소방 대상물 ----- 2,870개소
- 위험물 제조소 등 ----- 161개소
 - 저장소 113 : 옥내 2, 옥외탱크 11, 옥내탱크 24, 지하탱크 18, 옥외 2, 이동탱크 56
 - 취급소 48 : 주유 42(판매용 28, 자가 14), 일반 6(옮겨담는 3, 기타 3)
 - 다중이용시설 187 : 유흥 66, 단란 24, 일반 25, 휴게 5, 노래 24, 일반목욕장 5
PC방12, 스크린골프 12, 안마시술소 4, 게임제공업 9, 제과점업 1

2) 화재대비 점검 및 훈련

- 책임 담당제 운영(대형화재 취약시설) : 연2회(방문1, 서한문1)
- 합동 소방안전점검 : 수시
- 합동 소방훈련 : 수시
-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훈련 : 주2회
- 소방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수시

3) 긴급구조 대비체제 구축

- 자원집결지 지정 : 정선종합경기장
- 긴급 대응협력관 지정 : 긴급구조 지원기관(2018. 1. 7. 시행)
- 긴급구조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 : 연1회

○ 긴급 구조훈련 실시

- 긴급 구조 종합훈련 : 연1회
-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출동훈련 : 분기 1회
- 긴급구조통제단 도상훈련 : 월 1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4) 화재현장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신속한 현장도착

- 군민참여 군 전역 일제「소방차 길터주기」훈련 시행(분기1회)
-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이면도로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순찰, 주민계도 활동 등
- 중앙분리대, 좌회전금지 등 장애요소 개선

5) 실전중심 교육·훈련을 통한 화재대응능력 향상

- 소방학교 실물화재훈련장(주택,항공기 등) 활용 실전훈련 강화
- 소방기술·전술경연대회 개최를 통한 화재진압기술 고도화
- 현장활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훈련 실시
 - 현지적응 출동훈련, 가상화재진압훈련, 도상 및 위험예지훈련 등
- 주요 특정소방대상물 자율 화재진압체계 강화(자위소방대 훈련 강화)
 - 대상처의 자체(합동) 소방훈련 시 자위소방대 운영 및 훈련 평가 후 환류

6) 신속한 상황관제 시스템 구축

- 119종합상황실의 비상대응능력 강화(관제기능 향상)
 - 상황실 직원의 화재상황 판단능력 제고 및 비상시 일관 대응
 - 재난 발생시 권역별 총괄 상황관리 및 특별 대책상황실 운영
- 화재보다 소방력이 우세하도록 출동대를 편성
 - 화재보다 우세한 소방력 출동 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 소방력 귀소
 - 재난규모와 현장특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유 있게 소방력을 편성하여 출동시키는 것을 원칙
 - 3개대 출동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 판단에 따라 가감 편성
 - 대형화재 진행 가능성 높게 판단 경우 최초 출동단계부터 비상 대응단계 발령

- 소방서의 출동차량 이동경로·위치 실시간 확인 환경 조성
 -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의 GPS 정보 활용, 화면에 표출
 - 소방서에 관제 모니터(2대-재난상황, 전자지도) 및 단말기 설치
- 출동차량의 현장도착 예상시간 및 도착여부 등 확인
 - 대형화재 시 방면별 차량배치 현황 등 위치파악의 신속성 향상
 - 지역대 등 인력부족이나 일부 난청지역에서도 위치확인 가능

7) 화재사고 대비 효율적 진압 등을 위한 대책 강구

-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조사활동 강화
 - 대형 화재취약대상, 전통시장, 밀집상가 등 취약지역 우선보강
 - 동절기 및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정비활동 강화
- 비상소화장치 운영의 내실화
 -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에 우선 설치
 -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방법 수시·정기교육 실시(월 1회)
- 소방장비 점검·정비 등 관리철저
 - 소방장비 및 적재비품 점검·정비 강화로 100% 가동상태 유지
 - 특수차량 등 평상시 반복적 조작훈련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7) 문화재 화재 대비 소방훈련 및 보호대책 강구

- 문화재화재 대비 소방훈련
 - 문화재 방재의 날 및 가을철 소방훈련 실시
 - 관계기관, 자위소방대 초기대응능력 점검
 -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85조
- 문화재 보호대책 점검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및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 방화선 구축 계획 및 장비 배치 계획 수립
 - 문화재소산대책 수립

8) 긴급 출동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 문화재 화재 대비 매뉴얼 작성
 - 문화재화재 사전대비
 - 문화재위치 파악 및 출동로 구축
 - 문화재별 맞춤형 화재대책 수립(석조·목조·식물 등)
- 초동대응태세 확립
 - 화재진화자원 운영계획 마련 및 점검
 - 의용소방대 및 진화대 편성
 - 인력동원 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망 정비

3) 대응단계

1)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통합 지휘·조정 체제 확립

- 대응역량 집중을 위해 유관기관 통합 지휘체계 강화
- 유관기관 통합작전이 가능한 군 CP개념의 지휘체계 확립
- 유관기관 비상자원동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화재조사 전문화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 화재조사의 과학화로 대외신뢰도 제고 및 대형사고 재발방지
 - 대형·특수화재 발생시 신속하고 정밀한 현장조사 등
- 표준작전절차(SOP) 활용으로 현장지휘 체계 확립
 - 재난 유형별 진압 및 긴급구조 대응체계의 통합
- 재난의 예측 및 대응체제 개선
 - 위험조기경보, 긴급방송, 자원동원, 현장대응시스템의 전문화
- 훈련·통신체계의 단일화로 자원봉사조직의 현장활동 인프라 구축
- 생화학테러 등 특수재난 대비 구조구급 능력 향상
 - 대테러 등 특수사고 대비 생화학 등 대응장비 보강

3) 효율적인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전개

- 신속·정확한 상황보고·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화재발생 및 피해상황 신속 보고 및 전파 등
-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및 지휘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 신속한 현장 장악과 진압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전개
 - 체계적·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화재사고 유형별·사안별 전문 진압·구조요원 신속 배치

4) 응급구조·구호체계 신속 가동

- 신속한 피난유도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최우선 실시
- 응급의료전문기관 상호 협조체제 구축 및 신속 가동
- 관내 종합병원·응급의료센터 등 핫라인 설치·운영

5) 민간 구조단체와 합동으로 긴급 구조·구급활동 전개

- 긴급구조지원기관 요원·자원봉사자에 대한 임무부여 및 관리

6)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통한 초동 대응력 강화

- 재난종합 상황관리 체계 확립
 - 통합지휘팀 운영
 -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 등 신속한 상황 전파
 - 기관별 역할·임무 분담 후 이행사항 확인
- 초동 대응력 강화
 - 초동단계 응급조치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주력
 - 관계기관의 협조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문화재 현지 보호조치 주력

7) 사전 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사전 대비단계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대비단계)
 - 긴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
 - 재난 발생 대비 각종 현장적응훈련 등 실시

○ 비상단계 근무체계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일정 재난 규모 이상 재난 발생 시 운영
 - 단계별 비상근무 : 대응 1, 2, 3단계

8) 상황판단회의 실시

○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통제단장이 주재

- 재난형태 · 원인, 인명 및 재산피해 분석 · 판단
- 동원 소방력 및 긴급 구조 진행상황
- 재난 추이 및 피해의 확산 예측
- 긴급구조를 위한 추가 인적 · 물적자원 등

9) 문화재 소산 및 보호조치 시행

○ 문화재 소산대책

- 중요 문화재 대피장소 확보
 - 문화재 유형별 소산대책 수립 및 소산이 불가능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응급조치(해체, 매몰, 피복 등)
 - 소산문화재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경찰청 지원 요청

○ 보호조치 강화

- 소산 기본 방침
 - 소산 가능 문화재는 유관기관 협조 하에 안전한 장소로 소산
 - 소산 시 문화재 소실·훼손 및 도난 방지 등 보호대책 강구
 - 재난 발생 시 소실 및 훼손될 우려가 높은 문화재부터 우선 소산
 - 재난의 피해상황 및 정도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시행

4) 복구단계

1) 수습 및 복구

- 민·관·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제 운영
 - 사상자 후송·치료, 이재민 수용 등 구호 조치
 - 전기·가스·통신 등 라이프 라인 우선적 복구 조치
- 대한적십자사,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민·관 합동 구호조치
 - 이재민 수용·급식 등 생필품 구호, 의연물품 등 접수 및 배분
- 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대책협의회, 응급의학 전문의 등 활용 응급의료
- 각종 안전조치 및 화재·폭발 잔재물 수거 처리
 - 전기·가스 등 공급차단 및 시설붕괴 긴급진단
- 신속·정확한 피해조사에 의거 피해가구 복구지원계획 수립
 - 영세밀집 지역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화재피해 주민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 화재피해가정에 대한 스틸하우스 재건축
 - 소방서별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주민 임시거주지 마련, 화재증명원 발급, 납세 연장 등의 행정적 지원
- 긴급구조 및 복구활동상황 보도 및 주민 홍보

2) 신속한 화재·폭발원인 및 피해 조사

- 단계별 화재대응활동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 화재원인 철저 규명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 유관기관 합동 조사체계 구축 및 특별조사팀 운영
 - 주요화재 사례분석을 통한 항구적 사후 관리시스템 개발
- 사고원인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한 관련부처 합동 대책회의
 - 우선적 조치사항 협의 및 제도적 정비·보완 대책방안 등

3)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피해 조사
 - 재난의 유형·규모에 따라
 - 발화원인 및 연소상황, 피난상황, 소방방화시설 등 조사
 - 화재 피해조사(인명피해, 재산피해)

○ 복구계획

- 유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휘권 이양
- 소방관서는 지원업무로 전환

4) 문화재 안정화 조치 실시

○ 합동 피해 조사단 파견

- 피해 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구성
- 조사반장 : 문화관광과장
- 조 사 자 : 문화재담당자,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 피해 문화재 안정화 조치

- 피해 문화재 및 주변시설 2차 피해 방지 실시
- 동산문화재의 경우 도난·분실 예방을 위하여 항온·항습시설 등이 갖춰진 안전한 시설로 이전 조치
- 피해 문화재 손상부재, 파편 등을 복구작업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수습

5) 문화재 복구 추진

○ 복구 및 복원 자문단 파견

- 복구 및 복원 자문단 구성
- 자문단장 : 문화관광과장
- 자문단장 : 문화재위원 및 학계 등 문화재 관계전문가
- 복구 및 복원 자문단 역할
- 긴급 복구방안 및 대책 마련
- 정밀피해조사 실시, 피해규모 및 복구 또는 복원예산 산출
- 복구관련 자문 및 복구사업 지도·감독
- 기존의 실측설계 및 탁본 등 고증자료 검토
- 복구공사 전반에 대한 자문·지도

□ 문화재 유형별 복구 대책

가. 중요 건조물문화재 피해 복구

- 현지 합동조사반을 파견하여 복구에 필요한 조사 등 실시
- 문화재 종류별 복구지도 자문단을 구성·운영
 - 기존의 실측설계 및 탁본문양 등 고증자료를 토대로 복원 추진
 - 복구지도 자문단은 복구공사 전반에 대하여 자문지도
 - 지방자치단체는 복구공사 추진사업단을 구성·운영
- 피해문화재 및 주변시설은 우선 응급복구 실시, 피해확대 방지
- 복구공사 중 고증, 기술지도 필요시 문화재청의 지도 및 자문수렴
- 복구소요예산은 문화재청,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전승자료, 장비 등 피해 복구

- 전승자 안전보호
 - 전승자의 안전보호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시행
 - 피해발생시 전승자의 피난, 부상자 치료 등 안전대책 최우선 시행
 - 전승자의 피해상황 및 후계자 등 현황을 분석하고 전승대책을 수립
- 전승관련 자료, 전승장비, 작품 등의 사후보호와 복원
 - 전승자 입회하에 지자체 합동으로 전승활용장비, 의상 등 피해목록 작성
 - 피해목록은 지자체 관리, 문화재청에 통보하여 예산지원의 자료로 활용
- 전수교육관 보수, 복원
 -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단,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고
 - 지자체는 긴급복구계획을 마련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전수교육관 보수, 재정비계획 수립
 - 재난피해의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
 - 전수교육관의 보수, 복원은 문화재청의 전수교육관 보수, 건립지침에 의한사용자의 편의성, 전수교육관의 합목적성, 활용성 등을 적극 반영

다. 천연기념물 문화재 피해 복구

- 유전자 비교 검토를 통한 복원
 - 분산 보유된 유전자 분석 및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통하여 복원
 - 분산 보유된 종지정 천연기념물의 이전·번식
- 서식자도래지 조정(종 지정 천연기념물)

- 이전된 서식자도래지의 경우 우선 보존 조치(가지정 등)
-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통해 지정구역을 조정·변경 조치
- 노거수 재난피해
 - 생육 가능한 노거수는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 개선작업 실시.
 - 생육 불가능 노거수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해제 여부 결정
- 비가연성 천연기념물의 피해
 - 천연기념물 주변의 토사, 강우 등으로 인한 표면 변색을 방지
 - 천연기념물의 낙뢰, 열해 피해로 인한 갈라진 부위 등 파악

라. 동산문화재 피해 최소화(소화수 등 물에 젖는 등 2차 피해 예방대책)

- 물리적 파손이 발생할 경우 현장보존을 위하여 사진으로 기록
- 일반적으로 서적류가 소화수 등에 젖어 48시간 이내 건조할 수 없는 경우 ①마른 천으로 감싸거나 ②튼튼한 박스에 서적 뒷면을 밑으로 해서 넣거나 ③냉동처리한다.
※ 금속, 도자기, 석조, 유리판, 사진, 가구 등은 냉동에 적합하지 않음
- 서적류 등의 경우 흡수지, 종이타월, 왁스 코팅지 등을 사용하여 소장품끼리의 접촉을 막고 잉크의 옮김과 번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간지를 삽입
- 토양오염물이 묻은 경우, 깨끗한 흐르는 물로 세척하거나, 물을 넣은 용기 안에서 부드럽게 흔들면서 세정
- 통풍이 좋고 습도가 낮은 선선한 장소에서 흡수성 소재를 소장품 밑에 깔고 젖으면 교체하며, 가능한 소장품을 틀이 있는 선반에 놓아 말려 수분의 증발을 촉진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문화재 화재 대비 매뉴얼 재개정

작성 부서	문화 관광과	작성자 및 연락처	유환식 문화예술담당	033-560-2225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진한 학예연구사	033-560-2564	예방

◇ 시기별, 원인별, 문화재유형별 등 맞춤형 문화재 화재 대책 수립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매뉴얼 정면 정비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율(100%)	100	100	100	정비대상보유건수/ 정비건수 × 100	높음

□ 주요내용

- 문화재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한 화재대응매뉴얼 작성
 - 중요 목조문화재 등 지정문화재 대상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 정선군 및 관리단체 주관으로 문화재 특성에 맞는 대응매뉴얼 작성
 - * 예방 및 비상시 행동요령 등
- 문화재 현황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지자체 담당자, 자위소방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 건물의 보수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경우 도면 정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2월
하반기	○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	11월

2) 재정사업

가.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작성 부서	안전 건설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전제헌 담당	560-2131r	재난안전관리 단계
					대비·대응

◇ 소방취약 계층의 재난사고 예방과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 밀집지역 대형 재난 예방

□ 목 표

(단위:백만원)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100%	100%	신청 대비 지원실적	높음

□ 주요내용

○ 65세이상 노인세대 소방시설 설치 지원

- 대 상 : 65세이상 노인세대
- 지 원 : 소화기 1대(세대당), 단독형 경보감지기 4개 (세대당)
- 사업비 : 145백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소방시설 설치 신청 접수 및 설치 지원(1차)	1월~3월
2/4분기	○ 소방시설 설치 신청 접수 및 설치 지원(2차)	4월~6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계	0	202	145	145	145	
소방방비 등 보강사업	-	202	145	145	145	

나). 목조문화재 정밀실측 및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작성 부서	문화관광 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유환식 문화예술담당	033-560-2225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진한 학예연구사	033-560-2564	대비

◇ 문화재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목조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을 실시하여 원형 복원 기초자료 확보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목조문화재 정밀실측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정밀실측 보고서	높음

□ 주요내용

- 지정 목조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정밀 안전점검
 - 목조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조사를 실시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형 복원 기초자료 확보
 - *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 지침
 - 주기적인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및 방재시설 유지보수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세부계획 작성 및 발주	3월
하반기	○ 문화재 안전점검 및 보수, 실측보고서 발간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계	130	82	82	60	30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110	62	62	30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0	20	20	30	30	

3)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조사 등)

가. 문화재화재 대응 훈련 실시 및 교육

작성 부서	문화 관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유환식 문화예술담당	033-560-2225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진한 학예연구사	033-560-2564	대비

- ◇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문화재소유자 및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연2회 합동소방훈련을 통한 협업체계 강화

* 문화재보호법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소방훈련 및 교육	2회	2회	2회	합동소방훈련 및 교육	높음

□ 주요내용

- 문화재 방재의 날 계기 문화재 보호 홍보(현수막 등)
 -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 제고
- 해빙기, 가을철 합동소방훈련 실시
 -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를 통한 재난 시 초기대응능력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문화재화재예방 안전교육 및 점검
 - 문화재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방재시설 기본 작동요령 숙지
 - 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동절기 연 4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 합동소방훈련 및 교육	2월
하반기	○ 합동소방훈련 및 교육	11월

2). 산불

가. 현 황

○ 정선군 산불 발생 및 피해현황

구 분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건수(건)			0	0	0	2	7
재산피해(ha)			0	0	0	0.45	3.2
인명피해	계	피	해	없	음		
	사망(실종)						
	부상						

나. 원인분석

구 분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건수(건)		0	0	0	2	7
방화		0	0	0	0	0
입산자실화		0	0	0	0	0
담뱃불		0	0	0	0	0
논·밭두렁 소각		0	0	0	1	2
어린이 불장난		0	0	0	1	0
기타		0	0	0	0	4

다.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19 중기
산불방지대책	12,156	2,175	2,442	2,513	2,513	2,513

라. 목 표

구 분	'17년 피해	'18년	'19년	'20년	'21년
산불발생건수 감소율 (18년 산불발생건수/최근 3년간 산불피해 건수)	97%	97%이하	97%이하	97%이하	97%이하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산불유관기관 협조 및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체계적인 산불감시 활동 및 산불예방 홍보 전개

- 언론매체를 활용 산불예방 다각적 홍보로 군민참여 및 인식 제고
 - 홍보 기간 : 산불조심기간(봄철 1.25~5.15, 가을철 11.1~12.15)
-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산불예방활동 전개
 - 임차헬기(1대), 산불무인감시카메라(15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65명), 산불감시원(91명), 리반장(165명), 사회단체(15개) 등

2) 대비단계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총력 대응

- 산불조심기간 : 봄철(1.25 ~ 5.15), 가을철(11.1 ~ 12.15)
 - 지역별 기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10개 기관(군 1, 읍면 9)
 - 근무시간 : 09:00~21:00(기상여건 등을 감안 탄력적 운영)
 - 주요임무 : 산불상황관리,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산불대응력 강화
- ※ 평일, 야간·공휴일 산불상황실 정위치 근무 등 공백 최소화

□ **산불방지 유관기관·단체 협의회 개최**

- 유관기관별 주체적 임무를 완수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마련
⇒ 민·군·관 합동 예방과 진화 공조로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

□ **산불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산불경보를 탄력적으로 발령**

-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위기상황 판단 및 평가
- 기상 및 산불발생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발령

□ **주요 시기·원인별 산불특별대책 운영으로 산불 대비 철저**

- 설연휴(2.15~18), 삼일절·정월대보름(3.1~4), 청명·한식·식목일(4.5),
어린이날(5.5~7) 석가탄신일(5.22), 추석(9.22~26), 한글날(10.6~9)

□ **소각산불 저감을 위한 인화물질 사전 제거**

- 산불연접지역 인화물질 사전제거 운영반 편성·운영
 - 감시원, 사회단체, 리반장, 마을주민 등 공동참여
 - 마을단위별 공동소각 또는 파쇄기를 이용한 인화물질 제거

3) 대응단계

□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체계 구축**

- 진화자원 및 장비 등 전진배치
 - 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65명), 산불감시원(91명) 등
 - ※ 예비자원 : 630명(읍면 공무원 180, 영림단 100, 의용소방 350)
 - 장비 : 진화차 10대, 기계화시스템 10대, 감시카메라 15대, 진화장비 650개 등
 - 가용헬기 : 1대[임차 1]
 -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 헬기 전진배치(카르프, 평창 진부), 산불예방 순찰강화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 산불발생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 진화전략 수립, 진화자원 배치, 산불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 대형산불로 확산될 시 군수는 도지사에게 지휘권 인계

4) 복구단계

☐ **조사반 구성 운영 : 19개반 107명(도 16, 시군 91)**

- 산불발생 원인 규명 등 과학적 검증으로 검거율 향상 및 재발방지

☐ **산불현장 피해지 조사 및 복구 지원 대책 마련**

- 피해 원인 및 피해자 조사, 산림피해지 조립 등 복구 계획수립
- 피해지역에 대한 행·재정지원 요청 및 이재민 구호대책 마련
- ※ 산림외 주택 등 피해시는 지원·협업부서 합동조사

바.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산불방지 대책

작성 부서	환경 산림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운영철 담당 김광성 주무관	033-560-2423 033-560-2157	재난안전관리 단계 예방, 대비
-------	--------	--------------	-------------------	------------------------------	---------------------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발생시 피해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산불발생건수 감소율	97%	97%	'18년 산불발생건수/ 최근 3년 산불피해건수	높음

□ 주요내용

- 산불예방 홍보 및 교육강화로 군민 자율참여 유도
 - 캠페인 전개(등산로, 각종행사시), 언론홍보 (TV, 라디오, 전광판 등)
 - 산불방지 교육 실시(감시원, 군부대, 학생 등), 산불지상진화경연대회 개최 등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유급감시원 등 감시·진화인력 운영
 - 산불위험지도(Big-data)를 활용,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 배치·운영
 - 산불감시원 91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5명, 산불예방활동지원 리반장 165명 · 사회단체 15개
- 헬기임차, 진화차,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등 예방·진화장비 확충
 - 산불 예방·진화장비 확충을 통한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 10대, 리반장 앰프 지원 135대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1월~5월
2/4분기	산불방지 대책 사업추진	
3/4분기	산불방지 대책 사업추진	
4/4분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11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	'20	비고
산불방지대책	12,156	2,175	2,442	2,513	2,513	2,513	

2) 기타시책

가) 산불방지 교육·훈련

작성 부서	환경 산림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윤영철 담당 김광성 주무관	033-560-2423 033-560-2157	재난안전관리 단계 예방, 대비
-------	--------	--------------	-------------------	------------------------------	---------------------

◇ 전문·기본교육을 통하여 감시원·진화대 및 유관기관 산불방지 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산불재난 대응력 향상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산불방지 예방·교육	10회 (650명)	8회 (528명)	8회 (528명)	교육횟수	높음
산불진화 능력 향상 (산불진화경연대회)	1회	1회	1회	개최횟수	높음

□ 주요내용

○ 산불방지 위탁교육

- 교육대상

- 전 문 : 진화대, 감시원, 담당공무원 등
- 기 본 : 공무원, 군장병, 영림단 등
- 예 방 : 농·산촌 주민, 학생, 유관기관·단체

- 교육횟수 : 26회

- 교육내용

- 전 문 : 산불발생·진화현장 임무수행 및 안전지식, 장비 사용방법 숙달 등
- 기 본 : 산불감시 요령, 산불신고 절차, 안전교육 등
- 예 방 : 산불의 위험성 인식 및 예방방법, 산불발견 시 신고 및 대응 요령 등

○ 산불지상진화 경진대회

- 일 시 : 2018.5월 중

- 내 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활용 경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산불방지 교육·훈련 계획수립, 교육실시	1.25~5.15
2/4분기	산불 지상진화 경진대회 개최	5월 중
4/4분기	산불방지 교육·훈련 실시	11.1~12.15

3). 시설물 재난·사고

3-1 댐

가. 현 황

- 강원도 과거 댐 관련 재난·사고 미 발생
- 강원도 댐 현황(11개소)

적용 대상 댐	용 도	해당 시·군	관할기관		주관부처
광동 댐	용수전용 댐	삼척, 정선	태백권관리단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국 토 교통부
달방 댐	용수전용 댐	동해	태백권관리단		
소양강 댐	다목적 댐	춘천, 홍천, 화천	소양강댐관리단		
횡성 댐	다목적 댐	원주, 횡성	횡성권관리단		
평화의 댐	홍수조절 댐	춘천, 홍천, 화천, 양구	평화의댐관리단		
충주 댐	다목적 댐	원주	충주권관리단	충청지역본부	
춘천 댐	수력발전 댐	춘천, 홍천	춘천수력	한국수자원(주) 한강수력본부	산업통상 자 원 부
의암 댐	수력발전 댐	춘천, 홍천	의암수력		
화천 댐	수력발전 댐	춘천, 홍천, 화천	화천수력		
도암 댐	수력발전 댐	영월, 정선	강릉수력		
양양 양수댐	수력발전 댐	인제, 양양	수력양수본부	본사	

나. 원인분석

- 의도적 원인 : 적의 폭격, 테러 등에 의한 붕괴
- 비의도적 원인 : 대규모 홍수로 인한 댐 월류, 지진에 의한 구조 내력 상실, 댐 체제의 구조적 결함, 수문조작 실패, 구조물의 유지보수 미흡 등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하천법(제26조) 시설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 재난관리 안전기본법(제34조의 5) 재난현장에서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화 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라. 목 표

- 재난(댐 붕괴)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현행화)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댐 제체의 구조적 안전여부 정기점검, 구조물 유지보수
- 지진에 의한 구조내력 상실대비 안전성 강화추진
- 대규모 홍수로 인한 월류 대비 댐 수위조절

2) 대비단계

- 비상대처계획 수립, 유관기관 등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 주민대피계획 대주민 교육 및 비상대피 훈련 실시
- 비상대피시설 점검, 긴급구호 비축자재 확인 등 재난사항 대비

3) 대응단계

- 재난정보 방송 실시 및 신속한 주민대피
-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긴급 구호활동, 치안유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이재민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자원 확보

4) 복구단계

- 댐붕괴에 따른 주민대피, 구호활동 지속 실시
- 피해상황 파악 및 항구적인 지원 대책 강구 및 시행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

3-2. 지반침하

가. 현 황

- 피해현황 : 해당없음

나. 원인분석

- 지반침하(함몰)의 발생원인은 신설공사 현장 주변과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침하로 구분됨
- 인근에 공사장이 있는 경우, 공사장의 부설시공으로 인한 차수 미흡, 지보불량, 되메우기 불량, 지반보강 미흡, 지하수위 변동, 공사관리 불량, 과다굴착 등이 원인
- 인근에 공사장이 없는 경우는 상·하수관로 주변의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 기타 지하관로의 관리부실에 따른 침하로 볼 수 있음.
- 전력, 통신, 가스 등의 소규모 관로 주변의 지반침하관로 매설 당시 좁은 터파기로 뒷채움 불량에 따른 소규모 공동, 지반침하 발생으로 원인은 매설당시 관로 하부공간 방치, 부설 되메우기, 맨홀 내부 구조물 결함 여부 미점검 등
- 공동구, 지하도로 등의 주변 지반침하는 지하수 유출에 따른 중 규모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되며, 원인은 지하수 유출, 복구 당시 폐자재 매립, 폐관 방치, 가시설 미제거, 구조물 뒷채움 불량 등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라. 목 표

- 지반침하 제도 마련에 따른 군 단위 업무 추진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18년 중)
 - 지하안전위원회 조례제정('18년 중) 및 위원회 구성·운영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직접지반탐사 실시, 위험요소 제거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검색시스템(<http://www.kigam.re.kr>)을 활용하여 각 지자체 지질현황 파악
 - 도로굴착, 대규모 터파기 공사 현장 점검
 - 관내 도로 중 지하매설물이 복잡하고 도로침하(함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한국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를 의뢰

2) 대비단계

- ☐ 협조·지원체계 구축 및 훈련실시
 -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지반침하(함몰)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지반침하(함몰)를 가정한 긴급 문자 전송 및 상황전파·해제 등 훈련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정비
 - 지반침하(함몰)사고 발생을 대비한 복구자재, 장비 등 조달체계 구축

3) 대응단계

- ☐ 내·외부 전문가 그룹 구성, 지반침하 원인조사 및 복구작업 수행
- ☐ 발생 원인별 및 규모별 복구작업 실시
 - 규모별 상황관리

구 분	조 치 사 항
면적 4㎡ 미만 또는 깊이 2m 미만	· 각 읍·면에서 현장 초동대응 후 군 자체복구 - 지반침하 상황을 유관기관에 보고/전파하고, 인명구조 · 안전조치 등 긴급대응 및 원인조사·예방대책 마련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 및 사망(실종)자가 3명 미만 또는 부상자가 10명 미만	· 강원도(안전총괄과)에 상황을 전파/보고하고, 도는 재난대응조직을 구성하여 긴급구조·수습·복구하고, 국토부는 재난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원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 및 사망(실종)자가 3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 강원도(안전총괄과)에 상황을 전파/보고하고, 도는 재난대응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사고대응을 총괄·조정 - 구조·피해 등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전파/보고 - 긴급구조·안전조치 등 초기대응과 사고수습 및 응급 복구 시행

4) 복구단계

□ 피해상황 및 복구작업, 조치사항 등 보고 후 상황종료

- 상황접수, 보고 및 전파
 - 시설관리자 또는 소방관서로부터 지반침하 발생정보를 접수하여 긴급구조·구호기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강원도 및 국토부에 보고
- 보고 경로

근무시간	대내 보고	읍·면장(현장) → 군 안전건설과 → 군수
	대외 보고	정선군 재난종합상황실 → 강원도 재난종합상황실 → 중앙안전재난상황실
		강원도 건설도시국
야간 및 휴일	대내 보고	읍·면(현장) → 당직근무자 → 군 안전건설과 → 군수
	대외 보고	강원도 재난종합상황실 → 중앙안전재난상황실
		강원도 당직실

3-3. 체육시설

가. 현 황

- 군내 공공·민간 체육시설 14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12~16년) 재산 및 인명 피해현황 없음
 - 정선종합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91개소
 - 골프장, 수영장 등 민간체육시설 51개소

나. 원인분석

- 체육시설의 안전사고는 노후화, 관리소홀, 개인 부주의(안전수칙 미준수)로 기인
 - 특히,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는 안전교육 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강화 필요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15,876	4,499	4,820	2,157	2,200	2,200
공공체육시설확충	15,876	4,499	4,820	2,157	2,200	2,200

마. 목 표

-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개
 - 체육지도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 정밀, 안전진단을 통하여 노후, 보수·보강 필요시설 정비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점검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준수여부
 - 적정 자격 소지자 채용, 위탁시설은 실제 배치(근무)여부 확인 철저
 - 신규채용시 인명구조 자격 보유자 우선 채용
- 체육시설(업) 종류별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 준수여부
 - 조도기준 준수, 응급실 및 구급약, 환기시설 등 공통기준과 종목별 개별 안전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설치여부와 더불어 실제 작동여부 필수 점검
 - 등록 및 신고 이후 임의시설 변경 여부 확인
- 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 안전 관련 각종 시설·장비·기구 등 적정 설치 및 실제 작동여부 확인
 - 체육시설업 종류별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여부
 - 각종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보험가입(국민권익위 권고)
- 기타 유의사항
 -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 동일기준 적용
 - 위반사항은 등록취소, 영업정지(폐쇄) 등 행정처분기준 엄격 적용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 「1종 시설물」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범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이상의 관람장
 - 시설관리부서 주관 정기(수시)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 「2종 시설물」 “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범위)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 시설관리부서 주관 정기(수시)안전점검 및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안전등급기준
- 정기점검

구분	A · B · C 급	D · E 급	비고
1,2종 시설물	반기에 1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 긴급점검 : 관리주체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때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점검

-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이 발생한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범위) 운동시설 :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연면적 5백~5천㎡ 미만, 스키장(전수관리/삭도시설 포함)
- 정기(수시)안전점검, 위탁시설 및 민간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안전등급 및 조치기준
- 중점관리시설 : (A · B · C등급) 반기별 1회 이상
- 재난위험시설 : (D등급) 월 1회 이상 / (E등급) 월 2회 이상
- 안전등급별 상태 및 조치기준

□ 기타 일반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 「1·2종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주체,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직장) 및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점검 업무 수행
- 국가안전대진단 및 시설관리부서 자체점검 실시
- * 민간체육시설은 등록·신고 당시 설치기준 변경 여부 확인

2) 대비단계

□ 재난대비 응급복구 자재 및 장비, 긴급통신수단 마련

- 수방자재, 재난응급대책에 필요한 소형장비 등 비축
 - 마대류, 묶음줄, 양수기, 수중펌프 등 수방자재 비축
 - 손전등, 소형발전기 등 소형장비 비축
 - * 자체자원 구입 불가시 재난관리부서 협조(재난관리기금 사용)
- 재난발생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을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 마련

□ 체육시설 이재민 수용 등 공간활용 계획 수립

- 체육관 등 체육시설이 이재민 대피장소로 활용될 상황을 대비하여 이재민 수용 및 공간 활용계획 수립
 -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확보 대책
 - 모포, 위생용품 등 각종 구호물품 비치공간 확보 등
 - * 전시·재해구호물품을 체육시설 여유 공간에 비치하도록 관련부서 협조
- 이재민 수용을 위한 칸막이 설치계획 수립
 - 체육시설별 특성에 따라 칸막이 재질, 설치방법 등을 사전 계획
 - 재난발생시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칸막이 구입 등 재난관리부서와 사전조율(재난관리기금 사용)

□ 비상연락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비상연락망, 조치요령을 입구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인근 의료기관별 환자수용 가능인원, 동원 가능 구급차 현황, 병원별 환자 수송계획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고발생 시 동원(자문)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 비상연락체계 구축
- 체육시설 사고유형(붕괴, 화재, 안전사고 등)에 따라 동원장비·인력 등 확보방안 마련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재난유형별로 통합하여 작성한 경우 각 체육시설의 성격에 맞도록 직원 임무부여, 피난유도 동선 등을 별도 작성 운영

3) 대응단계

☐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 구축

- 재난정보의 수집
 - 각 시설관리자, 공사장 안전관리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조치요령 교육
- 사고전파 : 비상연락망을 활용 관련기관(부서) 전파

☐ 체육시설 재난발생 유형

- 체육시설(건축물 등) 붕괴,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인명·재산피해
- 태풍·집중호우·지진·해일 등 자연재난에 의한 침수, 붕괴·파손 등
- 체육시설 내 공연·행사 개최시 안전사고 발생
- 체육시설 건립시 공사장 붕괴 또는 공사장 근로자 안전사고

4) 복구단계

☐ 사고발생 시 복구대책

- 안전조치 및 붕괴현장 복구 대책 수립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재난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재난복구계획 수립
 - 사고발생 원인·결과 및 수습·복구 등 기록·분석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항구적 재발 방지대책 수립

☐ 평상시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단기적 복구방안 마련

- 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이상징후 발견 시
 - 체육시설 일시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명령
 -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안전점검 실시
 - 긴급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복구대책 수립
- * 경미한 사항은 자체 긴급보수 실시

□ **체육시설 안전의 중 · 장기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체육시설 안전의 중기적 개량복구 복구방안
 - 구조물의 결함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예산반영 복구 추진
 - 일시적인 보수·보강 필요 시 전문가 자문 후 복구 추진
- 체육시설 안전의 장기적 개량복구 방안
 - 구조물의 결함 등 정밀안전점검 등 장기 개량 복구 계획 수립 필요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체육시설의 준공년도 비교 분석하여 위험성 평가 등 실시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하여 장기복구방안 마련

3-4. 전통시장

가. 현 황

- 최근5년간 피해발생 현황 : 없음

나. 원인분석

- 전통시장 건물 노후 및 소규모 점포 등 밀집도가 높아 화재시 대형화 우려
- 전통시장 내 가판대 설치 등 통로협소로 유사시 소방차 진입곤란 및 활동 장애

다. 투자현황

사업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3,245	642	773	578	626	626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933	400	533	300	350	350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지원	1,288	242	234	272	270	270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24	-	6	6	6	6

라. 목 표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지원 확대
-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강화
- 화재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재정부담을 완화를 위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가) 시기별 · 계절별 안전대책 추진
 - 동절기 전통시장 안전점검

○ 설·추석 명절 대비 정기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전통시장 안전점검 중점 추진사항»

- ▶ 정선군 합동안전점검 실시(국가안전대진단 병행)
 - 민간 전문가(전기, 가스 등), 정선소방서 참여
 - 노후시설 및 개보수 시설에 대한 조치 계획 수립
- ▶ 상인 안전교육 실시
 - 시장별 집합교육 실시
- ▶ 시장별 화재예방 안내 방송(겨울철 수시 방송)
 - 안전관리요령, 대피·대응 방법, 비상대피로 안내 등

(나)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 보강 사업

-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 안전시설 정비
 - 단독형 화재형 경보기 설치
 - 노후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운영

- 화재발생 대비 유관기관(소방서, 119구급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2) 대비단계

□ 화재 위험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체계 점검

- 전통시장 내 소방차 통행로 확보
- 화재발생시 대피로 확보 및 대피 훈련
- 소화, 경보, 피난,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 설치상태 확인
- 상인회·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 신속한 화재재난 발생 상황전파 및 경보체계 확립
 - 관할 의용소방대 및 자위소방대 활동강화 및 내실화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관리

- 시장 인근 학교, 체육관, 교회,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 확보
- 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호기금 등을 통한 구호물자 확보
 - 생필품 등 응급 구호용품 신속 지급

□ 긴급대피체계 구축

- 시장 상인회와 유관기관(소방서, 119구급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3)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대응 1단계 : 사고발생 신고접수 · 출동지령 및 전파
 - 신고 접수 후 소방대 출동 지령 및 유관기관 현장지원 요청
- 대응 2단계 : 지휘체계를 통한 보고 및 유관기관·단체 전달
 - 정선군 재난종합상황실 → 강원도 보고 등 전파
- 대응 3단계 : 긴급구조, 대응조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 대응 4단계 : 긴급구조통제단 활동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상황판단회의

- 근거 :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7조
- 개최시기 : 재난발생 초기 단계부터 수시 개최
- 회의주재 : 본부장(차장 · 통제관 및 담당관)

□ 긴급구조 및 상황 공동관리체 운영

-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사고의 규모 등을 감안, 필요시 대책본부 설치 운영
- 긴급 구조통제단 설치 운영(단장 : 정선소방서장)
 - 긴급구조 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지휘, 통제
 - 긴급구조 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 유지 조치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운영
 - 초동대처 등 신속히 현장 사고 수습 · 복구 조치
 - 민간구조대 및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지휘 · 통제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화자 이송
 - 현장 응급의료소 필요물품의 확보, 관리 등

- 피해지역 인근 주민 긴급대피 조치
 -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공무원 배치 및 대피유도 등
 - 인근 건물시설 긴급안전점검, 통행자·입주자·차량 등 대피조치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 활동
 - 중앙구조대원 긴급 투입 및 타 지역 구조대원 지원조치
 - 사상자 후속조치 및 인명구조대책 우선 강구
 - 신속한 구조·구난과 실종자 수색, 사망·실종자 신원 파악
 - 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조사(인명피해, 재산피해, 이재민 현황 등)
- 관련 분야별 전문가 및 자체 점검반을 활용하여 및 사고원인 조사
 -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구축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대책 강구
- 배상(보상)업무 추진사항 확인
 - 피해자 배상(보상)계획 수립 및 추진
 - 배상(보상) 능력 유무판단 등 진행사항 확인
 - 조기 협상이 되도록 적극 중재 유도 등
-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복구 등 최종보고

3-5. 자연휴양림시설

가. 현 황

- 최근5년간 재산 및 인명피해 현황 : 없음
- 시설현황 : 자연휴양림 1개소(공립 1)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12~'16)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없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라. 투자현황

-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유지·확충, 위생 및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 시설물 주변, 옹벽, 교량, 진입로, 산책로 등에 대한 안전휀스 및 가드레일 설치
-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 복합재해모니터링(1개소) 및 이미지 개선사업(사립자연휴양림) 추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880	232	168	160	160	160

마. 목 표

- 노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객 증가에 따라 다양화되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자연휴양림 이용환경 제공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관심단계

☐ 태풍, 호우, 폭설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 발생
 -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각 기관별 피해우려지역, 위험시설 점검 확인
 - 숙박객, 야영객 현황 파악, 연락체계 점검 및 방송 상태 확인

☐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 산불조심기간 자연휴양림 내 주기적 순찰 실시
- 숙박객, 야영객 현황 파악, 연락체계 점검 및 방송상태 확인
- 산불예방 홍보방송 실시
- 산불, 화재발생 보고체계 유지

☐ 태풍·호우에 따른 산사태 우려 시기

-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피해우려지역, 위험시설 점검 확인
- 숙박객, 야영객 현황 파악, 연락체계 점검 및 방송상태 확인

2) 주의단계

☐ 태풍, 호우, 폭설 예비특보나 주의보 발령

- 태풍, 호우, 폭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나타날 때
 -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이용객에게 현재 상황 전파 → 예약객에게 현지 상황 유선통화 → 야영객에게 현재 상황 알림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안전순찰 및 등산로 통제 → 피해우려지역, 위험시설 응급조치

☐ 산불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

- 산불조심기간 자연휴양림 내 주기적 순찰 실시
- 입장객 위치 및 대피상황 점검

- 자연휴양림 내 입장객 산불예방 홍보 및 이상 징후 발생시 즉시 신고체계 유지

- 자연휴양림 입장객 대피로 안내

☐ **산사태 주의보 발령**

- 이용객에게 산사태 주의보 전파
- 예약객에게 현지상황 유선통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안전순찰 및 등산로 통제
- 피해우려지역, 위험시설 점검 및 기동력 확보

3) 경계단계

☐ **태풍, 호우, 폭설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

-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이용객, 야영객에게 현재 상황 전파 및 추가입장 통제
- 안전순찰 및 등산로 통제 강화
- 피해우려지역, 위험시설 응급조치

☐ **자연휴양림으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 신속한 상황전파 및 입장객 긴급 대피
 - 대피하지 않은 이용객이 있는지 확인 후 위험상황 방송 및 대피 유도
 - 불씨가 시설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건물 주위에 물 뿌리기
 - 폭발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 제거

☐ **산사태 경보 발령**

- 이용객, 야영객에게 현재 상황 전파, 추가입장 통제
- 안전순찰 및 등산로 통제 강화
- 피해우려지역 점검강화
- 대피소 사전 점검

4) 심각단계

☐ 태풍, 호우, 폭설로 인한 피해 발생시

- 현장대책본부 구성·운영
- 유관기관 협조 요청
- 대피소로 이용객 안전 대피
- 입장객 및 야영객 통제
- 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

☐ 전국 동시다발 산불발생 우려 및 산불 진화시

- 이용객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킨 후 유관기관 공조, 진화활동 참여
-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도구와 안전장구 착용
- 산불진화 완료 후 뒷불감시 담당자 및 감시조 운영
- 인명·시설물 피해 조사 및 상황 보고

☐ 산사태로 인한 피해 발생

- 현장대책본부 구성·운영
- 유관기관 협조 요청
- 대피소로 이용객 안전 대피
- 입장객 및 야영객 통제
- 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

3-6. 유형별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댐 붕괴 매뉴얼 재정비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동인 담당	033-560-2492	재난안전관리 단계
			전홍식 주무관	033-560-2493	예방

◇ 대규모 홍수 및 지진 등 자연재해와 댐 체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댐 붕괴 발생 시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 구축

* 하천법 제26조, 재난관리기본법 제34조의5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댐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현행화(%)	100	100	100	매뉴얼 정비율	높음

□ 주요내용

-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및 비상연락처 담당자등 현행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대·내외 인사 발령 등 담당자 변경사항 확인, 매뉴얼 정비	2월
하반기	대·내외 인사 발령 등 담당자 변경사항 확인, 매뉴얼 정비	11월

나).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전제현 담당	033-560-2131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동진 주무관	033-560-2163	예방

◇ 관계법령이 시행('18.1.1)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구성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조례제정	-	1	-	- 조례 입법 및 제정(건)	높음
위원회 구성	-	1	-	- 위원회 구성(건)	높음

□ 주요내용

-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방침결정('18.2월)
-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18.3월)
- 각종 규제 및 법제심사('18.4월)
- 조례규칙위원회 회부 및 군 의회 안건 제출('18.5월)
- 조례안 공포 및 제정('18.6월)
-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18.7~9월)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2/4분기	조례제정	6월
3/4분기	위원회 구성	9월

다. 산림휴양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환경산림과	작성자 및 연락처	유혜준 담당	033-560-2426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성우 주무관	033-560-2953	대비·대응

◇ 현장 중심의 위기관리 대응을 위하여 산림휴양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매뉴얼 정비 실적	보통

□ 주요내용

- 원활한 업무수행과 신속한 위기관리 대응을 위하여 산림휴양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재정비
 - 도 와 시·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담당자 합동으로 기존 매뉴얼을 정비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

*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매뉴얼 재정비	3월
하반기	정선군 산림휴양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점검	9월

□ 제 · 개정내용

규정명	주요내용
산림휴양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2) 재정사업

가) 공공체육시설 확충 · 정비사업 및 안전점검

작성 부서	동계올림픽 지원단	작성자 및 연락처	김덕기 스포츠지원담당장	033-560-2254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재천 주무관	033-560-2547	대비

- ◇ 노후 및 파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비와 신규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100	100	100	연도별 준공목표 달성률	높음
공공체육시설 정기안전점검	100	100	100	정기안전점검 추진률	높음

□ 주요내용

- 군민 건강증진 및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
-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을 통한 체육활동 활성화
- 군 체육시설 담당자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연2회 상.하반기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4월
2/4분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현장점검	4월~8월
3/4분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9월
4/4분기	당해연도 사업실적 점검 및 차년도 사업 대상지 검토	10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계	4,499	4,820	2,157	2,200	2,200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4,499	4,820	2,157	2,200	2,200	

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작성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춘택 담당	033-560-2355	재난안전관리 단계
			유홍균 주무관	033-560-2440	예방

- ◇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물의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 화재 등 재해예방 시설 설치
- ◇ 고객 편의 제공으로 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추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시설현대화 시장수	4	3	3	'18년 지원대상 시장 수	보통

☐ 주요내용

- 노후시설 철거 및 보수
- 고객편의시설 설치
- 소방설비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및 보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	2~6월
하반기	공사 추진 및 준공	7~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전통시장시설현대화	400	533	300	350	350	

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작성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춘택 담당	033-560-2355	재난안전관리 단계
			유홍균 주무관	033-560-2440	예방

◇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를 통한 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피해 최소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

* 근거 :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안전요원 배치인원	12명	12명	12명	안전요원 배치인원 수	보통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인건비 지원
- 전통시장 재해 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 대처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안전관리요원 선발 및 배치	2월
하반기	'19년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요조사	8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지원	242	234	272	270	270	

라).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

작성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춘택 담당	033-560-2355	재난안전관리 단계
			유홍균 주무관	033-560-2440	예방

◇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통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재정적 피해 최소화

* 근거 :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화재보험가입 시장	-	4	4	화재보험 가입 시장 수	보통

□ 주요내용

-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전통시장 재해 복구 역량 강화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지원	2월
하반기	'19년 지원대상 수요 조사	8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	6	6	6	6	

마.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작성 부서	환경산림과	작성자 및 연락처	유혜준 담당	033-560-2426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성우 주무관	033-560-2953	대비·대응

- ◇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서비스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에 기여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산림휴양시설 조성·보완	1개소	1개소	1개소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실적	보통

□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단계별(4단계) 점검
- 자연휴양림 구역·시설물 정밀진단 및 노후시설 보완사업 추진
- 상황별 재난안전관리, 대처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화
- 안전한 휴양시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캠페인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추진	2~6월
하반기	자연휴양림 조성	4~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32	168	160	160	160	

3) 기타시책

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전제현 담당	033-560-2131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동진 주무관	033-560-2163	예방

◇ 지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군 단위
안전관리계획 수립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	100%	100%	- 법상 수립여부 준수도	높음

□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2/4분기	지하매설물 등 현황 자료수집	6월
3/4분기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 등 조사	9월
4/4분기	안전관리계획 수립(매년)	12월

나)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 활용 활성화

작성 부서	동계올림픽 지원단	작성자 및 연락처	김덕기 스포츠지원담당장	033-560-2254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재천 주무관	033-560-2547	대비

◇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효율성 증대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점검결과 시스템 등록	76	95	95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 등록율	높음

□ 주요내용

-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효율성 증대
- 연 2회(상·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및 점검결과 시스템 등록을 통하여 정보공유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결과 시스템 등록 안내	1월
2/4분기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점검 추진률 파악 및 안전점검 독려	4월~5월
3/4분기	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결과 시스템 등록 안내	6월~9월
4/4분기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점검 추진률 파악 및 안전점검 독려	10~12월말

다. 자연휴양림 시설 점검

작성 부서	환경산림과	작성자 및 연락처	유혜준 담당	033-560-2426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성우 주무관	033-560-2953	대비·대응

◇ 산림휴양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 및 재해 사전예방으로 이용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도
자연휴양림 시설점검	점검3회	점검3회	점검3회	점검결과 보고	보통

□ 주요내용

- 해빙기 자연휴양림 시설 및 산책로 주변 안전점검
 - 석축, 옹벽의 이상 유무 점검
 - 건축물 부동침하 상태 점검
- 성수기 이전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 점검
 - 비상연락망 정비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대피시설 확보, 긴급 방송시설 점검
 - 시설물 이상 여부 등 안전점검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소화기 비치 및 점검
- 동절기 대비 자연휴양림 화재예방 및 재설대책 점검
 - 겨울철 유류·전기·가스기구 사용 점검
 - 폭설 대비용 안전장구(체인, 삽 등) 및 재설재 비치 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해빙기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성수기 대비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3~5월 5~6월
하반기	겨울철 대비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10월 11월

4). 교통재난 · 사고

4-1 도로교통

가. 현 황

- '16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8명으로 전년대비 33명(△13.7%) 감소하여, 최근 5년간 최고의 감소율을 기록

(단위 : 건, 명)

구 분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건수		8,975	8,975	8,546	8,617	8,939	9,797
인명피해	계	14,941	15,878	14,801	14,568	15,299	14,158
	사망	240	280	244	226	241	208
	부상	14,701	15,598	14,557	14,342	15,058	13,950

※ 2016년판 교통사고통계자료 : 경찰청

나. 원인분석

- 다양한 교통안전 시책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피해는 평균대비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군내 지형특성상 산악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구간의 사고위험 상존
 - 또한, 자동차 보유대수 및 교통량 증가, 노후화, 대형화로 재난 발생 요인 증가
 -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및 폭설, 빙판으로 인한 도로교통 사고 피해 가중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중장기 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행안부)
- 제5차 교통사고잘은곳개선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행안부, 경찰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관리)
- 제3차 정선군 교통안전기본계획

라. 목 표

- 전년대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3% 달성 목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2.87	2.78	2.69	2.61	2.53

※ 최근 피해현황 2.96명(5년 평균)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16,513	377	0	232	300	3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6,513	377	-	232	300	300

바. 목 표

- 전년대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3% 달성 목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2.87	2.78	2.69	2.61	2.53

※ 최근 피해현황 2.96명(5년 평균)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도로교통 안전시설 인프라 등 교통환경 개선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대상지 선정 등 사업추진
- 음주, 과속, 신호위반 사고요인 행위 단속(정선경찰서)
- 초등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의식 제고 교육 및 홍보 공모사업 추진(군,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
-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 수립(군, 교통안전공단 등)

2) 대비단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개선사업 추진(군, 도로관리청)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진단(군, 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 20대 이상 보유사업자로 연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일정기준 초과업체
 - 교통안전 위험요인, 법령 위반·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연1회)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군, 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 분기별 사망 및 중대 교통사고 발생 운수업체
 - 점검대상별 교통안전관리실태 점검 후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3) 대응단계

- 도로교통사고 피해규모별 사고 등급

구 분	피해 규모별
1급 교통사고	사망 15명 이상
2급 교통사고	사망 10명 ~ 사망 14명
3급 교통사고	사망 5명 ~ 사망 9명

※ 국토교통부 「사업용자동차 대형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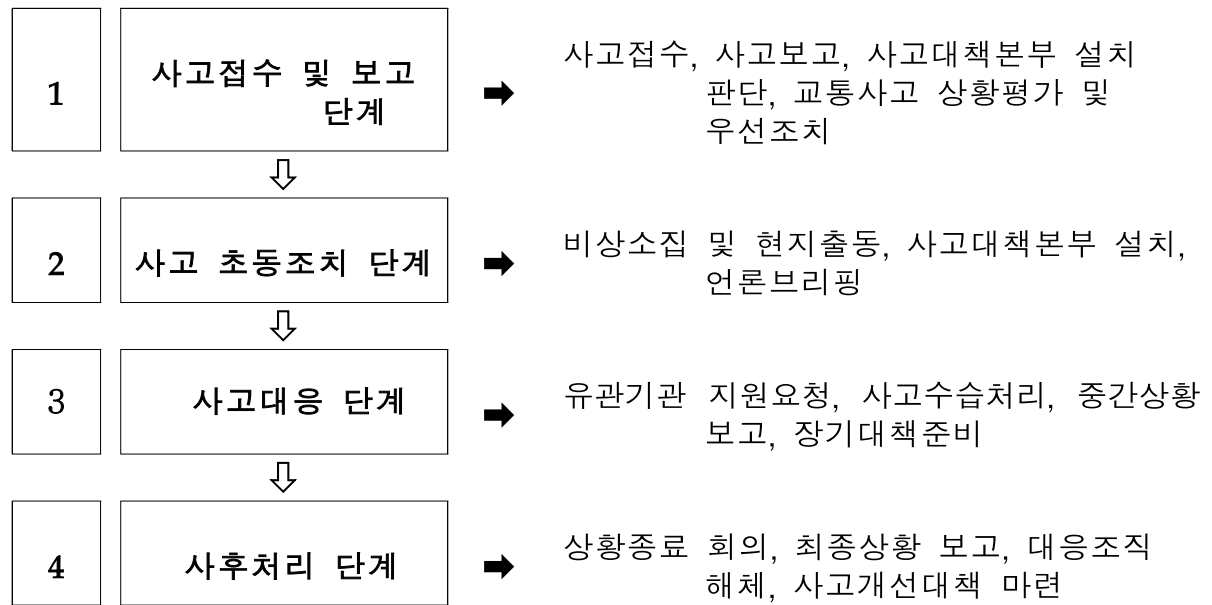
- 사고대책본부 구성

구분	사고지원 대책본부 구성			본부장
	국토교통부	강원도	시·군	
1급 교통사고	○	○	○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道(경제부지사) 시·군(부시장, 부군수)
2급 교통사고	×	○	○	
3급 교통사고	×	×	○	

※ 국토교통부 「사업용자동차 대형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 적용

2급 교통사고 이상 발생시 道 사고대책본부 구성은 우선적으로 재난상황 인지가 가능한 道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대책본부 구성여부 판단

○ 단계 대응대책



○ 사고접수 및 보고 단계



- 사고 접수

- 현장(군민·경찰서·소방서)에서 군에 접수(군은 접수 즉시 道에 보고)
- 운송사업자 사고보고 접수(운전자 및 자동차 상황)

- 사고 상황 확인

-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관내 병원 등
- 상황관리 임시책임자 지정 및 현장 출동

- 사고 상황 보고 및 전파

- 道, 국토관리청, 여객운수단체 등 유관기관

- 사고대책본부 설치(사고등급) 여부 판단
 - 사고처리 상황 판단회의 실시(사고대책본부 운영 여부 결정)
- 교통사고 상황평가 및 우선조치
 - 사고 상황 등을 검토하여 각급 대책본부별 대응전략 수립
 - 사고 현황,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등 언론 보도문 작성

○ 사고 초동조치 단계

- 필수요원 비상소집
- 지역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 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 사업자 단체 등 유관 기관 협조
 - 각 지원관서별 역할분담 대응처리

○ 사고 대응 단계

- 유관기관 지원요청
 - 중앙지원본부에 대책본부 설치(1급 교통사고의 경우)
 - 중앙긴급구조 지원요청
 -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지원요청
 - 사고차량 관할 관청 등 직원 파견
- 사고 수습처리
 - 사고 현장 정리
 - 피해자 피해상황 구체적 파악 및 피해자 가족 연락
 - 유가족 협상계획 및 보험내용, 방법과 규모 확인(사업자 및 보험회사 등)
 - 필요시 합동장례식 준비 및 지원 인력 배치
- 중간 상황 보고
 - 현장 조치상황 경과보고(상위 단계 사고대책본부)
 - 사고현황 언론 브리핑(각급 대책본부장)
- 장기대책 준비
 - 장기 사고수습대책 수립
 - 유가족 협상진행 및 사고 자동차 보험 가입 상황 파악
 - 유가족 협상결과 및 보험내용, 보상방법·규모 등 언론브리핑

○ 사후처리단계

- 상황종료 검토회의
 - 지역사 고대책본부장 주관 최종 합동회의
 - 사고처리 상황종료 건의(상위 단계 대책본부)
- 최종상황 보고 및 전파
 - 사고수습 일지 정리 및 상황정리
 - 사고개요, 수습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고·전파
- 대응조직 해체·인계
 - 중앙사고지원본부 또는 지역사고대책본부 해체
 - 사고대책본부 운영상 미비점·개선점 분석
- 사고 개선대책 마련
 -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른 사고 개선대책 마련
 - 사고이력카드 작성
 - 운송사업체 및 운전자 과실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

4) 복구단계

- 도로 파손시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복구토록 하고 추후 필요시, 구상권 등 청구
- 사고 차량의 조속한 처리

아.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교통안전기본계획(17~21)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작성 부서	도시건축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유종덕 담당	033-560-2364	재난안전관리 단계
			민경진 주무관	033-560-2366	예방

◇ 제3차 정선군 교통안전기본계획(2017.5.)에 따른 연도별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 추진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연도별 시행계획	100	100	100	- 시행계획 수립(%)	보통

□ 주요내용

- 정선군의 교통안전 주요지표 제시와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방향 및 목표달성을 위한 도와 정선군간 교통안전대책의 통일성 유지
- 정선군 교통안전정책 목표설정 및 추진 성과 관리
-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 교통안전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 계획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정선군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3월
2~4/4분기	정선군 교통안전시행계획 중점 과제별 세부사항 추진	4월~11월
4/4분기	정선군 교통안전시행계획 중점 과제별 추진 평가	12월

나). 도로터널사고 행동조치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및 연락처	유광택 담당	033-560-2487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기윤 주무관	033-560-2488	대비·대응

◇ 도로 터널 내 대형교통사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도로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의 표준 행동 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12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도로터널사고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2회 실시	보통

□ 주요내용

-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대책의 수립으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
 - 화재, 차량 추돌, 교통차단 등이 복합된 다양한 상황을 가정, 정선군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역할을 정비하고 협조체계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도로터널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정비	6월
하반기	도로터널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10월

2) 재정사업

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및 연락처	유광택 담당	033-560-2487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기윤 주무관	033-560-2488	대비·대응

- ◇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보호구역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개소수	1	-	1	실적/목표	보통

□ 주요내용

-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 사 업 량 : 1개소, L=0.3km
 - 사업내용 :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사업설계 및 발주	3월~6월
하반기	사업추진 및 준공	7월~9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 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77	-	232	300	300	

3) 기타시책

가) 안전점검, 교육확대 등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 체계 구축

작성 부서	도시건축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유종덕 담당	033-560-2364	재난안전관리 단계
			민경진 주무관	033-560-2366	예방

◇ 사망 사고 유발 대형운수업체 안전점검 강화, 교통안전 교육기회 확대 등 교통안전관리 체계 구축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운수업체 교통안전 관리점검	4	4	4	점검 횟수	보통

□ 주요내용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진단(정선군, 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 교통안전 위험요인, 법령 위반·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연1회)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정선군, 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 분기별 사망 및 중대 교통사고 발생 운수업체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교육·훈련, 점검·홍보계획 수립	1월
2~4/4분기	교육·훈련, 점검·홍보	수시

5).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가. 현 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건수		1	0	1	0	3	2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1	0	0	0	3	2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1	0	0	0	3	2

※ (통계 출처) :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통계정보

나. 원인분석

- 운전조작 미숙 등 기술부족, 화학물질 육상 운송사고, 중요 핵심부품 결함 및 설비 노후화, 설계·기술 미비 및 감리 부족 등에 의한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의 대부분은 육상 운송사고 분야에서 발생하나, 신고체계가 선 확립된 수질오염 또는 토양오염 분야로 신고되어 유해화학물질 재난 통계에 누락되는 부분이 많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환경부, '17.1)

라. 목 표

-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 확립
 - 사고상황 발생 시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및 관리를 주관하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간 정보공유 강화 필요
 -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사고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관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여 사고 발생 시 물질의 종류 및 성상을 사전 파악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 확립

- 지자체에서는 사고발생 시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주민대피 명령, 수용시설 운용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주민피해 대응 누수 최소화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화학물질 정보 통합관리(주관기관, 유관기관, 실무기관)**
 - 기관별로 보유 중인 화학물질정보, 취급정보, 물질안전정보, 방제약품 판매업체 정보 등을 최신화하여 공유
 - 관별로 보유 중인 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예방규정 등을 최신화 하고 정보 공유
-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사고예방 홍보·계도 활동 전개

2) 대비단계

- **재난대응 조직의 정비**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 등 조직 정비
 - 사고 발생 시 소방, 군, 지자체 등 초동 대응기관 및 주관기관 등을 실시간 연결하는 대응시스템 구축
 - 사전 비상연락망 구축 및 현장지휘 통신망 확보
-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 발령 대비 방안 마련**
 - 자체위기평가회의 가동 방안
 - 위기수준별 대응책 수립 마련
 - 위기수준 평가에 따른 경보 발령 방안 마련

☐ **경보단계별 대응 활동 전개 방안 마련**

- 경보단계별 상황 모니터링 방안
- 유관기관 중심 대책본부 가동 및 초동대응 조치 시행 계획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2차 위기상황 대비 방안 마련**

- 사고발생 주변지역 지속적 모니터링 방안
- 화학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확대 대비 방안

3) 대응단계

☐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

- 소방(119소방본부), 경찰 등 → 화학물질안전원 → 환경청, 합동방재센터 → 환경부

- 환경청, 합동방재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사고접수·전파체계 일원화(24시간 화학안전종합상황실 운영)

☐ **초동조치**

- 관련시설 긴급 응급조치 및 자체 방제자원 활용, 방제 활동
- 위험지역 설치 및 현장지휘소 설치
- 준위험지역·경계지역 설치 및 출입 통제
- 사고정보(사고원인, 사고물질, 누출량, 피해현황 등) 파악
- 1차 환자 구조/구급/분류/후송

☐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 사고현장에서 사고상황 파악 및 위기경보수준 건의
-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여
- 화학사고 수습상황 지속 모니터링
- 화학사고 환경분야 언론 브리핑 지원

□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 사고 피해정도 및 확대 가능성 판단
- 사고대응 및 수습의 대응방향과 기관별 임무 분장

□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현장상황 정보 종합하여 위기수준 평가
- 필요시 위기경보 발령, 변경 및 해제
 - ※ 주의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위기경보를 발령. 경계, 심각단계에서는 환경부(중앙 사고수습본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경보 발령
- 위기경보 발령사항 유관기관 통보

□ **현장 긴급 구조활동**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 분담
- 응급진료소 설치 및 환자 구조/구급/분류/이송

□ **인력/장비 등 동원**

- 사고현장 인근의 병·의원과 보건소 앰블런스, 소방구급차 및 민간구조단체 구급차량 긴급동원
- 군 병력 및 복구장비 지원
- 민간의 방제장비 및 방제물자 판매업체 지원

□ **피해지역 인근주민 긴급대피 조치**

-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공무원 배치 및 대피 유도
- 사고현장 질서 유지·안전 확보 및 교통대책 시행
- 지역주민 및 근로자 이재민 수용시설 이동·대피

□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 강구**

- 적십자사 및 부녀단체 등 민간단체의 현장 봉사활동 전개
- 보건소 등에서 응급방역 및 예방접종 실시

□ 비상홍보센터 가동

- 현장지휘본부와 연계된 현장 브리핑 시스템 구축 운영
- 對언론 정례 브리핑 실시
 - 중대본 및 지대본(현장지휘본부 포함) · 긴급구조기관 주관, 환경분야는 지원
 - 최초 브리핑은 최초 사고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실시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2차 사고대비 대응활동

- 화학사고 접수 시 수질담당자 통보
 - 수질담당자는 수계유무 등 확인 후 화학사고와 합동대응

4) 복구단계

□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화학사고조사단” 구성 · 가동
- 피해현황 및 이재민 파악
- 사고지역 환경오염 등에 대한 모니터링
- 인근지역에 대한 사고관련 화학물질 잔류여부 조사 및 주민복귀 결정

□ 유관 부처/기관 합동 피해복구 활동 전개

-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건축 구조물 및 시설·설비 안전성 검사
- 사고지역 시설, 장비 등 복구 지원
- 사고지역내 오염물품 수거 · 폐기

☐ **인근지역에 대한 잔류여부 조사 및 주민복귀 결정**

- 오염물품 수거·폐기
- 피해현황 및 이재민 파악, 구호대책 수립
- 피해환경 사후관리

☐ **이재민 구호대책 조기 시행**

- 이재민 현황파악, 수용 및 구호대책 수립 추진
- 지정시설의 수용가능 여부, 시설 부족 시 임시시설(공공시설) 확보
- 적십자사와 협의, 생필품 등 응급구호용품 신속 지급

☐ **사상자 치료·장례 등 대책협의**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병원별로 공무원 배치, 사상자 신원 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지원문제 등 협의
- 합동분향소 설치, 합동·개별 장례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 실종자 신고창구 일원화 및 분실물 신고센터 운영

☐ **복구활동 상황 보도 및 민간의 자발적 복구 참여 유도**

☐ **재해 대응활동 평가 및 사고재발 방지대책 강구**

- 단계별 대응활동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 주요 재해사례 분석, 항구적 사후관리시스템 개발

바.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환경산림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덕종 담당	033-560-2332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순희 주무관	033-560-2354	대비·대응

◇ 현장 대응기관의 통합 지원·조정을 위한 매뉴얼 정비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매뉴얼 정비 1식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 비상연락망,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인력 및 장비 등 현황 정비
 - 기관별 단계별 임무·역할 및 행동요령 구체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연중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

6. 환경오염

6-1. 수질오염

가. 현 황

○ 정선군 수질오염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건수	0	0	0	0	0	0

나. 원인분석

- '07년부터 '16년까지 매년 다양한 원인의 수질오염사고(수환경 변화, 관리부주의 등)가 발생
- 다양한 유형의 사고원인을 예방하기 위해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방제 작업을 통한 확산 방지 추진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수질환경보전 관련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한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먹는물 관리법
- 댐·하천·수계 관련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 재난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42호)
 -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80호, 2015. 11. 6.)
 -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15.5)
 - 환경분야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라. 목 표

- 유류·유해물질 등의 유출로 인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피해 최소화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 건수	0	0	0	0	0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

1) 수질오염사고 예방·감시활동 강화

- 관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추진
-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별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 유해물질의 하천유입 차단을 위한 임시저류시설 설치 예정지 사전지정·관리
- 유류·유해물질 운반차량의 상수원 주변지역 통행제한을 위한 관리강화
- 유해물질의 제조·유통·판매업소 현황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소 현황 사전구축
-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대비 안전교육 및 수질오염사고 유형별 자체 방제훈련 실시
- 사고 예방 및 수습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2) 수질오염사고 유발시설 점검·관리

- 동절기 한시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관리
- 해빙기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관리
- 수질오염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재난관리 대상시설 지정 및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 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수질오염사고 감시 강화

3) 유관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유지

- 수질관련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점검
- 사고발생시 초동방제를 위한 환경오염 방제 전문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주기적 점검·현행화

4)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 환경오염사고 예방 교육, 홍보 실시
- 지역 내 언론기관 등과 유사시 홍보지원 협조체계 구축

2) 대비단계

□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

1) 수질오염사고 현장 지휘체계 및 초동 대응태세 사전 구축

- 오염사고 대응관련 현장 지휘체계 구축·운영
- 사고현장 보고·파악 및 전파체계 구축
- 현장 대응 및 수습역량 강화대책 강구
- 수질오염사고 대응조직 구성 등 재난관리 대책강구
-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
- 예상 상황별 위기수준 평가 및 긴급 대응계획 준비

2) 환경오염사고 수습 방제장비 확보 및 동원태세 구축

-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 및 약품을 기관별로 사전확보·비치
- 군부대·소방서·경찰서·방제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 지원인력 등 공조체제 구축
-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약품 등 복구 장비·자재 확보, 적재적소 비치

3) 유관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유지

- 수질관련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점검
- 사고발생시 초동방제를 위한 환경오염 방제 전문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주기적 점검 현행화

3) 대응단계

☐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1) 초동방제조치

- 사고접수 즉시 현장 조치반 투입
-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현장 방제책임관 지정
- 방제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오염물질 유출 차단 등 현장 초동방제 실시
 - 1단계 : 오염물질의 사업장 밖 유출차단을 위한 방제조치
 - 2단계 :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차단을 위한 방제조치
- 사고원인물질 종류·유출량, 공공수역 유입량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환경부 보고 및 관계기관 전파

2) 사고수습기구 설치·운영

- 현장지휘본부 설치 및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준비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사후조사반 편성·운영
 - 환경청, 정선군,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등
- 사후 환경영향조사 실시
 - 수질 및 저질조사, 어류, 저서생물 등에 대한 영향조사
-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결과 종합보고
-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비용산출, 원인자 비용부담 조치
- 사고수습에 따른 폐기물 등 수거 처리
-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수립 및 개선
-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결과 종합보고(강원도)

바.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환경산림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덕종 담당 박순희 주무관	033-560-2332 033-560-2354	재난안전관리 단계 대비·대응
-------	-------	-----------	-------------------	------------------------------	--------------------

◇ 재난사고시 신속 대응 및 현장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수질오염 분야 매뉴얼 정비 및 개정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42호),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실적/목표)*100	높음

□ 주요내용

-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관계법령 개정사항, 유관기관 및 연락처 변경사항 등 반영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식·용수 재난 담당자의 매뉴얼 숙지 및 대응체계 검토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및 추진정비	2월
하반기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및 추진정비	11월

□ 제 · 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제정	▪ 대규모 환경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국가위기관리매뉴얼 일제정비계획	▪ 매뉴얼 제·개정 목록표 추가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체계로 정비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역할은 실무매뉴얼에 명시
▪ 국가위기관리매뉴얼 일제정비계획	▪ 정부조직 개편사항 등 반영 - 연락처 현행화 조치
▪ 안전행정부 매뉴얼 검토회의에서 반영 요청(2013.7.5)	▪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중앙사고수습본부 역할, 장관님 역할 추가 ▪ 기관·임무 역할을 중요도 순으로 조정 ▪ 위기징후 정비, 연락처 정비, 간지 제거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및 「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대통령 훈령 제285 → 318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안행부, 소방청 →안행부 ▪ 소방청의 임무·역할 수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시 협조·지원 및 실무반 파견 ▪ 안행부의 임무·역할 수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필요시) : 신설 ▪ 안행부 담당과 변경 - 재난위기종합상황실→중앙안전 상황실 - 재난역량지원과 → 재난협력과 ▪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추가 :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 사고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전면 정비	▪ 전면 개정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실행계획	▪ 재난현장통합지휘소→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 기관 재난대응수칙 포함 ▪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하여 중대본 운영. 단, 관심·주의단계에서 중대본 가동이 필요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 협의
▪ 사고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전면 정비	• 전면 개정 - 단계별 대응조치 수립

2) 기타시책

가.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 대책 추진

작성 부서	환경산림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덕종 담당	033-560-2332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순희 주무관	033-560-2354	대비·대응

◇동절기·해빙기는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종합대응시스템 운영 추진

□ 목 표

- 동절기·해빙기 기간 동안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사고 유발시설 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발생 예방 및 신속 대처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동절기 해빙기 수질 관리 계획 수립율(%)	100	100	100	(실적/목표)*100	높음

□ 주요내용

- 수질오염사고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운영
 - 지역상황실 설치·운영
 - 비상연락체계 구축 유지
 - 수질·수량 연계관리 협조체계 구축·운영
-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사고유발시설 관리 강화
 - 해빙기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강화
 - 사고 유발시설 집중 관리 및 사전예찰활동 철저
- 사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수질오염사고 대비 경보체계 철저 운영
 - 수질오염사고 현장대응 역량 제고
 -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자 교육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추진실적 보고	4월
하반기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계획 수립	11월

7. 국가기반체계 마비

7-1. 청사

가. 현 황

- 최근 5년('13~'17년)간 인명 및 재산 피해현황 없음
- 청사현황

구 분	설립연도	연면적(㎡)	구 조	비 고
본관	1972	2,437.27	철근콘크리트조 · 경량철골구조(판넬)	
별관	1983	1,099.70	철근콘크리트조 · 경량철골구조(판넬)	
신관	1992	1,176.75	철근콘크리트조 · 경량철골구조(판넬)	
문화예술회관	1993	3,120.03	철근콘크리트조	
의회	1990	996.75	철근콘크리트조	
제2청사	1982	1,435.89	철근콘크리트조 · 경량철골조 · 철골조	일부 사용 · 수익 허가 중

나. 원인분석

- 특정관리대상 시설인 청사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 · 보강이 이행되어야하며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이므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의 대체를 통하여 안전사고의 예방 조치 필요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 제1항 제4호, 제6호

☐ 법 제25조의2(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개정

6.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정 등), 제33조(특정관리 시설 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 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정비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정 등)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3조(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1,504	320	842	122	110	110
청사 유지보수·시설개선	1,355	295	812	88	80	80
청사 안전관리대행	149	25	30	34	30	30

마.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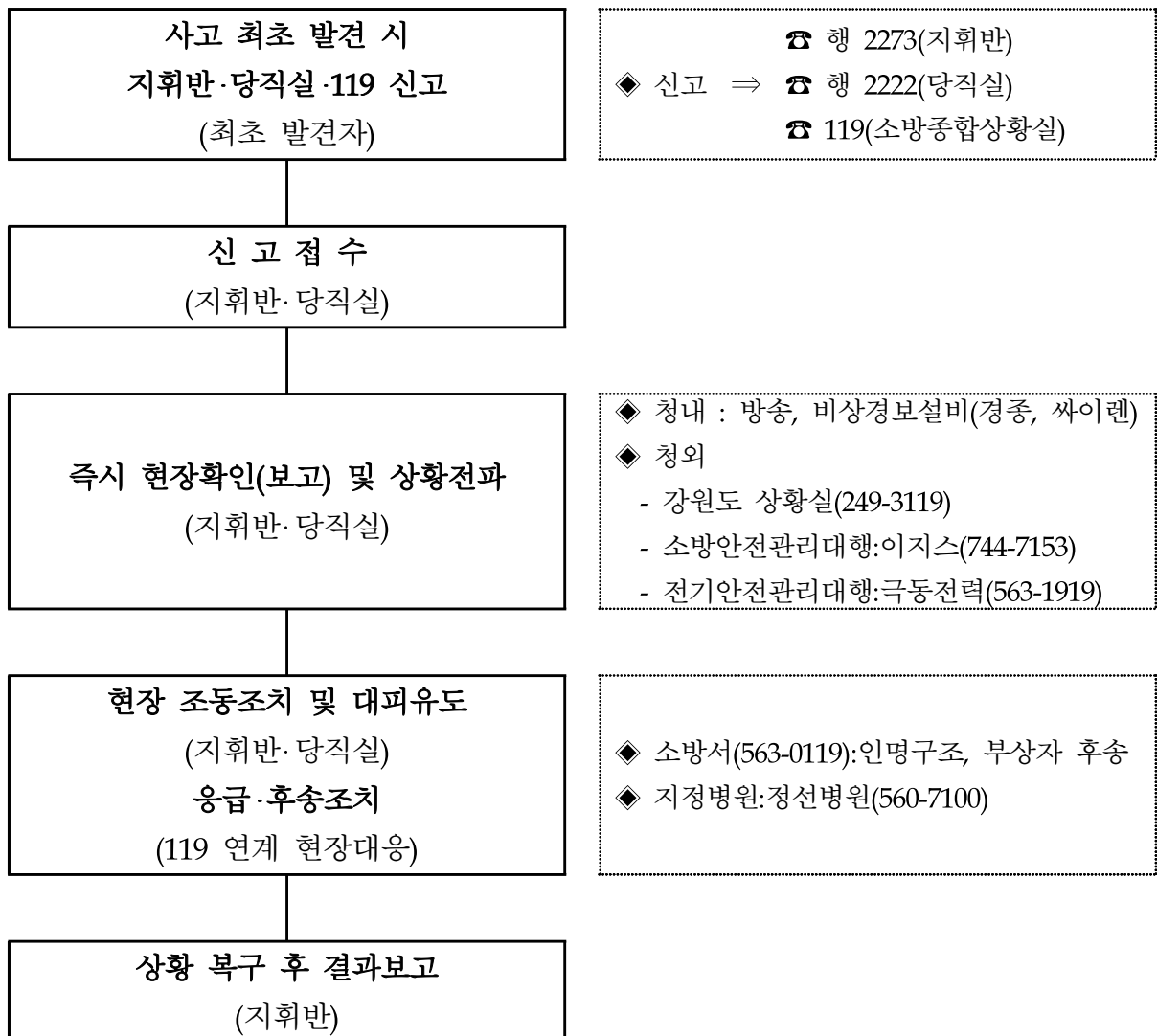
- 정선군 청사에 대한 체계적·능동적인 재난예방 안전관리를 통하여 향후 5년('18~'22년)간 인명 및 재산 피해현황 없도록 목표 설정
-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불의의 재난사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조치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기능을 신속하게 유지·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대비단계

-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 매년 상·하반기 연2회 실시
- 청사 안전·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 : 시설비 반영
- 청사 안전관리 대행용역을 통하여 정확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생 시 사전 조치(전기, 소방, 방역, 석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성 제거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

2) 대응단계



3) 복구단계

○ 응급복구

-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시행
- 복구장비, 인원, 소요자재 파악 및 복구방법 결정
- 전문인력 및 장비 긴급출동
- 사고 잔재물 수거 및 처리
- 유관기관에 인접지역 피해 확산방지 협조요청

○ 사고 원인조사, 기록, 평가

-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점검으로 사고 원인 규명
- 정밀 진단 등을 통한 복구대책 수립
- 증거보존 자료의 수집(공조협의기관의 협조지원 요청)
- 사고 잔재물 수거 및 처리
- 유관기관에 인접지역 피해 확산방지 협조요청

○ 피해배상(보상) 대책

- 피해현황 조사(인명, 재산)
- 책임소재를 분석하여 책임자 규명(필요 시 구상권 행사)
- 배상(보상) 기준을 설정하여 계획 수립

○ 재발방지 대책

-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단계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 제도개선 사항 등 종합대책 마련

2) 재정사업

가. 청사시설 개선사업

작성 부서	세무회계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익균 담당 조광희 주무관	033-560-2273 033-560-2305	재난안전관리 단계 대비,대응
----------	-------	--------------	-------------------	------------------------------	--------------------

◇ 청사 구조물 기능 강화 및 화재사고 등 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청사시설 개선사업 실시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청사시설 개선사업 실시	4	10	10	사업 실적(개소)	보통

□ 주요내용

- 시설 정비를 통한 청사 구조물 강화 및 화재사고 등 재난
대응력 제고
- 고효율 에너지설비 교체와 청사시설물 리모델링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기본 및 실시설계	1월~3월
2/4분기	공사 착공	4월
3/4분기	시설공사	5월~9월
4/4분기	사업 준공	10~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청사 시설 개선사업	295	812	88	-	-	'19년 이후 미정

나. 청사 안전관리대행

작성 부서	세무회계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익균 담당	033-560-2273	재난안전관리 단계
			조광희 주무관	033-560-2305	대비,대응

◇ 청사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 사전에 방조치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안전관리대행 용역 실시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청사 안전관리대행	4	4	4	사업 실적(분야)	보통

□ 주요내용

- 4개 분야(전기·소방·방역·석면) 시설의 사전 점검 및 예방
-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인력의 설비 유지·보수
- 사고 발생 시 전문가의 신속·정확한 복구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안전대행	매월 안전점검 실시 및 대행시설 유지·보수	연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청사 안전관리대행	25	30	34	-	-	'19년 이후 미정

7-2. 의료서비스

가. 현 황

- 보건의료노조의 집단 진료거부 및 파업으로 병원 서비스 중단
- 관내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로 병·의원 진료 중단
- 관내 약국의 연대업무 거부로 의약품 공급 차질
- 혈액 공급 장애 발생

나. 원인분석

- 1) 정책 불만 및 보건의료관련 종사자와 사업측과의 협상 결렬
- 2) 신종 감염병 발생 등 혈액수급 대규모 부족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보건의료 행동매뉴얼 정비
 - 위기경보 단계별 재난대응 임무·역할 규정
 -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업체계 및 임무·역할 명확화
- 행동매뉴얼에 따른 위기별 대응 철저
-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라. 목 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건의료분야 행동매뉴얼 정비(%)	100	100	100	100	100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구 분	상 황	대응지침	위기경보
징후 감지	○ 노조 및 의료인 파업 징후 감지 ○ 혈액부족 징후 감지	○ 위기상황 감시 및 대응태세 점검 ○ 의료기관, 약국 동향 지역주민에게 안내 ○ 위기평가회의 등 위기상황 파악 ○ 비상대책본부 운영 검토 ○ 혈액수급량 부족에 따른 헌혈 자원 및 홍보	관심 주의
초기 대응	○ 노조 및 의료인 파업 ○ 혈액부족 - 농축적혈구 2-3일 미만	○ 비상진료대책본부 가동 - 의료기관·약국 현황(정상운영, 불법 파업·휴·폐업, 병실여력 등)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정보 안내 - 불법 파업·휴·폐업 현장 채증 ○ 혈액공급비상대책본부 가동 - 헌혈 참여 지원 및 홍보 강화	경계 심각
비상 대응	○ 노조 및 의료인 파업 ○ 혈액부족 - 농축적혈구 1일 미만	○ 진료대책본부 가동(확대) - 노조·의협·약사회 지도부를 접촉하여 조기 해소 적극 설득 - 의료기관·약국 현황(정상운영, 불법 파업·휴·폐업, 병실여력 등)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정보 안내 - 불법 파업·휴·폐업 현장 채증 강화 -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 대책 수립 ○ 혈액공급비상대책본부 운영(확대) ○ 지역방송사에 위기상황 재난방송 확대 요청	경계 심각
수습 복구	○ 파업종료 ○ 혈액수급 정상화	○ 비상대책본부 해제 ○ 평가 및 조기 정상화 방안 마련	경계 심각

1) 예방단계

- 보건의료분야 감시체계 구축·운영
 - 상황 악화 대비 상황실 운영 준비
 - 정선군 현장 상황실 설치
 - 현장상황 파악 및 관련기관에 전파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대비태세 점검
 - 비상연락망, 위기상황 인식 여부 및 조치사항 점검
- 유관기관(단체) 협조체계 유지 및 현장상황 모니터링
 -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노사와 소통하여 대화 채널 유지

2) 대비단계

- 보건의료분야 위기와 관련하여 유관기관별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 위기경보 수준별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기확대 방지
- 세부 활동내용
 - 위기발생 대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체 자원·인력을 준비하며, 시군과 협조하여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
 - 보건의료 분야 위기경보는 징후별 4단계로 구분하고, 위기경보 수준별 구분 대응
 - 관련 단체 및 기관, 인터넷, 정보기관의 협력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위기 정보를 수집·분석 및 전파
 - 보건의료 위기에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조직을 통하여 위기 확산방지 대책을 강구·시행
 - 병원·의사협·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위기 대비 체계를 구축 및 가동

-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야간진료 기능을 부여하는 등 진료수단 보완 및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구축
- 혈액수급 부족에 대비하여 비상혈액수급대책 수립
- 위기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비상대책본부 가동 준비 및 상황 악화 시 가동

3) 대응단계

- 위기유형과 원인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응책 강구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및 건강 도모
- 보건의료분야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대체자원 및 인력 투입으로 최소한의 보건의료체계 유지
- 세부 활동내용
 - 위기상황을 조기 식별 및 신속 대응
 -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가동하고, 보건의료기관간의 연계체계를 유지하는 등 보건의료 기능의 지속 보장을 위해 각종 비상조치 시행
 - 병원서비스 중단 시 비상진료대책반 구성, 진료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시행
 - 국립병원, 군병원은 파업불참 병원 및 약국 등과 연계하여 진료체계 및 의약품 공급체계 유지
 - 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우선 유지하여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유지
 - 응급의료기관에 야간 진료기능 등을 부여, 비상진료체계 가동
 - 유형별 위기상황 고려하여 공중보건의 배치 재조정 등 조치로 보건 의료체계 마비 상황 방지
 -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군의 인적·물적 대체자원 활용하고

민간인에 대한 군병원 개방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

- 약국의 집단 휴업등에 의한 의약품 공급장애가 발생할 경우 약국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 및 약사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위기상황에 능동적 대응
- 혈액수급 부족으로 인한 혈액 공급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단체 헌혈을 통하여 위기 대처하고, 헌혈에 대한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
-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대처방안 등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불안 해소

4) 복구단계

- 보건의료분야 위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식별하여 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 보완
- 위기기간 중 발생한 피해사례 종합 및 복구대책 마련·시행
- 위기 발생원인 분석·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 보완
- 보건의료분야 위기대응조치 평가·보완
 - 비상 대응조직 및 관계 부서 간 협조체제 평가·보완
 - 위기경보 수준 및 위기 유형별 조치사항 평가·보완
 - 주민들의 대응능력 및 인식변화 분석·대책강구
 - 응급실, 수술실 등 비상진료체계 평가·보완
 -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체계 및 제도 평가·보완
- 위기상황별 대처능력의 신속성 평가 및 보완책 마련
- 보건의료분야 위기와 관련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보완
- 관련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화창구 개발

7-3. 폐기물

가. 현 황

- '06년 이후 피해현황 없음

나. 원인분석

- 집중호우, 태풍, 지진, 해일 등으로 주거지역 등에서 침수 및 붕괴로 인한 재난 쓰레기가 다량발생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환경부, '17.3)

라. 목 표 : 재해율 0%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재난폐기물 발생 예방

- 재난발생 이전 국토청결운동 등 하천, 공공구역 등의 쓰레기 수거
-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관리, 불법투기 등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 재난폐기물 배출 등 주민 홍보

- 재난주민이 준수해야 할 배출방법 등의 정보 제공
 - 언론, 안내방송, 안내판 부착, 홈페이지 게재, 자원봉사자 교육 등

2) 대비단계

☐ 재난대응 조직의 정비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 등 조직 정비
- 군부대, 유관기관, 단체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인력, 차량 등 지원 등

□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침수방지 대책

- 집중호우 시 침수가 잦은 지역의 침수방지시설 등의 설치 지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사전점검 및 침수예방대책 강구

□ 재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전계획 수립

- 재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의 기준 설정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구분

평상 시		재난 시
◦ 가연성 쓰레기		◦ 가연성 쓰레기
◦ 불연성 쓰레기		◦ 불연성 쓰레기
◦ 페트병		◦ 자원쓰레기(재활용) 또는 가연성 쓰레기
◦ 흰색 트레이		◦ 가연성 쓰레기
◦ 기타 플라스틱용기		
◦ 음료수용 종이팩		
◦ 골판지·쌀 포대		
◦ 종이상자·종이봉투·포장지		◦ 대형쓰레기(가연)
◦ 신문지		◦ 대형쓰레기(불연)
◦ 잡지, 책, 전단지		◦ 폐가전제품
◦ 패쇄한 종이		◦ 수집대상 외 쓰레기(폐가전 제외)
◦ 대형쓰레기(가연)		
◦ 대형쓰레기(불연)		

- 재난폐기물의 수집·운반 경로 복수 선정, 차량 및 중장비 사용협약 체결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의 단계별 임시적환장 확보
- 재난폐기물의 종류별(가연, 불연, 폐가전 등) 처리계획 수립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구분

쓰레기 종류	평상 시	재난 시
가연성 쓰레기	소각 또는 매립	소각 또는 매립
◦ 캔과 유리병	- 재활용	- 분리수거 재활용 또는 매립
◦ 불연성 쓰레기	- 파쇄 후 금속 회수, 잔사 매립	- 파쇄 후 금속 회수, 잔사 매립
◦ 페트병	- 재활용	- 재활용 상황이면 분리배출
◦ 백색 트레이		- 재활용 상황 아니면 소각 또는 매립
◦ 기타 플라스틱용기		
◦ 쌀 포대		
◦ 종이류(박스 등)		
◦ 대형쓰레기(가연)	- 파쇄 후 소각	- 파쇄 후 소각
◦ 대형쓰레기(불연)	- 파쇄 후 금속 회수, 잔사 매립	- 파쇄 후 금속 회수, 잔사 매립
◦ 폐가전제품	- 스티커 부착 배출, 생산자 재활용	- 스티커 미부착 배출, 생산자 재활용

3) 대응단계

□ 비상근무 체계 확립

- 관내 피해지역 비상상황실 편성운영
 - 도,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 체계 유지
- 재난지역 현황 등 정보의 수집
 - 재난폐기물 관련 발생지역, 발생량, 종류별 등 정보 수집
 - 이용가능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체, 차량, 인력 등 조사

□ 재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 재난폐기물의 수집·운반
 - 사전 계획된 수집운반 경로, 임시적환장 설치 등 주변여건에 맞게 신속한 수집·운반 실시
 - 피해지역 처리시설, 수거장비 및 인력 부족 시 타 시·군에 지원 요청
 - 작업량 과다 및 위험물의 혼입 등으로 인한 노동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

○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 작업인원, 장비의 적정 투입 및 안전예방을 위한 차량 유도원 배치
-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등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장소 분리 지정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자원화 시설로 반출
- 반출 전, 파쇄·선별 등 전처리가 필요한 것은 이동식 파쇄기 및 선별기 등 확보하여 전처리 실시

○ 재난폐기물의 적정처리

- 자체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시 인근 시·군의 처리시설 이용
- 대비단계의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

*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은 언론, 안내방송을 통해 정보 제공

4) 복구단계

□ 재난지역 환경정비 및 처리비용 지원요청

- 재난발생 지역 주변 환경정리 및 평시 폐기물처리체계 전환
 -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수거 완료 후 발생지역 대청소 실시
 - 임시적환장 폐쇄 및 원상복구하고 평시의 폐기물처리체계 전환
-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국비(재해복구비) 지원요청

□ 위기경보 수준 및 수준별 주요 조치사항

<단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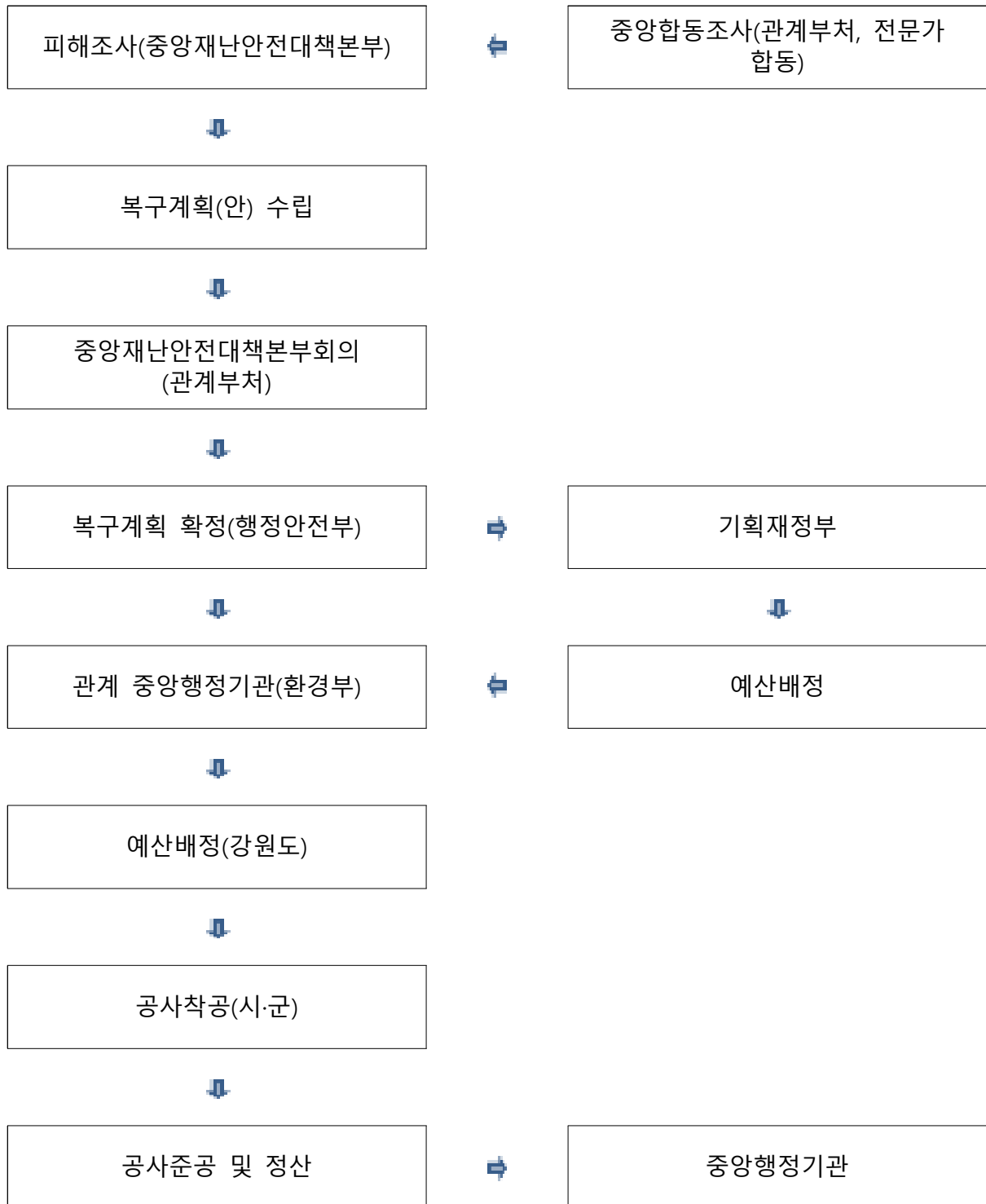
- 관심단계(Blue) : 태풍, 호우 등 빈발시기
 - 폐기물처리시설, 임시적환장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주의단계(Yellow) : 태풍, 호우 등 예비특보
 - 피해 예상시설별 재해대책 등 점검 및 긴급 복구반 편성
- 경계단계(Orange) : 태풍, 호우 등 정보
 - 재해폐기물 발생량 파악, 우선 수거지역 선정 및 수거·처리계획 수립
- 심각단계(Red) : 태풍, 호우 등 경보발령 후 대규모 재난 가능성 확실
 - 피해 환경시설 응급조치 및 긴급 복구반 현장투입 운영

□ 재난상황 발생시 임무 및 국고지원 신청

○ 기관별 임무(환경부, 도 및 시·군)

구 분	임 무(기 능)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재난(자연)폐기물 발생시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원 - 재난(자연)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조정 - 재난(자연)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집계 및 보고 - 재난상황 발령시 단계별 상황근무 및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과 매립시설의 피해방지 대책과 피해복구 조치 -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에 반입되는 재난폐기물의 적정 처리 감독 - 재난상황 발령시 단계별 상황근무 및 종합상황실 설치시 상황근무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피해 및 조치상황 보고·전파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피해방지 대책과 피해복구 지원 -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피해 및 조치상황 취합 및 보고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환경부 유역총량과	- 부유쓰레기 발생시 수거처리를 위한 조치 - 환경부 재난상황 발령시 종합상황실 설치 및 단계별 상황근무 - 부유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상황에 대한 취합 및 보고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정비
강원도 환경과	- 관할구역 재난폐기물 처리계획 및 가용자원 파악 - 관할구역 내 시·군 간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 및 조정 - 인근 시·도와 협력체제 구축 - 유관 중앙행정기관과 연락체제 구축
정선군 환경산림과	- 재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관내 가용자원 파악 - 인근 시·군·구, 지역소재 군부대, 폐기물관련 공공기관, 지역소재 군부대 및 민간업체 등의 지원가능 장비의 보유실태 파악과 협력체제 구축 - 상급기관인 시·도와의 연락체제 구축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침수방지대책 강구 및 피해상황 파악 ※ 지정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별표1(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

○ 재해복구비 국고지원 신청 절차



7-4. 식용수

가. 현 황

- 취·정수장 및 관로 등 수도시설에 대한 5년간 재난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는 없음
- 시설 노후로 인한 옥외 소규모 누수사고 발생

(단위 : 건)

구 분	합 계	'11	'12	'13	'14	'15
시설노후 누수	27,395	6,833	6,589	5,182	4,281	4,510

※ 상수도 통계(2011~2015)

나. 원인분석

- 도내 상수관로의 관로노후에 따른 누수관련 사고 발생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24,813	3,104	2,561	4,148	7,500	7,50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594	2,494	700	400	3,000	3,00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6,471	610	1,861	1,000	1,500	1,500
노후상수도 정비	8,748	-	-	2,748	3,000	3,000

마. 목 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설노후 누수(건)	4,626	4,400	4,200	4,000	3,800

* 전년대비 누수건수 5%로 감축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식·용수사고 예방대책

- 위기발생 사전억제 및 차단활동 강화
 - 취수구 주변 오탁방지막 설치, 방재장비 상시 확보
 - 상수원 보호구역 수시 순찰 및 지도·단속, 수질감시초소 설치·운영
 - 수질감시망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한 감시활동 전개

☐ 수도시스템 안정성 확보

- 수도시설 및 설비사고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 급수구역 내 현장 조사 및 담당자 교육
- 광역 및 지방상수도 연계 비상공급체계 구축

2) 대비단계

☐ 위기감지 및 전파·보고 체계 구축

- 신속·순차적 전파체계 구축 및 다양한 통신 활용 보고
 - 담당자, 유관기관, 상급기관에 유선, Fax, e-mail, SMS 활용
- 취·정수장 운영자 및 수면관리자 지정 등 대응 비상체계 구축

☐ 사전대비 재난관리체계 정비

- 식용수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 수도시설 사고 대비 대응훈련(실전훈련) 실시
- 급수체계 전환 등 비상급수지원 체계 구축 및 비상급수관, 이동급수차량 확보

3) 대응단계

☐ 재난관리체계에 따른 효율적 대응실시

-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상황 파악
-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유기적인 대응

-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에 따른 현황보고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기관별 위기 대응활동 개시

☐ **현장여건에 맞는 단수계획 수립**

- 단수 소요기간 적정 산출
- 제수변 작동 및 적수 예방
- 단수 후 통수 시 수질사고 예방 철저

☐ **비상급수체계 가동**

- 상수관망의 파괴정도 파악
- 급수체계 전환 검토 시행
-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연계한 비상공급
- 병물, 먹는 샘물 공급 및 물차 지원 시행
- 비상급수차량을 이용한 배수지 충수 가능성 검토

☐ **주민홍보**

- 수도사업자를 불신하는 사례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기에 정확한 홍보 실시
- 통수 초기 과다용수 확보하지 않도록 홍보

☐ **장기간 가뭄에 따른 비상수원 확보**

- 유희 우물 또는 농업용 관정 등 기존시설 최대 활용
- 농업·공업·발전용수 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 장기가뭄지역 긴급 식수원 개발

☐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 경계 및 심각단계 시 지자체, 수자원공사 통합 지휘소 설치 검토
- 비상급수지원 체계 가동
 - 관내 정수장 급수중단시 비상급수관 및 이동급수차량 등을 이용해 단계별 비상급수체계 가동
 - 인근 수도사업자(수자원공사 포함), 먹는샘물 제조·공급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병물 공급 및 운반급수 시행

4) 복구단계

□ 파괴된 수도시설/설비 복구

- 사고범위의 신속한 확인 및 시설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복구 순위 선정
- 무단수 차단, 누수 방지대 등 신속 복구 공법 적극 적용
- 항구적인 복구 대책과 연계한 복구 공법 선정 적용
- 복구기간중 수용가에 계속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인근 수도시설과의 연계 운영 등을 통한 공급계통 전환 및 비상용수 공급 시행
- 긴급복구 협력업체, 수리업체를 활용한 신속한 복구 시행
- 단수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복구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을 추정하여 홍보계획 수립
- 수도시설 재가동시 수질의 안전성 확인

7-5. 유형별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보건의료분야 재난 대응 매뉴얼 개선

작성 부서	보건소	작성자 및 연락처	백은주 담당	033-560-25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유재란 주무관	033-560-2195	예방

◇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 보건의료 위기에 따른 행동매뉴얼 재·개정으로 위기 대처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중앙부처의 매뉴얼 정비에 따른 지자체 매뉴얼 수정 보완	높음

□ 주요내용

- 보건의료분야 행동매뉴얼 정비
 - 위기경보 단계별 재난대응 임무·역할 규정
 -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업체계 및 임무·역할 명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보건의료분야 행동매뉴얼 정비	6월
하반기	보건의료분야 행동매뉴얼 정비	12월

나. 재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환경산림과	작성자 및 연락처	문창진 담당	033-560-2334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상훈 주무관	033-560-2359	대비·대응

◇ 현장 대응기관의 통합 지원·조정을 위한 매뉴얼 정비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매뉴얼 정비 1식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재난폐기물 수거·처리 매뉴얼 정비
 - 비상연락망, 폐기물처리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현황 정비
 - 기관별 단계별 임무·역할 및 행동요령 구체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연중	재난폐기물 관련 매뉴얼 정비	-

다. 식·용수 분야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수질환경 사업소	작성자 및 연락처	최광식 담당	033-560-2521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동선 주무관	033-560-2519	대비·대응

◇ 재난사고시 신속 대응 및 현장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식·용수 분야 매뉴얼 정비 및 개정 추진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정비실적/정비목표)*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식·용수 분야 매뉴얼 정비 및 숙지
 - 관계법령 개정사항, 유관기관 및 연락처 변경사항 등 반영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식·용수 재난 담당자의 매뉴얼 숙지 및 대응체계 검토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식·용수 분야 매뉴얼 개정 및 추진정비	2월
하반기	식·용수 분야 매뉴얼 개정 및 추진정비	11월

2) 재정사업

가. 상수도 재난관리 체계 구축

작성 부서	수질환경 사업소	작성자 및 연락처	최광식 담당	033-560-2521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동선 주무관	033-560-2519	대비·대응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상급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추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	5	5	5	사업 추진 실적	높음

□ 주요내용

- 상수도보급 확대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 1개소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 15개소
- 수질악화대응 등 안전한 물공급
 - 지방상수도 확장 및 정비 : 확장 4개소, 관망정비 41.4km,
정수장 개선(신설) 1개소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사업 발주 및 공사 시행	2월
하반기	사업 준공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34,369	3,104	2,561	4,148	7,500	17,056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594	2,494	700	400	3,000	3,00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6,471	610	1,861	1,000	1,500	1,500
노후상수도 정비	18,304	-	-	2,748	3,000	12,556

3) 기타시책

가. 수도시설 안전점검 및 훈련 실시

작성 부서	수질환경 사업소	작성자 및 연락처	최광식 담당	033-560-2521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동선 주무관	033-560-2519	대비·대응

◇ 재난에 대비한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 위기관리능력 제고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취정수장 점검율(%)	90	92	94	(점검갯수/취·정수장갯수)*100	높음

□ 주요내용

- 취·정수장 안전점검
 -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고 대비 시설물 상시 안전점검
 - 취약시설, 피해예상 시설 및 방재물자 확보실태 파악
- 사고상황 가정 대응훈련 및 교육 실시
 -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자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훈련 실시
 - 실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 참여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시	3월
하반기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확인	11월

8. 감염병

가. 현 황

(단위 : 건, 명)

구 분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건수(건)	47.2	29	31	38	56	82
사망(명)	0	0	0	0	0	0

※ (통계 출처) 감염병웹통계시스템

※ (통계 작성 기준) 전수감시감염병(59종)만 건수에 포함

나. 원인분석

- 최근 증가하는 감염병은 기후 온난화, 해외여행객 증가, 신종감염병 출현, 식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연중 증가하여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여러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교통의 발달, 여행객의 증가로 인해 해외 발생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에 따른 면역 취약계층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노인층의 결핵환자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감염병예방법 제7조)
- 감염병예방관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 결핵예방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 (국가예방접종 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중기	'20 중기
계	3,369	550	629	730	730	730
재해방역 예방관리	504	85	101	106	106	106
한센병 예방관리	51	9	9	11	11	11
모기 매개 방제사업	504	85	101	106	106	106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60	12	12	12	12	12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41	29	28	28	28	28
국가예방접종 실시	1,942	299	344	433	433	433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162	30	33	33	33	33
에이즈 및 성병 예방	5	1	1	1	1	1

마. 목 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 건수	80	80	80	80	80
사망	0	0	0	0	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감염병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간 : 2018. 1월 ~ 12월
- 총괄반장 : 보건소장
 - 구성인원 : 2개반 11명(정선군보건소6, 고한사북지소5)
- 운영방법 : 상황발생시 운영
- 예 산 : 없음
- 주요임무
 -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실시
 -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보고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사업

- 추진시기 : 연중(수시)
- 추진목표 : 법정 감염병(80종) 신고·보고
 - 전수감시(59종, 지체없이 보고) : 1군(6종), 2군(12종), 3군(21종), 4군(20종)
 - 표본감시(21종, 7일 이내 보고) : 3군 중 인플루엔자(1종), 5군(6종), 지정감염병(14종)
- 사업내용

추진전략	추진분야	세부사업
감염병 관리기반 강화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감염병 예방 대책반 운영
		해외입국자 및 대량환자 발생 일일감시
		생물테러 감시
전문인력 확보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감염병 FMTP 교육
	감염질환 역학조사관 교육	역학조사관 기본 및 지속교육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훈련	교육 및 모의훈련	생물테러 발생 대비 대응 교육 훈련
		신종감염병 재출현 발생 대비 모의훈련

2) 대비단계

□ 결핵관리사업 추진

○ 추진목표

- 환자등록관리 : 63명(2017년 환자수)
- 결핵검진 : 392명(이동검진, 가족검진, 보건소내소, 건강검진, 노인검진)
- 결핵균검사 : 1045건(도말 및 배양검사, 균감별 등)

○ 사업내용

추진전략	추진분야	세부사업
결핵환자 발견	조기발견사업	X-Ray 및 결핵균 검사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결핵환자 가족검진
	접촉자 조사 강화	소집단 유행관리검진 및 역학조사
결핵환자 치료관리	결핵환자 등록 및 관리	결핵관리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직접복약확인사업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강화	입원명령자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결핵관리 기반강화	결핵관리 전문 인력	결핵업무 관계자 교육 등
	홍보 및 교육	기침예절홍보 캠페인 등
	의료기관협력체계 구축	민간공공협의회 회의 개최(분기별)

□ 국가 예방접종 실시

- 기 간 : 2018년 ~
- 추진기관 : 보건소
- 사업비 : 357백만원(국비179, 도비60, 군비118)
- 사업대상 : 9천명
- 지원내용
 - 어린이 예방접종(17종), 성인 예방접종비 지원(4종)
 - B형간염 주사기 감염 예방사업

<어린이 예방접종 실시>

- 대 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17종 접종 및 접종비 지원
-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의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 지원

< 보건소 예방접종 (17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수두,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 간염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

<성인예방접종 실시>

- 대 상 : 만 65세이상 노인, 고위험군
- 지원내용 : 노인예방접종, 고위험군 예방접종
 - 1) 노인 예방접종사업 지원 : 2종
 - 노인 인플루엔자 : 65세이상 노인인플루엔자 보건소, 민간병의원
접종 지원
 -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 65세이상 보건소 노인 폐렴구균접종비 지원
 - 2) 고위험군 예방접종 : 2종
 - 장티푸스 :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유행지역 등
고위험 우선순위 접종
 - 신증후군출혈열 : 야외활동자 중 노출위험이 높은자 우선 접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 대 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B형간염 e 항원(HBeAg) 양성 산모로 부터 출생한 영유아
- 내 용 : 분만기관 및 접종기관 B형간염 예방접종, 항원·항체 검사 등 예방처치(예방접종+검사) 결과 등록

3) 대응단계

□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 추진

- 사업비 : 6백만원(국비2, 군비4)
- 사업방법 : 캠페인, 포스터, 리플릿,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 사업내용
 - 계절별 유행 감염병 질병정보 제공 및 선제적 예방홍보(연중)
 - 집중 홍보 주간 추진 : 결핵예방주간(3월), 예방접종주간(4월), 에이즈의 날(12월)
 - 찻집가무시증 예방관리 홍보(8월~11월, 교육 포함)
 - 감염병 예방 생활습관 개선 홍보 : 기침예절, 손씻기(연중) 등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감염병 예방관리

작성 부서	보건소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심정미 담당 김철기 주무관	033-560-2478 033-560-2739	재난안전관리 단계 예방
-------	-----	--------------	-------------------	------------------------------	-----------------

- ◇ 감염병에 대한 감시·분석,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지침개발, 교육·홍보 실시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군민건강 보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질병보건통합시스템 감염병 일일보고율	100%	100%	99%	(신고기한 준수건/전수감시 감염병신고건)×100	보통

- 감염병 발생을 감시·분석하고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감염병 진단, 환자 및 접촉자 등을 관리하여 감염병 확산을 조기차단
- 감염병관리 인력의 교육·훈련과 주요 발생 감염병의 홍보 등으로 감염병을 예방 및 관리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수행	연중
하반기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실적 제출	1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	'20	비고
계	94	110	117	117	117	
재해방역 예방관리	85	101	106	106	106	
한센병 예방관리	9	9	11	11	11	

나.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사업 지원

작성 부서	보건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심정미 담당 김철기 주무관	033-560-2478 033-560-2739	재난안전관리 단계 예방
-------	--------	--------------	-------------------	------------------------------	-----------------

◇ 모기 매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추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모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수	신규	0	0	환자발생 수	낮음

□ 주요내용

-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를 위한 방역 활동 강화
 - 취약지 방역소독 연중 실시(집중 방역활동 기간 : 4~11월)
- 환자 전수 감시 및 역학조사 실시를 통한 조기진단 체계 강화
 - 의료기관 대상 홍보 강화 및 질병정보 모니터링 실시
- 매개 모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연중
하반기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실적 보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	'20	비고
계	85	101	106	106	106	
모기 매개 방제사업	85	101	106	106	106	

다.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

작성 부서	보건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심정미 담당 최다솜 주무관	033-560-2478 033-560-2739	재난안전관리 단계 예방
-------	--------	--------------	-------------------	------------------------------	-----------------

- ◇ 제1기 국가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에 따라 결핵관리체계 강화 및 지역보건의료체계와 연계한 결핵관리사업 추진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92.3%	96.8%	95%	치료 완치 또는 완료	높음

□ 주요내용

-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원격화상관리시스템 운영, 결핵 진단검사 지원
- (결핵환자 발견 및 예방) 집단시설 역학조사,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 및 잠복결핵 관리, 결핵 홍보, 취약계층 및 소집단 무료 이동검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결핵관리 전담 인력 교육 및 조사	6월
하반기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 및 잠복결핵 관리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	'20	비고
계	343	417	506	506	506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12	12	12	12	12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	28	28	28	28	
국가예방접종 실시	299	344	433	433	433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30	33	33	33	33	

라). 에이즈 및 성병예방

작성 부서	보건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심정미 담당 최다솜 주무관	033-560-2478 033-560-2739	재난안전관리 단계 예방
-------	--------	--------------	-------------------	------------------------------	-----------------

- ◇ 에이즈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감염인 진료비를 지원하며,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강화하여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에이즈 및 성병 정기검진 실시율	96%	95%	95%	운영실적	높음

□ 주요내용

-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추진
 - 취약계층, 일반주민, 의료인, 군인,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 교육홍보 실시
 - 보건소 담당자, 의료인, 상담원, 예방강사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 HIV 감염인 지원 및 관리
 - HIV 감염인 전문 상담실 및 쉼터 운영, HIV 관련 진료비 지원
- 취약계층 및 주민 대상 에이즈·성병 조기발견 검진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연중
하반기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추진 결과 제출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	'20	비고
계	1	1	1	1	1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	1	1	1	1	

2) 기타시책

가). 해외유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태세 확립

작성 부서	보건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심정미 담당 김철기 주무관	033-560-2478 033-560-2739	재난안전관리 단계 예방
-------	--------	--------------	-------------------	------------------------------	-----------------

◇ 해외유입, 신종, 생물테러 감염병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참여율	100%	100%	100%	훈련 참여율	보통
생물테러 모의훈련 참여율	100%	100%	100%	훈련 참여율	보통

□ 주요내용

○ 감시체계 강화

-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 및 운송수단에서 감염병 원인균 검출 시 입국자 추적조사 실시

○ 교육·훈련

-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보건소, 올림픽 조직위, 경찰, 소방, 군부대, 검역소,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훈련 실시
 - 생물테러 모의훈련 : 2년에 1번
 -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교육·훈련 : 10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5월
하반기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10월

9). 가축전염병

가. 현 황

- 피해현황 : 해당없음

나. 원인분석

- 우리군에서는 피해발생 및 발생이력이 없으나, 2010~2011년 전국 구제역 발생은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축산차량 또는 축산관계 시설의 교차오염 및 급속한 질병전파로 막대한 농가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1년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와 축산차량 등록제 실시 등 방역 강화 정책 추진으로 지역적 산발적인 발생 양상
- '16년 고병원성AI 발생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철새의 국내 유입과 알운반차량 및 분뇨운반차량, 백신접종팀 등에 의한 수평전파로 전국 확산 추정, 야생철새 도래지와 방역관리가 열악한 소규모 가금농가 및 축산관계차량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요구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고시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합계		2,224	400	498	476	425	425
축산방역관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지원 등	1,749	300	348	401	350	350
	살처분보상금 지원	475	100	150	75	75	75

마. 목 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법률 개정 건의 및 매뉴얼 제개정(횟수)	1	1	1	1	1
구제역 및 AI 예방(억원)	5	5	5	5	5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가축전염병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1)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수립·시행

- 긴급상황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용 사전 준비
 - 상황실·이동통제소 설치, 방역장비 및 자재 확보 등 사전 점검
 - 살처분·이동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등 비상체계 점검
 - 전담 가축방역관 및 역학조사반 지정 및 운영
- 예찰활동 강화
 -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 관내 축산농장에 대해 예찰검사 및 임상관찰 실시
 - 철새도래지 등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 예찰업무
-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의 소독 등 차단방역 지도 점검 및 예찰
 - 축산농장 근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점검 등 방역관리
 - 기관 홈페이지에 발생국가를 상시 게재, 해당국가 여행 자제 안내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 종사자 등의 예방수칙 및 소독 등 차단방역 교육·홍보

□ 민·관 협력 가축전염병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1) 전염병 발생 신속 신고체계 운영

- 지역별 질병예찰요원 지정 시행
 - 공무원, 의사, 축협직원, 축산농가 등 예찰요원의 농가 방문을 통한 전염병 발생 상황 모니터링
- 사전질병 발생 동향과악을 위한 전화예찰 실시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 활동으로 축산농가 전염병 발생 신고 유도

2) 대비단계

□ 가축전염병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점검

(1) 『가축전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수립

- 가축전염병 종류별로 세부방역 요령 등을 검토·시행
 - 위기 수준별 재난대응 절차 및 주요 조치사항 수립 이행

(2) 신속 대응체계 구축

-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및 사전대비 훈련 실시
 - 질병발생 대응 세부 방역조치 사항 규정
 - 가축방역 현장 가상방역훈련 및 도상 훈련 실시

□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1) 가축방역심의회 및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 방역체계 구성

- 가축방역심의회 운영 등 예찰업무 강화
 -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기관별 역할분담 및 방역활동 실시
 - 축협, 축산관련 단체 등 생산자 단체와 방역활동 공조체제

(2) 방역체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 점검

- 역학농가 관리 및 소독 강화
 - 축산농장, 작업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 등 방역활동 강화
 - 역학관련 농장·작업장·사람·차량 등에 대한 방역 등 후속조치

(3) 양축농가와 국민에 대한 방역교육, 정부시책 홍보 활동

- 축산농가, 관련종사자 등에 대한 방역예방수칙 교육·홍보

3) 대응단계

□ 신속한 대응 조치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

(1) 위기형태의 조기 식별로 추가확산 차단 및 조기 근절

- 가축전염병방역대책본부: “주의” 단계에서 운영(환축 발생시)
 - 방역대책본부상황실 운영 및 비상방역체계 강화
 - 기술지원 인력파견 등 방역지원

(2) 위기상황 발생원인, 위기형태별 방역대책 수립

- 재난형 질병 발생에 대한 유형별 방역대책 운영
 - 구제역, 고병원AI, 신종가축질병 등 발생 대비 기관별 역할 분담

□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방역체계를 총력 가동하여 조기 퇴치

(1)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신속 차단으로 확산 방지

- 방역지역 설정, 감염축 살처분·매몰 등 오염원 근원적 제거
 - 감수성 가축 이동통제, 발생관련 신속한 살처분 추진
- 통제초소 운영 및 감수성 가축의 이동통제 강화
 - 방역지역별 통제, 거점소독시설 운영, 권역별 일시이동제한 실시

(2) 대국민 홍보활동 및 불안심리 해소 노력

- 대국민 홍보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3) 피해 농가 등 지원 조기집행 완료

-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 경영 안정화 신속 지원

4) 복구단계

□ 피해사례 종합 및 복구, 축산농가의 안정화 추진

1)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기간 중 사례 종합 및 평가

- 발생관련 방역추진사항 보완, 재발방지 대책 시행
 - 위기 대응 기관과 유관기관 협조
 -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출로 향후 발생대비 대처 방안 효율화

2) 피해농가에 대한 재할 및 관련 산업 피해 복구

- 생계비 지원,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입식자금 등 재할 지원
 -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금 신속 지급
 - 살처분 후 입식지원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
- 관련 산업 경영안정 지원
 - 질병발생에 의한 간접피해 산업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

□ 재발방지 대책 강구·시행

1) 가축전염병 예찰 활동 및 근절 확인

- 살처분 농가 재입식 시험 등 종합적인 예찰조사 실시
 - 발생농장에 대한 철저한 청소, 세척 및 소독 후 입식 유도
 - 관할지역내 주기적 임상 및 혈청학적 예찰활동

2) 교육 및 홍보 강화

- 축산농가, 관련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홍보
 - 외국인근로자, 해외여행자 등에 대한 긴장감 유지 및 방역의식 제고

□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및 보완

1) 가축전염병 분야 위기의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 보완

- 발생관련 방역추진사항 보완 및 재발방지 대책 시행
-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예찰활동(점검 등)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가축전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추진

작성 부서	농업축산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종영 담당	033-560-2531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다호 주무관	033-560-2982	예방

◇ 구제역 및 AI 방역실시 요령, 긴급행동지침, 행동매뉴얼 등 현실에 부합한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한 지속 개정 건의 등 지속 정비 추진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매뉴얼 개정	1회	1회	1회	효과적 가축방역 및 대응을 위한 개정 반영	높음

□ 주요내용

- 가축방역 현장 위주의 행동절차 중심의 현실적 매뉴얼로 개선
 - 위기대응 부서별·상황별 대응 주요업무 세분화 및 협업 기관별 구성 및 업무 구분 명확화
 - * 농식품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참고하여 매뉴얼 작성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주요 가축방역 대책 개선방안 및 강화를 위한 제도화 지속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2/4분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18.6

□ 법령 제·개정내용

법령명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식품부 가축방역개선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 추진중

2) 재정사업

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지원 등

작성 부서	농업축산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종영 담당	033-560-2531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다호 주무관	033-560-2982	예방

◇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방지와 사전검색을 위한 소독 등 예방활동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효율적인 소요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구제역 및 AI 예방	3억원	3.5억원	4억원	가축전염병 예방·검진 재료 지원 규모	높음

□ 주요내용

- 예방·검진·기생충 구제 등 예방 약품 지원
 - 주요 축종에 대한 예방약 및 검진약품 등 예방약(16종) 지원
-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 소 브루셀라병 검진 강화(8천두)
- 축산차량 등록제 및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별 계획 및 예산 교부	1월, 3월
2/4분기	사업추진 상황 및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	6월
3/4분기	사업별 추진실적 점검 및 방역활동 점검	9월
4/4분기	사업추진 상황 및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지원 등	300	348	401	350	350	

나. 살처분 보상금 지원

작성 부서	농업축산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종영 담당	033-560-2531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다호 주무관	033-560-2982	예방

-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보상금 지급	0.41 (98%)	0.40 (100%)	0.40 (100%)	13종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건수의 합 /사육농가수 ×100	높음

□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살처분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
- 가축방역 사업 추진과 관련,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록·투약 실시로 인해 죽거나 부상당한 동물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동물의 태아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사업별 계획 수립, 사업추진 적정성 점검	2월
하반기	사업별 추진 실적 점검,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살처분보상금 지원	100	150	75	75	75	

10). 생활·레저 사고

10-1. 승강기

가. 현 황

(1) 설치현황

(2018. 01월 기준)

지자체	승객용	장애인용	담뱃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비상용	기타	합계
정선군	135	214	7	50	7	58	26	497

(2) 피해현황 : 해당없음

나. 원인분석

- 우리군 : 피해 없음
- 강원도에서는 최근 5년간(2012~2016) 승강기시설 사고발생은 11건(사망 1명)이며 점차 감소 추세, 그 중 승강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부분

다. 대 책

- 유관기관 합동 안전캠페인 실시
 - 승강기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안전의 날 안전캠페인 실시
- 읍·면 담당자 및 승강기유지관리업체 간담회 실시
 -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사고사례 및 법 개정 내용 전파 등

라. 목 표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인명 피해 최소화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 건수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 승강기 시설로 인한 부상 및 사망사고 제로화 추진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승강기시설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안전관리 강화

- 승강기 안전관리를 미 실시 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 승강기 자체점검, 안전관리자 선임·통보 방법 안내
-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실시
 - 다중이용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2) 대비단계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관리 철저 및 신속보고, 현장지휘체계 확립
- 승강기안전공단, 119구조·구급대 상시 협조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의 연락·협조체계를 통한 상황 대응력 강화

3) 대응단계

□ 현장대응 조직 가동

- 위기대응 메뉴얼에 따른 구조 실시
 - 사상자 후속조치 및 인명구조대책 우선 강구
- 지원 장비 인력 투입 및 시설복구 통합체계 운영
 - 신속한 구조·구난과 실종자 수색, 사망·실종자 신원 파악

□ 유관기관 상시 공조체계 유지

- 민·관 협력 조기경보체계 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상시 연락체계 운용
 - ※ 재난수습, 복구계획 수립 및 진행,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 통합지휘체계 확립

- 재난현장 통신망 일원화 및 비상연락망 정비
- 현장에 동원된 긴급구조구난기관 및 자원봉사자의 임무 부여
- 사상자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체계 확립
- 긴급구조·복구에 필요한 물자 관리

4) 복구단계

□ 사고원인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관련분야별 전문가 및 자체 점검반을 활용하여 사고원인 조사
 - 승강기안전공단 및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사고원인 조사
- 비상복구반 편성, 운영
 - 피해 사항 확인 및 작업범위 결정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복구 등 최종 보고
 - 사고원인 조사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0-2. 전가·가스

가. 현 황

- (가스)사고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 (전력) 전력수요가 매년 3.8%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전력공급시설의 설비고장 및 전력공급 능력 부족 사태 우려

나. 원인분석

[가 스]

- 대부분 가스사고는 LPG 관련 사고로 LPG시설 개선 필요
- 재산피해는 최근3년 증가 추세이며, '16년은 고압가스에서 재산피해 발생

[전 력]

- 정전은 자연재해(낙뢰 등), 전력계통 장비 및 시스템 오작동, 제작 불량, 시공불량 등의 원인으로 발생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늘어났으나 발전량이 일정치 않고 주파수의 잦은 변화로 한전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 고장증가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ESS설치 확대(주파수, 전압 등 출력 안정화 기여)
- 취약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307	168	37	34	34	34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277	162	31	28	28	28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타이머 쿡 지원	30	6	6	6	6	6

마. 목 표

구분	최근 5년 평균 피해현황 ('12~'16)	'16년 피해현황	'17년 목표	'18년 목표	비고
인명피해(명)	0	0	0	0	가스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가스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가스]

☐ 예방대책

-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 사용시설 및 공급시설에 대한 법정 정기검사 확행 추진
- 노후가스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유도
- 공급자와 사용자간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체결 자율 안전 점검 실시
- 가스사용에 대한 올바른 의식변화 유도 강화 등
- 도시가스사는 자율검사 및 점검 등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즉시 조치 및 장시간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 및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보수

[전력]

□ 홍보 및 안전점검 실시

- 발전소, 송·배전선로 등 설비별 계획정비, 경상정비, 위탁정비 실시
-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시,군 공무원과 합동점검
-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
 -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와 유관기관을 이용한 홍보

2) 대비단계

[가스]

- 가스공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 올바른 가스사용 홍보 :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 배포 등
- 긴급 차단밸브 작동, 복구 장비를 이용하여 누설 차단 등 사고 시설 응급조치 요령 숙지

[전력]

□ 예비전력 단계별 조치계획

구 분	내 용
관 심 (Blue)	○ 운영예비력이 300만kW에서 400만kW 미만으로써 향후 상황악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때 - 전력수요 급증 및 설비고장 등에 따른 운영예비력 감소 ▶ 행정기관, 유관기관(공급업체) 합동 상황실 운영
주 의 (Yellow)	○ 운영예비력이 200만kW에서 300만kW 미만으로써 사전 대비가 필요한 때 - 전력수요 급증 및 설비고장 등에 따른 운영예비력 감소 지속 ▶ 비상시 수용관리대책 시행 및 전력공급 부족대비 수급조절 대책 수립
경 계 (Orange)	○ 운영예비력이 100만kW에서 200만kW 미만으로써 즉시 조치가 필요한 때 - 전력수요 급증 및 설비고장 등에 따른 운영예비력 소진 가능성 농후 ▶ 시,군 응급상황 및 복구 정보수집 및 전파(유관기관)
심 각 (Red)	○ 운영예비력이 100만kW 미만 또는 주파수 조정이 곤란하여 부하조정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 전력수요 급증 및 설비고장 등에 따른 운영예비력 소진 임박 ▶ 유관기관 협조하여 대응태세 돌입

- 단기 수요급증에 대비한 수급안정대책 수립
- 비상시 수요관리대책 시행 및 전력공급 부족에 대비 수급조절 대책 수립
- 상황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관리
- 긴급복구자원 관리
- 재난대응 훈련 실시(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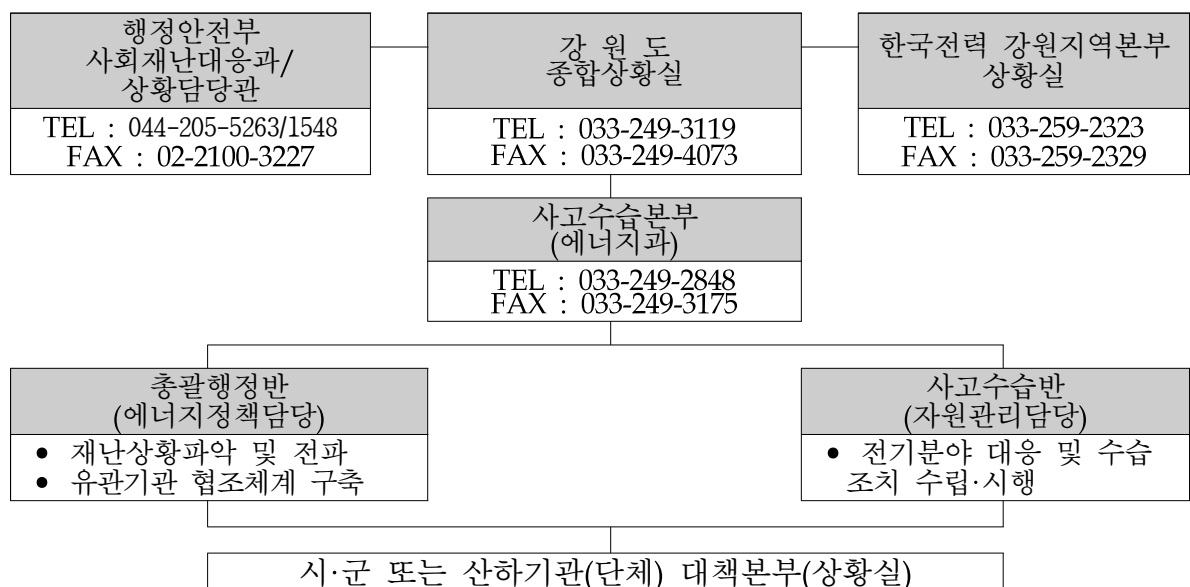
3) 대응단계

[가스]

- 가스공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 올바른 가스사용 홍보 :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 배포 등
- 긴급 차단밸브 작동, 복구 장비를 이용하여 누설 차단 등 사고시설 응급조치 요령 숙지

[전력]

- 전력수급 안정대책 시행
- 전력공급 차질 예상에 따른 도내 피해상황 등 지역별 전력수급 동향 파악
- 위기사태 대비 한전, 발전회사 등 실무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강화
- 실내온도의 걱정 유지 등 대국민 전기절약 홍보활동 지속 추진
- 재난발생대비 자원동원 준비 및 지원(한전·전기안전공사)
- 재난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른 신속한 복구지원(한전·전기안전공사)
- 상황관리체제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가스]

- 부상자 병원 이송, 환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에게 사고내용 통보 등 구호대책 추진
- 이재민 임시거처 수용, 숙식편의 제공, 응급환자조치 지원, 월동대책, 방역관리, 식수 확보 등 구호대책 추진
- 국민생활과 밀접한 피해시설 최우선 응급복구,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신속한 재난복구 시행
- 재난대책본부의 운영시에는 본부의 사고수습 및 지휘소의 지원하에 복구 작업 시행 및 복구 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 긴급구조 및 구난활동 지원

[전력]

- 피해시설 본 복구 계획수립·시행
- 전력설비 고장상황 시 세부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작성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성수 담당	033-560-2433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노홍 주무관	033-560-2437	예방

◇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서민층의 가스시설(LPG시설) 개선을 통하여 가스사고 예방

□ 목 표

- 서민층 가스시설 사전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주요내용

-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 : 28백만원 (국 22 도 2 시·군 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15가구
 - 가스공급 배관 교체 (고무호스→금속관)
-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지원 : 6백만원 (도 2, 시·군 4)
 -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10가구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월, 3월
2/4분기	시설개선 추진	4~6월
3/4분기	시설개선 추진	7~10월
4/4분기	시설 검수 및 사업완료	1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계	168	37	34	34	34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162	31	28	28	28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타이머 록 지원	6	6	6	6	6	

2) 기타시책

가.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

작성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성수 담당	033-560-2433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노홍 주무관	033-560-2437	예방

◇ 가스시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기별 안전점검

□ 목 표

- 에너지 분야 사전 점검을 통한 전기·가스 사고 예방
- 에너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점검시기 : 해빙기·우기·동절기, 설·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 중점 점검
- 점검대상 : 에너지공급시설, 가스 충전·저장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점검기관 : 시·군 자체 점검 및 도·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합동
- 주요내용 : 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위해요인 사전제거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동절기 전기·가스시설 안전 점검	1월~2월
2/4분기	우기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6월
3/4분기	시설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점검 지속 실시	년중
4/4분기	동절기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수립	12월

10-3. 물놀이

가. 현 황

- 대상지역 : 24개소 *관리지역 24개소, 위험구역 3개소
- 2017년 인명피해 : 0명 (익수사고 1명)

연번	일시	장 소	피해상황	사고원인	비고
1	2017.8.4(금)	여량면 자개2교 다리 밑	사망1명	어로행위(낚시)	

- 최근 5년 인명피해

(단위 : 건)

구 분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건수		1	1	1	-	1	1
인명피해	계	1	1	1	-	1	2
	사망(실종)	1	1	1	-	1	2
	부상	0	0	0	-	0	0

* 물놀이사고(2012년, 2013년) / 익수사고(2015년, 2016년)

나. 원인분석

- 물놀이 입수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놀이 안전요원의 휴무 등 공백을 메울 방안이 필요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라. 투자현황

- 물놀이 안전관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918	94	179	215	215	215

마. 목 표

- 인명피해(사망) 0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 건수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부상(환자 포함)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사전구축 및 대비 추진

-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실시(관리등급 부여)
- 본격적인 물놀이 시작 전 위험요인 제거(평탄작업 등)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노후된 안전시설·장비 교체 및 보강

2) 대비단계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배치 및 운영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 물놀이 안전장비(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 119 시민수상구조대(4명/일)

☐ 대국민 홍보 강화(6~8월)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 추진
 - 군 홈페이지, 청사 TV, 문자전광판, 극장스크린 활용 집중홍보
 - 교육기관을 통한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안전사고예방 사전교육
 - 시연회 및 캠페인, 심폐소생술 등 현장체험장 운영(소방서 협조)

3) 대응단계

- **상황관리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및 물놀이 안전대책기간(6~8월) 설정·운영**
 - 물놀이 안전관리 T/F 구성·운영
 - 안전사고 관련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근무 실시
 -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설정·운영(7.16~8.15)
 - 관리지역 전담 담당자 지정 및 유관기관 등 협의체 구성·운영
 - 안전관리요원 근무실태·안전시설 점검, 안전사고 예방홍보 독려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조치**
 - 현장상황 확인 및 조치
 - 담당공무원 즉시 현장 조치
 - 신속한 보고체계(군 → 강원도 → 행정안전부) 유지

4) 복구단계

- **사고원인 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
 - 경찰관서 사망원인 및 사고원인 조사
 - 군 → 강원도 → 행정안전부 사고원인 및 피해상황 보고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사고 빈발지역 특별대책 강구**
 - 운영대상 : 익수사고(사망·실종) 빈발 지역
 - 안전관리요원 고정배치, 부족한 안전시설 확충, 안전요원 근무시간 탄력적 조정·운영 등 안전관리 방안 강구 등
 -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확대 운영 등
 -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및 퇴거명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 **군민 안전의식 확산운동 전개**
 - 군민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 물놀이기 자발적 구명조끼 착용 등

사.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전제헌 담당	033-560-2131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정아 주무관	033-560-2489	대비·대응

◇ 2018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6.1~8.31) 전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사전구축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인명피해(사망)	2	0	0		높음

□ 주요내용

-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현황 (2018년 이전)
 - 24개소(정선읍6, 신동읍3, 화암면3, 남면2, 여량면4, 북평면4, 임계면2)
- 안전관리체계 사전구축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실시(관리등급 부여)
 -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인명사고 발생우려지역은 위험 구역 설정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조체계 구축(정선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지역 수색·구조활동
 - 물놀이 위험구역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전수점검 : 3월말

- 물놀이 안전시설 보수·보강 및 확충 : 4월말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 및 계도 현수막 제작·게첨 : 5월말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선발 및 사전교육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선발 : 5.15일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복장 구입·배부 : 5월말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사전교육 : 5월중(정선소방서 협조)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 6.1 ~ 8.31(3개월간)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 유급감시원(27명), 119시민수상구조대, 하계 아르바이트생, 환경감시원 등
 -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 구성·운영
 - 중점관리 대상지역별 담당자 지정·관리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인명사고 상황관리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상황 및 물놀이 사고관련 정보수집
 - 지역별 책임관리제 시행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반 구성·운영
 - 위험지역 순찰활동 및 안전관리요원 근무상황 관리
 - 안전시설 배치 확인 및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보고
 - 안전사고 빈발지역 특별대책 강구
 - 안전관리요원 고정배치, 부족한 안전시설 확충, 안전요원 근무 시간 탄력적 조정운영 등 안전관리 방안 강구 등
 - 안전점검의 날, 물놀이 안전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사고예방 홍보 리플렛 배부
 - 터미널, 역, 다중밀집지역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 리플렛 비치 등
 - 대국민 홍보 강화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계획 수립·추진
 - 구명조끼 착용 범국민 안전의식 확산운동 전개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2018 기본계획 수립·통보 및 국고보조금 교부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 및 보강(설치)	1~2월 3월 4~5월
하반기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및 전문교육 강화 물놀이 안전관리 이행실태 분석 및 결과보고	6~8월 6~8월 9~11월

10-4 수상레저

가. 현 황

- 최근 6년간 강원도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현황

연도별	사고건수	사상자수	사고내용	사고발생 사유
계	5	3		
2011년	1	1(사망)	전복	- 레프팅 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연습운행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
2013년	2	1(사망)	전복	- 카약 운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 - 급류에 휘말려 레프팅보트가 전복됨
2014년	1	1(부상)	손목 절단	- 레프팅 고무보트 운행중 개인부주의로 손목 절단됨
2016년	1		전복	- 레프팅 고무보트 운행 중 물살에 휩쓸려 전복

※ 통계 출처 : 내수면자원센터 자체 집계

- 정선군 : 안전사고 미발생

나. 원인분석

- 수상레저 활동은 성수기인 5 ~ 8월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단위 댐호 및 강 등이 위치한 춘천시, 홍천군 관내에서는 동력기구인 모터보트 등이 운행하고 있고
- 도내 하천 중에 수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빠르며 주위경관이 수려한 지역인 철원군, 영월군, 인제군 관내에서는 무동력기구인 고무보트 등이 운행하고 있음.
-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은 매년 7~8월 중 집중호우(급류)시 무리한 수상레저기구 운행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되고 있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수상레저 안전사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

라. 투자현황

- 수상레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은 없음

마. 목 표

<목 표>

-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 목표로 안전관리 강화
 - 인적,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현지지도, 및 점검 강화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수상레저 안전사고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 수상레저 안전사고 방지대책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 이행점검 및 추진
 - 수상레저 안전사고 피해현황·원인 분석
 -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활동, 훈련 및 홍보 계획 추진
 - 수상레저 안전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정비
 - 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전 재해영향검토 협의제도 운영
 - 수상레저 안전사고 관련 취약분야 진단 및 개선방향 논의
 - 수상레저 안전사고 위기로인 사전제거 및 최소화 노력

☐ 민·관협력 방제 시스템 구축지원

- 민·관협력 조기경보체계 운영
 -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
 - 재난진행상황 등 모니터링 결과 보고·전파체계 구성
 - 긴급 통신 지원 및 재난 수습 체계 구조화
 - 비상연락망의 변동사항 주기적 수정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정비 및 홍보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현황

연번	구분		지정일	금지구역	기간	대상
	구역	개소				
1	동강유역	1	2015.2.23 .	광하지구(광하대교) ~ 굴암지구(하굴하, 북대)	매년 4.1~6.15	동력레저 기구

2) 대비단계

□ 시·군 긴급지원체계 구축

-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전파 및 재난대응체계 마련
 -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안전활동 점검
 - 긴급통신 지원을 위한 통신 공동활용자원 파악
- 수상레저 안전사고 안전교육 강화
 -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내실화
 - 수상레저 활동지역내 운행질서 관리 강화
 - 주기적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안전 관리능력과 의식 제고
 - * 주기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 현지점검을 통해 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대책 실효성 제고

□ 긴급대피체계 구축

- 방재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배분
 - 긴급대피 군부대, 공공·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 협정체결을 통한 비상시 긴급투입 가능한 응급복구장비·물자 보유 현황파악
 - 재난특성에 맞는 방재자재 비축 조치
 - 재난 발생시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물자·장비 등) 동원대책 수립
 - 재난 대응 유관기관 비상근무체계유지

3)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상황실 운영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 상황회의, 실무매뉴얼의 실질적 운용
 - 위기평가(상황회의)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재난진행상황 등 모니터링결과 보고·전파
 - 대처상황보고서 등 상황보고서 관리
- 유관기관과 보고체계 통일, 비상대책 업무협조
 - 초기대응 및 보고/ 세부 위기관리활동 준비
 -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화 시킴
 - 수상레저기구의 충돌, 화재, 폭발, 좌초, 침몰, 기타 기구 손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 재난상황 관리

- 수상레저 안전사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시행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긴급 복구계획 수립 및 응급구호조치 수립, 시행
 - 사고정보 수집·보고·전파 및 사고수습 추진상황 종합보고서 작성
 - 상황판단회의, 상황보고, 긴급상황 유지관리 등
 - * 재난상황에 따라 운항 자제 및 통제 알림, 사고현황 및 대응·수습활동 상황 홍보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
- 행동매뉴얼에 따른 임무
 - 기능에 따른 행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실시
 - 운행중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행 계도
 - 보도자료 수집·배포 등 공보업무 총괄
 - 언론 동향 보고 및 대응, 언론기관 업무협조 등
 - *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및 일일상황 보고

□ 긴급구조 및 상황 공동관리체 운영

- 비상근무체계 유지
 - 현장사고 대응·수습 현황 모니터링 및 내부 보고체계 유지
 -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 및 인력점검
 - 비상연락망을 통해 시군 지역사고수습본부 및 유관기관 연락체계 강화, 위기상황 수시 보고 및 전파
 - 재난발생 즉시 동원 가능토록 관련기관에 준비지시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수상레저 안전사고 사후영향조사
 - 피해조사반 구성
 - 분야별 피해현황 조사·정리 보고
 - 사고 주변지역 환경 및 생태 조사
- 재난복구 협력
 - 재난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 확인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원 및 조달 지원
 - 현장방문 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자 위문

□ 복구사업관리

-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가동
 - 복구지원반 운영 및 복구 지원계획 수립·시행
 - 피해경감, 2차사고 예방조치, 사고현장 복구 지원
 - 인명구조 및 구호지원, 사상자 후송 및 응급조치 지원
 - 사고수습 관련 자원봉사 활동 지원
- 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 사고원인 분석·평가
 - 사고원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 파악
 - 법·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사. 세부추진대책

2) 기타시책

가. 현지 지도 점검

작성 부서	동계올림픽 지원단	작성자 및 연락처	김덕기 담당 임희은 주무관	033-560-2254 033-560-2083	재난안전관리 단계 예방
-------	-----------	-----------	-------------------	------------------------------	-----------------

- ◇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 수상레저기구 현장 개선 부분 점검 및 보완, 안전장비 착용, 안전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안전점검	1회	1회	1회	추진실적	보통

□ 주요내용

-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소개를 통해 안전대책 시행 효율성 제고
 - 수상레저기구 운항 중 재난시 즉각 대처 행동요령 숙지
 - 수상레저기구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비치 준수
-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 활동지역 안전수칙 준수 이행
- 수상레저 안전관리 캠페인 및 홍보
 - 유관기관 및 수상레저사업 관련 종사자에게 안전관련 현지 교육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관련 지도 및 홍보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기구 사전점검	4월
하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특별 및 정기 지도단속 실시	7~9월

10-5. 청소년수련 시설

가. 현 황

- 최근5년간 피해발생 현황 : 없음

* 군내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12~'16) 재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없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안전점검 계획 등의 수립·시행(청소년활동진흥법률 제18조의 3)

라. 투자현황

- 청소년수련시설 신축, 개보수 등 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3,000	-	1,800	400	400	400

마. 목 표

- 노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객 증가에 따라 다양화되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환경 제공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비단계

☐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위생분야 등은 공인된 유관단체·업체로부터 점검
 - 시설물의 위험요인 발생 즉시 이용중단 및 보수 조치 시행

2) 대비단계

□ 수련활동간 안전강화

- 주의를 요하는 수련활동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사고예방 요령 숙지

□ 안전교육 실시 강화

- 시설종사자의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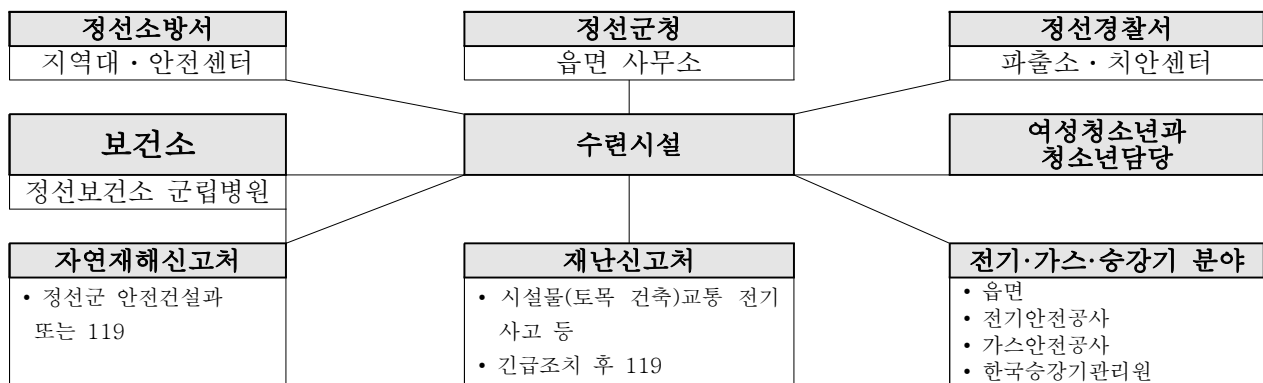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내 강화

- 응급처치 가능한 구호설비 기구 구비 및 긴급 후송대책 등 사전 비상연락체계 구축

3) 대응·복구단계

□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운영

- 각종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관리체계 가동



10-6. 유형별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청소년수련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여성청소년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배세환 담당 강창수 주무관	033-560-2360 033-560-2015	재난안전관리 단계 대비·대응
----------	--------	--------------	-------------------	------------------------------	--------------------

◇ 현장 중심의 위기관리 대응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매뉴얼 정비율(%)	-	-	50	자체 매뉴얼 정비	보통

□ 주요내용

- 원활한 업무수행과 신속한 위기관리 대응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재정비
 - 도 와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담당자 합동으로 기존 매뉴얼을 정비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

*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매뉴얼 재정비	3월
하반기	청소년수련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점검	9월

□ 제 · 개정내용

규정명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2) 재정사업

가. 청소년수련 시설 확충

작성 부서	여성청소년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배세환 담당	033-560-2360	재난안전관리 단계
			강창수 주무관	033-560-2015r	대비·대응

◇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 조성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청소년시설 확충	3개소	4개소	4개소	청소년시설확충 지원 개소수	보통

□ 주요내용

-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 조성
-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활성화 도모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청소년수련 시설 점검 추진	2~6월
하반기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4~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청소년수련 시설 확충	-	1,800	400	400	400	

3) 기타시책

가. 청소년수련시설 시설 점검

작성 부서	여성청소년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배세환 담당	033-560-2360	재난안전관리 단계
			강창수 주무관	033-560-2015	대비·대응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 및 재해 사전예방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	-	1회	1회	점검결과 보고 (국가안전대진단, 특정관리 시설, 자체점검 등)	보통

□ 주요내용

- 수상체험활동 안전기준, 운영기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활동장 내 위험요소 유무 등 안전실태, 이용·관리 실태
- 안전관리 계획, 긴급 후송대책을 포함한 안전매뉴얼 구비여부 및 활용 실태
- 보유 인증수련활동 운영 현황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해빙기 자체 안전점검 상반기 청소년수련시설 국가안전대진단	1~2월 3~5월
하반기	여름철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자체 시설 점검	7~8월 7~12월

11). 산업재난·사고

11-1. 건설현장

가. 현 황

- (건설재해 현황) 건설산업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전체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건설근로자는 여전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
 - *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고 및 산업재해 사망자 비중이 높으며, 재해 사망자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재해로 판명
- (강원권 재해율) 강원지역의 산업재해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재해 또한 3년째 줄지 않고 있는 실정

< '13년도~'16년도 전국 및 강원도 건설업 재해율 >

(자료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구 분	합계 (평균)	'13년	'14년	'15년	'16년
전국 건설업 재해율(%)	0.81%	0.92%	0.73%	0.75%	0.84%
강원권 건설업 재해율(%)	0.91%	0.89%	0.82%	0.89%	1.06%

* 산업재해율(%) : '13년(전국 0.59 강원 0.84), '14년(전국 0.53, 강원 0.87), '15년(전국 0.50, 강원 0.82), '16년(전국 0.49, 강원 0.87)

- '15년도 통계 분석결과, 50억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재해율·사망만인율*이 건설업 평균에 비해 1.5~1.9배 높은 것을 확인

< '15년도 공사규모별 건설업 재해통계 >

(자료 : 국토교통부)

구 분	합계 (평균)	3억 미만	3~ 20억	20~ 50억	50~ 120억	120억 이상
재해율	0.75%	1.42% (평균치의 1.9배)			0.21%	
사망만인율	1.47	2.24 (평균치의 1.5배)			0.83	

* 재해율 : 전체 건설업 근로자 대비 재해자 수(%), 사망만인율 : 전체 건설업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사망자 / 전체 건설업 근로자 × 10,000)

- '16년도 역시 통계 분석결과, 50억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

< '16년도 전국 및 강원도 공사규모별 건설업 재해율(%) >

(자료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구 분	전국	강원도					
		강원	태백	강릉	원주	영월	
1,000만원 미만	1.55	1.90	1.76	2.50	1.34	2.93	2.69
1,000만~2,000만원 미만	1.62	2.06	2.21	2.97	2.41	1.60	1.32
2,000만~4,000만원 미만	3.32	1.85	2.09	1.60	1.62	3.01	0.00
4,000만~1억원 미만	2.51	2.80	2.59	4.49	2.67	3.01	2.66
1억~2억원 미만	2.37	3.70	3.66	4.14	3.72	4.42	2.81
2억~3억원 미만	2.53	2.81	2.22	2.35	3.48	3.59	2.08
3억~5억원 미만	2.32	2.74	3.13	1.11	2.96	3.46	0.94
5억~10억원 미만	1.53	1.42	1.40	2.97	0.92	1.31	2.02
10억~20억원 미만	1.14	0.99	0.72	1.06	1.30	0.81	1.42
20억~50억원 미만	0.96	0.95	1.00	1.03	0.85	1.20	0.69
50억~100억원 미만	0.79	0.68	0.47	0.75	0.54	1.20	1.20
100억~120억원 미만	0.52	0.28	0.00	1.23	0.52	0.26	0.00
120억~150억원 미만	0.45	0.39	0.40	0.78	0.18	0.41	0.77
150억~200억원 미만	0.35	0.38	0.29	0.00	0.43	0.60	0.27
200억~300억원 미만	0.28	0.49	0.07	0.60	0.50	0.88	0.79
300억~500억원 미만	0.20	0.24	0.13	0.00	0.26	0.15	0.44
500억~800억원 미만	0.16	0.23	0.12	0.45	0.21	0.24	0.23
800억~1,000억원 미만	0.18	0.24	0.15	0.08	0.34	0.17	0.60
1,000억~1,500억원 미만	0.12	0.10	0.10	0.23	0.07	0.08	0.11
1,500억원 이상	0.10	0.42	0.02	1.85	0.32	0.07	0.18
분류불능	1.94	2.06	2.11	2.37	1.65	2.02	6.35
합 계	0.84	1.06	1.09	1.25	0.97	1.11	0.98

나. 원인분석

1) 대규모 건설공사현장

- (전담팀의 부재) 도발주 대규모 건설공사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적인 시공현장관리와 적기에 현장점검이 어려움

2)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 (점검의 한계) 소규모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짧아 단기에 완공되는 특성이 있어 취약시기(해빙기·우기·동절기) 정기점검만으로는 점검에 한계가 있고 점검대상 파악도 곤란
-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와 공사장 주변 시설물의 피해 방지대책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

다. 목 표

구분	'17년도 재해율	'18년 목표	목표치 근거
강원권 건설업 재해율	1.06%	1.00%	전년도 대비 5% 건설업 재해율 감축

라. 중점 추진대책

구분	추진대책명	주요내용	구분
예방	• 대규모 공사 안전체계 강화	도발주 50억이상 건설공사 현장 시공실태 점검 전담팀 구성으로 재해대비 공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기타
	• 소규모 공사 안전체계 강화	소규모 현장대상 건설안전협의회 캠페인 공동 추진 및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기술지도 계약'에 의한 안전강화 유도	기타

마. 세부 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대규모(30억이상) 공사 안전체계 강화

작성 부서	안전 건설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유광택 담당	033-560-2487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홍섭 주무관	033-560-2485	예방

◇ 군 발주 총공사비 30억이상 건설공사의 주기적 점검으로 부실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군 발주 일반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 강화	-	2	3	전년대비 1회 증가	높음

□ 주요내용

- (시공실태 점검) 군 발주 총공사비 30억이상 건설공사(공정률 30~80%현장) 시공실태 점검 전담팀 구성하여 재해에 대비한 공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특별(해빙기, 우기대비) 점검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전담팀 구성 및 군 발주 건설현장 현장점검	3월
2/4분기	군 발주 건설현장 현장점검	4~6월
3/4분기	군 발주 건설현장 현장점검	7월~9월

11-2. 농공단지

가. 현 황

- 2013. 7. 11. ~ 15. 기간 중 발생한 농공단지 호우피해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건수		1		5			
재산피해		41		205			
인명피해	계	피	해	없	음		
	사망(실종)						
	부상						

※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 통보” 방재담당관-16574(2013.8.19)

나. 원인분석

- 강원 영서지방은 피해 기간중 누적강우로 250mm~547mm가 내렸으며, 이 강우중 80% 이상이 1~2일간에 집중적으로 내려 과포화 상태가 된 표층이 얇은 산지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음.
- 특히, 철원군 김화읍 86mm, 춘천시 남산면 74.5mm, 횡성군 횡성읍 68.5mm, 홍천군 화촌면 66.5mm, 양구군 방산면 57mm 등 많은 시우량을 기록하기도 하였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 제47호, '12.8.20)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대통령령 제24675호)

라. 투자현황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노후 농공단지내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6,357	2,745	1,342	1,270	500	500

마. 목 표

- 노후 농공단지내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무재해 달성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재난사고 예방 홍보 및 안전점검 추진
- 재난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체별	임 무
道	◦ 산업단지조성 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및 총괄 ◦ 비상연락망 구축
관리기관 (시·군)	◦ 산업단지조성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 산업단지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치 ◦ 사고 발생시 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등 ◦ 사고수습 후 사고발생요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구축 ◦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등

※ 국가산단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관리기관 : 시장·군수

2) 대비단계

-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체계 구축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
- 재난대비 상황 보고 및 자원동원 체계 구축
- 산업단지 재난안전 취약 중점관리대상 업체 지정 관리

3) 대응단계

- 재난 상황 보고 및 초기대응 체계 확립
- 사고유형별 재난주관 기관의 상황실운영 업무 협조
-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체계 구축 신속 대응
- 긴급·인력 투입 및 긴급구조 대책 추진

4) 복구단계

- 재난합동조사반 구성·운영
- 재난 주관기관의 재난상황실운영 업무 협조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재난복구 사후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작성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및 연락처	서범식 담당	033-560-2428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종선 주무관	033-560-2352	예방

◇ 준공후 20년 이상 된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단년도 사업)

* 2017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공정률(%)	100	100	100	완료공정/총 계획공정 * 100	보통

□ 주요내용

-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단지 활성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 설계완료 및 발주	2월
하반기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 공사 추진 및 준공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	2,745	1,342	1,270	500	500	

12. 식품사고

가. 현 황

○ 전국 식중독 발생현황(2012~2016)

- 연도별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17	929	9	554	11	117	23	128	24	478

- 월별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월 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 수	84	6	3	6	9	8	9	11	9	6	8	5	4
환자수	2,206	225	9	126	456	176	99	62	58	195	373	138	289

- 원인 물질별

(단위 : 건, 명)

원인 물질별	계	세균							노로바 바이러스	기타 바이러스	원충	불검출
		병원성대 장균	살모 넬라	장염비브 리오	캠필로박 터제주니	황색포도 상구균	퍼프린젠 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건 수	84	6	4	2	3	2	3	2	17	1	4	40
환자수	2,206	234	93	17	301	6	451	8	843	6	13	234

- 원인 시설별

(단위 : 건, 명)

시설별	계		학교급식		학교 외 집단급식		음식점		가정집		기타		불명	
구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84	2,206	6	530	6	374	54	783	2	7	9	458	7	54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원인분석

- 원인 물질별로 살펴보면 대장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노로 바이러스 등에 의한 용수(지하수 등)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음
- 발생 시설별로는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 시설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이 많으며, 기타 음식점에서는 발생건수가 많음
- 식중독 역학조사 결과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아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긴급대응)
 -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
-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중독 등 식품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60	12	12	12	12	12
유통식품 수거검사	5	1	1	1	1	1
어린이보호식품관리	25	5	5	5	5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	6	6	6	6	6

마. 목 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식중독 발생 건수	0명	0명	0명	0명	0명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 선제적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 집단급식소 등 위생 취약시설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교육
-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
-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과학적 기반 강화

☐ 식중독 신속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지역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 협의체 : 감염병부서, 교육지원청

☐ 식중독 신속 전파 및 대응체계 강화

- 식중독 신속보고 훈련 참여(시도 주관 / 1회)
- 식중독 현장대응 훈련 참여(지방청 주관 / 1회)

☐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현황분석 및 정보제공

- 식중독 발생 사전예측정보 활용 예방활동

☐ 학교 등 식중독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신학기 집중 지도점검
- 청소년 수련시설 및 도시락 제조업체 등 지도점검
- 집중관리업소 수거검사 등

☐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지원사업

- 어린이, 주부 등 대상별(업종별) 맞춤형 식중독 예방교육
- 학교, 유치원, 기업체 등 찾아가는 이동교육

2) 대비·대응단계

□ 식중독 관리 대책반 운영

○ 식중독 대책 및 상황처리반 : 1개반

< 구 성 > → 보건소 대회의실에 설치

- 반장 : 보건소장
- 반원 : 감염병부서 2, 위생 2, 교육지원청 1

< 임 무 >

- 식중독관리사업 계획수립·추진
- 보건소 역학조사반(식품위생감시원 1명이상 포함 구성)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식중독발생업소에 대한 사후조치(위생점검, 행정조치 등)
- 청소년수련원, 학교 급식시설 등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 식중독발생 통계관리유지 및 식중독예방 교육·홍보 등

□ 하절기 비상연락체계 구축

○ 근무기간 : 2018. 5. 1 ~ 10월(상황에 따라 연장가능)

○ 근무시간 : 평일(09:00~20:00), 토·일요일 및 휴일(09:00~16:00)

< 임 무 >

- 식중독 발생사항 접수
- 비상연락망 가동 및 현장 출동지시 등 응급조치
- 식중독 확산여부, 역학조사 상황 등 수시파악 및 보고(식중독 보고체계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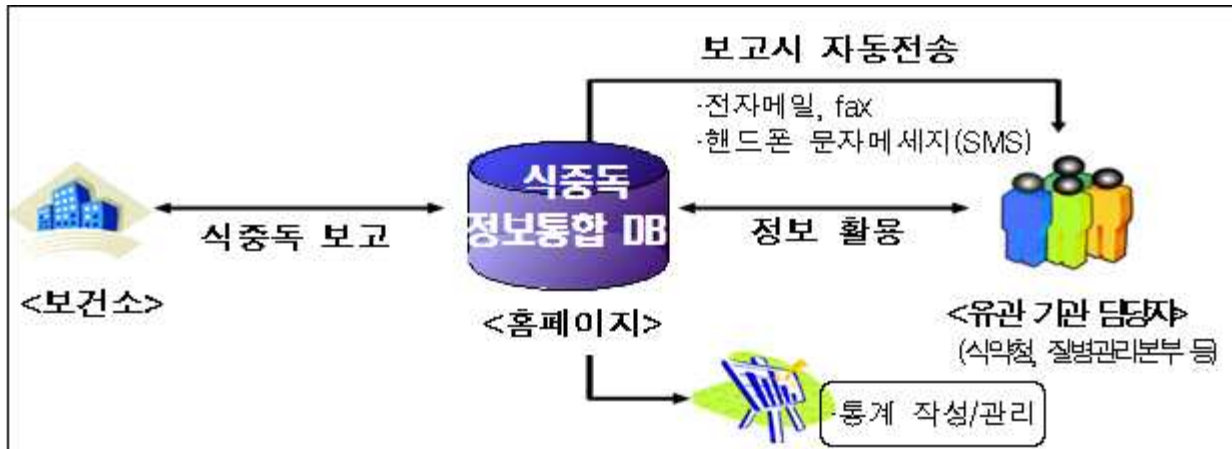
□ 재난지역 식중독 발생 시 대응 단계

유 형	용수오염	식재료 오염	시설, 사람에 의한 오염
↓			
추정원인	• 분변오염의심 지하수사용 • 비식용 지하수와 상수 혼합사용 • 용수탱크,정수시설 관리불량 • 부적합 지하수 사용 • 수질검사 미 실시	• 부패·변질 원료 및 식품사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 무허가 업소 원료납품 • 저질 식재료 사용	• 제반시설 설비기준 미달 • 조열·가열온도 미흡 • 전처리 과정 교차오염 • 냉장·냉동관리 온도 미준수 • 종사자 건강진단 미 실시 • 질환자 급식조리 종사
↓			
현장대책	• 사용 중지(봉인) • 급식중단 조치	• 급식중단 조치 • 의심식품 압류 및 사용금지 조치 • 식재료공급업소 파악	• 급식중단 조치 • 시설개수명령 • 오염식재료 폐기 • 시정지시 • 조리종사금지
↓			
후속조치	• 채수 및 수질검사 의뢰 • 탱크청소, 필터교체 등 소독조치 • 추가환자 발생 확인 • 도시락 등 대체급식	• 수거·검사 의뢰 • 검수관리 철저 • 동일 식재료 사용업소 환자 발생여부 확인 • 추가환자 발생확인 • 도시락 등 대체급식	• 조리기구 표면 오염도 조사 - 환경검체 검사의뢰 • 검체 채취 후 즉시 시설 개선 및 소독 • 질환자 치료 및 휴무조치 • 추가환자 발생 확인 • 도시락 등 대체 급식
↓			
확인사항	• 먹는 물 기준 부적합 여부 • 식중독균 검출 여부 • 노로바이러스 검출 여부	• 식중독균 검출 여부 • 기준·규격 위반 여부 • 기타 위반사항 여부	• 식중독균 검출 여부
↓			
예방 및 사후관리	• 먹는 물 수질기준 준수 • 노로바이러스 검사 실시 • 정수기수질검사 실시 • 주기적인 탱크청소, 필터 교체 등 관리철저 • 식수 정제소독 및 끓인 물 제공 •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	• 수거·검사의뢰 • 검수관리 철저 • 동일 식재료 사용 업소 환자 발생 여부 확인 • 추가환자 발생 확인 • 도시락 등 대체 급식	• 정기 사전 지도 점검 • 시설, 기구 등 위생관리 철저 • 조리위생수칙 준수 • 작업전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 손 씻기, 위생복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 행정처분/과태료

▷ 식중독 대책 및 상황처리반 가동

▷ 재난발생에 따른 집단수용시설 급식소 현황 파악 및 지도점검 실시

□ 식중독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운영



- 보건소장은 식중독예방·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식중독 또는 의심환자 발생신고를 받는 즉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 보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관내 의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인 홍보 실시

4) 복구단계

□ 사후관리

- 추가환자 발생 모니터링
- 식중독 발생 관련 영업자 행정처분 등

□ 발생상황 분석 및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위기대응 매뉴얼 등 수정·보완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식품위생업소 합동·기획단속

작성 부서	보건소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명희 담당	033-560-2312	재난안전관리단계
			김은비 주무관	033-560-2552	예방

◇ 계절별, 시기별 기획 지도점검으로 식품안전관리 강화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561건	1,133건	1200건	연간 지도점검 건수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부패·변질 및 무허가·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행위 지도단속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단속
- 부정불량식품 신고접수 및 신속처리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신학기, 행락철, 설 성수식품 등 지도·점검	1~6월
하반기	하절기, 가을 신학기, 추석 성수식품 등 지도·점검	7~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계	11	11	11	11	11	
어린이보호식품관리	5	5	5	5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	6	6	6	6	

나. 유통식품 수거·검사

작성 부서	보건소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명희 담당	033-560-2312	재난안전관리단계
			변정은 주무관	033-560-2747	예방

- ◇ 위해물질 차단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 진단을 위한 식품 수거·검사
- ◇ 미생물 오염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유통 도모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수거·검사	139	125	130	연간 수거검사 100건이상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식품 유형별 표본검사 실시로 부적합 식품유형 통계관리
- 검체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 부적합 이력 높은 항목 검사
- 사회적 이슈 및 계절적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농·수산물 검사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수거검사 종합계획 수립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1월 수시
하반기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수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계	1	1	1	1	1	
유통식품 수거검사	1	1	1	1	1	

2) 기타시책

가).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작성 부서	보건소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명희 담당	033-560-2312	재난안전관리단계
			김은비 주무관	033-249-2695	예방/대비·대응

- ◇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 및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식중독 발생요인 제거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16건	86건	100건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건수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업소 지정 관리
- 식중독 대응 협의체 및 현장대응 모의훈련 참여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1월 수시
하반기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7~12월 수시

13). 의료제품 사고

가. 현 황

(단위 : 개소)

합계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22	2	10	5	5

나. 원인분석

- 의료법 미준수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및 각종 민원 발생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관련규정 :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등)
- 의료기관 점검 : 상 하반기 각 1회
- 점검대상 : 병의원 22개소
- 점검반 구성 · 운영
 - 예방의약담당 1명, 담당자 1명

라. 목 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점검율(%)	100	100	100	100	100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 지도 점검
 - 의료법 준수 및 비도덕적 의료행위 집중 점검
 - 감염관리 관련 운영 상황 집중 점검

2) 대비단계

-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 지도점검 지속적 실시
 - 의료법 준수 및 비도덕적 의료행위 집중 점검
 - 계속적인 불법 행위 단속 자료 수집
- 유관부서 및 기관 협력체계 유지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3) 대응단계

- 의료법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현장 확인 및 행정처분 의뢰
- 비상진료대책반 설치·운영
 - 사고 규모에 따라 시·군에 비상진료대책반 설치 운영

4) 복구단계

-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바.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의료기관 점검 및 교육

작성 부서	보건소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백은주 담당	033-560-25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유재란 주무관	033-560-2195	예방

◇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 의료기관 점검 및 교육을 통한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질서 준수관행 정착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점검율(%)	100	100	100	점검/의료기관수	보통

□ 주요내용

- 준수사항 이행 및 적정 변경허가(신고) 여부 등 확인
 - 의료법 준수 및 비도덕적 의료행위 집중점검
- 변경 시행될 예정인 의료법 사항 숙지토록 계도
 - 점검과 병행하여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의료법 전파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병·의원급 의료기관 점검(병원2, 의원 10)	5월
하반기	의원급 의료기관 점검(한의원5, 치과의원5)	10월

14). 안전취약계층 사고

가. 현 황

- 노인요양시설 수 9개소, 종사자 4,868명, 입소자 7,222명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시설수	11	9	9
종사자수	168	159	162
입소자수	248	234	238

- 홀로사는 노인 에 대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 서비스 수혜인원 : 253명(운영지원 253가구)
- 시스템구축 : 253가구(9개 읍·면)
- 지역센터 : 1개소(서비스 제공인력 응급관리요원 2명)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5	2016	2017
시설수	1	1	1
종사자	2	2	2
생활(이용)자	248	251	253

- 장애인복지시설 수 4개소, 종사자 명, 생활(이용)자 명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
시설수	4	4	4
종사자	52	51	50
생활(이용)자	3,744	5,631	8,068

- 어린이집 수 13개소, 보육교직원 125명, 이용아동 610명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
시설수	13	13	13
보육교직원	135	133	125
이용아동	697	659	610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단위 : 개소)

합계	도시공원	어린이집	주택단지
39	4	12	23

○ 어린이놀이시설 인명피해

(단위 : 명)

년도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고건수(건)	0	-	-	-	-	-	-
사고인원(명)	0	-	-	-	-	-	-

나. 원인분석

- (노인) 노인요양시설 특성상 재난·사고 발생 시 입소자의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체력이 쇠약하여 신속한 대피가 곤란함
 - 시설 노후화 및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
 - 노인요양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 대부분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재난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려움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특성상 재난·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개인 거주에 따른 취약성으로 신속한 대피가 곤란
 - 응급장비의 장비결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특성상 재난·사고 발생시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집단 거주에 따른 취약성으로 신속한 대피가 곤란
 - 시설 노후화 및 장애인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
 - 사회복지시설 지역내 설치 기피의 사회적 분위기로 대부분 외곽 지역에 위치함으로 신속한 구조 또는 산불 등 재난에 노출 빈도 높음

- (어린이집)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 곤란
 - 아동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인력 및 맞춤형 교육자료 부족
-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자의 감독과 놀이기구의 안전점검 강화 및 보수·보강(수시) 실시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3항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게 대한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3,161	161	1,669	299	654	378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737	50	1,314	61	249	63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420	50	150	0	160	60
응급안전알림서비스	330	61	58	66	70	75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674	0	147	172	175	180

마. 목 표

○ 노후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개선

(단위 : 개소)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	1	1	1	1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2	3	3	4	4

○ 응급안전장비 정상 가동률

(단위 : %)

사 업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95.5%	96%	97%	97%	97%

○ 어린이시설 개선

(단위 : 개소)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어린이 시설 개보수	7	6	6	6	6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강화 지속 추진

- 시설 안전점검 철저 : 연2회
 - 시설 자체 점검 및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점검
 - 건축물 안전관리, 소방·가스·전기시설 등
- 시설 손해배상 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확인 철저

☐ 장애인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지속 추진

- 시설 안전점검 철저 : 연2회
 - 시설 자체 점검 및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점검(표본)
 - 주용내용 : 건축물 안전관리, 소방·가스·전기시설 등
- 비상대비 모의 훈련 실시 : 연1회 이상(종사자, 생활자 등)
- 시설 손해배상 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확인 철저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지속 추진**

- 응급장비 안전점검 철저 : 상시
 - 시설 자체 점검 및 지자체 · 유관기관 합동점검(표본)
 - 주요내용 : 지속적인 장비 점검(분기 1회), 철거장비 및 a/s장비 관리 강화
- 혹서기·혹한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및 점검

□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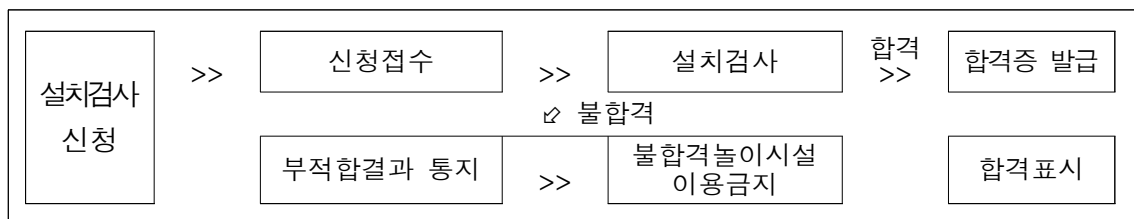
- 시설 안전실태 점검 실시 : 연2회 이상
 - 건축물 안전관리, 소방·가스·전기시설 등 종합 안전 점검 추진
-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실시 : 한국시설안전공단 협조
- 이용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 이용아동 연2회 / 보육교직원 연2시간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신고(설치자)**

-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번호를 부여 받아 설치검사
 -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놀이시설 설치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설치검사 받고 합격한 경우 사용
 - 불합격 시설 보수 후 재 검사 신청(불합격 판정을 한 검사기관)
 -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2) 대비단계

□ **사회복지시설 안전 종합 대책반 운영**

- 소방서,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도 및 시·군 사업부서별 설치 운영

□ **사회복지시설 개인별 전담제 지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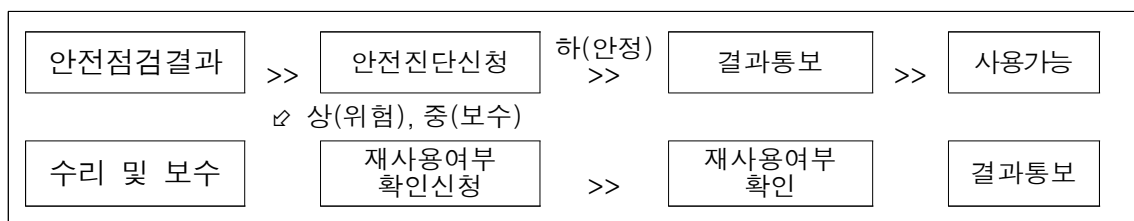
- 도 및 시·군 공무원 지정, 안전점검교육훈련 등 지도감독

□ **재난관리대책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 도 및 시군은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에 재난발생 시 처리요령을 위한 매뉴얼 보급·전파

□ **선제적 예방·대비 확립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억제**

- 안전점검 : 월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금지
 - 필요시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 놀이시설의 이용금지·폐쇄·철거
 -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3) 대응단계

□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 운영**

- 재해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시설 자체에서 응급조치 후 사고 발생사실 및 피해상황을 즉시 보고(先 응급조치, 後 보고)
-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
 - 초동상황 즉보, 상황전파, 직원 비상소집, 구급기관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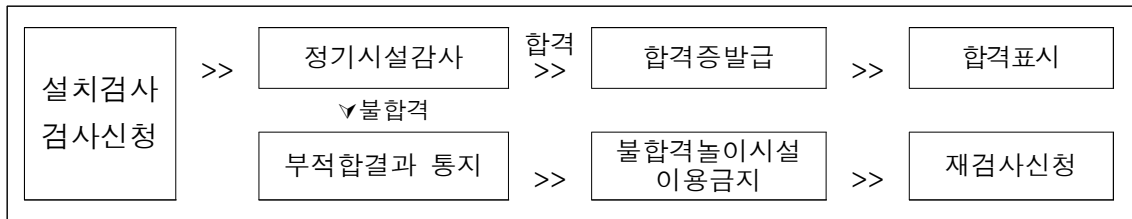
□ **사고 대책본부 설치 운영(시·군)**

- 사고 규모에 따라 시·군 대책본부 설치 운영
- 도에서 상황 총괄관리 및 현지조사, 지원반 배치

□ **어린이놀이기구의 유지관리(관리주체)**

○ 정기시설검사

-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실시
- (불합격)이용금지 조치의무, (합격)합격표시 부착의무



○ 안전교육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 보험가입

-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사망시 8천만원)

4) 복구단계

□ **사고현장 처리**

- 소방장비 등 현장 투입, 필요시 군부대 지원 요청
- 관련 기관 지원 협조 요청(전기·가스·대한적십자사 등)

□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 사후 복구 및 수습대책 강구
-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사고원인 분석에 따른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 마련

□ **어린이놀이기구 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 사고보고 의무(관리주체)

-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용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기관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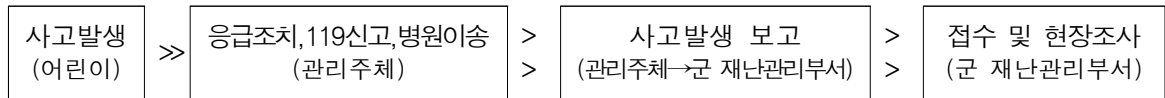
○ 보고내용

- 놀이기구명, 사고자(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고일시, 상해유형 등

○ 사고조사

- 필요시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 실시
-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중지 등 조치

○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순서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노인요양복지시설 기능보강

작성 부서	주민생활 지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신성근 담당 박 찬 주무관	033-560-2971 033-560-2023	경로시설계 예방
-------	----------	--------------	-------------------	------------------------------	-------------

◇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요 충족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확충 및 개선 등 추진

* 노인복지법 제47조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개소수	1	2	1	기능보강사업 추진 개소수	보통

□ 주요내용

- 노인요양시설 확충 : 신축
- 노인요양시설 개선
 - 증축 및 개보수(소방관련 시설 등 안전 관련 우선 추진), 화재안전창 설치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18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3월~7월
하반기	'18년 기능보강사업 집행 실태 점검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50	150	0	160	60	자부담포함

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작성 부서	주민생활 지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신성근 담당	033-560-2971	경로시설계
			김정미 주무관	033-560-2974	예방

◇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요 충족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확충 및 개선 등 추진

* 장애인복지법 제79조 및 제81조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개소수	1	1	1	기능보강 완료 개소 수	보통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 신축
-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 증축 및 개보수(소방관련 시설 등 안전 관련 우선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18년 장애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3월~7월
하반기	'18년 기능보강사업 집행 실태 점검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 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0	1,314	61	249	63	

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작성 부서	주민생활 지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신성근 담당	033-560-2971	경로시설계
			한솔이 주무관	033-560-2975	예방

◇ 소방서와 연계한 응급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독거노인의 고립생활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고독사 및 사고사 예방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 목표 달성기여도
응급안전장비 정상 가동률	93%	95%	95.5%	정상 가동률	보통

□ 주요내용

- 내구 연한 경과(5년) 장비 교체 및 신규설치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점검 지속 추진(분기 1회 전수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18년 예산 확정 통보 및 예산 교부	1월
하반기	'18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집행 실태 점검	9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61	58	66	70	75	

라). 어린이집 기능보강

작성 부서	여성 청소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문용택 담당 전혜리 주무관	033-560-2342 033-560-2968	재난안전관리 단계 예방
-------	---------	--------------	-------------------	------------------------------	-----------------

◇ 어린이집에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 근거 :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기능보강 지원	0	7	6	수요조사에 따른 지원시설 결정	보통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증·개축비 지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장비비 지원
- 장애아시설 기능보강비 및 장비비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시설별 기능보강 추진	3~6월
하반기	추진상황 점검 및 익년도 기능보강 수요조사 등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예산	'17예산	'18예산안	'19	'20	비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	0	147	172	175	180	

2) 기타시책

가). 어린이집 안전관리

작성 부서	여성 청소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문용택 담당	033-560-2342	재난안전관리 단계
			전혜리 주무관	033-560-2968	예방

◇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합동 및 자체 시설안전점검 등 실시

* 근거 :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안전점검 실시	13	13	13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 개소	보통

□ 주요내용

- 안전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어린이집의 장은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 점검 실시
 - 인근 시군과 어린이집 수시·합동·교차점검 연중 시행
- 어린이집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집의 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결과를 군수에게 매년 1회 보고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어린이집 교차 지도·점검 계획 및 실시	5월
하반기	어린이집 자체 지도·점검 계획 및 실시	11월

15). 자살

가. 현 황

(단위:명)

구 분(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정선군	25.5	56.3	61.8	36.4	42.0
전국	28.1	28.5	27.3	26.5	25.6
강원도	38.3	38.5	36.8	35.3	32.3

※ (출처:국가통계포탈)

나. 원인분석

-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이 정선군은 전국 및 강원도 평균 자살사망률보다 지속적으로 높으며 전국적으로 자살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강원도가 1~3등을 유지하고 있고 정선군은 강원도 평균보다 약 2배 높은 실정
- '17년 말 기준 취약인구는 9,039명으로 '16년 말 기준 취약인구는 7,431명 보다 1,608명 증가, 정선군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취약계층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주민 요구도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체 행동매뉴얼 정비
 - 위기경보 단계별 재난대응 임무·역할 규정
 -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업체계 및 임무·역할 명확화
- 2018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철저
- 관련규정
 -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라. 목 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체 행동매뉴얼 정비(%)	100	100	100	100	100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예산	'17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634	104	122	136	136	13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529	91	108	110	110	110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	105	13	14	26	26	26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 정선군 관내 자살예방 홍보 및 정신건강 캠페인 실시
- ☐ 자살고위험군 이·반장 사례관리 활동 강화
-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및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실시
 - 자살고위험군 발굴
 - 대상자 등록 및 사례관리, 치료 연계 실시

2) 대비단계

- 자살고위험군 응급 개입 시 유관기관별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및 운영,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기 확대 방지

○ 세부 활동내용

- 위기 발생 시 경찰, 소방, 주민생활지원과, 민간단체 등 협조 하에 지역별 비상 대책 강구 및 대응
- 위기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비상대책본부 가동 준비 및 상황 악화 시 가동

3) 대응단계

○ 자살고위험군의 자살 시도 발견 시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

○ 초기에 적절한 대응책 마련

- 자살시도자의 유형에 따라 상담으로 먼저 진행할지 적극적으로 경찰, 소방과 대응할 지를 결정
- 정신보건전문의 자문 후 입원 유형 결정
-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가동, 보건의료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유지하는 등 각종 비상조치 시행
- 자살시도자의 필요한 보건 및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4) 복구단계

○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운영 체계 보완

- 위기기간 중 발생한 피해 사례 종합 및 복구대책 마련·시행
- 위기 발생원인 분석·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 보완
- 보건의료분야 위기대응조치 평가·보완
- 비상 대응조직 및 관계 부서 간 협조체제 평가·보완
- 위기상황별 대처능력의 신속성 평가 및 보완책 마련
- 보건의료분야 위기와 관련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보완
- 관련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화창구 개발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자살예방사업

작성 부서	보건소	작성자 및 연락처	신애정 담당	033-560-2556	재난안전관리 단계
			변미경 주무관	033-560-2869	예방, 대비·대응, 복구

- ◇ 체계적인 사업운영과 자살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뉴얼 구비 및 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이드
매뉴얼 구비율(%)	0	0	100%	매뉴얼 구비	매뉴얼

□ 주요내용

- 등록 및 사례관리
 - 사업 활성화 및 사업 수혜자 순환을 위해 10% 신규 등록
 - 사례관리군 등록 및 사례관리
 - 자살위험군 위험평가(CTRS) 및 그에 따른 개입계획 수립 및 적용
 - 전체 등록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
- 자살위험군 응급 개입
 - 자살위험군 위기 대응 및 사례관리 개입 전반에 대한 매뉴얼 숙지
 - 경찰, 소방서와 응급대응 협조체계 가동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체계 가동
 - 자살시도자 응급 상황 시 근로복지공단정선병원 및 정선군립병원 응급실 활용

○ 교육

- 생명사랑지킴이(gate keeper) 양성교육 - 인증 받은 프로그램 활용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 학교, 군부대, 직장, 경로당 등

○ 홍보 및 캠페인

- 지역 행사 시 자살예방사업 홍보 및 캠페인

○ 이·반장 사례관리 활동 지원



- 건당 6,000원 지급

- 대상자 선정(자살고위험군 제외) 후 사례 횟수 결정
- 이·반장 보안서약서 및 사례관리 일지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대상자의 개별 요구에 맞는 인적·물적 자원 연계

○ 사례검토회의

- 자살위험군의 문제영역 및 심각도에 따른 사례검토회의
- 월 1회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경청 사업 운영

- 취약계층 선정
- 관내 독거노인 3,077명 중 사각지대 대상자 선정
- 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학생 선정 및 교육(경청교육)
-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참여자가 하고 싶은 만큼의 목표 제시
- 동기부여를 위해 지역신문 게재 및 미담사례집 발간 등

○ 연계 활성화

-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록 관리자 중 중증 우울자 및 자살고위험군 발견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상담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2018년 자살예방사업 계획	2월
하반기	2018년 자살예방사업 결과보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20	비고
계	104	122	136	136	136	
자살예방사업	91	108	110	110	110	
생명사랑생명존중문화사업	13	14	26	26	26	

16). 범죄·테러

16-1. 가정·성·학교폭력

가. 현 황

○ 가족폭력 및 성폭력 발생건수

(단위 : 건)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족폭력	337	-	-	477	297	237
성폭력	181	-	-	76	235	232

- 학교폭력예방교육(교육청)의 결과로, 학교폭력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법률 민감도 상승으로 재심청구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임.

나. 원인분석

-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간 발생하는 사건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후에야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조기 대응이 어려워, 상습적·고질적으로 재발하고, 폭력의 양상 또한 점차 심화되는 경우가 대부분
- (성폭력) 발생건수는 신고죄 폐지, 카메라 이용·촬영 등 신종 성범죄 증가 등에 따라 지속 증가
-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심각한 우울, 불안 등의 후유증 심각, 학부모들의 불안과 분쟁 등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 가해학생들은 향후 사회적 범죄로 귀결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안전한 사회 구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학교폭력예방법 제6조)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19 중기
계	395	72	74	81	83	85
성폭력상담소 운영	386	72	74	79	80	81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9	0	0	2	3	4

마. 목 표

- 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한 발생건수 감소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폭력	200	190	180	170	160
성폭력	200	190	180	170	16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대비 단계

- ☐ 관내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협력체계 구축하여 가정 및 성폭력 예방
 - 가정 및 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가정폭력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부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 강화

2) 대응단계

- ☐ 경찰청과 여성긴급전화1366강원센터(가정폭력),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 협력을 통해 초기대응체계 구축
 -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으로 피해자 발생 대비
 - 성폭력피해 발생 시 24시간 365일 수사, 법률, 의료, 상담 등을 한곳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 폭력피해 발생 시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발생 예방

☐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유해 환경 파악**

- 교육청을 통한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신고 현황 파악
- 학생에게 유해한 학교주변 환경 관리 강화
- 학생 안전 지역 확대

3) 복구단계

☐ **가해자들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피해 재발방지체계 확립
 - 사전면접, 개별상담, 부부·가족상담, 집단상담 등

☐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폭력 분쟁 조정**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청구한 재심청구 내실화
 - 피해학생의 우울, 불안 등 후유증 감소
-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기관, 민간단체 참여 확대
 - 지역 전문가, 민간단체, 학부모 등의 자발적 재능기부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하는 재심사안 공유
 - 가해학생이 향후 사회적 범죄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 학부모들의 분쟁 등 사회적 비용 감소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성폭력 상담소 운영

작성 부서	여성 청소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문용택 담당 전희라 주무관	033-560-2342 033-560-2316	재난안전관리 단계 대비·대응
-------	---------	--------------	-------------------	------------------------------	--------------------

◇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제공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12조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 목표 달성가여도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점)	90	91	92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주거 지원시설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 평균	높음

□ 주요내용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설치·운영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아동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수사·법률·의료·상담 등 원스톱으로 지원 가능한 해바라기센터 운영
 -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연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보조금 교부 및 지도점검, 상반기 운영실적 제출	2월
하반기	보조금 교부 및 지도점검, 하반기 운영실적 제출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계	72	74	81	83	85	
성폭력 상담소 운영	72	74	79	80	81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0	0	2	3	4	

2) 기타시책

가).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

작성 부서	여성 청소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문용택 담당	033-560-2342	재난안전관리 단계
			전희라 주무관	033-560-2316	대비·대응

◇ 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통해 폭력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강화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47	82	100	전 직원 폭력예방교육 참여 이수율	보통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대한 실적 점검
 -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참여 실적
- 성폭력·가정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근절 홍보·캠페인
 - 성폭력·가정폭력(11.25~12.1) 및 성매매(9.19~9.25) 추방주간 계기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여성폭력 예방캠페인 및 홍보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폭력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예방교육 실시	3월
하반기	전 직원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실적 평가	12월

16-2. CCTV

가. 현 황

○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 건, %)

구분(전국)	평균	2011	2012	2013	2014	2015
발생건수	25,885	26,699	25,152	26,962	25,277	25,334
검거건수	23,164	22,426	21,187	23,937	23,897	24,373
발생대비 검거율	89.5	83.9	84.2	88.8	94.5	96.2

※ (출처)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강력범죄 기준

○ 정선군 CCTV 구축 현황

(단위 : 대수)

구 분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정)	2019
정선군	415			62	8	144	36	114	51	25	

※ (출처) 정선군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17.12.31)

나. 원인분석

- CCTV의 설치 증가와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 예방효과
- 각종 CCTV의 통합운영으로 영상정보의 운영 효율성 증대
- 24시간 실시간 관제 운영으로 현장검거 등 범죄피해 최소화 기여
- 각종 사고·범죄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 범죄 발생 시 CCTV 활용으로 범죄해결 능력 향상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 추진 계획(행정안전부, '10.10월)
-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라. 투자현황

○ 방법용 CCTV 설치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방법용 CCTV 설치	913	180	163	250	160	160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22	22	-	-	-	-

마. 목 표

○ 방법용 CCTV 설치

(단위 : 대수)

대 상	기 설치	2018년	2019년
정선군	415	25	25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징후감지)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 각종 CCTV(방법, 재난, 불법주정차 등)의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 관리 CCTV의 24시간 상시 운영상태 유지(유지관리)

☐ CCTV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전담 경찰관의 상시 근무로 비상대비 대응체계 구축
- 전문 관제요원 배치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대비단계(초기대응)

☐ 범죄발생 시

- 사건발생 인근 순찰차(경찰관) 긴급 출동 요청
- 필요시 유관기관 등 신속한 상황전파

☐ 재난발생 시

-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담당부서 등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 필요시 유관기관 등 신속한 지원 요청

3) 대응단계(비상대응)

☐ 범죄발생 시

- 도주로 파악 등 영상정보를 통한 사건 해결 지원
- CCTV 영상정보 연계 등 업무 지원

☐ 재난발생 시

- 재난 발생지역의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복구 지원
- 필요시 유관기관 영상정보 연계 등 업무 지원

4) 복구단계

☐ 공 통

- CCTV 영상자료 연계 및 증거확보 등 사후조치 지원
-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상황판단 및 후속조치 강구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방법용 CCTV 설치 지원

작성 부서	자치 행정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신원선 담당	033-560-2234	재난안전관리 단계
			장선웅 주무관	033-560-2236	대비·대응

◇ CCTV 설치를 통해 각종 사고·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선군 조성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추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CCTV 설치 대수	213대	51대	25대	CCTV 설치대수	높음

□ 주요내용

- 방법용 CCTV 설치 현장여건 확인
- 방법용, 주정차단속, 과속단속 CCTV 설치
-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및 모니터링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세부 추진계획 수립	1~3월
	공사 발주, 구축, 준공	4~6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	'20	비고
방법용 CCTV 설치	180	163	250	250	250	

4. 재난안전 일반

1. 재난·사고 예방

1-1.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가. 현 황

-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는 개별 지자체의 재난안전분야 응급복구사업,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
- 관련 규정 및 내용

- * (추진근거)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3항
- * (재 원) 내국세의 19.24%의 3%
 - 수요별 : 지역현안수요 40%, 시책수요 10%, 재난안전수요 50%
- * (대상사업) 응급복구, 항구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 * (교부대상) 재난의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 * (주요교부 운영방향)
 - 재난복구비는 수시 지원하되,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사업에도 지원
- * (사업신청) 정선군 안전건설과 및 사업부서(신청) → 도 안전총괄과(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도 안전총괄과(행정안전부 신청, 도 예산과 협조)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결정) ※ 시군사업은 시군에서 순위 결정
- * (교부시기) 정기(상·하반기) 또는 수시
- * (교부접수 및 집행대장 관리) 시, 도지사

나. 추진목표

- 2018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 규모는 미정이나,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전년도 대비 추가 확보 노력

(단위 : 백만원)

특별교부세 확보액	2016	2017	2018 (목표액)	비 고
강원도	30,269	34,901	37,000	
정선군	1,586	1,300	1,665	
비율	5.2%	3.7%	4.5%	

다. 추진방향

- 재난 및 안전관리 시급사업 적극 발굴
- 재난의 응급복구 및 긴급 자원 필요사업 수시 건의
- 지원사업의 조기 추진 및 집행관리 철저

라. 추진일정

- 상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추진 : 2018. 2월
-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추진 : 2018. 8월
- ※ 긴급 자원 필요사업 발생 시 수시 건의

1) 재정사업

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전제헌 담당	033-560-2131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동진 주무관	033-560-2163	예방

◇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 재정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총당하는 재원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	16억원	13억원	17억원	재난안전특교세 확보금액	높음,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시급사업 발굴
- 재난의 응급복구 및 긴급 재원 필요사업 지원 건의 등
- 지원사업의 조기 추진 및 집행관리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상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추진	3월
하반기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추진	9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86	1,300	1,665	1,500	1,500	

1-2 지역축제

가. 현 황

○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0	-	-	-	-	-
재산피해		0	-	-	-	-	-
인명피해	계	0	-	-	-	-	-
	사망(실종)	0	-	-	-	-	-
	부상	0	-	-	-	-	-

나. 원인분석

- 축제(행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사중 축제장 상황실 운영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자 없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라.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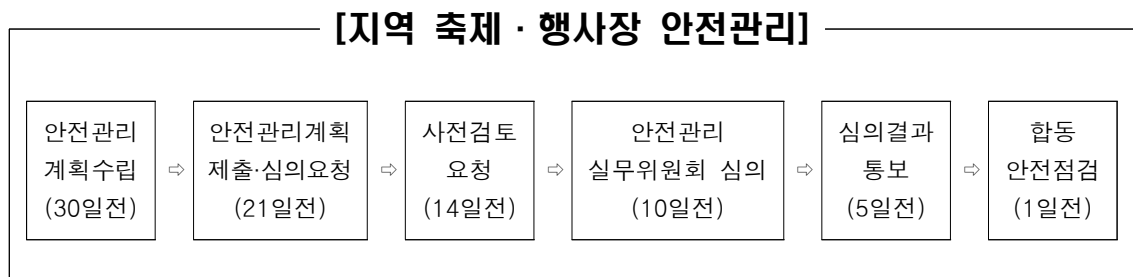
- 모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의무 수립 등 안전관리 강화
- 축제 보험가입 정례화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 지역축제 행사장 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안전대책 추진

- 군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추진사항 확인·지도
 - 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대면심의 이행여부
 - 행사장 위치, 예상인원 등 안전관리계획 심의 적정성 여부
- 지역축제 행사장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실시
 - 군, 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
 - 무대부 안전여부, 전기시설 접지, 가스용기 보관함설치 등 확인
- 고위험 축제행사장 유관기관 합동 안전관리
 - 해돋이, 얼음축제, 불꽃·폭죽사용 공연행사장
 - 합동상황실 운영,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소방력 전진배치 등



2) 대비단계

☐ 축제장 안전관리 태세 확립

- 현장지휘체계 강화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 축제행사장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및 비상연락망 유지
 - 안전사고 상황관리 철저 및 신속보고, 현장지휘체계 확립

☐ 축제장에 대한 유관기관별 안전관리 이행실태 수시확인

- 축제장 임시가설물(행사무대, 가설전기, 가스설비)의 안전성 여부
- 화기 사용 천막에 대한 소화기 등 소화설비 여부

☐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에 대한 행사 전 안전교육 실시

3) 대응단계

□ 대응단계별 상황보고 및 근무체계 확립

- 대응1단계 : 사고발생 신고접수·출동지령 및 전파
 - 신고접수 후 소방대 출동지령 및 유관기관 현장지원 요청
- 대응 2단계 : 지휘체계를 통한 보고 및 유관기관·단체 전달
 - 119재난종합지위센터 → 안전행정부 보고 및 유관기관·단체 전파
- 대응 3단계 : 긴급구조, 대응조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 대응 4단계 : 긴급구조통제단 활동 및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4) 복구단계

□ 정확한 피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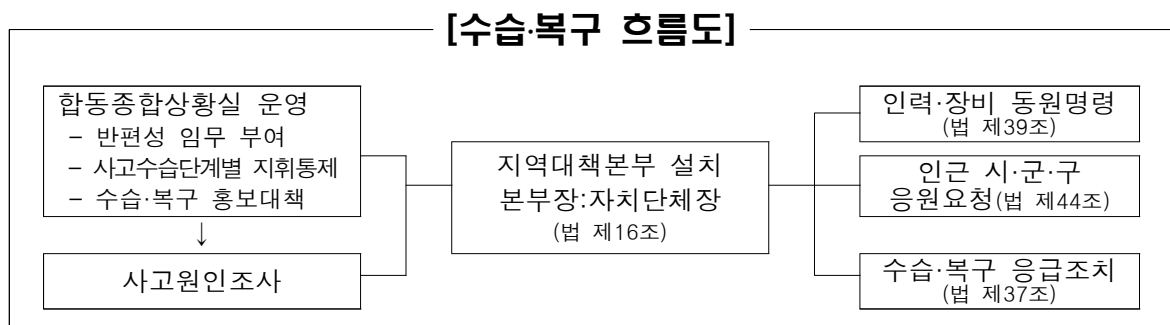
- 피해규모,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 편성·운영

□ 합리적이고 신속한 복구

- 관계기관 회의 개최, 수습지원단 편성·운영
- 사상자 치료·장례대책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수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배상(보상)대책

- 피해자 배상(보상)계획 수립, 재난발생 원인 조사·분석



구분	세부사항(행동요령)
수습 · 복구	□ 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 활동(법 제51조) ○ 사상자 후송조치 및 인명구조대책 우선 강구 □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 긴급구조 관련 유관기관 - 재난관리 책임기관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긴급구조기관 : 119소방관서, 군부대, 해양경찰, 적십자사 등 - 임무 : 재난수습, 복구계획 수립 및 집행,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 통합 지휘체계 확립 - 재난현장 통신망 일원화 및 비상연락망 정비 - 현장에 동원된 긴급구조구난기관 및 자원봉사자의 임무 부여 - 사상자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체계 확립 □ 사고원인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확인 ○ 관련 분야별 전문가 및 자체 점검반을 활용하여 사고원인 조사 ○ 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조사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복구 등 최종보고

바.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지역축제장 현장 안전관리 강화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전제현 담당	033-560-2131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정아 주무관	033-560-2489	예방

◇ 모든 지역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토록 지도하여 화재·테러 등 안전사고 사전방지로 안전한 축제환경 조성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점검 추진	10/11	11/11	11/11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전 수)	높음

□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고위험 축제 등 심의 여부 점검
- 축제 장소 및 시설 등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화재·테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인력의 배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담당자 비상연락망,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연 중	군 표본점검 등을 통한 이행여부 평가 및 지도·감독 실시	-

나. 모든 지역축제 보험가입 정례화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전제현 담당 윤정아 주무관	033-560-2131 033-560-2489	재난안전관리 단계 예방
-------	-------	-----------	-------------------	------------------------------	-----------------

◇ 관람객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기준을 「자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권고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보험가입 의무화 비율(%)	9/11	9/11	11/11	보험가입 건/축제개최 건	보통

□ 주요내용

- 보상대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지역축제 관계자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금액 이상
 *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최대 5천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원
 - 지역축제 개최 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변경 보험요율 체계 >

개정 전	개정 후
◆ 기본보상한도액* 기준 요율과 보상한도액 인상계수**로 구성, 계약자별 보상한도액 선택 가입 가능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천만원 **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 1사고당 30억원 까지	◆ 보상한도액* 기준의 참조요율 산출 *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1억 5천만원 ×요율산출기초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2018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계획 시달(보험가입 권고)	1월
연 중	점검을 통한 보험가입 여부 확인	수시

1-3. 시특법

가. 현 황

○ 시특법대상시설물 현황 : 72개소

(2017. 12. 31. 기준)

구분	계	등급별							종별		
		소계	A	B	C	D	E	미등급	소계	1종	2종
계	72	72	19	47	5	0	0	1	72	4	68
교량	11	11	1	10					11		11
터널	0	0							0		
항만	0	0							0		
건축물	28	28	2	22	3			1	28	4	24
하천	0	0							0		
상하수도	13	13	2	11					13		13
옹벽	15	15	14	1					15		15
절토사면	5	5		3	2				5		5

나. 현황분석

○ 시특법 대상시설 중 현재 상태가 양호한 A,B,C등급 시설은 72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인 D,E등급은 없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기본계획(시설물안전법 제5조)

라. 추진계획

○ 2018년 시특법 대상시설 72개소 중 정밀점검(11개소) 및 정밀안전진단(1개소) 시기가 도래한 시설물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관리를 통해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

마. 목 표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중 누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설 관리부서의 안전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안전관리
-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취약시기별 수시 안전점검과 일제조사를 통한 재난위험 사전예방 및 대비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시특법대상시설의 정기 안전점검

- 시설관리 부서에서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실시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각1회)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정밀점검(1,2종시설)		정밀안전진단(1종)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재난취약 시기별 특별 안전점검(수시점검)

- 시설관리 부서에서 취약시기별로 중점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수시 안전 점검 추진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해빙기 건설현장, 축대·옹벽 안전점검	1월~3월
2/4분기	상반기 시특법대상시설 안전점검, 재난위험시설 전수 안전점검	4월
3/4분기	우기대비 시특법대상시설 안전점검	5월~8월
4/4분기	하반기 시특법대상시설 안전점검, 재난위험시설 전수 안전점검	9월~ 12월

□ 시특법대상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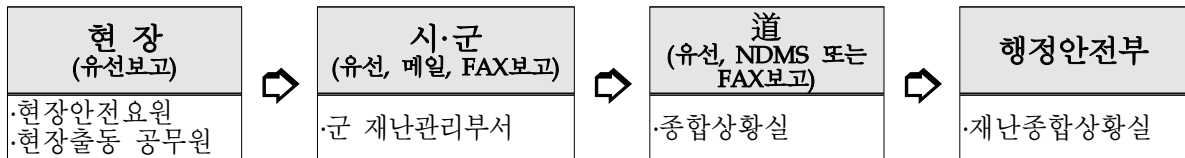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통계자료 관리를 통한 안전관리
 - 신규 대상시설 및 해소사항 등록관리

- 인허가 부서 및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연계한 맞춤형 안전점검
 - 매월 개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해빙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수행

2) 대비단계

□ 중앙·지역 긴급 대비·대응 체계 구축

- 시 기 : 건축 및 시설물 붕괴 등 사고발생시 즉시보고 및 이후 수시보고
- 내 용 : 사고발생 일시, 장소, 피해내용, 조치사항, 원인 등
 - ※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사고 발생시 강원도 즉시 보고 후 수시보고
- 군 재난관련부서, 도 기동안전점검단 및 유관기관에 보고·전파



□ 현장출동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대 상 : 정선군, 소방서, 경찰서, 인근병원 등 관련 유관기관
 - ※ 재난관리 책임기관: 군 / 긴급구조기관: 소방서 / 긴급구조지원기관: 경찰서, 군부대 등
- 내 용
 - 사고발생시 현장출동 및 상황별 안전점검 수행
 - 붕괴, 추락, 매몰 등 사고유형별 수습체계 및 단계별 대응방안 협의
 - 사고 대응 및 수습 장비 운영 확인 (각종 안전점검 장비 등)
 - 유관기관 상호지원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고발생 대비 사전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 우기철, 연말연시, 대테러대비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 정선군, 소방서, 유관기관간 합동안전점검 협력체계 구축
-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유형별 상황대응 및 안전점검 실시
-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 실시

3) 대응단계

☐ 긴급안전점검 실시

- 시설관리부서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 대피명령과 대피장소 등 지원 대책 수립

☐ 재난피해 민간소유 시트법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철거 및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주민대피 및 이주대책 수립과 철거 및 행정대집행 내용을 참조하여 군 및 관리주체에서 진행

4) 복구단계

☐ 피해조사지원

- 피해복구 상황과 연계하여 필요시 피해조사 지원 등

2. 재난·사고 대비·대응

가. 현 황

○ 구조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구조건수	19,576	14,284	19,541	19,744	20,576
증 감	6,960	△5,292	5,257	203	832
구조인원	5,235	4,810	5,093	4,601	4,460
증 감	△12	△425	283	△492	△141

○ 구급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이송건수	62,148	62,819	67,819	68,596	67,216
증 감	4.1	1.1	8.0	1.2	△2.0
이송인원	66,182	66,553	70,714	71,893	69,985
증 감	3.8	0.6	6.3	1.7	△2.7

※ (통계 출처) 소방공무원 시도소방통합포털시스템(구조구급)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구조발생 건수는 별집제거가 전체의 42.5%, 동물구조, 교통사고, 산악사고 순으로 나타남.
- 구급이송은 평균 65,700건, 69,065명 달하며 질병환자가 57%, 사고부상 24%, 교통사고 13.7%로 나타났으며 여름철(7~9월)에 구급활동이 30%를 차지함.

다. 투자현황

○ 구조구급장비 구매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중기	'20 중기
계	8,842	2,149	1,548	1,745	1,700	1,700
구조 구급장비 구매	8,842	2,149	1,548	1,745	1,700	1,700

라. 목 표

○ 구조구급장비 구매율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구조 구급장비 구매	100%	100%	100%	100%	100%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 “대형화재와 동일”

바.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구조구급장비 구매 사업

작성 부서	정선 소방서	작성자 및 연락처	소방경 박건용	033-560-64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위 조병삼	033-560-6431	대비·대응

◇ 소방관서의 노후하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 보강을 통한 안전한 소방활동 지원과 대국민 119서비스 질 향상

□ 목 표

(단위:백만원)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장비노후 및 부족을 제로화	2,149	1,548	1,745	소방장비 교체 보강 실적	높음

□ 주요내용

-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 노후도가 심한 소방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교체 및 신규 차량 보강
 - * 소방안전 교부세 교부(2018년)
- 화재, 구조, 구급, 개인보호 장비 보강 추진
 -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개인안전장비 보강
 - * 소방안전 교부세 교부(2018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노후 소방차량 교체 계획 수립 ○ 신규 소방차량 구매(연식에 따라 순차적 보강)	1월~2월 2월~11월
1/4분기~ 2/4분기	○ 화재·구조·구급·개인보호 장비 보강	2월~6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계	2,149	1,548	1,745	1,700	1,700	
구조구급장비 구매사업	2,149	1,548	1,745	1,700	1,700	

2) 기타시책

가. 긴급구조훈련

작성 부서	정선 소방서	작성자 및 연락처	소방경 박건용	033-560-64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위 조병삼	033-560-6431	대비·대응

◇ 추진배경

- 대응자원의 실질적 훈련을 유도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재난유형별 기능숙달 훈련,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 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10(재난대비 훈련 등)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긴급구조훈련 (종합, 불시)	5회	5회	5회	관서별 년 5회 (종합훈련 1회 불시가동훈련4회)	보통

□ 주요내용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 등 기능숙달훈련
- 불특정 시간에 메시지에 의한 통제단 불시가동 훈련(분기1회)
- 지원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합동도상훈련, 토의형 훈련 등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종합훈련 1회, 불시가동훈련 2회	연중
하반기	불시가동훈련 2회	연중

3). 재난·사고 복구

1. 풍수해

1) 재정사업

가).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사업 지원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명호 담당 주창수 주무관	033-560- 033-560-2499	재난안전관리 단계 대비,대응
----------	-------	--------------	-------------------	--------------------------	--------------------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각종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재해예방 사업추진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기금의 효율적 관리	90%	90%	95%	기금확보율(50%) 기금집행률(50%)	높음

□ 주요내용

- 기금조성 : '18년 전입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1,613백만원 조성
- 사업계획 : 총 2개 사업에 250백만원 집행계획, 잔액 1,363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장비 사용 등 2개 사업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2018년도	'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심의 및 의결	1~2월
	주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추진	3~7월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 및 의결	4~6월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장비 사용	년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비 고
재난관리기금	1,058	1,277	1,613	

나.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작성 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명호 담당	033-560-2497	재난안전관리 단계
			유상배 주무관	033-560-2479	복구

- ◇ 풍수해 피해복구비 지원 제도를 보험 제도로 전환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 대처 및 실질적 피해 보상

※ 관련법령 : 「풍수보험법」 제7조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주택보험 가입율	856건	927건	900건	보험 가입실적	높음
온실보험 가입율	106,879㎡	127,437㎡	90,000㎡	보험 가입실적	

□ 주요내용

-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가입형식 : 1년 단위 / 가입한도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형
- 보험사업 : 5개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
- 추가지원 : 비닐하우스, 온실, 주택(일반가입자) 자부담 50%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반기	○풍수해보험 집중가입 추진단 운영(지휘 : 안전건설과 과장) ○풍수해보험 온·오프라인 홍보(현수막, 홍보물품, 지역신문) ○서한문 및 가입동의서 회신용 우편 발송	3~7월
하반기	○정선군 관내 각종 행사에서 풍수해보험 홍보캠페인 전개	8~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고
계	46	71	86	71	71	
풍수해보험 사업	26	51	66	51	51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20	20	20	20	20	

2) 기타시책

가). 농업재해 복구지원

작성 부서	농업 축산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종린 담당 임동욱 주무관	033-560-2374 033-560-2106	재난안전관리 단계 복구
-------	--------	--------------	-------------------	------------------------------	-----------------

◇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신속복구비 지원	-	-	즉시	지원절차 준수도	보통

□ 주요내용

- 농업재해 신고 및 지원절차
 - 피해발생신고(농가-재난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
 - 피해정밀조사(읍·면·동, 시·군 / 피해상황 최종 보고 후 20일 이내)
 - 복구계획수립 및 확정(도↔농림축산식품부)
 - * 정부지원대상 제외 농업인의 경우 자체 복구계획 수립 및 지원
- 재해지원 기준
 - 직접지원 : 농약대, 대파대, 입식비 등
 - 간접지원 : 생계지원금, 학자금면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연중	풍수해 등 재난피해 복구지원	지원피해 발생시